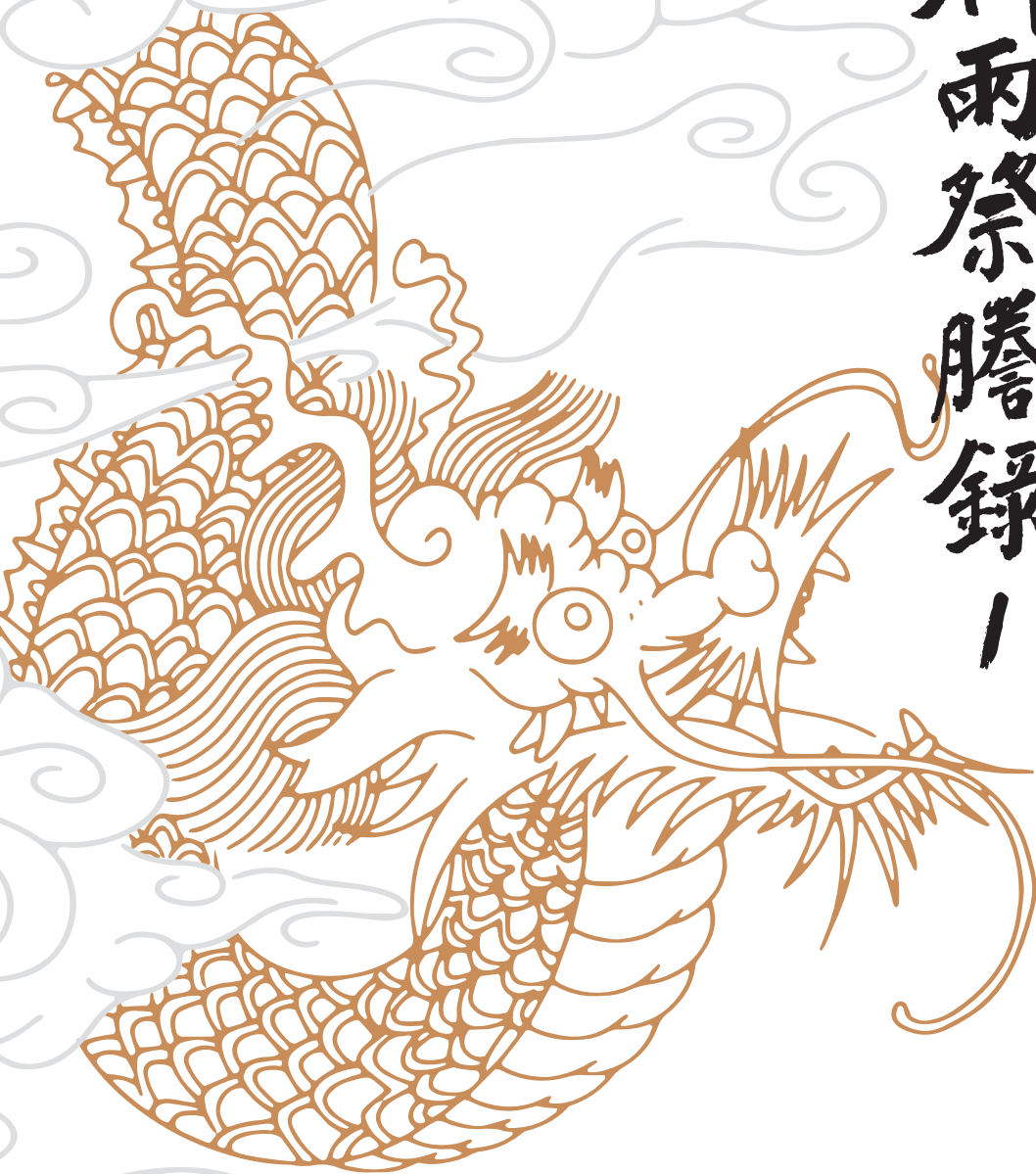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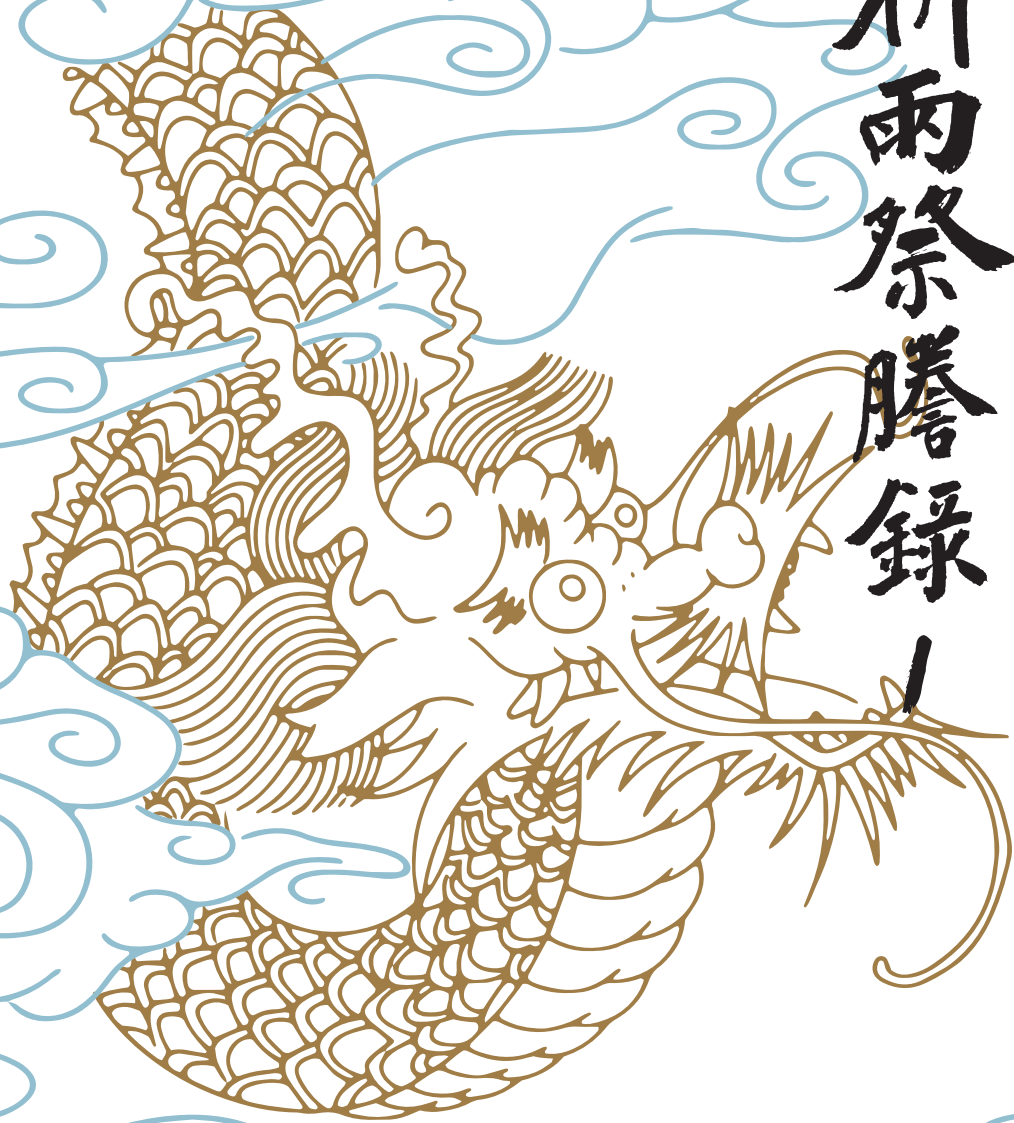
祈雨祭謄錄

기
우
제
등
록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祈雨祭騰錄
기우제등록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차례

서문	6
해제	9
일러두기	98

1책

인조조

병자년 ¹⁶³⁶	108
기묘년 ¹⁶³⁹	126
경진년 ¹⁶⁴⁰	131
신사년 ¹⁶⁴¹	133
계미년 ¹⁶⁴³	140
갑신년 ¹⁶⁴⁴	141
을유년 ¹⁶⁴⁵	142
정해년 ¹⁶⁴⁷	148
기축년 ¹⁶⁴⁹	159

효종조

경인년 ¹⁶⁵⁰	164
신묘년 ¹⁶⁵¹	181
임진년 ¹⁶⁵²	193
계사년 ¹⁶⁵³	219
갑오년 ¹⁶⁵⁴	226
을미년 ¹⁶⁵⁵	230
병신년 ¹⁶⁵⁶	235
정유년 ¹⁶⁵⁷	236
무술년 ¹⁶⁵⁸	248
기해년 ¹⁶⁵⁹	253

2책

현종조

경자년 ¹⁶⁶⁰	258
신축년 ¹⁶⁶¹	268

숙종조

기미년 ¹⁶⁷⁹	286
신유년 ¹⁶⁸¹	297
임술년 ¹⁶⁸²	322
계해년 ¹⁶⁸³	330
갑자년 ¹⁶⁸⁴	353
을축년 ¹⁶⁸⁵	369
병인년 ¹⁶⁸⁶	388
정묘년 ¹⁶⁸⁷	399
무진년 ¹⁶⁸⁸	408
기사년 ¹⁶⁸⁹	414
경오년 ¹⁶⁹⁰	420
신미년 ¹⁶⁹¹	435
임신년 ¹⁶⁹²	440
계유년 ¹⁶⁹³	452
갑술년 ¹⁶⁹⁴	453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감하고, 국가의 역량을
동원하여 재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우제등록』

이 책은 “2022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유물 보존 및 역사 자료 번역·해제 연구”와 “2023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역사 자료 번역·해제 연구”의 결과물로, 『기우제등록』의 해제와 제1~6책의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기우제등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6책 필사본 문헌이다. 1636년^{인조14}부터 1889년^{고종26}까지 254년간 2,774건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의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예조의 공문, 국왕의 전교, 연설은 물론, 강우량을 관측을 위한 수표와 측우기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해제, 번역과 표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제는 『기우제등록』의 서지적 특성 및 그 구성과 내용을 살핌으로써 조선 후기 기우제 의례의 정립 과정을 재구하고, 기우제를 위시한 각종 기고 의례의 성격을 일별한 글이다. 아울러 이 책에 수록된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 기곡제, 보사제 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표점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교감표점 지침과 역사문헌번역

지침에 따라 『승정원일기』와 대조하여 원문을 교감하고 표점을 부기하고 번역을 수행하였다. 『기우제등록』의 자료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사를 분할하고 일련번호를 부기하였으며, 난해한 용어는 용어집에서 따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문헌학 전공자와 한국사 전공자를 각각 검토자와 감수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검토 및 감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수정, 보충하였다.

『기우제등록』에 수록된 각종 의례의 실행 빈도와 수표 기록은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한 기상 자료이다. 아울러 『기우제등록』은 조선시대 기우제가 미신적,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감하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재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조처임을 보여준다. 기우제는 대처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유교적 인본주의 관념에서 비롯된 의례이며,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도모하는 일련의 재해 대책 중 하나이다.

해제

1. 머리말
 2. 『기우제등록』의 서지적 특성
 3. 『기우제등록』의 구성과 내용
 4. 맺음말
-

1. 머리말

『기우제등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6책 필사본 문헌이다. 1636년인조¹⁴부터 1889년고종²⁶까지 254년간 2,774건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의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예조의 공문, 국왕의 전교, 연설은 물론, 강우량 관측을 위한 수표와 측우기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기우제는 유래가 깊다. 최초의 기우제는 『삼국사기』에 보인다. 628년진평왕⁵⁰ 여름, 심한 가뭄이 들자 시장을 율기고 용을 그려 기우제를 지냈다.¹ 이 밖에 해골을 매장하고 도살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가뭄에 대응한 조치로 보인다.² 중국 남북조 시대에 이미 가뭄에 대응하여 해골을 매장하고 죄수를 심리하며 시장을 율기고 도살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환과고독(鰥寡孤獨)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휼도 병행하였다.

『고려사』에도 기우제에 관한 기사가 다수 보인다. 장소는 종묘, 사직, 왕릉, 사찰, 도관 및 개성의 송악산, 박연 등지다. 평양 목덕산 등 지방의 유명 산천에서도 기우제를 설행하였다. 무녀를 동원한 기우제, 토룡 기우제도 설행하였으며, 이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조선 초기 기우제 설행 장소는 일정하지 않았다. 종묘, 사직, 명산대천 등지에서 그때그때 왕명에 따라 기우제를 설행하였다. 한양 천도 이후로는 한양 산천에서 기우제를 설행하면서도 개성의 박연, 덕진 등지에서도 계속 설행하였다. 박연, 덕진 등지의 기우제는 17세기까지도 국가 주도로 설행되었는데, 고려시대부터의 관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시대 기우제의 절차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풍운뇌우단 기우

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2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의風雲雷雨壇祈雨儀와 우사단 기우의霽祀壇祈雨儀에 처음 규정되었으나, 풍운뇌우단과 우사단을 제외한 곳에서도 관행적으로 기우제를 설행하였다. 기우제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1704년숙종30이다. 이때 마련된 기우제 정식은 기우제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 결과 기존에 내포된 불교, 도교, 무속적 요소는 배제되고 유교적 의례로 정비되었다.³ 『기우제등록』은 기우제 의례의 정립 과정과 그 이후의 설행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2. 『기우제등록』의 서지적 특성

1) 등록류 문헌의 성격과 『기우제등록』의 형태적 특성

『기우제등록』은 등록류 문헌이다. 등록은 베껴 적는다는 뜻이며, 등록류 문헌은 해당 관서가 주고받은 공문서, 해당 관서의 업무에 관련된 국왕의 전교傳敎, 연설筵說 등을 베껴 적어 만든 것이다. 그러나 등록류 문헌은 단순히 문서를 베껴 적은 사본이 아니다. 전례를 참고하기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를 선별하고 이를 베껴 적어 별도의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⁴ “여러 관사와 고을의 문서는 분류하고 편철하고 첨지籤紙를 달아 각기 보관한다.”라는 『경국대전』의 조문이 그 법적 근거다.⁵

원본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사본을 보관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해당 관서가 사안의 처리를 위해 원본 문서를 다른 관서로 이첩해야 하는 경우, 원본을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본을 만들 수밖에 없다. 당시 공문서의 규격이 제각각이었기에 보관에 불편했기 때문이

3 오인택(2007), 171쪽.

4 등록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는 이형중(2018) 참조.

5 『경국대전』 「禮典」 〈藏文書條〉 “諸司諸邑文書，分類作綜懸籤，各藏之.”

기도 하다.

등록은 다양한 규격과 형식의 공문서를 일정한 체제로 편집하므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확인할 때도 원본 문서를 살피는 것보다 등록을 살피는 쪽이 수월하다. 무엇보다 등록의 신뢰도가 원본 문서와 동일하였으므로, 굳이 원본 문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원본 문서는 처리가 끝난 뒤 세초하여 재활용하고, 원본을 필사한 등록을 보존하는 관례가 자리 잡았다. 거의 모든 관서에서 등록을 편찬하였으며, 실제 기록은 서리書吏가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록류 문헌은 ① 업무일지 형식의 ‘일지형 등록’, ② 법전에 준하는 ‘준법전형 등록’, ③ 핵심만 정리한 ‘대장형 등록’, ④ 관련 기록을 편철한 ‘공문서철형 등록’, ⑤ 보고와 업무상 참고를 위해 작성한 ‘자료집형 등록’으로 나눌 수 있다.⁶ 『기우제등록』은 이 중 일지형 등록에 해당한다. 해당 관서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편년체 사서처럼 일자별로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일지형 등록은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으나 매일 기록한 것은 아니다. 관련 문서를 모아 두었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한꺼번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우제등록』 6책 역시 한꺼번에 편찬한 것이 아니라 등록 편찬의 관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기우제등록』 6책의 형태가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1】『기우제등록』 책별 현황

책차	기간	기사 건수	표제 책차	실제 책차
1	1636년(인조14)~1661년(현종2)	234	—	1
2	1679년(숙종5)~1694년(숙종20)	359	三	3
3	1695년(숙종21)~1723년(경종3)	822	奎	4
4	1755년(영조31)~1778년(정조2)	666	六	6

6 이형중(2018), 200쪽.

책차	기간	기사 건수	표제 책차	실제 책차
5	1782년(정조6)~1842년(헌종8)	313	七	7
6	1848년(헌종14)~1889년(고종26)	380	八	8

『기우제등록』 6책은 동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형태가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6책의 표제가 다르다. 1책의 표제는 ‘祈雨【自丙子至辛丑】一’, 2책은 ‘祈雨騰錄【三】’, 3책은 ‘祈雨祭騰錄【全】’, 4책은 ‘典享司祈雨錄【六】’, 5책은 ‘祈雨祈晴騰錄【七】’, 6책은 ‘祈雨祈晴騰錄【八】’이다. 사용한 용지도 다르다. 『기우제등록』은 界線紙에 필사한 것이며, 이 계선지는 목판으로 인쇄한 것이다.

1, 2, 3책은 동일한 계선지를 사용하였다. 10행이며 판심제는 없고 상하내향화문어미이다. 4책의 계선지는 1, 2, 3책과는 다르다. 12행이며 판심제는 없고 상하내향화문어미이다. 5, 6책의 계선지 역시 앞의 책들과는 다르다. 12행, 상하내향화문어미이며 판심제는 ‘禮曹’이다. 이처럼 『기우제등록』은 최소 3종의 계선지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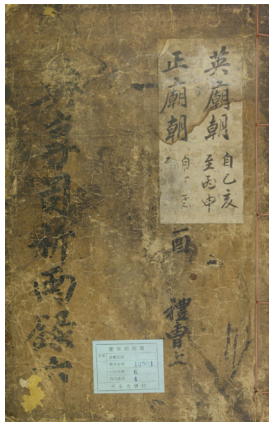
【그림1】『기우제등록』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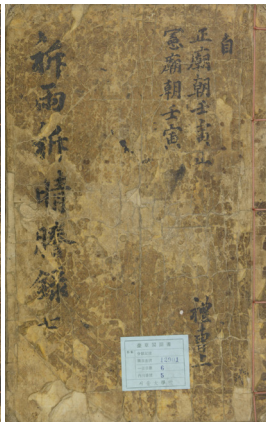
1책

2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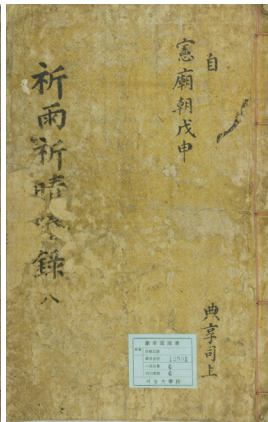
3책



4책



5책



6책

현재의 『기우제등록』은 온전하지 않다. 1책과 2책 사이에 18년치, 3책과 4책 사이에 32년치가 누락되었다. 4책과 5책 사이에 4년, 5책과 6책 사이에도 6년의 간격이 있으나 이 기간의 기록이 없는 이유는 기우제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락된 부분은 1책과 2책 사이, 3책과 4책 사이이다. 1책의 책차冊次가 ‘一’, 2책의 책차가 ‘三’이므로 이 사이에 ‘二’에 해당하는 책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奎’으로 되어 있는 3책의 책차는 ‘四’에 해당하며, 3책과 4책 사이 누락된 32년치는 ‘五’에 수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기우제등록』 1~6책은 실제로는 1, 3, 4, 6, 7, 8에 해당하며, 2, 5책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기우제등록』의 작성 주체는 전향사典享司로 보인다. 전향사는 예조 소속 아문으로 연회宴會, 제사祭祀, 제물祭物, 음선飲膳, 의학醫藥 등을 담당한다.⁷ 『기우제등록』 4책의 표제가 ‘전향사기우록’이며, 6책 표지 우측 하단에도 ‘典享司上’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만 기우제를 담당하는 전향사의 등록이 지금의 『기우제등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향사의 업무는

7 『經國大典』「吏典」京官職/正二品衙門/禮曹.

기우제뿐만이 아니며, 전향사가 편찬한 다른 제사의 등록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장각 소장 『여제등록厲祭謄錄』은 원혼을 달래는 여제厲祭 관련 기록을 모은 문헌이며, 『치제등록致祭謄錄』은 국왕의 명으로 설행하는 치제致祭 관련 기록을 모은 문헌이다. 모두 제례라는 점에서 전향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이 두 책의 표지 우하단에 ‘전향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시기에 전향사에서 기우제 관련 내용을 따로 뽑아 지금의 『기우제등록』 형태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⁸

2) 『기우제등록』의 작성과 활용

『기우제등록』이 언제부터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실록에 1603년선조³⁶ 진암 분시辰巖焚柴에 기우제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을 살폈으나 1597년 이전의 등록은 유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⁹ 이 밖에 1614년광해군⁶ 기우 친제祈雨親祭의 전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등록’에 기록이 없다는 언급이 있으니,¹⁰ 일찍부터 기우제 관련 문서를 별도의 등록으로 관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조선 후기 기우제 설행 과정에서 『기우제등록』을 참고한 사례는 자주 보인다. 이미 인조조부터 기우제를 설행하기 앞서 ‘禮曹謄錄’을 참고하였다.¹¹ 예조의 업무는 방대하므로 단일한 등록을 편찬하였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예조등록’은 예조가 보관한 여러 등록 중 하나로 추정된다. 『승정원일기』로 보건대 예조의 하위 관서인 전향사를 비롯한 계제사

8 규장각 소장 『계제사등록』에는 계제사가 소장한 각종 등록의 목록이 있다. 총 22종으로, 행사별, 주제별로 등록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갑수(2000) 196쪽. 따라서 전향사 역시 행사별, 주제별 등록을 작성하여 소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9 『선조실록』 36년 5월 18일.

10 『광해군일기』 6년 4월 20일.

11 『승정원일기』 인조 6년 5월 17일.

稽制司, 전객사典客司의 등록은 이미 현종조부터 별도로 존재했다.

영조 초기에 이미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기우제등록』을 업무에 참고한 기록이 있다. 1727년^{영조3} 사직단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출궁과 환궁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1708년 숙종이 사직단 기우 친제를 지낼 때의 등록을 참고하였고,¹² 1731년^{영조7} 기국 친제를 앞두고 국상 중의 기우제 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을 참고하였다.¹³ 이듬해부터는 예조에 명하여 ‘기우제등록’ 또는 ‘기우등록’을 가져오게 하고 참고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 『기우제등록』을 검토한 뒤 기우제 차례를 따르지 않고 석척 기우제를 설행하게 하는가 하면,¹⁴ 입추 이후 기우제를 지낸 전례가 있는지 『기우제등록』에서 확인하였다.¹⁵ 정조조에도 원년에 기우제를 행한 전례가 있는지 『기우제등록』에서 확인하였고,¹⁶ 기우제 기간 동안 북을 치는 격고擊鼓가 가능한지 여부를 누차 확인하였다.¹⁷ 『기우제등록』은 조선 후기부터 이미 기우제 설행의 참고 자료였다.

『기우제등록』에 가장 많은 분량이 수록된 문서는 초기草記와 단자單子이다. 초기는 중앙 아문에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형식이 간단하여 작성하기 편리하였으므로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달 문서였다. 본디 국왕에게 상달할 일이 있으면 신하가 국왕에게 나아가 직접 아뢰었으나, 이것이 아뢴 내용을 구두로 승지承旨에게 전해 주면 주서注書가 글로 적어서 아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다시 해당 아문에서 국왕에게 상달할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승지에게 전달하였으니, 이것이 초기이다. 주로 해당 아문의 소관 업무를 아뢴 때 초기를 사

12 『승정원일기』 영조 3년 7월 26일.

13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2월 2일.

14 『승정원일기』 영조 8년 6월 12일.

15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4일.

16 『승정원일기』 정조 1년 4월 24일.

17 『승정원일기』 정조 6년 6월 6일 ; 정조 18년 7월 19일.

용하였다. 초기는 서리書吏가 작성하고 해당 관원이 승정원에 전달하면, 승지가 국왕에게 전달하였다.¹⁸ 『기우제등록』 수록 기사 중 ‘예조가 아뢰기를[禮曹啓曰]’로 시작하는 문서는 대부분 초기이다.

단자는 인명 또는 물명을 열거하거나 본론만 간략히 적어서 상달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본디 개인과 개인, 관아와 관아 상호간에도 사용하였으나 신하가 국왕에게 상달하는 경우도 단자를 사용한다. 일상적인 사안, 비교적 작은 사안에 주로 사용하였다. 단자는 용도와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¹⁹ 『기우제등록』에서 기우제 설행 및 설행 일자를 건의하는 기사는 대부분 단자이다. 수표의 수위를 보고할 때도 단자를 사용하였다.

초기와 단자 다음으로는 계목啓目이 자주 보인다. 계목은 관아의 이름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해당 관아의 사무 및 다른 관아에서 통지받은 사안에 대한 해당 관아의 의견을 국왕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관아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는 점이 계목의 특징이다. 초기와 달리 연월일과 담당 관원의 직명과 성명을 기록한다.²⁰ 『기우제등록』에서 다른 관아의 문서를 전재轉載한 기사는 대부분 계목이다.

초기, 단자, 계목 외에 상달 문서로 계사啓辭, 상소上疏 등이 있으나 『기우제등록』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밖에 연석筵席에서 국왕과 신하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기록한 연설筵說, 국왕이 하달한 전교傳敎, 비답批答, 비망기備忘記 등도 실려 있다. 특히 영조의 경우는 기우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비망기를 남겼다.

『기우제등록』에 수록된 문서들이 당시 기우제 관련 문서의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와 대조하면 누락된 문서가 다수 보인다.

18 이강욱(2021), 160~194쪽.

19 이강욱(2021), 261~293쪽.

20 이강욱(2021), 57~97쪽.

특히 기우제 이외의 기청제, 기설제, 기곡제, 보사제 관련 문서는 상당수가 누락되었다. 따라서 『기우제등록』만으로 조선 후기 기우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기우제등록』만큼 기우제 관련 기록을 집중적으로 수록한 문헌은 없다고 하겠다.

참고로 『기우제등록』과 유사한 문헌이 2종 있다. 첫째는 장서각 소장 필사본 1책 『기우제등록』^{K2-2525}이다. 1743년^{영조19}부터 1832년^{순조32}까지 시행된 기우제, 기청제, 보사제의 제문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제문만 모았으므로 규장각 소장 『기우제등록』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규장각 소장 『기우제등록』은 기우제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기록하면서도 기우제 문만큼은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우제문은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승정원일기』의 기록이다. 1760년^{영조36} 6월 4일, 영조는 향실^{香室}에 보관한 ‘祈雨祭文謄錄’을 가져오라고 명한다.²¹ 기우제문을 친히 지으면서 참고하기 위해서였다. 장서각 소장 『기우제등록』과 같이 기우제문만을 별도로 기록한 책이 존재하였다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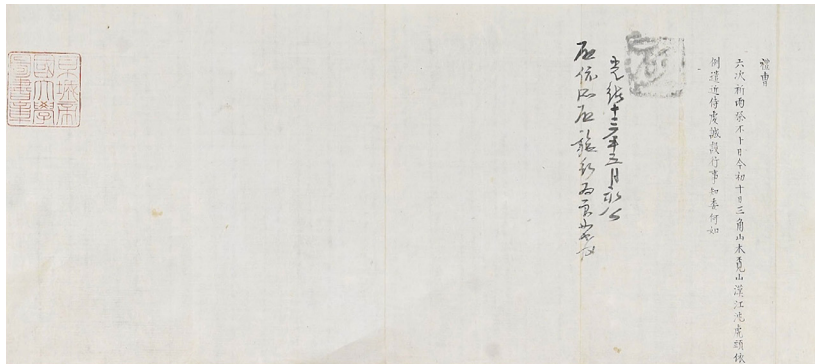
둘째는 규장각 소장 절첩본 1첩 『기우제의』이다. 경상도 하동현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헌은 기우제의 절차 및 기우제문 3편을 수록하였다. 기우제 실행을 위해 참고한 문헌으로 추정된다. 편찬 시기는 하동현이 도호부로 승격된 1704년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²² 소략한 문헌으로 역시 규장각 소장 『기우제등록』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지방

21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4일.

22 이 책에는 ‘경술년 현감李’, ‘무오년 현감黃’, ‘정묘년 현감申’의 기우제문이 실려 있다. 『승정원일기』를 대조하면 ‘경술년 현감李’는 1668년 하동 현감에 임명된 이영(李漢)으로 추정된다. 그는 1671년까지 재직하였는데, 1670년이 경술년이다. ‘무오년 현감黃’은 1677년 하동 현감에 임명된 黃鑣으로 추정된다. 부임 이듬해인 1678년이 무오년이다. ‘정묘년 현감申’은 1686년 하동 현감에 임명된 신언화(申彦華)로 추정된다. 역시 부임 이듬해인 1687년이 정묘년이다. 따라서 『기우제의』의 편찬 시기는 1678년 이후부터 1704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청의 기우제 설행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장서각 소장 『기우제등록』은 기우제문만 따로 모아 엮은 것이며, 규장각 소장 『기우제의』는 지방 관청의 기우제 관련 기록으로 극히 일부 시기의 기록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 『기우제등록』은 장기간에 걸쳐 기우제 관련 기록을 한데 모은 유일무이한 문헌이라고 하겠다. 『기우제등록』에 수록된 문서 중 상당수는 『승정원일기』에도 실려 있으나,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많고, 실물은 더욱 드물다. 『기우제등록』 수록 문서 중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887년 작성된 규장각 소장 예조 초기禮曹草記 1건뿐이다. 이 문서는 『기우제등록』 1887년 5월 8일에 실려 있다.



〈그림2〉 규장각 소장 예조 초기(문서번호 93337)

3) 『기우제등록』의 수록 범위

『기우제등록』 수록 기사의 작성 시기는 1636년^{인조14}부터 1889년^{고종26}까지이다. 인조 이전의 기록은 조선 전기 대부분의 기록물이 그렇듯이 임병 양란과 이괄의 난을 거치면서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인조조 이후의 기록도 온전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의 『기우제등록』 1~6책은 실제로는 1, 3, 4, 6, 7, 8에 해당하며, 2, 5책은 유

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인조조는 재위 27년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3년간의 기록만 남아 있고, 현종조는 재위 15년 중 단 2년간의 기록만 남아 있다. 이 밖에 숙종 초기 5년, 영조 초기 30년의 기록이 유실되었다. 다시 말해 『기우제등록』은 연속된 기록이 아니라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는 불완전한 기록이다. 그럼에도 인조조부터 고종조까지 단일한 주제에 관한 기록이 이처럼 집중되어 있는 사례는 드물다.

수록 기사에의 분량은 선행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최종성²⁰⁰⁷은 1책 171건, 2책 236건, 3책 554건, 4책 330건, 5책 247건, 6책 273건, 총 1,811건으로 파악하였고, 김일권²⁰²³은 1책 172건, 2책 236건, 3책 556건, 4책 325건, 5책 246건, 6책 275건, 총 1,810건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들은 기사별 통계가 아니라 날짜별 통계로 보인다.

『기우제등록』에는 하루에 여러 건의 기사가 수록된 경우가 많다. 각 기사의 서두에 ‘一’을 표시하여 구분하였으므로, 각각의 기사를 별개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제 기사 건수는 1책 234건, 2책 359건, 3책 822건, 4책 666건, 5책 313건, 6책 380건으로 총 2,774건이다. 이를 다시 왕조별로 구분하면 인조조 88건, 효종조 115건, 현종조 31건, 숙종조 1,067건, 경종조 114건, 영조조 598건, 정조조 170건, 순조조 162건, 헌종조 57건, 철종조 108건, 고종조 264건이다.

다만 이상의 통계로 시기별 빈도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우선 국왕마다 재위 기간이 다르다. 숙종조와 영조조의 기록이 가장 많지만, 이 두 국왕은 재위 기간이 각기 46년과 52년으로 장기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록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누락된 기록도 많으므로 기우제의 빈도수로 이 시기에 모종의 기상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기우제등록』의 기록이 해당 기간 기우제 관련 기록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기우제를 지내기로 결정하였다가 중지한 경우, 중지한 사실이 『승정원일기』에는 수록되었지

만 『기우제등록』에는 수록되지 않을 수 있다. 등록류 문헌은 으레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련 기록을 등록에 수록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요컨대 『기우제등록』에 누락되지 않은 기간 내에서도, 그 기록이 당시 기우제 관련 기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수록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시간적 선후가 바뀐 기록도 더러 보인다.

『기우제등록』에는 기우제뿐만 아니라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 눈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설제, 보답의 의미를 지닌 보사제 등의 실행 기록도 있다.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 관련 기록도 간혹 등장한다. 기우제 실행 기록은 총 660건, 기청제 106건, 기설제 16건으로 기우제가 압도적이다. 기우제 실행을 결정한 뒤 취소한 사례는 55건이다.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국왕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친제(親祭)를 지내기로 결정하면 예정된 기우제를 취소한다.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기우제를 지낸다. “평상시의 규례로 헤아리면 3일을 기다려 2차를 거행해야 합니다.”라는 언급으로 보아, 그 간격은 3일을 관례로 한다. 다시 말해 기우제를 지내고 효과가 없으면 3일 뒤에 다시 기우제를 지낸다는 것이다. 10회 이상 기우제를 지낸 해는 1647년^{13차}, 1721년^{12차}, 1764년^{11차}, 1811년^{11차}, 1814년^{10차}, 1838년^{10차}이다.

다만 차수만으로 기우제의 빈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별기우제(別祈雨祭)를 비롯하여 차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우제가 있기 때문이다. 친제는 별기우제와 마찬가지로 차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산입하는 경우도 있다. 또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린 뒤 한동안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기우제를 실행하는 경우는 다시 1차부터 계산한다.

3. 『기우제등록』의 구성과 내용

1) 기우제 의례의 정립 과정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 따르면 조선시대 기고의례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표2】 기고의례의 등급 - 『국조오례의서례』 「길례(吉禮)」

등급	대상
대사(大祀)	사직(社稷),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중사(中祀)	풍운뇌우(風雲雷雨), 악해독(嶽海瀆), 선농(先農), 선잠(先蠶), 우사(雩祀), 문선왕(文宣王), 역대 시조(歷代始祖)
소사(小祀)	영성(靈星), 노인성(老人星), 마조(馬祖), 명산대천(名山大川), 사한(司寒),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마제(禡祭), 영제(禋祭), 포제(酺祭), 칠사(七祀), 독제(蠶祭), 여제(厲祭)

모든 제사는 중요도에 따라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나뉘어진다. 국가의 상징인 사직과 종묘, 그리고 종묘의 별묘別廟에 해당하는 영녕전이 대사에 속한다. 풍운뇌우는 바람·구름·우레·비의 신, 악해독은 국내의 주요 산천, 선농은 농신農神, 선잠은 잠신蠶神, 우사는 신화 인물들의 제단으로 주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곳이다. 문선왕은 공자, 역대 시조는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시조이다. 대사만큼은 아니지만 이 역시 국가 의례상 중시하는 대상이다. 소사 역시 국가 의례에 포함되지만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중사와 소사 내에서도 등급의 차이가 있다. 제관의 품계가 각기 다른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중 악해독과 명산대천은 주의를 요한다. 악해독과 명산대천은 모두 자연물이지만, 등급에 차이가 있다.

악해독은 총 14개소이다. 악嶽은 지리산智異山·삼각산三角山·송악산松嶽山·비백산鼻白山, 해海는 동해東海·남해南海·서해西海, 독瀆은 웅진熊津·가야진

伽倻津·한강漢江·덕진德津·평양강平壤江·압록강鴨綠江·두만강豆滿江이다.

명산대천은 총 23개소이다. 목덕산木覓山(한양)·오관산五冠山·감악산紺岳山·양진楊津(이상 경기), 계룡산雞龍山·죽령산竹嶺山·양진명소楊津溟所(이상 충청도), 울불신勿弗神·주흘산主屹山(이상 경상도), 전주성황全州城隍·금성산錦城山(이상 전라도), 치악산雉嶽山·의관령義館嶺, 덕진명소德津溟所(이상 강원도), 우이산牛耳山·장산곶長山串·아사진송곶阿斯津松串(이상 황해도), 영흥성황永興城隍·함흥성황咸興城隍·비류수沸流水(이상 함경도), 청천강淸川江·구진익수九津溺水(이상 평안도)이다.

이처럼 악해독과 명산대천은 원칙적으로 구분하였으나, 기우제를 비롯한 기고제祈告祭의 대상은 사직, 종묘, 풍운뇌우, 악해독, 명산대천, 우사가 모두 포함된다. 이로 인해 별다른 구분 없이 기우제를 설행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정해진 순서 없이 그때그때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묘와 사직을 우선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설행하였다. 조선 전기 기우제의 실상은 성현成愼(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자세히 다룬다.

기우제를 지내는 절차는 먼저 오부五部로 하여금 도랑을 수리하고 도로를 청소한다. 다음으로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고, 다음으로 사대문에 제사를 지내며, 다음으로 오방용제五方龍祭를 지낸다. 동쪽 교외는 청룡, 남쪽 교외는 적룡, 서쪽 교외는 백룡, 북쪽 교외는 흑룡, 중앙 종루鐘樓 거리에는 황룡을 만들고 관리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되 3일 만에 끝낸다.

또 저자도에서 용제龍祭를 지내되 도사道士에게 용왕경龍王經을 외게 하고 범머리를 박연, 양진 등지에 던진다. 또 창덕궁 후원, 경회루, 모화관 연못가 세 곳에서 도마뱀을 물동이에 띄우고, 푸른 옷 입은 동자 수십 명이 버들가지로 동이를 두드리고 징을 치며 소리친다.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여 비를 퍼붓게 하면 너를 놓아 돌아가게 하리라.” 헌관과 감찰이 관과 홀芻을 정제하고 서서 제사를 지내되 3일 만에 끝낸다.

또 도성 안 모든 부락에 물병을 놓고 버들가지를 꽃아 향을 피우고, 방방곡곡에 산대(棚)를 만들고 아이들을 모아 비를 부른다. 또 시장을 남쪽 길로 옮기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연다. 가뭄이 심하면 국왕이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며 북을 치지 않고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며 중외에 사면령을 내린다.²³

우선 한양 오부를 시켜 도랑을 수리하고(修溝瀆) 도로를 청소한다.(淨阡陌) 『기우제등록』에도 기우제 실행에 앞서 도랑을 수리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해골을 묻어 준 사례가 자주 보인다. 다만 1658년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우제를 실행하는 장소는 ① 종묘와 사직, ② 사대문, ③ 오방용제, ④ 저자도 용제, ⑤ 박연과 양진의 침호두, ⑥ 창덕궁, 경회루, 모화관의 석척동자 기우제이다. 이상의 장소들에 실행하는 기우제는 순서만 달리하여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물병에 버들을 꽃고(屏柳), 시장을 옮기고(遷市),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여는(閉南門開北門) 조처 및 국왕이 정전을 피하고(避正殿),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減膳), 북을 치지 않고(勿擊鼓), 옥사를 심리하고 사면령을 내리는 조처 역시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용재총화』 기록은 기우제를 실행하는 장소의 일부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원단(圓壇, 남단), 북교(北郊), 소격전(昭格殿), 사찰 및 산천에서 기우제를 지낸 사실이 실록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기우제 실행 장소의 순서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기우제등록』에 수록된 1636년 이후 기우제 실행 장소를 보면, 1차는 대개 삼각산·목멱산·한강·풍운뇌우·산천·우사, 2차는 사직·종묘·북교, 3차는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 4차는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5차는 저자도·용산강·관악산·박연,

23 成俔, 『慵齋叢話』 卷7.

화적연·도미진·진암 분사이며, 6차부터는 앞의 장소에서 반복 실행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기우제 실행 장소가 고정된 시기는 1704년이다. 계기는 당시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의 건의다. 1704년 5월 23일, 민진후는 기우제를 연속 실행하여 번거롭고, 동시에 실행하는 곳이 너무 많아 제관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서를 정하도록 건의하였다.²⁴

민진후는 신격이 낮은 대상부터 시작하여 높은 대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1차는 삼각산·목멱산·한강, 2차는 용산강·저자도, 3차는 풍운뇌우·산천우사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좌의정 이여李爾는 기우제의 주 대상이 풍운뇌우와 우사이니, 여기에 먼저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숙종은 결국 민진후의 주장을 따랐다. 아울러 그간 기우제 대상이었던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등은 해당 도(道)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가 의례에서 배제한 것이다. 민진후는 이 같은 논의를 정리하여 6월 30일, ‘기우제 순서에 대한 별단’을 올려 숙종의 재가를 받았다.²⁵ 이것이 『속대전』에 실려 법제화되었다.

【표3】 기고의례의 대상과 순서 - 『속대전』 「예전(禮典)」 〈제례(祭禮)〉

종류	차수	장소	제관	비고
祈雨祭	1	三角山, 木覓山, 漢江	堂下三品	
	2	龍山江, 楮子島	從二品	
	3	風雲雷雨, 山川, 雩祀	從二品	
	4	北郊, 社稷	從二品, 正二品	
	5	宗廟	正二品	
	6	三角山, 木覓山, 漢江沈虎頭	近侍	

24 『기우제등록』 1704년 5월 23일.

25 『기우제등록』 1704년 6월 30일.

祈雨祭	7	龍山江, 楮子島	正二品	
	8	風雲雷雨, 山川, 雩祀	正二品	
	9	北郊, 慕華館池邊蜥蜴童子	正二品, 武從二品	
	10	社稷, 慶會樓池邊蜥蜴童子	議政, 武從二品	
	11	宗廟, 春塘池邊蜥蜴童子	議政, 武從二品	閉南門開北門遷市
	12	五方土龍祭	堂下三品	
禋祭	1	崇禮門, 興仁門, 敦義門, 肅靖門	堂下三品	
	2	上同	上同	
	3	上同	上同	
祈雪祭	1	宗廟, 社稷, 北郊	正二品	
	2	風雲雷雨, 山川, 雩祀, (三角山, 木覓山, 漢江)	正二品 (近侍)	

『속대전』에 실려 있는 기우제, 영제, 기설제 규정이다. 기우제는 1차부터 12차까지, 영제는 3차까지, 기설제는 2차까지 규정되어 있다. 1~5차를 지내면 일단 모든 장소에 기우제를 지낸 셈이다. 6차의 장소는 1차와 같고, 한강에서는 침호두沈虎頭 절차를 추가한다. 7차는 2차, 8차는 3차와 같다. 9차부터는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를 추가한다. 특지特旨로 지내는 별기우제別祈雨祭는 이상의 차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12차의 기우제를 설행한 이후로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친제 또는 별기우제를 계속 설행한다.

2) 『기우제등록』 수록 의례의 성격

기우제는 여름이 시작되는 4월부터 설행하며, 입추 이후로는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입추 이후로도 설행한 사례는 자주 보인다. 모든 제례는 일관日官을 시켜 택일擇日하고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조선 전기에는 택일하여 기우제를 지낸 사례가 자주 보이지만, 『기우제등록』에 수록된 기우제는 대부분 택일하지 않고 설행하였다. 그 이유는

국왕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67년^{현종8} 예조가 사직 기우 친제를 17일로 택일하여 아뢰자 현종은 “이 일은 백성을 위한 것이니 어찌 택일하는 상규를 고수하겠는가. 택일하지 말고 18일에 거행하라.” 하였다.²⁶ 상황이 급박하여 택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때문만은 아니다. “예로부터 기우제는 별달리 택일하여 설행한 전례가 없다.”²⁷는 언급으로 보아, 택일하지 않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이미 관례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침호두, 석척동자 기우제, 오방토룡제

귀신과 산천에 제사를 지내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는 본디 원시적 의례로, 유교적 의례에 국한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원시적 의례를 유교적 의례 내로 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례가 본디 가지고 있던 주술적 성격은 약화되고 유교적 성격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주술적 의례의 일부는 이 과정에서도 원형을 유지한 채 지속된다. 침호두, 석척동자 기우제, 오방토룡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6차 기우제부터 이러한 무속적 성격이 강한 의례들이 추가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을 당하면 ‘모든 방도를 다 한다’는 관념에 입각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침호두는 범 머리를 물에 넣어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다. 중국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데, 토속적 제의로 보인다. 고려시대 사료에서는 찾을 수 없고, 1416년 가뭄 대응책으로 처음 거론된 이래, 한강, 박연, 양진에서 설행하였다. 예서에 없는 행위이므로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던 듯하다. 허봉^{許篈}은 개성 박연의 침호두를 목도하고 석척 기우제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놀이와 같다.”고 비판하였다.²⁸ 그러나 ‘모든 방

26 『승정원일기』 현종 8년 7월 14일.

27 『승정원일기』 숙종 1년 4월 9일.

28 許篈, 『荷谷集』, 「朝天記上」.

도를 다 한다’는 관념하에 이러한 무속적 행위는 국가 의례에 포함되었다. 결국 침호두는 고종조까지 계속 설행되었다. 뱀 머리를 구하기 어려워 벌레 먹고 부서진 뱀 머리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²⁹ 임시방편으로 돼지머리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³⁰

석척동자 기우제의 기원은 당나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감유함(淵鑑類函)』에 따르면 왕언위(王彦威)가 변주(汴州)를 다스릴 적에 가뭄이 들자 도마뱀을 독에 넣고 10세 이전의 어린이에게 푸른 대나무를 들고 둘러서서 독을 때리며 노래하게 하였다. 송나라 때는 버들가지를 도마뱀을 넣은 독에 꽂고 어린이에게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해라. 비가 쏟아져야 너를 놓아 보내주겠다. [蜥蜴蜥蜴，興雲吐霧，降雨滂沱，放汝歸去]” 전통적 관념에서 비를 내리는 존재는 용이며, 도마뱀은 용과 비슷한 존재이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석척동자 기우제는 『고려사』에 보이지 않는다. 1407년(태종7) 김점(金謙)의 건의로 처음 시행하였는데, 소식(蘇軾)의 시에 근거한 것이었다.³¹ 동자가 행사를 주관하는 이유는 “동자는 순수한 양陽에 해당하여 이익을 바라는 욕심에 구애되지 않으므로 그 정성이 닿는 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언급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³²

토룡제는 동서남북중 오방(五方)에 흙으로 만든 용을 설치하고 지내는 제사이다. 용에게 비를 비는 제사는 유래가 오래며, 조선 전기부터 시행되었다. 2차 기우제를 지내는 저자도에서도 용 그림을 사용한다. 토룡제는 오행(五行)에 따라 설행하는 의식이므로 토룡을 제작하고 제사를 설

29 『중종실록』 39년 4월 27일.

30 『기우제등록』 1660년 4월 16일.

31 『태종실록』 7년 6월 21일.

32 『승정원일기』 영조 8년 6월 12일.

행하는 날은 간지干支의 오행을 고려하여 따로 잡는다. 동방은 갑甲·을乙, 서방은 병丙·정丁, 중앙은 무戊·기己, 서방은 경庚·신辛, 북방은 임壬·계癸이다. 동서남중은 각 2일, 북방은 3일간 설행하므로 총 11일이 소요된다. 토룡제는 『기우제등록』에서 1639년, 1647년, 1721년, 1811년 4차례 설행하였다.

토룡제 역시 유교적 의례와 거리가 먼데, 의외로 비판이 보이지 않는다. 최후의 수단에 가까운 만큼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토룡제는 12차에 해당하므로 비가 내리지 않은 지 1개월이 넘어서야 설행하며, 11일간 설행한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결국 비가 내려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속대전』의 규정상 기우제는 12차까지만 지낼 수 있다. 따라서 12차 이후로 기우제를 지내야 할 경우, 친제 또는 별기우제 형식을 취한다.

인조조까지 종종 시행되던 맹인 기우제와 무녀 기우제는 기우제 절차의 확정과 더불어 사라졌다. 무녀 기우제는 본디 동서 활인서 두 곳에서 설행하였으나, 1640년경부터 활인서 소속의 무녀가 부족하여 한 곳으로 통합하였으며, 그나마 164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맹인 기우제는 이보다 오래 계속되었으나 점차 횃수가 잦아들었다. 1685년, 맹인 기우제의 설행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설행하지 않았다.

② 기청제

기청제는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영제靈祭라고도 한다. 그 기원은 『주례周禮』이다. “당정黨正이 영신靈神에 제사 지낸다.[黨正祭靈]”의 주석에 ‘영靈은 우雩와 영靈이니, 홍수와 가뭄을 맡은 신이다.[禁謂雩靈水旱之神]’ 하였다.

『기우제등록』에서 기청제 설행은 총 106회 확인되며, 이 중 7회는 취소되었다. 기우제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으면 거듭 설행하는데, 최다

설행은 1702년 3차이다. 1차와 2차는 사대문, 3차는 종묘·사직에서 설행한다. 3일간 설행한다.

기청제는 입추 이후에 설행하는 것이 관례이나, 상황이 급박하면 여름에도 설행하였다. 다만 여름에 설행하는 기청제는 위험이 따른다. 기청제를 설행한 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다시 기우제를 설행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입추 이전의 기청제는 가급적 지양하였다. 기청제는 오로지 농사만을 위해 설행한 것은 아니다. 1651년 인조의 부모(附廟)를 앞두고 당일 날씨가 개기를 기원하며 기청제를 설행한 사례가 있다.

③ 기설제

기설제는 눈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눈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이유는 납일(臘日(동지 이후 세 번째 미일(未日))) 이전에 세 차례 눈이 오면 이듬해 풍년이 들 징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宋)나라 양만리(楊萬里)의 「대보름 전에 큰눈이 내리고 즉시 그쳤다(上元前大雪即晴)」라는 시에 처음 보인다. 다만 오로지 이 속설 때문에 기설제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가을보리가 얼어 손상되는 것이 걱정이니 기설제를 설행해야 한다는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눈이 보리를 덮어 보온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기설제의 순서와 장소는 기우제와 마찬가지로 『속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기우제의 순서와 장소를 법제화하면서 동시에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1차는 종묘·사직·북교, 2차는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이다.

기설제는 고려시대에도 종종 설행하였으나, 중국에서조차 전례가 드문 편이었다. 이로 인해 종종이 기설제를 처음 설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전례가 드물다는 논란 때문에 하지 못하였고, 명종 즉위년¹⁵⁴⁵에 처음 설

행하였다. 『기우제등록』에는 기설제 실행에 관한 기록이 총 16회 보인다. 이 중 2회는 취소되었다. 2차까지 실행한 사례는 1690년, 1696년, 1704년 3회이다. 그러나 『승정원일기』를 보면 이보다 잦은 빈도로 기설제를 거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우제등록』의 기설제 기록은 불완전하다.

④ 기곡제

기곡제는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기우제등록』에는 6회 기곡제를 실행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모두 사직이다.

기곡제 실행에 대한 논의는 1695년^{숙종21} 시작되었다. 숙종은 『예기禮記』 「월령月令」을 근거로 기곡제 실행을 제안하였고, 새해의 첫 번째 신일辛日인 상신일上辛日에 실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이듬해 1월 4일 처음으로 친제親祭로 기곡제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국전國典에 수록된 의례가 아니었으므로 논란이 있었다. 1698년부터는 대신을 사직에 보내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기우제등록』에는 1709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나, 실록 등을 통해 고종조까지 계속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보사제

보사제는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를 실행한 뒤 그 효과에 감사하는 의미로 실행하는 의식이다. 『기우제등록』에는 90회 보사제를 실행한 기록이 남아 있다. 1652년 예조 판서 임담林潭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보사제는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어 있으나 절차가 자세하지 않고, 임진왜란 이후 시행한 전례도 없었다.³³ 이로 인해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친제

33 『기우제등록』 1652년 7월 2일.

의 형식으로 실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대신에게 철폐하게 하였다. 그 뒤 한동안 보사제를 실행하지 않다가 영조조에 와서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보사제는 후기로 갈수록 더욱 중시된 것으로 보인다.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를 막론하고, 기고제를 실행한 뒤에는 거의 빠짐없이 보사제를 실행하였다. 기고제의 효과를 선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3) 수표와 측우기 기록

기우제를 비롯한 의례의 실행과 취소는 당시 기상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기우제등록』의 기상 기록 중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은 수표와 측우기 관측 기록이다.

『기우제등록』에는 수표의 수위를 측정한 기록이 705건 있다. 예조가 한강도 승의 첩정 및 수표직의 수분을 접수하고 이를 단자 형식으로 국왕에게 보고한 기록이다. 한강도 승은 한강진 바위의 수표, 수표직은 청계천 수표교를 측량한다. 한강진 바위의 수표는 ‘수표 터’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3에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청계천 수표교는 현재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다.

수표교는 1441년^{세종23} 처음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표교 수심을 보고한 최초의 기록은 1570년^{선조3}이다. 『선조실록』에 예조에서 수표교의 수심을 보고한 기사가 있다. 선조조 이전에도 수표를 측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남아 있는 기록이 없다. 『승정원일기』의 수표 기록으로 보건대 인조조부터 고종조까지 수표 측량은 『기우제등록』에 수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수표직은 한양 5부 중 중부와 남부 소속이 있었다. 수표교가 설치된 청계천이 중부와 남부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측정 위치는 교 서쪽에 설치된 수표석으로, 지금 홍릉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서울 청계천 수

표'보물838호로 추정된다. 1760년 영조가 청계천을 준설하고 수표교 중앙 교각 하단에 '경진지평(庚辰地平)' 네 글자를 새겨 준설 시행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았는데, 간혹 이를 수위 측정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³⁴ 다만 동일한 날짜에 중부 수표직과 남부 수표직이 각자 보고한 수위에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 이것이 측량 지점의 차이 때문인지, 측량 시간의 차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하루 3~4회 수위를 보고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수위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다.

수위 측정은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린 뒤에 한다. 이것은 수위 측정의 목적이 기우제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는 증거이다. 만약 수위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았다면 기우제를 계속 설행하고, 충분하다면 기우제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간주하고 보사제 설행을 논의한다. "1척이 더 넘친 뒤에 입계하는 것이 원래 규례"³⁵라는 언급으로 보아, 비가 내려도 상승한 수위가 1척 미만이면 보고하지 않았으며, "예전에는 9월에 수표 기록을 입계한 일이 없다."³⁶라는 언급으로 보아, 기우제를 설행하는 여름에 한하여 수표를 측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우제등록』의 수표 기록의 시기별 추이는 설행 연구에 자세하다.

수표 기록은 『내각일력』과 『일성록』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승정원일기』에는 1633년인조¹¹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정조조 이후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측정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우제등록』에는 고종조까지 수표 기록이 보이므로, 수표단자를 올리는 관례는 계속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1770년영조⁴⁶ 측우기가 다시 설치되면서 이때부터 측우기 측정 기록이 등장한다. 측우기 재설치에 관해서는 『영조실록』 46년 5월 1일 기사에

34 『기우제등록』 1769년 6월 17일.

35 『기우제등록』 1684년 5월 22일.

36 『기우제등록』 1702년 9월 8일.

간략히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만, 『기우제등록』에는 보다 자세한 경위가 실려 있다.

① 좌직하는 승지와 편차청 낭청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금 실록을 상고하던 중에 측우기測雨器 한 조항을 듣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 났다가 앉았다. 비가 내릴 때 그릇에 담는 것을 어렸을 때 시험해봤는데, 지금 이 말을 들으니 과연 그렇다. 요즘 기우제를 지내는 때가 아니지만 수표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깊이를 알고 싶어서다. 그러나 이것은 흐르는 물이니 마음으로 항상 어떨지 모르겠다고 여겼다. 이 제도에 지극한 이치가 들어 있고 또 힘을 들일 만한 것이 아니니, 이 제도로 관상감에서 만들어 설치하고,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이대로 만들어 설치하라.

이는 쟁기날을 적실 만한 비라거나 호미날을 적실 만한 비라는 보고에 비해 제법 자세할 것이다. 비가 내린 상황에 대한 장계는 ‘영하읍營下邑에서 본 바로는 측우기의 척촌尺寸이 얼마입니다.’라고 말을 마무리하여 아뢰라. 이 기구와 이 척³⁷을 지금 호조에서 2개를 만들어 들여 하나는 창덕궁에 설치하고 하나는 경희전에 설치하여 먼저 살핀다면 이 또한 비가 내리는 상황을 중시하는 한 가지 방도이다. 또 궐 안의 관상감에 모두 풍기風旗가 있으니, 이는 예로부터 바람을 점치려는 의도이다. 옛날에는 나무 위에 풍기를 묶었으니 아름답고 훌륭하였지만 간혹 나무가 손상되었다. 창덕궁 통제문通濟門 안에 석대石臺를 두고서 풍기죽風旗竹을 안치하고 경희궁 서화문西華門 안에 석대를 두고서 풍기죽을 안치하였다. 지금 옛 규례를 따라 경희궁과 창덕궁에 모두 측우기를 설치할 테니, 한편으로는 바람 한 번 비 한 번도 살피라고 명한 선왕의 뜻을 유념하고, 한편으로는 비와 바람에 감히 소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바람이 잔잔하고 비가 순한 것은 나라에 중요한 바이니 이번에 이 명은 또한 깊은 뜻이 있다.”

37 이 척: 같은 날 『영조실록』에 의하면, 이 자는 경신년에 삼척부(三陟府)에 있는 세종조의 포백척을 가져다 『경국대전』을 참고해서 새로 만든 일명 경신년 신제척(新製尺)이다.

하였다.³⁸

② 전교하기를,

“이번 측우기에 대해 실록을 살펴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니, 돌을 마련하여 설치하였는데 이 또한 하늘을 공경하는 성왕의 뜻이었다. 이번에 만들어 들일 때 두 겹과 두 관상감의 측우기에 모두 높이는 포백척으로 1척_尺, 남북의 너비는 포백척으로 8촌_寸의 석대_{石臺}를 만들고, 석대 위에 둥근 구멍을 파고 측우기를 안치하는데 구멍의 깊이는 포백척으로 1촌이고, 때에 따라 빼도록 한다. 관상감의 일영원철_{日影圓鐵}과 지금 하교한 척촌_{尺寸}은 모두 경신년에 새로 만든 황종척_{黃鍾尺}을 사용하라.”

하였다.³⁹

③ 전교하기를,

“이번에 측우기가 도착하는 대로 석대를 마련하여 안치하되 높이와 길이, 너비는 서울과 똑같이 하라고 예조로 하여금 팔도와 양도_{兩都}에 분부하게 하라.”⁴⁰

하였다.

④ 한역녹관_{漢譯祿官}의 제술_{製述}을 위해 친림하고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원인손_{元仁孫}이 아뢰기를,

“측우기를 8도와 양도_{兩都}에 지금 전교하신 대로 만들어 설치하였습니다. 실록에서 고찰해 낸 것 중에는 여러 고을에서 각각 1건_件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호조가 실록에서 고찰한 내용을 베껴서 행회_{行會}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도

38 『기우제등록』 1770년 5월 1일.

39 『기우제등록』 1770년 5월 3일.

40 『기우제등록』 1770년 5월 3일.

에서는 여러 고을에 만들어 돌지 여부를 본조에 물었으니, 본조에서 성상께 한번 여쭙어 정한 뒤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문_{營門}에만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⁴¹

①은 측우기 설치를 명한 전교이다. 영조는 『세종실록』에서 측우기 관련 기록을 발견하고 재설치를 명하였다. 영조가 발견한 기록은 『세종실록』 24년 5월 8일의 기사로, ① 뒤에 이어서 실려 있다. 영조는 ‘실록을 상고하던 중에’ 이 기록을 발견했다고 하였는데, 이해 4월 19일, 일식_{日食}과 월식_{月食} 관련 기록을 참고하기 위해 강화도 정족산성_{鼎足山城}에 보관된 실록을 살펴보게 한 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² 요컨대 일식, 월식 기록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측우기 관련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는 석대를 마련하여 측우기를 설치하라는 전교이다. 『세종실록』에는 석대의 규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석대의 규격은 영조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③은 지방에 설치하는 측우기와 석대의 규격을 서울과 동일하게 하라는 전교이다. ④는 측우기를 감영에만 설치하라는 연설_{筵說}이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측우기는 각 도에 1건을 보내고, 각 고을에서 이를 바탕으로 동일하게 제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영문, 즉 각 도의 감영에만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각 고을에 모두 설치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측우기 재설치 이후로는 수표 기록과 측우기 기록이 동시에 나타나므로 비교가 필요하다. 『기우제등록』의 측우기 수심은 관상감에 설치된 측우기로 측량한 것으로 보인다. 수표의 수심이 대개 척_尺, 촛_寸 단위에 그

41 『기우제등록』 1770년 5월 12일.

42 『영조실록』 46년 4월 19일.

치는 반면, 측우기 수심은 分 단위까지 기재하였다. 측정 결과는 수표의 수위를 보고한 ‘수표단자’와 마찬가지로 ‘측우단자’의 형태로 예조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표단자’가 『기우제등록』에 그대로 수록된 반면, ‘측우단자’는 『기우제등록』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기우제등록』에는 ‘측우단자’를 열람한 뒤 남긴 언급이 더러 수록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두서너 촌’ 등으로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기우제등록』에 수록된 측우기 재설치 관련 기사는 『승정원일기』에도 실려 있다. 또한 『기우제등록』에 수록된 측우기 측정 기록은 28건에 불과한 반면, 『승정원일기』에는 이때부터 1908년²⁾까지 약 8천 건 가까운 기사가 실려 있다. 『내각일력』과 『일성록』의 측우기 수심 기록은 동일한 측정 결과에 바탕한 기록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 글은 『기우제등록』의 서지적 특성 및 그 구성과 내용을 살핌으로써 조선 후기 기우제 의례의 정립 과정을 재구하고, 기우제를 위시한 각종 기고 의례의 성격을 일별하였다. 『기우제등록』은 조선 후기 기우제의 실행 양상을 보여 주는 자료이며, 기우제 실행 빈도와 수표 기록은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한 기상 자료이기도 하다.

『기우제등록』이 기우제를 비롯한 기고 의례의 실행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탓에, 조선 후기 재해 대책이 기고 의례뿐이었던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기실 조선 후기 재해 대책에서 기우제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기우제는 말단적인 일’이라는 것이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일관적인 입장이었다.

1681년 박태손³⁾ 朴泰遜은 가뭄에 대응하는 방도로 기도⁴⁾ 祈禱, 소결⁵⁾ 疏決, 구

언求言, 감선減膳, 철악撤樂, 피전避殿의 여섯 가지 방도를 제시하였다. 기도는 기고 의례, 소결은 죄수 심리, 구언은 제안 수용, 감선, 철악, 피전은 국왕의 자유를 제한하고 욕구를 억제함으로써 국왕의 정치 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조치였다. 재해 대책의 근본은 국왕의 수신반성修身反省이었다.

기우제는 반드시 피정전避正殿, 감선減膳, 철악撤樂, 물격고勿擊鼓, 금주禁酒, 금연禁煙 등의 조치를 동반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왕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재해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사대부 계층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전 사회적으로 자숙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소결과 구언은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거론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밖에 빈민을 구제하는 진휼賑恤, 세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건감蠲減 등 실질적 재해 대책도 병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우제는 미신적,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공감하고 함께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재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다. 기우제는 대처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유교적 인본주의 관념에서 비롯된 의례이며,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도모하는 일련의 재해 대책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 김일권(2023), 「조선후기 『기우제등록』의 청계천·한강 수표(水標) 기상기록 연구」, 『한국학』 17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심호남(2020), 「조선조 기설제의 연구-서울대 규장각본 『기우제등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8집, 동아시아고대학회.
- 연갑수(2000), 「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研究」, 『역사문화연구』 1집,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오인택(2007), 「숙종대 국행 기우제에 나타난 한재 대응방식의 정치성」, 『역사학연구』 29권, 호남사학회.
- 이강욱(2021), 『조선시대 문서개론 상』, 은대사랑.
- 이 욱(2009),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 이형중(2018), 「朝鮮 謄錄記錄의 類型과 그 管理體系에 관한 研究」, 『한국문화』 83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성(2002),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일지사.

부록1

『기우제등록』 수록 의례 현황

표4~표8은 『기우제등록』에 기록된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 기곡제, 보사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기우제등록』에 기록되지 않은 의례 및 기록되었으나 취소된 의례도 다수 존재하므로, 실제 설행 여부는 실록 및 『승정원일기』와 대조가 필요하다. 지방 기우제는 실제 설행 여부와 설행 일자가 분명치 않아 제외하였다. 차수는 명기된 것만 기재하였고, 의례가 여러 날에 걸쳐 설행되는 경우 시작일만 기재하였다. ‘별’은 별기우제(別祈雨祭), ‘친’은 친제(親祭)이다.

【표4】『기우제등록』 수록 기우제 현황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636	4.1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 산천, 우사	
	4.18	2	사직, 종묘, 북교	
	4.22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4.25	3	진암 분시,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4.26	4	사직, 종묘, 북교, 모화관 석척기우제	
	4.29	5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 산천, 우사, 맹인, 무녀, 경회루 석척기우제	
1639	4.18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 산천, 우사	
	5.3	2	사직, 종묘	
	5.7	친	사직	
	5.8		북교, 양진, 덕진, 감악산, 송악산, 동자, 무녀 기우제	
	5.28	3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6.19		중앙토룡제	취소
1641	4.1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 산천, 우사	
	4.16	2	사직, 종묘, 북교	
	4.23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4.24	4	종묘, 사직, 북교, 용산강, 한강, 삼각산, 목멱산	
	4.25	4	저자도, 관악산, 도미진, 양진	
	4.27	4	박연, 화적연, 송악산, 감악산	
	4.29	5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5.4	6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5.8	7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1644	4.13			
1645	4.5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 산천, 우사	
	4.16	2	사직, 종묘, 북교	
	4.23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4.29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5.10	5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5.23	6	사직, 종묘, 모화관 석척기우제	
	5.30	7	송악산, 감악산, 오관산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647	4.8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 산천, 우사	
	4.12	2	사직, 종묘, 북교	
	4.16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4.20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4.26	5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5.2	6	사직, 종묘, 북교	
	5.3	6	풍운뇌우, 산천성황, 산천, 우사, 삼각산, 백악산, 목멱산, 한강	
	5.5	7	송악산, 감악산, 오관산, 모화관 석척기우제	
	5.10	8	박연, 화적연, 도미진	
	5.13	9	풍운뇌우, 산천성황, 산천, 우사, 양진, 덕진, 경회루 연못가 석척기우제, 무녀 기우제	
	5.11	10	사직, 종묘, 북교,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5	11	용산강, 저자도, 관악산, 춘당대 동자, 맹인 기우제	
	5.17	12	풍운뇌우, 북교, 산천	
	5.21	13	양진, 송악산, 관악산	
	5.25		토룡제	
1649	4.24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 산천, 우사	
	4.28	2	사직, 종묘, 북교	
	5.2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7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1650	5.18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 산천, 우사	
	5.27	2	사직, 종묘, 북교	
	6.2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7.1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7.4	5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7.5	6	사직, 종묘, 북교	
	7.10	친	사직	
1651	5.21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 산천, 우사	
	5.23	2	사직, 종묘, 북교	
	5.27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28	친	사직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652	4.5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 산천, 우사	
	4.10	2	사직, 종묘, 북교	
	4.14	3	삼각산, 목멱산, 풍운뇌우, 산천, 우사, 한강 침호두	
	4.18	4	사직, 종묘, 북교	
	4.22	친	사직	
	4.27	친	남교	
1653	5.1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 산천, 우사	취소
	7.20	2	종묘, 사직, 산천	
	7.28	3		
1654	7.1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7.5	2	사직, 북교	
1655	5.26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7.21	친	사직	
1657	4.21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한강, 삼각산, 목멱산	
	4.25	2	사직, 종묘, 북교	
	4.28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2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5.5	5	종묘, 사직,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1	6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6.25	7	사직, 종묘	취소
	6.27	7	종묘, 사직, 북교	
	6.30	8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1658	5.7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한강, 삼각산, 목멱산	취소
	6.15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한강	
	6.27	2	사직, 종묘, 북교	
	7.1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1659	4.22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4.26	2	사직, 종묘, 북교	
1660	2.27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2.30	2	사직, 종묘, 북교	취소
	4.10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660	4.13	2	사직, 종묘, 북교	
	4.18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4.27	4	삼각산, 목멱산, 한강,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6.1	7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7.25	1	사직, 종묘	
	7.28	2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1661	4.3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4.6	2	사직, 종묘, 북교	
	4.9	3	사직, 종묘	
	4.12	4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4.16	5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4.20	6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4.23	7	사직, 종묘, 북교	
	4.26	8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	9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7.25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7.30	2	사직, 종묘, 북교	
	윤7.4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취소
	윤7.6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1679	6.8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6.12	2	사직, 종묘, 북교	
	6.21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6.26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7.7	5	사직, 종묘, 북교	
	7.14	6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7.17	7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7.20	8		
	7.23		사직, 선농단	
1681	4.9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4.13	2	사직, 종묘, 북교	
	4.17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681	4.22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4.27	5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5.2	6	사직, 종묘, 북교	
	5.7	7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2	8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5.18	친	사직	
	5.19	9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경회루 석척동자기우제	취소
	5.25	9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취소
1682	5.25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8	2	사직, 종묘, 북교	
1683	5.11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4	2	종묘, 사직, 북교	
	5.17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21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5.26	5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5.29	6	종묘, 사직, 북교	
	6.3	7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모화관 석척동자기우제	취소
	6.4		남교, 저자도, 용산강	
	6.8	8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모화관 석척동자기우제	취소
	6.8	친	종묘	
	6.12	8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모화관 석척동자기우제	
1684	6.27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6.29	2	사직, 종묘, 북교	
	7.1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7.4	4	남교, 저자도, 용산, 한강	
	7.8	5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7.12	6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7.10		종묘, 사직, 북교. 석척동자기우제	
	7.15		오관산, 모화관 석척동자기우제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684	7.21	8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경회루 석척동자기우제	
1685	7.3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7.6	2	종묘, 사직, 북교	
	7.9	친	남교	취소
	7.9	3	산천,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7.11	친	사직	취소
	7.16	4	남교, 용산강, 저자도	
1686	6.21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6.24	2	사직, 종묘, 북교	
	6.27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6.30	4	사직, 종묘, 북교	
	7.3	친	사직	섭행
1688	5.27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1689	7.18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7.21	2	사직, 종묘, 북교	
	7.24	3	사직, 종묘, 북교	
	7.27	4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1690	4.19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4.22	2	사직, 종묘, 북교	
	4.25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4.29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취소
	4.29	4	종묘, 사직, 북교	
	5.1	5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5.10	6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5.23	7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6.20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6.23	2	사직, 종묘, 북교	취소
	7.10	2	사직, 종묘, 북교	취소
1691	6.2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취소
1692	4.24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취소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692	5.9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취소
	5.12	2	사직, 종묘, 북교	
	5.14	친	남교(풍운뇌우, 산천)	
	5.21	3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1695	4.21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4.25	2	사직, 종묘, 북교	
	4.30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4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취소
	5.4	4	종묘, 사직, 북교	
	5.7	5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5.11	6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5.13	친	남교	
	5.18	7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4	8	저자도, 용산강, 모화관 석척동자기우제	
	6.1	9	사직, 종묘, 북교, 경회루 석척동자기우제	
1697	4.20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4.22	친	사직	
	4.27	2	종묘, 사직, 북교	
	5.1	3	남교, 용산강, 저자도	
	5.6	친	남교	
	5.12	4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17	5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취소
1699	5.19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2	2	종묘, 사직, 북교	
	5.25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29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취소
	5.29	4	종묘, 사직, 북교	
	6.3	친	사직	
	6.8	5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6.15	6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취소
1701	4.25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701	4.28	2	사직, 종묘, 북교	
	5.2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6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5.9	5	사직, 종묘, 북교	
	5.10	5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취소
	5.13	친	사직	
	5.18	6	저자도, 용산강, 관악산,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분시	
	5.21	7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5	8	사직, 종묘, 북교	
	5.29	9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취소
1703	7.16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1704	4.28	1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5.3	2	사직, 종묘, 북교	
	5.7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11	4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취소
	5.11	4	종묘, 사직, 북교	
	5.13	친	종묘	
	5.14	5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취소
	5.19	5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5.22	친	선농단	
	5.26	6	저자도, 용산강	
	5.29	7	풍운뇌우, 산천, 우사, 모화관 석척동자기우제	
	6.5	8	사직, 북교, 경회루 석척동자기우제	
	6.10	9	용산강, 저자도, 춘당대 석척동자기우제	
1705	5.17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1	2	용산강, 저자도	
	5.25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5.28	4	북교, 사직	
	6.1	5	종묘	
	6.4	친	남교	취소
1708	6.1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708	6.20	2	용산강과 저자도	
	6.21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6.28	친	남교	취소
1710	5.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6	2	용산강과 저자도	
	5.11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5.15	4	북교, 사직	
	5.19	5	종묘	
	5.24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28	7	풍운뇌우, 산천	취소
1711	5.8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2	2	용산강과 저자도	
1712	7.2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7.30	2	용산강과 저자도	
	8.4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8.8	4	북교, 사직	
	8.12	5	종묘	
	8.16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8.20	7	용산강, 저자도	취소
1713	7.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7.6	2	용산강, 저자도	
	7.10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7.14	4	북교, 사직	
	7.18	5	종묘	
	7.22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7.25	7	용산강, 저자도	
1715	5.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0	2	용산강, 저자도	
	5.14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5.18	4	북교, 사직	취소
1716	6.2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716	6.26	2	용산강, 저자도	
	7.1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7.5	4	북교, 사직	
	7.9	5	종묘	
	7.13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7.17	7	용산강, 저자도	취소
1718	5.3	3	삼각산, 목멱산, 한강	
	5.7	2	용산강, 저자도	
	5.11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5.15	4	북교, 사직	
	5.18	5	종묘	
	5.22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26	7	용산강, 저자도	
	6.1	8	풍운뇌우, 산천, 우사	
1720	6.5	9	북교, 모화관 석척동자기우제	취소
	6.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7.15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7.21	2	용산강, 저자도	
	7.24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7.27	4	북교, 사직	
	8.1	5	종묘	
	8.4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취소
1721	4.25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4.28	2	용산강, 저자도	
	5.1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5.4	4	북교, 사직	
	5.7	5	종묘	
	5.10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13	7	용산강, 저자도	
	5.16	8	풍운뇌우, 산천, 우사	
	5.19	9	북교, 모화관 석척동자기우제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721	5.24	10	사직, 경회루 석척동자기우제	
	5.29	11	종묘, 춘당대 석척동자기우제	
	6.5	12	토릉제	
	6.29	친	사직	취소
1722	4.17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4.20	2	용산강, 저자도	
	4.23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4.26	친	사직	
	4.29	4	북교	
	4.30	친	남교	
	5.4	5	종묘	
	5.7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6.29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7.2	2	용산강, 저자도	
	7.5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7.8	4	북교, 사직	취소
	7.15	4	북교, 사직	
	7.18	5	종묘	
1723	5.7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0	2	용산강, 저자도	
	5.13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5.15	친	사직	
	5.16	4	북교	취소
	5.20	친	선농단	
1757	5.1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9	2	용산강, 저자도	취소
1758	5.15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8	2	용산강, 저자도	
	5.21	3	사직, 남단	
	5.24	친	선농단	
	5.27	친	북교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759	윤6.25	친	사직	
	윤6.29	친	남교	
	7.1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7.4	4	북교	
1760	5.1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3	2	용산강, 저자도	
	5.26	친	종묘	
	5.29	친	남단	
	6.3	친	사직	
	6.6	6	북교	
	6.7	7	선농단	
	6.11	8	우사	
1762	5.28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9	2	용산강, 저자도	
	6.11	친	우사	
	6.13	친	사직	
	6.15	친	종묘	
	6.19	3	선농단	
1764	5.10	1	삼각산, 한강, 목멱산	
	5.15	2	용산강, 저자도	
	5.17	친	남단	
	5.20	친	사직	
	5.24	친	북교	
	5.27		우사	
	6.1	친	종묘	
	6.4	8	삼각산, 목멱산, 한강	
	6.7	9	용산강, 저자도	
	6.10		풍운뇌우, 산천, 우사	취소
	6.10	친	선농단	
	6.13	11	남교, 우사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764	7.4	1	삼각산, 한강, 목멱산	
	7.7	2	용산강, 저자도	
	7.10	친	남단	
1767	6.11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14	2	용산강, 저자도	
1768	7.3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1771	5.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5	2	용산강, 저자도	
	5.8	3	남교, 우사	취소
	7.1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7.19	2	용산강, 저자도	
	7.23	3	남교, 북교	
	7.29		종묘, 사직	
1772	4.12	1	삼각산, 한강, 목멱산	
	4.14	2	용산강, 저자도	
	5.28	3	남교, 북교	
	5	5	종묘	
	6		종묘, 우사	취소
1773	4.15	1	삼각산, 한강, 목멱산	
	7.5	1	삼각산, 한강, 목멱산	
	7.7	2	사직	
1774	5.11	1	삼각산, 한강, 목멱산	
	5.14	2	용산강, 저자도	
	5.17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5.19	4	사직, 북교	
	5.21	5		
	5.24	6	선농단	
	5.27	7	용산강, 저자도	취소
1777	4.26	1	삼각산, 한강, 목멱산	
	4.29	2	용산강, 저자도	
	5.3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777	5.6	4	사직, 북교	
	5.9	친	사직	
	5.12	6	선농단	
	5.15	7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18	8	용산강, 저자도	
	5.24	1	삼각산, 한강, 목멱산	
	5.27	2	용산강, 저자도	
	6.5	3	풍운뇌우, 산천, 우사	
	6.8	4	북교, 사직	취소
1782	5.11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4	2	용산강, 저자도	취소
	5.20	2	용산강, 저자도	
	5.23	친	우사	
	5.28	4	선농단	
	6.2	5	사직	
	6.7	친	북교	취소
1783	6.2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7.2	2	용산강, 저자도	취소
1786	6.9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13	2	용산강, 저자도	
	6.16	3	풍운뇌우, 우사	
1787	4.17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1794	7.1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7.15	2	용산강, 저자도	
	7	3	북교	
	7	4	남단	
	7	5	사직	
1798	5.17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1	2	용산강, 저자도	
1799	5.17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취소
	5.21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799	5.24	2	용산강, 저자도	
	5.26	3	우사	
1800	5.1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1801	5.11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1802	5.2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5	2	용산강, 저자도	취소
1804	5.15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2	2	용산강, 저자도	
	5.25	3	남단, 우사단	
1806	6.21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24	2	용산강, 저자도	
	6.27	3	남단, 우사	
1807	4.5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4.8	2	용산강, 저자도	
1808	5.21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4	2	용산강, 저자도	취소
1809	5.14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7	2	용산강, 저자도	
	5.20	3	남단, 우사	
	5.23	4	북교, 사직	
	5.26	5	종묘	
	6.3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6.6	7	용산강, 저자도	
	6.9	친	남단	
1810	6.7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10	2	용산강, 저자도	
1811	4.3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4.6	2	용산강, 저자도	
	4.7	친	사직	
	4.10	3	남단, 우사	
	4.13	4	북교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811	4.15	친	종묘	
	4.16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4.20	7	용산강, 저자도	
	4.22	8	남단, 우사	
	4.24	9	북교, 모화관, 경회루, 만상문 석척동자기우제	
	4.26		남단, 우사단	
	4.29	10	사직	
	5.1	11	종묘	
	5.4		토룡제	
	5.5	별	종묘, 사직	
	5.18	친	사직	
1813	5.13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10	2	용산강, 저자도	
	6.13	3	남단, 우사단	
1814	4.1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4.15	2	용산강, 저자도	
	4.18	3	남단, 우사	
	4.21	4	북교, 사직	
	4.24	5	종묘	
	4.27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1	7	용산강, 저자도	
	5.18	8	남단, 우사	
	5.21	9	북교, 경회루 석척동자기우제	
	5.26	10	사직	
1815	5.7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0	2	용산강, 저자도	
	5.13	3	남단, 우사	
1819	5.7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0	2	용산강, 저자도	
	5.13	3	남단, 우사	
	5	4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822	6.9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12	2	용산강, 저자도	
	6.15	3	남단, 우사	
1825	5.2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9	2	용산강, 저자도	
	6.2	3	남단, 우사	
	6.5	4	북교, 사직	
	6.8	5	종묘	
	6.11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1832	5.24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7	2	용산강, 저자도	
	6.1	3	남단, 우사	
	6.4	4	북교, 사직	
	6.7	5	종묘	
	6.14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취소
	6.17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1833	6.5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취소
1837	5.14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7	2	용산강, 저자도	
	5.18	3	남단, 우사	
	5.23	4	북교, 사직	
	5.26	5	종묘	
1838	5.8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1	2	용산강, 저자도	
	5.14	3	남단, 우사	
	5.17	4	북교, 사직	
	5.20	5	종묘	
	5.23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26	7	용산강, 저자도	
	5.29	8	남단, 우사	
	6.3	9	북교, 경회루 석척동자기우제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838	6.5	별	종묘	
	6.9	10	사직	
1842	5.2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5	2	용산강, 저자도	
	5.28	3	남단, 우사	
	6.2	4	북교, 사직	
	6.5	5	종묘	
1848	5.30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3	2	용산강, 저자도	
	6.6	3	남단, 우사	
	6.12	4	북교, 사직	
1851	5.28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2	2	용산강, 저자도	
	6.5	3	남단, 우사	취소
1853	7.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7.5	2	용산강, 저자도	
	7.8	3	남단, 우사	
	7.11	4	북교, 사직	
	7.14	5	종묘	
	7.17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1854	5.20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3	2	용산강, 저자도	
	5.26	3	남단, 우사	
	5.29	4	사직, 북교	취소
1856	5.2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5	2	용산강, 저자도	
	5.28	3	남단, 우사	
	7.8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1858	5.7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3	2	용산강, 저자도	
	5.16	3	남단, 우사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858	5.19	4	북교, 사직	
1860	5.18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1	2	용산강, 저자도	
	5.24	3	남단, 우사	
	6.1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1862	6.4	2	용산강, 저자도	
	6.7	3	남단, 우사	
	6.10	4	북교, 사직	
1863	5.1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1864	5.1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9	2	용산강, 저자도	
	5.22	3	남단, 우사	
	5.25	4	북교, 사직	
	5.28	5	종묘	
	6.1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6.3	7	용산강, 저자도	
	윤5.1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1865	윤5.4	2	용산강, 저자도	
	윤5.7	3	남단, 우사	
	윤5.10	4	북교, 사직	
	윤5.13	5	종묘	
	윤5.14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윤5.17	7	용산강, 저자도	
	윤5.20	8	남단, 우사	
	윤5.23	별		
	5.17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1866	5.20	2	용산강, 저자도	
	5.23	3	남단, 우사	
	5.25	별	종묘, 사직	
	5.28	4	북교, 사직	
1867	5.15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867	5.18	2	용산강, 저자도	
1870	5.13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6	2	용산강, 저자도	
	5.19	3	남단, 우사	
	5.22	4	북교, 사직	
	5.25	5	종묘	
1871	6.3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6	2	용산강, 저자도	
1876	4.1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4.19	2	용산강, 저자도	
	4.22	3	남단, 우사	
	4.24	4	북교, 사직	
	4.27	5	종묘	
	5.1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4	7	용산강, 저자도	
	5.7	8	남단, 우사	
	5.12	별	종묘	취소
	윤5.2	별	종묘	
	윤5.5	별	남단	
	윤5.8	별	북교	
	윤5.11	별	선농단	
	윤5.14	별	우사	
	윤5.17	9	북교, 모화관 석척동자기우제	
	윤5.20	친	사직	
1877	6.4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6.7	2	용산강, 저자도	
	6.10	3	남단, 우사	
	6.13	4	북교, 사직	
	6.16	5	종묘	
	6.19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1878	8.12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882	4.19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4.22	2	용산강, 저자도	
	4.25	3	남단, 우사	
	4.28	4	북교, 사직	
	5.1	5	종묘	
	5.4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7	7	용산강, 저자도	
	5.10	8	남단, 우사	
	5.13	9	북교, 모화관 석척동자기우제	
	5.18	별	사직	
	5.20	별	종묘	
	5.24	별	남단	
	5.27	별	북교	
	5.30	별	선농단	
	6.4	별	우사	
	6.7	별	사직	
	6.10	별	종묘	
1883	5.18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1	2	용산강, 저자도	
	5.24	3	남단, 우사	
	5.27	4	북교, 사직	
	6.3	5	종묘	
	6.6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6.9	별	사직	
	6.12	별	종묘	
1885	5.13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6	2	용산강, 저자도	
	5.19	3	남단, 우사	
	5.22	4	북교, 사직	
	5.25	5	종묘	
	5.28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887	윤4.24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윤4.27	2	용산강, 저자도	
	5.1	3	남단, 우사	
	5.4	4	북교, 사직	
	5.7	5	종묘	
	5.10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침호두	
	5.13	별	사직	
	5.16	별	종묘	
	5.19	별	남단	취소
1888	5.26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29	2	용산강, 저자도	
1889	5.11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5.14	2	용산강, 저자도	
	5.17	3	남단, 우사	
	5.25	4	북교, 사직	
합계			660건(취소 55건): 친제 50건(취소 6건), 별기우제 23건(취소 2건) 포함	

【표5】『기우제등록』 수록 기청제 현황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636	6.8	1	사문	
	6.23	2	사문	
1651	7.2	1	사문	
	7.20	2	사문	
1652	5.28	1	사문	취소
	6.15	1	사문	
1656	7.15		사문	
	7.25		사문	
1659	6.6		사문	
	7.15		사문	취소
	8.4		사문	
1684	8.3		사문	
1685	8.13		사문	
1687	6.20	1	사문	
	6.26	2	사문	
	7.4	3	종묘, 사직	
1689	8.13		사문	취소
1691	윤7.17		사문	
1693	8.20		사문	
1694	7.9		사문	
1695	7.6		사문	
1696	6.18		사문	
1697	7.20		사문	
1699	윤7.10		사문	취소
1701	7.30		사문	
1702	윤6.13	1	사문	
	윤6.27	2	사문	
	7.8	3	종묘, 사직	취소
1707	6.16	1	사문	
	6.27	2	사문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709	8.10		사문	
1710	윤7.11	1	사문	
	윤7.16	2	사문	
1712	8.8		사문	
1719	8.6		사문	
1755	7.2	1	사문	
	7.23	2	사문	
1756	5.26	1	사문	
	9.4	2	사문	
1757	7.17		사문	
	7.28		사문	
1758	6.27		사문	
	8.4		사문	
	8.17		사문	
1762	7.27		사문	
1763	3.28		사문	
	6.14		사문	
	6.26		사문	
	7.29		사문	
	8.4		사문	
1765	5.20	1	사문	
	5.25	2	사문	
	7.23		사문	
1767	윤7.29		사문	
1769	7.9		사문	
1770	8.7		사문	
1774	7.17		사문	
	8.9		사문	
1776	6.15		사문	
1777	8.27		사문	
1778	윤6.6		사문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783	7.25		사문	
1787	5.29		사문	
	7.5		사문	
1788	8.15		사문	
1789	6.7		사문	
	6.12		사문	
1791	7.20		사문	
	7.27		사문	
1792	6.14		사문	
1804	6.28		사문	
1832	7.7		사문	
1833	7.14		사문	
1835	윤6.16		사문	
1839	6.3	1	사문	
	7.23	2	사문	
1850	7.3	1	사문	
	7.13	2	사문	
1851	8.3	1	사문	
	8.13	2	사문	
1852	6.8		사문	
1854	7.26		사문	
1857	7.23		사문	
1860	6.19	1	사문	
	7.8	2	사문	
1862	7.8		사문	
	8.22		사문	
1863	6.20		사문	
1865	7.11		사문	
1867	7.2		사문	
	8	1	사문	
	8.6	2	사문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867	8.10		사문	
1871	7.5		사문	
1873	7.18		사문	취소
	7.24		사문	
1875	7.28	2	사문	
1879	6.4	1	사문	
	6.9	2	사문	취소
	6.10	2	사문	
	6.26		사문	
1881	윤7.8	1	사문	
	윤7.16	2	사문	
1884	7.14		사문	
1885	7.18	1	사문	
	8.7	2	사문	
합계			106건(취소 7건)	

【표6】『기우제등록』 수록 기설제 현황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689	11.19		종묘, 사직, 북교	취소
1690	12.8	1	종묘, 사직, 북교	
	12.15	2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1696	12.9	1	종묘, 사직, 북교	
	12.16	2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1697	11.16		종묘, 사직, 북교	취소
1700	12.9		종묘, 사직, 북교	
1701	11.14		종묘, 사직, 북교	
1704	11.23	1	종묘, 사직, 북교	
	11.29	2	풍운뇌우, 산천,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1719	12.3		종묘, 사직, 북교	
1721	12.2		종묘, 사직, 북교	
1836	12.14		종묘, 사직, 북교	
1853	12.16		종묘, 사직, 북교	
1861	12.17		종묘, 사직, 북교	
1866	12.3		종묘, 사직, 북교	
합계			16건(취소 2건)	

【표7】『기우제등록』 수록 기곡제 현황

연	월일	차수	장소	비고
1696	1.4		사직	
1698	1.5		사직	
1700	1.7		사직	
1701	1.3		사직	
1705	1.6		사직	
1709	1.9		사직	
합계			6건	

【표8】『기우제등록』 수록 보사제 현황

연	월일	장소	비고
1652	9.18	남교	기우보사
1757	5.19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760	6.14	우사, 선농단	기우보사
1762	윤5.6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764	7.13	남교, 우사	기우보사
1767	7.15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1768	7.7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769	7	사문	기청보사
1770	8.11	사문	기청보사
1771	5.10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7.25	남교, 북교,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8.3	종묘, 사직	기우보사
1772	4	삼각산, 목멱산, 한강, 저자도, 용산강	기우보사
1772	6.4	종묘, 우사	기우보사
1773	4.17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774	5	선농단	기우보사
1782	5.15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783	7.14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7.28	사문	기청보사
1786	6.25	우사	기우보사
1787	4.21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6.7	사문	기청보사
	9.12	사문	기청보사
1789	6.13	사문	기청보사
1791	7.27	사문	기청보사
1798	5.29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8.6	삼각산, 목멱산, 한강,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1799	8.8	우사	기우보사
1800	8.18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804	7.1	사문	기청보사

연	월일	장소	비고
1806	8.8	남단, 우사,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1809	6.25	남단	기우보사
1810	8.4	삼각산, 목멱산, 한강,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1811	5.17	종묘, 사직	기우보사
1813	8.6	남단, 삼각산, 목멱산, 한강, 우사	기우보사
1814	8.10	삼각산, 목멱산, 한강, 우사, 기우,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1815	8.10	남단, 우사	기우보사
1819	8.9	사직, 남단, 우사, 북교	기우보사
1822	7.25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1825	8.10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833	8.9	종묘,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7.30	사문	기청보사
1835	윤6.27	사문	기청보사
1836	12.21	종묘, 사직, 북교	기설보사
1837	7.13	종묘, 남단, 우사	기우보사
1838	6.17	종묘, 사직, 북교	기우보사
1839	7.30	사문	기청보사
1842	6.15	종묘, 삼각산, 목멱산, 한강, 남단, 우사	기우보사
1848	8.4	남단, 삼각산, 목멱산, 한강, 우사, 북교, 용산강, 저자도, 사직	기우보사
1851	8.10	삼각산, 목멱산, 한강,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1852	7.7	사문	기청보사
1853	8.8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2.25	종묘, 사직, 북교	기우보사
1854	6.20	남단, 우사	기우보사
	윤7.9	사문	기청보사
1856	8.8	용산강, 저자도, 남단, 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857	8.4	사문	기청보사
1858	8.6	사직, 삼각산, 목멱산, 한강, 북교,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1860	6.13	용산강, 저자도, 남단, 우사	기우보사
1861	12.27	종묘, 사직, 북교	기설보사

연	월일	장소	비고
1862	6.16	사직, 북교, 용산강, 저자도, 남단, 우사	기우보사
	7.19	사문	기청보사
1862	윤8.2	사문	기청보사
1863	7.4	사문	기청보사
	8.7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864	7.17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1865	6.22	종묘	기우보사
	7.27	사문	기청보사
1866	7.1	종묘, 사직, 북교	기우보사
	12.10	종묘, 사직, 북교	기설보사
1867	7.13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7.20	사문	기청보사
	8.7	사문	기청보사
1870	7.15	사직, 북교, 종묘	기우보사
1871	8.7	삼각산, 목멱산, 한강,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1873	7.19	사문	기청보사
1875	8.8	사문	기청보사
1876	윤5.26	사직	기우보사
	6.29	종묘,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878	10.11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1879	7.20	사문	기청보사
1881	윤7.24	사문	기청보사
1882	7.20	종묘	기우보사
1883	7.13	종묘, 사직, 북교	기우보사
1884	윤7.27	사문	기청보사
1885	7.20	삼각산, 목멱산, 한강	기우보사
	8.19	사문	기청보사
1887	6.25	종묘	기우보사
1888	7.11	삼각산, 목멱산, 한강, 용산강, 저자도	기우보사
1889	8.5	사직, 북교, 남단, 우사	기우보사
합계		90건	

부록2

『기우제등록』 수록 수표 및 측우기 기록

표9~표10은 『기우제등록』에 기록된 수표와 측우기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기우제를 비롯한 의례와 마찬가지로 『기우제등록』에 기록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수표는 측정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측우기는 관상감 측우기로 측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수치는 1척(尺), 1촌(寸), 1분(分)을 각각 1, 0.1, 0.01로 환산하였다. 포백척(布帛尺)이라고 기재하지 않은 수치는 모두 주척(周尺)이다.

【표9】『기우제등록』 수록 수표 수심 기록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636	5.3	한강도 승		4.2(포백척)
	5.18	남부 수표직	이구가중(李仇加重)	7
	5.20	한강도 승		40
	5.24	남부 수표직	이구가중(李仇加重)	9.5
	6.6	남부 수표직	김이남(金二男)	4.5
	6.7	한강도 승		28.2
	6.8	중부 수표직	박응동(朴應同)	5
	6.14	남부 수표직	김이남(金二男)	5
	7.28		성경(成景)	4.5
1679	6.10	한강도 승	유시영(柳時英)	2.2(포백척)
	6.28	중부 수표직	김준징(金俊澄)	3.5
	7.4	중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3
	7.5	한강도 승	유시영(柳時英)	3.2(포백척)
	7.22	중부 수표직	고성원(高成元)	2
1681	5.16	중부 수표직	성이선(成二善)	2.3
	5.22	중부 수표직	서상윤(徐尙胤)	2
	5.24	한강도 승	유시영(柳時英)	2(포백척)
	6.6	중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1.5
	6.6	한강도 승	유시영(柳時英)	5.5
	6.11	중부 수표직	김준징(金俊徵)	2
	6.11	중부 수표직	김준징(金俊徵)	3.3
	6.13	중부 수표직	서상윤(徐尙胤)	2
	6.17	중부 수표직	김영만(金英萬)	3.7
	6.21	중부 수표직	성이선(成二善)	2.3
	7.1	중부 수표직	고성원(高成元)	6.7
	7.1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2.5
1682	5.28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1.5
	6.2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0.7
	6.3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1.3
	6.3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2.4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682	6.8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1.5
	6.8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3.1
	6.12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5.8
	6.14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2.8
	6.14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2
	6.25	중부 수표직	주생곤(朱生坤)	2
	6.25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3.5
	6.28	중부 수표직	주생곤(朱生坤)	5.6
	7.2	중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7
	7.7	중부 수표직	김축생(金丑生)	3
	7.7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3.5
1683	6.7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4
	6.14	중부 수표직	이상립(李尙立)	4.5
	6.16	한강도 승	김수산(金壽山)	5.5(포백척)
	6.23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4
	6.23	한강도 승	김수산(金壽山)	9.5(포백척)
	6.23	중부 수표직	최금이(崔金伊)	4.5
	윤6.1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4
	윤6.5	중부 수표직	이지건(李之建)	8.5
	윤6.5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7
	윤6.9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5
1684	7.5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8
	4.13	중부 수표직	김상익(金尙益)	2
	5.4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2
	5.21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4
	5.23	한강도 승	박세무(朴世茂)	7(포백척)
	5.26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1.5
	6.2	중부 수표직	임백령(林栢齡)	4
	6.2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	8.5
	6.14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	6.5
	7.6	중부 수표직	고성원(高成元)	3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684	7.22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2.5
	7.22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6
	7.26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2.1
	7.28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9
	7.28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3.5
	8.1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	넘침
	8.1	중부 수표직	홍주생(洪周生)	5
1685	5.8.	남부 수표직	성이선(成二善)	2
	6.7	중부 수표직	김승순(金承順)	8
	6.12	남부 수표직	이중길(李重吉)	2.5
	7.17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4
	7.17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	4.5
	7.18	중부 수표직	조후진(趙後進)	2.5
	7.18	한강도 승	최익태(崔益泰)	4.5(포백척)
	7.18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	3
	7.26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	5.5
	7.26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3.5
	7.28	남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6
	8.10	남부 수표직	성사선(成士善)	3
	8.11	한강도 승	최익태(崔益泰)	넘침
1686	5.11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1.5
	5.25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朱生)	8
	5.27	남부 수표직	김천량(金千良)	3.5
	5.28	중부 수표직	김진문(金振文)	8.5
	6.30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2
	7.7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	1
	7.8	중부 수표직	손정순(孫貞順)	1.2
	7.8	남부 수표직	장호걸(張豪傑)	2.7
	7.9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	1.5
	7.9	한강도 승	이성준(李成俊)	5.5(포백척)
	7.10	중부 수표직	정공열(丁公說)	1.9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686	7.11	수표직	조귀일(趙貴一)	2.5
	7.11	중부 수표직	손정석(孫貞石)	3
	5.7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
	5.7	중부 수표직	유석만(劉碩萬)	8.5
	5.24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2
	5.24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蔓)	10
	5.26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5
	5.26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蔓)	8
	5.27	한강도 승	이성준(李成俊)	10.5(포백척)
	5.29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蔓)	8
	6.6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2.5
	6.12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7
1687	6.12	한강도 승	이성준(李成俊)	넘침
	6.17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
	6.18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	2
	6.23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	8.5
	6.25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
	6.27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	6.5
	6.27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
	6.30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	7
	7.23	중부 수표직	이상기(李尙起)	7.5
1688	3.11	남부 수표직	성자근선(成者斤善)	1.5
	4.16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3
	4.22	중부 수표직	유상열(劉尙悅)	1.5
	5.27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
	6.6	중부 수표직	임선복(林善福)	7
	6.8	한강도 승	장필흥(張必興)	3.5(포백척)
	6.9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5
	6.9	중부 수표직	임선복(林善福)	8.5
	6.15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
	6.20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6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688	6.21	한강도 승	장필흥(張必興)	7(포백척)
	6.22	중부 수표직	이기(李起)	5
	7.7	중부 수표직	유만세(兪萬世)	5.5
	7.7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6
	7.14	중부 수표직	유만세(兪萬世)	6.5
	7.28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
	8.17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	3
1689	7.28	중부 수표직	김건(金健)	1.5
	7.28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3
	7.29	중부 수표직	김건(金健)	4
	8.10	중부 수표직	유상열(劉尙悅)	5.5
1690	4.28	남부 수표직	성이선(成二善)	1.3
	4.29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曼)	1.5
	5.9	남부 수표직	성이선(成二善)	2
	5.23	중부 수표직	유만세(兪萬世)	3.5
	5.25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1.5
	5.25	한강도 승	조정석(趙廷碩)	4.5(포백척)
	5.25	중부 수표직	유만세(兪萬世)	2
	5.26	중부 수표직	유만세(兪萬世)	9.5
	6.1	중부 수표직	김시웅(金時雄)	3
	6.11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3
	6.20	중부 수표직	서학령(徐鶴齡)	1.5
	6.22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7
	6.22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5
	6.25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
	7.9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2
	7.9	중부 수표직	이함(李涵)	1
	7.12	중부 수표직	이함(李涵)	3
	8.3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1.5
	8.3	중부 수표직	고차만(高次萬)	2.5
1691	6.1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691	6.2	한강도 승	조정석(趙廷碩)	4.5(포백척)
	6.9	한강도 승	조정석(趙廷碩)	8(포백척)
	6.13	중부 수표직	유만세(俞萬世)	4
	6.16	중부 수표직	김시웅(金時雄)	5.7
	7.6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2.6
	7.17	중부 수표직	이귀석(李貴碩)	2
	7.29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4
	윤7.11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	3
	윤7.16	중부 수표직	김말선(金耑善)	2
1692	4.22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	0.6
	5.14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蔓)	0.5
	5.21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	1
	5.22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1.5
	5.26	한강도 승	강후정(姜厚精)	2.6(포백척)
	6.2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	1.6
	6.9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1.8
	6.11	한강도 승	강후정(姜厚精)	7.5(포백척)
	6.13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	2.3
	6.16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	10
	6.18	한강도 승	강후정(姜厚精)	14(포백척)
	6.19	중부 수표직	이상기(李尙起)	3
	6.20	한강도 승	강후정(姜厚精)	넘침
	6.25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	3.2
	7.1	중부 수표직	김두만(金斗萬)	7.2
	7.7	중부 수표직	김두만(金斗萬)	7.8
	7.12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	9.1
	8.10	중부 수표직	이장석(李長碩)	1
1695	4.5	중부 수표직	유석만(劉碩萬)	1.1
	4.11	중부 수표직	유상열(劉尙悅)	1.5
	5.6	중부 수표직	장세기(張世起)	1.7
	5.17	중부 수표직	유태명(俞太明)	2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695	5.24	중부 수표직	유태명(兪太明)	1.7
	5.25	한강도 승	민재흥(閔再興)	6.5(포백척)
	6.4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朱生)	2.8
	6.6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朱生)	8.5
	6.6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朱生)	7.8
	6.12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朱生)	6.9
	6.19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	4
	6.19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	6.5
	6.23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	4.5
	6.24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	6
	6.25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	6.5
	6.28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	8.9
	6.29	한강도 승	민재흥(閔再興)	10.5(포백척)
	7.3	중부 수표직	채노중(蔡老仲)	3
	7.3	중부 수표직	채노중(蔡老仲)	4.2
	7.3	중부 수표직	채노중(蔡老仲)	8.5
	7.4	한강도 승	민재흥(閔再興)	넘침
	8.11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0.7
	8.12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3.5
1696	3.6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2.5
	3.8	한강도 승	이수조(李壽祚)	5.7(포백척)
	3.24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懿生)	1
	5.6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3
	5.8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2.5
	5.8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5
	5.10	한강도 승	이수조(李壽祚)	5.3(포백척)
	5.22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1.5
	5.23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2.5
	5.25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4.7
	5.26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2.7
	5.26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3.5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696	6.3	한강도 겸임 삼전도승	이대만(李代萬)	7.5(포백척)
	6.6	중부 수표직	전태성(全太成)	4.5
	6.6	중부 수표직	전태성(全太成)	7.5
	6.12	중부 수표직	전태성(全太成)	3.7
	6.17	중부 수표직	한율금(韓栗金)	2
	6.18	중부 수표직	한율금(韓栗金)	7.8
	6.26	중부 수표직	한율금(韓栗金)	1.5
	7.12	중부 수표직	이구석(李求石)	4
	7.15	중부 수표직	이구석(李求石)	1
	7.15	중부 수표직	이구석(李求石)	4.3
1697	3.23.	중부 수표직	박사산(朴士山)	1.2
	3.25	중부 수표직	이육선(李六善)	1.3
	3.27	한강도 승	심약호(沈若浩)	5.5(포백척)
	윤3.4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鶯生)	1.1
	윤3.4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鶯生)	1.5
	윤3.18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朱生)	1.1
	윤3.18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朱生)	2
	5.5	중부 수표직	강천립(姜天立)	0.5
	5.17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0.7
	5.21	한강도 승	이동번(李東蕃)	6(포백척)
	5.25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0.5
	6.3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0.5
	6.8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0.7
	6.9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1.1
	6.10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5.5
	6.11	한강도 승	이동번(李東蕃)	7.6(포백척)
	6.15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6.5
	6.18	중부 수표직	서진익(徐振翼)	6.7
	6.21	중부 수표직	서진익(徐振翼)	4.5
	7.14	남부 수표직	이산업(李山業)	2.5
	8.5	중부 수표직	정지흥(鄭之興)	0.5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697	8.16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	4
1698	3.26	중부 수표직	박징(朴瀋)	2.3
	3.26	중부 수표직	박징(朴瀋)	2.9
	3.26	중부 수표직	박징(朴瀋)	3.7
	3.27	한강도 승	지귀영(池貴榮)	4.5(포백척)
	4.3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2.5
	4.29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	3.5
	5.4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8
	5.5	한강도 승	지귀영(池貴榮)	12.5(포백척)
	5.26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	1.3
	5.27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	1.5
	5.28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	1.5
	5.28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	6.2
	5.29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	7
	5.30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	5
	6.1	한강도 승	지귀영(池貴榮)	17.4(포백척)
	6.2	중부 수표직	한율금(韓栗金)	8
	6.2	중부 수표직	한율금(韓栗金)	8.5
	6.3	중부 수표직	한율금(韓栗金)	6
	6.4	중부 수표직	한율금(韓栗金)	5
	6.11	중부 수표직	한율금(韓栗金)	7
	6.12	한강도 승	지귀영(池貴榮)	넘침
	6.15	중부 수표직	한율금(韓栗金)	5
	6.24	중부 수표직	유만세(兪萬世)	7
	7.13	중부 수표직	박동(朴同)	3
	7.14	중부 수표직	박동(朴同)	4.5
	7.17	중부 수표직	박동(朴同)	5.5
	7.18	중부 수표직	임석(林石)	6
	7.18	중부 수표직	임석(林石)	10
	7.19	한강도 승	이만흥(李晩興)	14.5(포백척)
	8.10	중부 수표직	이소동(李小同)	2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699	5.3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1
	6.8	중부 수표직	김동명(金東鳴)	3
	6.14	중부 수표직	김동명(金東鳴)	3.2
	6.14	중부 수표직	김동명(金東鳴)	5
	6.16	한강도 승	전종건(全宗建)	7.7(포백척)
	7.4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	1.3
	7.8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	1.2
	7.12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	2.8
	7.13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	8
	7.15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	6.3
	7.15	한강도 승	전종건(全宗建)	17(포백척)
	7.23	중부 수표직	임가부리(林加夫里)	2.7
	윤7.1	중부 수표직	임가부리(林加夫里)	3.1
	윤7.5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	2
	윤7.5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	3
1700	2.16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2.1
	2.16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2.7
	2.18	한강도 승	윤홍찬(尹弘燦)	12.7(포백척)
	3.8	중부 수표직	김동명(金東鳴)	1.5
	3.15	중부 수표직	김동명(金東鳴)	3.5
	5.6	중부 수표직	최돌쇠(崔堉金)	1.5
	5.7	중부 수표직	최돌쇠(崔堉金)	3.5
	5.13	중부 수표직	양우주(梁宇柱)	6.5
	5.13	중부 수표직	양우주(梁宇柱)	5.5
	5.14	중부 수표직	양우주(梁宇柱)	7.5
	5.20	한강도 승	최감송(崔甘松)	10.7(포백척)
	5.25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訖同)	2.5
	5.27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訖同)	3.2
	6.20	중부 수표직	윤두만(尹斗萬)	2.8
	6.20	중부 수표직	윤두만(尹斗萬)	3
	6.21	중부 수표직	윤두만(尹斗萬)	4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00	7.4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2.5
	7.12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6.5
1701	2.8	중부 수표직	박징(朴澄)	2.1
	4.10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壽命)	1
	5.10	중부 수표직	김동질이(金同叱伊)	0.3
	5.11	중부 수표직	김동질이(金同叱伊)	0.6
	5.21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	0.3
	5.26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	0.5
	5.26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	0.6
	5.27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	3.5
	5.28	한강도 승	윤기삼(尹起三)	7(포백척)
	6.1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3
	6.2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2
	6.3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6
	6.4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7
	6.4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10.5
	6.4	한강도 승	이원형(李元亨)	10(포백척)
	6.7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10
	6.9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6
	6.10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4
	6.11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6
	6.11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	10
	6.17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1.2
	6.25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4.5
	6.25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10.5
	6.28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2
	6.28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8
	6.28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10.5
	6.29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4.5
	7.1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2
	7.1	한강도 승	이원형(李元亨)	넘침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01	7.7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4
	7.10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2
	7.11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2.5
	7.18	중부 수표직	이육선(李六善)	3
	7.23	중부 수표직	이육현(李六賢)	7
	7.27	중부 수표직	이육현(李六賢)	3
	8.2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6.5
	8.5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6
1702	4.22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	0.5
	4.26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	1
	4.29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	3
	4.30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	4
	5.2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3
	5.23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2.5
	5.24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2.7
	5.27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2
	6.9	중부 수표직	유영한(劉英漢)	3.5
	6.16	중부 수표직	차귀인(車貴仁)	4
	6.17	한강도 승	양우징(梁宇徵)	4.5(포백척)
	6.20	중부 수표직	차귀인(車貴仁)	8
	6.25	중부 수표직	차귀인(車貴仁)	7.5
	6.26	중부 수표직	차귀인(車貴仁)	7.5
	6.27	중부 수표직	차귀인(車貴仁)	8.5
	6.27	한강도 승	양우징(梁宇徵)	넘침
	윤6.4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5.4
	윤6.4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9
	윤6.9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4
	윤6.10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2
	윤6.10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6
	윤6.11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9
	윤6.11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10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02	윤6.13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8
	윤6.23	중부 수표직	양우준(梁宇俊)	9.5
	윤6.25	중부 수표직	양우준(梁宇俊)	7.5
	7.2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壽命)	5
	7.4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壽命)	7
	7.5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壽命)	10
	7.6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壽命)	8
	7.6	한강도 승	양우징(梁宇徵)	넘침
	8.7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齡生)	1.1
	8.9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齡生)	1.2
	8.18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	2
	9.8	중부 수표직	박동(朴同)	7.5
	9.9	중부 수표직	박동(朴同)	5.1
1703	2.17	중부 수표직	이동미(李東美)	1.5
	3.4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	1.5
	3.20	중부 수표직	이동질이(李同叱伊)	1.1
	3.26	중부 수표직	이동질이(李同叱伊)	2
	4.14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1.5
	4.15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1.7
	5.7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日金)	3.5
	5.7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日金)	3
	5.8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日金)	4
	5.11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日金)	3
	5.21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3.5
	5.25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4
	5.30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4
	6.1	중부 수표직	승지강(承枝江)	9
	6.1	중부 수표직	승지강(承枝江)	6.5
	6.3	한강도진 별장	이상건(李尙建)	12.5(포백척)
	6.4	중부 수표직	승지강(承枝江)	9
	6.12	한강도진 별장	이상건(李尙建)	13(포백척)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03	6.20	중부 수표직	양돌쇠(梁芻金)	7.5
	7.16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訖同)	1.2
	7.18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訖同)	2.5
	7.27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訖同)	1
1704	6.11	중부 수표직	이진석(李震碩)	0.5
	6.11	중부 수표직	이진석(李震碩)	0.7
	6.14	중부 수표직	이진석(李震碩)	4
	6.14	중부 수표직	이진석(李震碩)	5.5
	6.14	중부 수표직	이진석(李震碩)	7
	6.14	한강진도		5.5(포백척)
	6.16	중부 수표직	최돌쇠(崔芻金)	3
	6.16	한강진도		17(포백척)
	7.10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	6
	7.11	한강진 별장	이상건(李尙建)	9.8(포백척)
	8.7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	2.5
1705	4.6	중부 수표직	조만억(趙萬億)	5
	4.17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2
	5.2	중부 수표직	승지강(承智康)	6.5
	5.22	중부 수표직	김이남(金二男)	1.5
	6.1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	1.5
	6.1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	3
	6.3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	3.5
	6.4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	1.5
	6.4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	7
	6.5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	7
	6.5	한강진도 별장	이숙화(李肅和)	6.4(포백척)
	6.8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	6.5
	6.29	중부 수표직	박오동(朴五同)	3
	7.1	중부 수표직	이애남(李愛男)	3.5
	7.1	중부 수표직	이애남(李愛男)	4.5
	7.5	중부 수표직	이애남(李愛男)	5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05	7.5	한강진도 별장	이숙화(李肅和)	7.3(포백척)
	7.11	중부 수표직	최돌쇠(崔覓金)	3
1706	4.6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0.5
	4.25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2.5
	5.7	중부 수표직	김말종(金謄種)	0.4
	5.13	중부 수표직	김말종(金謄種)	2.5
	5.20	중부 수표직	박오동(朴五同)	3.5
	5.24	한강진도 별장	이숙화(李肅和)	5.2(포백척)
	5.25	중부 수표직	박오동(朴五同)	6.5
	5.26	중부 수표직	박오동(朴五同)	5
	5.27	한강진도 별장	이숙화(李肅和)	12.5(포백척)
	6.2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	4
	6.2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3.5
1707	4.12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	3.5
	4.17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3.5
	6.1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	1.5
	6.3	한강진 별장	최두응(崔斗應)	5.2(포백척)
	6.6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	5
	6.8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	6
	6.9	한강진 별장	최두응(崔斗應)	26.2(포백척)
	6.14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	4
	6.17	한강진 별장	최두응(崔斗應)	28(포백척)
	6.20	중부 수표직	승두민(承斗民)	4
1708	6.15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0.3
	6.18	중부 수표직	차두깍(車斗劼)	3.7
	6.25	중부 수표직	차두깍(車斗劼)	1.3
	6.26	중부 수표직	차두깍(車斗劼)	2.5
	7.6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	1
1709	4.5	중부 수표직	최대봉(崔大奉)	1.5
	4.8	중부 수표직	최대봉(崔大奉)	1
	4.15	중부 수표직	양태봉(梁太奉)	1.5
	4.19	중부 수표직	박동질이(朴同叱伊)	2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09	4.19	중부 수표직	박동질이(朴同叱伊)	3
	5.20	중부 수표직	김오동(金五同)	2.5
	5.27	중부 수표직	박오동(朴五同)	5.5
	5.28	한강진 별장	최두응(崔斗應)	7.8(포백척)
	6.3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一金)	1.5
	6.16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0.6
	6.17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	2.3
	6.18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	6
	6.18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	10
	7.9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	1
	7.19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唵同)	6
	7.25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唵同)	3.5
	7.29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唵同)	4.5
	8.8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	2.5
	8.10	한강진 별장	최두응(崔斗應)	7.8(포백척)
1710	5.26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一金)	1.5
	5.27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一金)	2
	5.29	한강진 별장	김보흥(金寶興)	6.5(포백척)
	6.17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	1.3
	6.25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	2.2
	7.5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唵同)	3.5
	7.15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唵同)	1.5
	7.30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唵同)	1
	윤7.11	한강진 별장	김보흥(金寶興)	13.6(포백척)
	윤7.13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叱劫)	3.8
1711	윤7.14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叱劫)	6
	5.11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	0.7
	5.11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	5.5
	5.15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	0.5
	5.16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唵同)	0.6
	5.19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唵同)	1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11	5.22	한강진 별장	김보흥(金寶興)	5.6(포백척)
	5.22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諤同)	1.5
	5.27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諤同)	4
	6.6	중부 수표직	강악발(姜惡發)	2
	6.9	중부 수표직	강악발(姜惡發)	4
	6.19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	4.5
	6.28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	4
	7.6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	3.5
	7.17	중부 수표직	조점이(趙占伊)	4.5
	7.24	한강진 별장	김보흥(金寶興)	16.5(포백척)
1712	5.16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諤同)	0.3
	5.20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諤同)	3.5
	5.26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諤同)	1
	5.29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諤同)	1
	6.8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諤同)	1.5
	6.9	한강진 별장	나득좌(羅得佐)	15(포백척)
	6.17	중부 수표직	박똥이(朴靛伊)	7
	6.19	한강진 별장	나득좌(羅得佐)	14.5(포백척)
	6.27	중부 수표직	박똥이(朴靛伊)	3.5
	7.14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	4
	7.23	중부 수표직	승두민(承斗民)	1.5
	8.3	중부 수표직	조점(趙點)	6
	8.6	중부 수표직	조점(趙點)	0.9
1713	윤5.6	중부 수표직	강가팔리(姜加八里)	2
	윤5.12	중부 수표직	강악발(姜惡發)	4.5
	윤5.25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	4
	윤5.28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	넘침
	윤5.28	한강진 별장	나득좌(羅得佐)	11.3(포백척)
	6.30	중부 수표직	박똥이(朴靛伊)	4
	7.25	중부 수표직	정삼명(鄭三命)	1.5
1714	4.3	중부 수표직	김성민(金星民)	2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14	4.23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訖同)	2
	4.29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訖同)	2.5
	5.8	중부 수표직	강차팔리(姜次八里)	2.3
	6.4	중부 수표직	박태명(朴太明)	3.5
	6.29	한강진 별장	이두경(李斗慶)	9.7(포백척)
	7.22	중부 수표직	이개노미(李介老味)	4.5
	7.28	한강진 별장	이두경(李斗慶)	13.2(포백척)
1715	4.21	중부 수표직	이개노미(李介老味)	1
	5.15	중부 수표직	김성민(金成民)	3.2
	5.18	중부 수표직	김성민(金成民)	1
	5.23	중부 수표직	박구가금(朴九加金)	1
	5.23	한강진 별장	이두경(李斗慶)	16.5(포백척)
	6.8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訖同)	2
	6.9	한강진 별장	이두경(李斗慶)	25(포백척)
	6.26	중부 수표직	강악발(姜惡發)	1
	7.7	중부 수표직	김동이(金同伊)	2.5
1716	5.13	중부 수표직	조점이(趙点伊)	2
	5.17	중부 수표직	이개노미(李介老味)	7
	5.21	중부 수표직	이개노미(李介老味)	7
	5.21	한강진 별장	김세진(金世珍)	7(포백척)
	5.24	한강진 별장	김세진(金世珍)	25.8(포백척)
	6.16	중부 수표직	안의금(安義金)	1.5
	6.28	중부 수표직	안의금(安義金)	1.5
	7.25	중부 수표직	김구가금(金九加金)	2
1717	5.22	중부 수표직	김검동(金儉同)	1.5
	5.28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	3
	5.28	한강진 별장	김세진(金世珍)	11.1(포백척)
	6.1	중부 수표직	유만세(兪萬世)	2
	6.5	중부 수표직	이태준(李太俊)	3.5
	6.5	한강진 별장	김세진(金世珍)	25.8(포백척)
	7.9	중부 수표직	강재주(姜載周)	4.5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17	7.21	중부 수표직	지하징(池夏澄)	1.5
1718	5.29	중부 수표직	김점동(金占同)	1.5
	6.6	중부 수표직	안기금(安起金)	넘침
	6.7	중부 수표직	안기금(安起金)	5
	6.9	한강진 별장	김세진(金世珍)	10.5(포백척)
	6.27	중부 수표직	이노미이(李老味伊)	1.5
	7	중부 수표직	김오동(金五同)	넘침
	7.19	중부 수표직	박후강(朴厚江)	5
	7.19	중부 수표직	박후강(朴厚江)	5.5
	8.22	중부 수표직	안의금(安義金)	4
1719	5.1	중부 수표직	김태종(金太種)	2
	5.3	한강진 별장	김로(金璐)	5.2(포백척)
	5.7	중부 수표직	이태종(李太種)	4
	5.19	중부 수표직	김임금(金任金)	2
	5.28	중부 수표직	이노미이(李老味伊)	12
	6.20	중부 수표직	이태종(李太種)	2
	6.29	중부 수표직	이태종(李太種)	2
	7.1	한강진 별장	임로(任璐)	7.5(포백척)
	7.2	중부 수표직	김임금(金任金)	4
	7.2	한강진 별장	임로(任璐)	35(포백척)
1720	5.9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	1.5
	6.5	중부 수표직	문차금(文次金)	0.5
	6.5	중부 수표직	문차금(文次金)	1.6
1721	5.11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	0.7
	6.5	중부 수표직	김부귀(金富貴)	2.5
	6.27	중부 수표직	김부귀(金富貴)	1.5
	6.28	중부 수표직	김부귀(金富貴)	3.5
	6.28	중부 수표직	김부귀(金富貴)	6
	6.29	한강진 별장	신익려(辛益礪)	5.5(포백척)
	윤6.1	중부 수표직	이태종(李太從)	1.5
	7.9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訖生)	2.5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22	5.6	중부 수표직	조귀동(趙貴同)	2.5
	5.8	중부 수표직	조귀동(趙貴同)	1.5
	5.17	중부 수표직	김귀손(金貴孫)	4.5
	5.25	한강진 별장		5.5(포백척)
	7.7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訖生)	1.5
	7.17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訖生)	2.5
	7.20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訖生)	3
1757	5.17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넘침
	5.18	중부 수표직	오점금(吳點金)	0.22
	5.18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0.53
	5.24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2.2
	5.24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0.62
	5.24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1.5
	5.28	한강진 별장	이동준(李東浚)	불어남
	7.2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0.12
	7.2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0.12
	7.2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0.43
	7.2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0.43
	7.6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3.61
1758	5.5	중부 수표직	오점금(吳點金)	2.2
	5.18	중부 수표직	오점금(吳點金)	0.21
	5.25	중부 수표직	오점금(吳點金)	0.23
	5.26	중부 수표직	오점금(吳點金)	0.85
	5.26	한강진 별장	이익화(李益華)	1.8(포백척)
	6.8	중부 수표직	김만복(金萬福)	넘침
	6.10	중부 수표직	김만복(金萬福)	0.81
	6.10	중부 수표직	김만복(金萬福)	넘침
	8.11	한강진 별장	이익화(李益華)	19(포백척)
1759	윤6.24	중부 수표직	이후성(李厚成)	1.2
	윤6.30	중부 수표직	이후성(李厚成)	0.15
	7.1	중부 수표직	이성재(李成才)	0.45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59	7.8	중부 수표직	안성재(安成才)	0.35
	5.9	중부 수표직	이점동(李點同)	1.5
	5.20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2
	5.22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0.21
	5.27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1.3
	6.9	중부 수표직		0.22
	6.12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넘침
1760	6.12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0.51
	6.12	한강진 별장	이한엽(李漢燁)	3.2(포백척)
	6.15	수표직	박기수(朴棋瑞)	1.3
	6.16	수표직	박기수(朴棋瑞)	1.4
	6.20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2.3
	6.24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1.5
	6.25	한강진 별장	이한엽(李漢燁)	12(포백척)
	6.28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5.5
	5.28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0.15
	5.29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1.7
	6.7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0.34
	6.14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0.57
	6.17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0.25
	6.17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0.45
1762	6.19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4.5
	6.21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0.67
	6.23	한강진 별장	김상희(金祥喜)	9(포백척)
	7.24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4.5
	3.24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1.2
	6.10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7.3
	6.11	한강진 별장	인찬기(印讚起)	20(포백척)
	7.27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4.3
	5.8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1.2
	6.4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0.56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64	6.10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0.35
	6.11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1.3
	6.11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2.2
	6.11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5.2
	7.5	한강진 별장	김흥상(金興祥)	2(포백척)
	7.10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1.3
	8.7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3.5
	8.8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3.5
1765	5.18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5.3
	7.21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1.2
1767	6.12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0.67
	6.13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0.15
	6.14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10
	윤7.26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2.5
	윤7.27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4.5
1768	4.8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5.5
	7.3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2.3
	7.5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2.7
1769	5.8	수표직	정희열(丁希說)	3.7
	6.17	수표직	정희열(丁希說)	2.7
	6.17	한강진 별장	안윤기(安允基)	5(포백척)
	7.6	한강진 별장	안윤기(安允基)	7(포백척)
	7.15	수표직	정희열(丁希說)	10
	7.26	수표직	한복기(韓福基)	5.2
1770	7.27	한강진 별장	안윤기(安允基)	5(포백척)
1772	4.23	수표직	한복기(韓福基)	1.3
	6.4	한강진 별장	홍성귀(洪成龜)	5(포백척)
	6.4	수표직	한복기(韓福基)	3.9
1773	5.12	한강진 별장	홍성귀(洪成龜)	2(포백척)
	7.26	한강진 별장	홍성귀(洪成龜)	8(포백척)
1774	5.26	한강진 별장	홍성귀(洪成龜)	4(포백척)

연	월일	직책	성명	수치
1774	6.20	한강진 별장	홍성귀(洪成龜)	13(포백척)
1777	5.16	수표직	최세복(崔世福)	0.03
	5.16	수표직	최세복(崔世福)	0.15
	6.9	한강진 별장	윤진오(尹進五)	3.5(포백척)
	6.15	수표직	최세복(崔世福)	2.1
	6.16	한강진 별장	윤진오(尹進五)	7(포백척)
	6.25	수표직	최세복(崔世福)	4.5
	7.11	한강진 별장	윤진오(尹進五)	10(포백척)
	7.14	수표직	최세복(崔世福)	3.2
	7.15	수표직	최세복(崔世福)	2.3
	7.23	수표직	최세복(崔世福)	1.6
	7.26	수표직	최세복(崔世福)	1.2
	8.1	수표직	최세복(崔世福)	0.35
	8.5	수표직	최세복(崔世福)	2.3
	8.6	한강진 별장	윤진오(尹進五)	5(포백척)
	8.10	한강진 별장	윤진오(尹進五)	5(포백척)
1778	6.28	한강진 별장	윤진오(尹進五)	10(포백척)
1809	5.25	수표직	정대후(鄭大垆)	3.8
	5.27	수표직	정대후(鄭大垆)	4.3
	6.11	수표직	정대후(鄭大垆)	3.5/4.5
1810	6.8			1.8
1822	6.9			2.5
1825	6.12			5/1/3.7
1832	6.8			6/1.7
합계			705건	

【표10】『기우제등록』 수록 측우기 수심 기록

연	월일	수심(척·촌분)	비고
1771	7.23	0.02	
1774	5.25	0.1	
1786	6.8	0.3	충청감영/측우기 여부 불확실
1798	5.20	0.1	
1798	5.27	數寸	
1799	5.28	數寸	
1804	5.16	0.1	
1806	6.28	0.1	
1807	4.8	數寸	
1808	5.24	數寸	
1810	6.12	0.45	
1813	5.14	0.15/0.1	
	6.14	0.1	
	6.15	1	
1814	4.22	0.06	
	5.2	0.16	
1837	5.18	0.03	
	6.1	0.5	
1838	6.4	0.04/0.12	
	6.8	0.25	
1842	5.29	0.05	
	6.3	0.02	
	6.6	0.04/0.09	
1848	5.30	0.15	
1876	4.25	0.12	
1885	5.22	0.02	
1887	윤4.22	0.14	

연	월일	수심(척·촌분)	비고
1889	5.29	0.5	
합계		28건	

일러두기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기우제등록』 6책(奎12901)의 원문을 표점하고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다.
- 제1책~제3책의 표점과 번역은 한국기상전문인협회·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가 수행한 “2022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유물보존 및 역사자료 번역·해제 연구”의 결과물이며, 제4책~제6책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가 수행한 “2023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역사자료 번역·해제 연구”의 결과물이다. 자료의 완결성과 표점 및 번역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2년간의 결과물을 종합하였다.
- 본 역서는 『기우제등록』 6책을 4권으로 출간했다. 1권은 『기우제등록』 1책과 2책을, 2권은 3책을, 3권은 4책을, 4권은 5책과 6책을 묶었다.
- 『기우제등록』의 원문을 기사별로 구분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1-001 : 1책 첫 번째 기사)
- 기사별로 표점 교감한 원문을 앞에 제시하고 이어서 현대어 번역문을 제시하였다.
- 표점에 사용한 부호는 쉼표(,) 마침표(.) 가운데점(·) 물음표(?) 느낌표(!)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이다. 번역문 역시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되, 서명(『 』), 편명(『 』), 작품명(< >) 기호를 추가하였다.
- 인용 문서가 많은 『기우제등록』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용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기호로 표시하였다. 1차 인용은 큰따옴표(“ ”), 2차 인용은 작은따옴표(‘ ’), 3차 인용은 꺾쇠(『 』), 4차 인용은 겹꺾쇠(『『 』)이다.

- 인용 부분은 별행으로 처리하여 해당 내용이 타인의 발언 또는 타 문서의 인용이라는 점을 쉽게 파악하도록 편집하였다.
- 원주는 원문과 번역문 모두【 】로 표시하였다. 번역문에서 부득이 원문의 일부 구절을 인용할 경우 []로 표시하였다.
- 누락되거나 판독 불가능한 글자는 1자당 ■로 표시하였다. 글자수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 해당 기사의 요지를 명시한 난외주(欄外註)는 번역문에 #으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 모든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에 따랐으며, 그중 난해한 용어는 용어집으로 따로 정리하고, 본문의 각주는 의미상 해설이 필요한 부분에 부기하였다.
- 이 밖의 사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교감표점지침 및 역사문헌번역지침을 따랐다.

기우제등록 제1책

1636~1661년

「기우」제1
祈雨 第一

병자년¹⁶³⁶,인조¹⁴부터 신축년¹⁶⁶¹,현종²까지
自丙子至辛丑

병자년1636[3차]

3차 분시焚柴

수표직水標直과 한강도 승漢江渡丞을 추고하다

기청제문祈晴祭文을 따로 짓다

새로운 능陵 때문에 파낸 무덤에 별제別祭를 지내다

기묘년1639[4차]

2차 기우제에 대신大臣을 보내다

사직 친제社稷親祭

정전正殿을 피하는 일은 기우제를 지내고 있으므로
그대로 행하다

경진년1640

시장市場을 옮기다

무녀巫女를 합하여 설행하다

신사년1641[7차]

4차 기우제를 여러 곳에서 함께 거행하다

7차 기우제와 민간의 병류屏柳

정전을 피하다

갑신년1644

이미 향香을 받았으니 그대로 설행하다

을유년1645[7차]

여제厲祭

丙子【三次】

三次焚柴

水標直漢江丞推考

祈晴祝文別製

新陵掘塚別祭

己卯【四次】

再次大臣

社稷親祭

避殿, 祈雨方行, 姑仍.

庚辰

遷市

巫女合設

辛巳【七次】

四次諸處並擧

七次屏柳

避殿

甲申

既已受香仍行

乙酉【七次】

厲祭

6차 석척 기우제 蜥蜴祈雨祭

7차 무녀 기우제 巫女祈雨祭

정해년 1647[13차]

시장을 옮기다

토룡제 土龍祭

춘당대 春塘臺 맹인 기우제 盲人祈雨祭

기축년 1649[4차]

제관 祭官에게 말을 지급하다

경인년 1650[6차]

사직 친제[가을]

신묘년 1651[3차]

2차 기우제에 대신을 보내다

사직 친제

감찰 監察을 정하여 보내다

임진년 1652[4차]

정전을 피하다

사직 친제

남교 친제

계사년 1653[2차]

지방 산천의 기우제는 연달아 설행하지 않다

六次蜥蜴

七次巫女

丁亥【十三次】

遷市

土龍祭

春堂臺盲人

己丑【四次】

祭官給馬

庚寅【六次】

社稷親祭[秋]

辛卯【三次】

再次大臣

社稷親祭

監察定送

壬辰【四次】

避殿

社稷親祭

南郊親祭

癸巳【再次】

外山川不爲連行

기청제에 대해 수의收議하다

갑오년1654[가을 2차]

2차 기우제는 높은 품계의 관원을 보내다
대제大祭와 겹치다

을미년1655

제물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대로 실행하다
사직 친제

정유년1657[6차]

돼지가 야위어 추고하다
도시都試에서 북 치는 것을 정지하다
위판位版을 결정하다
북교北郊와 일체 실행하다
기청제

무술년1658[3차]

기우제 날짜를 결정하다
정지하다

기해년1659[2차]

기청제

경자년1660[7차, 가을 2차]

범 머리를 돼지머리로 대신하다[7차 기우제가 삭제

祈晴收議

甲午【秋再次】

再次崇品
大祭相值

乙未

祭物備待仍行
社稷親祭

丁酉【六次】

猪瘦瘠, 推考
停止都試擊鼓
位版定奪
北郊一體行
祈晴

戊戌【三次】

祈雨日定奪
停止

己亥【再次】

祈晴

庚子【七次 秋再次】

虎頭代猪頭[七次朔祭相值]

朔祭와 겹치다]

9월 이후로는 기우제가 없다

신축년1661[9차, 가을 3차]

황해도에 향축을 내려보내다

3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다

친제에 대해 수의하다

삭제와 겹치다

건명문_{建明門}에 도착하여 정지하다

九月後無祈雨

辛丑【九次 秋三次】

黃海香祝下送

三次大臣

親祭收議

朔祭相值

到建明門停止

인조조 병자년¹⁶³⁶부터 기축년¹⁶⁴⁹까지
 효종조 경인년¹⁶⁵⁰부터 기해년¹⁶⁵⁹까지
 현종조 경자년¹⁶⁶⁰부터 신축년¹⁶⁶¹까지

仁祖朝丙子至己丑
 孝廟朝庚寅至己亥
 顯廟朝庚子至辛丑

병자년¹⁶³⁶ 4월 14일

● 1차 기우제

예조禮曹의 단자單子에,
 “하늘이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 가뭄의 형세가
 이미 뚜렷하고 경기는 더욱 심합니다. 며칠 전 다행
 히 비가 약간 내렸으나 곧 날이 개었고, 요즘은 비
 내릴 조짐이 조금도 없습니다. 들판이 몹시 건조하
 여 농민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밭을 갈지 않다
 가 절기가 늦어진 후 마른갈이를 시도하였는데, 파
 종한 곳이 10분의 2, 3도 못 되니 농사가 지극히 걱
 정입니다.

1차 기우제를 삼각산三角山·목멩산木覓山·한강漢江·풍
 운뇌우風雲雷雨·산천山川·우사雩祀 등의 장소에서 예문
 禮文에 따라 택일擇日하지 말고 오는 16일에 설행하겠
 습니다. 지난달 강원 감사江原監司의 장계狀啓에,
 ‘도내의 샘이 말라서 밭두둑이 갈라져 농부가 속수
 무책입니다.’

하였으니, 본도本道(강원도)의 영험한 명산대천에도 향
 축香祝을 내려보내 택일하지 말고 제사를 지내 정성
 껏 비가 내리기를 빌라고 함께 공문을 보내는 것이

丙子四月十四日

● 初次祈雨祭

一. 曹單子：“天澤久靳，旱勢
 已強，畿內尤甚。頃日幸得小
 雨，而旋即開霽。近日小無雨
 徵，田野甚乾，農人待雨不耕，
 節晚之後，始欲乾耕，播種之
 處，不能十分之二三，民事極
 爲可慮。初次祈雨祭，如三角
 山·木覓山·漢江·風雲雷雨·
 山川·雩祀等處，依禮文，不
 卜日，來十六日設行爲白乎矣。
 前月江原監司狀啓：‘道內水
 泉乾涸，田疇坼裂，農夫束手’
 云。本道名山大川靈驗處，亦
 爲香祝下送，不卜日設祭，虔
 誠禱雨事，并以行移，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⁶³⁶ 4월 16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를 이미 설행하였으나 비가 내릴 조짐이 조금도 없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새로 경작한 밭은 갈라질까 걱정이고, 이삭이 켜 보리도 말라 시들 것이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입니다.

2차 기우제를 전례대로 사직·종묘·북교에서 예문에 따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에 설행하되, 도랑을 보수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을 함께 거행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⁶³⁶ 4월 17일

● 기우제 지낼 곳을 결정하다.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이미 2차까지 거행하였으나 아직 비 내릴 조짐이 없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가뭄이 더욱

丙子四月十六日

● 再次祈雨祭

一. 曹單子：“初次祈雨祭，已爲設行，而小無雨徵，淒風連吹，新耕之田，患其甲坼，發穗之麥，亦將焦枯，前頭民事，極爲可慮。再次祈雨祭，依前社稷·宗廟·北郊，依禮文，不卜日，來十八日設行爲白乎矣，修溝壑，淨阡陌，掩骼埋胔等事，並爲舉行，虔誠祈禱，期於得雨事，各該司，移文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丙子四月十七日

● 祈雨處所定奪

一. 曹單子：“祈雨祭，已行再次，而尙無雨徵，淒風連吹，旱氣益盛，農事極爲悶迫。三

심하니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고 답답합니다. 3차 기우제를 지내야 할 곳을 관상감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⁶³⁶ 4월 18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하첩^{下帖}에 따라 3차 기우제를 지낼 곳을 마련하여 뒤에 기록하였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沈虎頭}, 이상은 이번 4월 22일 거행하고, 진암^{辰岩} 분시^{焚柴}·양진^{楊津}·덕진^{德津}·오관산^{五冠山}·감악산^{紺岳山}·송악산^{松岳山}, 이상은 이번 4월 25일 거행하겠습니다.”

라는 관상감의 첩정^{牒呈}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啓目}에, “첩정을 첨부하였습니다. 3차 기우제를 지내는 일자는 지난번 보고한 대로 시행하되,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진암 등의 헌관^{獻官}과 집사^{執事}는 이조^{吏曹}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게 하고, 한강 침호두·진암 분시의 나무 희생은 본도^{本道}(경기도)로 하여금 진배^{進排}하게 하며, 전례에 따라 본조^{本曹}(예조)의 낭청^{郎廳}을 보내 감독하겠습니다.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의 헌관·전사관 겸 대축^{典祀官兼大祝}·제물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들 또한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

次祈雨祭應行處所，令觀象監磨鍊，虔誠祈禱，期於得雨，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丙子四月十八日

● 三次祈雨祭

一. 觀象監牒呈內：“曹下帖內乙用良，三次祈雨祭磨鍊後錄後，風雲雷雨·山川·雲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已上今四月二十二日行。辰岩焚柴·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已上今四月二十五日行”事據曹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三次祈雨祭日乙良，依所報施行爲白乎矣，風雲雷雨·山川·雲祀·三角·木覓·漢江·辰岩等，獻官·執事，令吏曹差定，漢江沈虎頭·辰岩焚柴木犧性，令本道進排，依前例，曹郎廳發遣檢擧，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嶽山，獻官·典祀官·

배하게 하며, 시행해야 하는 일들은 각 해당 관사와
본도로 하여금 전례를 살피서 거행하게 하되, 정성
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
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승정^{崇禎} 9년¹⁶³⁶ 4월 18일 동부승지 신 민응형
閔應亨이 담당하여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
였다.

● 기우제와 경죄수 석방

비망기^{備忘記}에,

“요사이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가뭄이 매우 심하
니, 농사를 생각하면 밤낮으로 근심스럽고 두렵다.
해당 조예조로 하여금 앞으로 기우제의 헌관과 집사
를 엄선하여 차출하고 배정하며 제물은 각별히 정
갈하게 준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또 해당 관
사로 하여금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여 경죄수를 석
방하라.”
하였다.

병자년¹⁶³⁶ 4월 21일

● 새로운 능 자리의 오래된 무덤을 파내서 나온
훈령에게 기우제의 전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기
로 하다.

예조의 계사에,

“승정원의 계사에,

兼大祝·祭物，并以自京下送，
諸執事，亦令本道差定進排，
應行諸事，令各該司及本道，
照例舉行，虔誠祈禱，期於得
雨事，移文知委，何如？”崇禎
九年四月十八日，同副承旨臣
閔應亨次知，啓依允。

● 祈雨祭及輕囚放釋

一. 備忘記：“近日淒風連吹，
旱氣太甚，言念農事，日夜憂
懼。其令該曹，前頭祈雨祭獻
官·執事，極擇差定，祭物各別
精備，俾無慢忽。又令該司，審
理冤獄，放釋輕囚。”

丙子四月二十一日

● 新陵舊塚掘出魂，依祈雨
例設祭

一. 曹啓辭：“政院啓辭：‘近日
旱氣太甚，民間遑急，言之慘
矣。即者伏見備忘記，以日夜

‘요사이 가뭄이 매우 심하여 민간이 황급하기가 말하기도 참혹합니다. 방금 삼가 비망기를 보니, 밤낮으로 걱정스럽고 두렵다고 말씀하시고, 기우제의 제관祭官을 엄선하여 차출하고 배정하며,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비를 근심하는 뜻이 매우 지극합니다.

신이 들으니, 새로운 능陵의 화소火巢 안에 파낸 옛 무덤이 수백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자손이 있어 이장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인 없는 무덤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이장하게 하였으나 간혹 일일이 땅에 묻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오래 묵은 귀신이 슬피 울며 제자리를 잃고 원통해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가뭄의 재해가 여기서 말미암지 않은 줄 어찌 알겠습니까.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 주인 없는 혼령을 위로한다면 재해를 멈추고 비가 내리게 하는 방도에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요사이 가뭄의 재해가 지극히 다급하여 성상께서 측은하게 여기는 전교를 특별히 내려 기우제의 제관을 엄선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죄수를 심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정성이 말 밖에 흘러넘치니, 듣는 사람치고 누군들 감동하여 울지 않겠습니까. 삼가 승정원의 계사를 보니,

憂懼爲教，祈雨祭官，極擇差定，至令審理冤獄，其恤民閔雨之意，至矣盡矣。臣竊聞新陵火巢之內，古塚掘去者，多至累百，其中有子孫，遷移安葬者，其幾何乎？無主者，則定差使員，使之移埋，而或有不有不得一一掩土者云，舊魂啾啾，不無失所之冤。今茲旱災，安知其不由於此也？遣官設祭，以慰無主之魂，不爲無補弭災致雨之道。令禮官定奪施行似當，敢稟。傳曰：‘依啓事，傳教矣。

近日旱災，極爲切迫，自上特下懇惻之教，極擇祈雨祭官，審理冤枉之獄囚，畏天恤民之誠，溢於言表，凡在聽聞，孰不感泣？伏見政院啓辭，新陵火巢之內，舊塚無子孫，不得掩土者甚多，不無失所之冤鬼云。今茲致旱，雖不知的由於此，而遣官致祭，似或無妨於祈雨之一道。令各該司，差出祭官，別製祭文，措備祭物，陵所外淨潔處，令本道，設壇預

‘새로운 능의 화소 내의 오래된 무덤 가운데 자손이 없어 땅에 묻지 못한 것이 매우 많으니, 제자리를 잃은 원통한 귀신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든 것이 분명히 여기서 말미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는 것도 비가 오기를 비는 한 가지 방도로 무방할 듯합니다.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제관을 차출하고 제문을 별도로 짓고 제물을 마련하여 새로운 능 밖 정결한 곳에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제단을 설치하고 미리 희생을 준비하여 택일하지 말고 기우제를 지내는 전례에 따라 오는 24일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진암 분시 마단자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계하하신 대로 오는 25일 기우제를 지낼 진암 분시를 검사하기 위해 나아가는 본조 낭청郎廳이 탈 말과 짐말 및 색리色吏가 탈 말들은 전례대로 병조兵曹에서 지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⁶³⁶ 4월 24일

● 석척 기우제

예조의 계사에,

備犧牲，依祈雨不卜日之例，來二十四日設行，何如?” 傳曰：“依啓.”

● 辰岩焚柴馬單子

一. 曹單子：“節啓下教，來二十五日祈雨祭時，辰岩焚柴檢舉事，進去曹郎廳騎卜馬及色吏所騎馬等，依前例，令兵曹題給，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丙子四月二十四日

● 蜥蜴祈雨

一. 曹啓辭：“三次祈雨，今方

“3차 기우제를 방금 설행하였으나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조짐이 조금도 없어 서울과 지방의 민심이 근심스럽고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어젯밤 다행히 비가 조금 내렸으나 곧장 개어 생기날만큼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망종^{芒種}이 다가왔는데 농사를 이미 그만두어 추수할 가마가 전혀 없으니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고 다급합니다. 앞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우제의 절차는 모든 일을 다하여 정성껏 기도해야 합니다.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척 및 민간의 물병에 버들을 꽂고 향을 피우는 등의 일을 예문^{禮文}에 따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6일에 시작해서 3일 뒤에 중지하고, 사직·종묘·북교에는 중신^{重臣}을 보내 제사를 지내되 역시 26일에 함께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⁶³⁶ 4월 25일

● 함경도 기우제

함경 감사^{咸鏡監司}의 장계^{狀啓}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장계를 보니 도내^{咸鏡道} 각 관내의 농사 상황은 대체로 이와 같은데, 명천^{明川}·고원^{高原}·함흥^{咸興} 세 고을은 가뭄이 매우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가뭄이 이와 같이 백성이 이미 지극히 걱정스럽고 다급한데, 함경

設行，而非但淒風連吹，小無雨徵，中外人情，不勝悶迫之際，昨夜幸得小雨，而旋即開霽，未足一犁。芒種將迫，穡事已廢，斷無西成之望，民事極爲悶迫。前頭應行祈雨節目，當無所不用其極，虔誠祈禱。慕華館池邊蜥蜴及閭閻瓶水插柳焚香等事，依禮文，不卜日，來二十六日爲始，三日而止，而社稷·宗廟·北郊，遣重臣設祭，亦二十六日，并爲舉行事，各該司，移文知委，何如？”傳曰：“依啓。”

丙子四月二十五日

● 咸鏡祈雨

一. 咸鏡監司狀啓據曹啓曰：“粘連啓下是白有亦。觀此狀啓，道內各官農事形止，大槩如此，而明川·高原·咸興三邑，則旱氣太甚云。畿內之旱氣如此，民生已極悶迫，而至

도까지 또 이와 같습니다. 각종 곡식이 나고 자라는 농사철에 끝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기우제 향축香祝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급히 마련하여 내려보내 본도本道함경도로 하여금 도내의 기도할 만한 영험한 곳에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승정崇禎 9년 4월 26일 좌부승지 신 목서흠睦敘欽이 담당하여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於咸鏡道又如此，農月各穀生長之日，若終不得雨，則前頭民事，極爲可慮。祈雨祭香祝，令該司急急磨鍊下送，令本道，道內靈驗處可祈處，不卜日，虔誠祈禱，期於得雨事，行移，何如？”崇禎九年四月二十六日，左副承旨臣睦敘欽次知，啓依允。

병자년¹⁶³⁶ 4월 26일

● 사직 기우제의 차일장이 바르지 않아 양사 관원을 추고하다.

예조의 제사에,
“신臣 이현영李顯英이 기우제 헌관으로 사직社稷에 갔더니, 단상에 설치한 차일장遮日帳이 파손되고 조잡하여 제사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본서本署사직서 하인을 힐책하였더니 전설사典設司 담당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전설사의 하인을 불러 물어보니, 미웍한 사람 하나만 분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물었더니 세월이 오래되어 두 관사의 하인이 모두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늦게 어떤 하리下吏가 와서 한 장의 작은 종이를 보여 주었는데, 전설사에서 고치기를 요청하는 뜻으로 해당 조공조에 갖

丙子四月二十六日

● 社稷祈雨遮帳不正，兩司官員推考

一. 曹啓辭：“臣顯英，以祈雨獻官，進到社稷，則壇上所設遮日帳，破毀麤陋，不合祭用。詰責於本署下人，則答以典設司次知。招問典設司下人，則只有迷劣一人待候，不知東西。問其何時造作，則年久，兩司下人，皆不記日月。最晚有一下吏，來示一小紙，乃典設司以請改之意，具報該曹，而該曹不許者也。社稷本無祠宇，祭時只設帳幕行之，遮帳之重，

추어 보고하였으나 해당 조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시다.

사직은 본래 사당이 없고, 제사 때 천막만 설치하여 거행하므로 차일장의 중요성은 제기祭器와 기물器物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제향에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반드시 본조예조에 보고하는데, 해당 관사전설사에서 한 차례 해당 조에서 퇴짜를 맞고 끝내 보고하여 다시 고치기를 요청하도록 아뢰게 하지 않았고, 단사壇司, 사직서 역시 이와 같은 줄 알고서도 보고하여 알리지 않았습시다. 전설사와 사직서의 해당 관원을 모두 추고하고, 해당 관사로 하여금 급히 궤를 다시 준비하게 하여 제사에 사용할 물건을 담을 때 전설사와 사직서 관원이 입회하여 여단으며, 본조 역시 수시로 낭청을 보내서 점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중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내다.

예조의 단자에,

“각처의 기우제를 거의 다 거행하였으나, 비가 내리려다가도 내리지 않고 가뭄은 날로 심해져 백성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이니, 전례대로 맹인·무녀 및 경회루慶會樓 연못가의 석척 기우제蜥蜴祈雨祭를 오늘 29일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고, 삼각산·목멱산·한강은 근신近臣을 보내며, 풍운뇌우·산천·우사는 중신

不下於祭器器物。凡干祭享所用，雖涉微細，必報本曹，而該司一度見却於該曹，終不開報使之轉啓請改，壇司亦知其如此，而亦不報知。典設司·社稷署當該官，並命推考，令該司急急改備櫝子，入盛祭用時，典設司·社稷署官員，眼同開閉，本曹亦時時發遣郎廳，點檢，何如？”傳曰：“允。”

● 遣重臣祈雨

一. 曹單子：“各處祈雨，幾盡舉行，而欲雨不雨，亢陽日甚，大命近止，此正靡神不舉之日。依前例，盲人·巫女及慶會樓池邊蜥蜴祈雨，來二十九日爲始，三日而止。三角山·木覓山·漢江，遣近臣，及風雲雷雨·山川·雩祀，遣重臣祭，來

重臣을 보내 오는 5월 1일 기우제를 설행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⁶³⁶ 4월 27일

● 평안도에 기우제 향축을 내려보낸다.

평안 감사^{平安監司}의 장계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삼가 장계를 보니 금년 가뭄의 재해는 평안도가 가장 심한데,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변고가 더하여 평안도의 백성이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기우제 향축을 급히 마련하여 내려보내 본도^{평안도}로 하여금 영험하여 기도할 만한 곳에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하소서.

우역^{牛疫}이 백성에게 미치는 해는 재해와 다르지 않으니, 속습에 따라 푸닥거리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며, 더욱 심하게 해를 입은 곳은 온전한 각 고을의 소를 변통하여 지급하여 농사를 그만두는 우환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崇禎}9년 4월 27일 좌부승지 신 목서흠^{睦敍欽}이 담당하여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五月初一日設行，期於得雨事，移文，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丙子四月二十七日

● 平安祈雨香祝下送

一. 平安監司狀啓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伏見狀啓，則今年旱災，關西爲最，加以霜降雨雹之變，西方民生，極爲可慮。令該司，祈雨祭香祝，急速磨鍊下送，其令本道，靈驗可祈處，精備奠物，虔誠祈禱，期於得雨。牛疫之害於民生，無異於災變，從俗禳除，多般救療，尤甚被害處，完全各邑牛畜，推移題給，俾無廢農之患，何如？” 崇禎九年四月二十七日，左副承旨臣睦敍欽次知，啓依允。

병자년¹⁶³⁶ 5월 2일

● 함경도에 기우제 향축을 내려보낸다.

함경 감사의 장계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기우제 향축은 이전에 본도함경도의 장계로 인하여 이미 마련하여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가뭄이 한결같이 더욱 심하다고 또 장계를 올렸으니, 지금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기우제 향축을 다시 마련해서 급히 내려보내 본도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崇禎 9년 5월 1일 우승지 신 목서흠 睦敘欽이 담당하여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 평안도에 기우제 향축과 약물을 내려보낸다.

평안 감사의 장계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기우제 향축은 이전에 본도평안도의 장계로 인하여 이미 마련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병사 유림 柳琳의 장계를 보니, 안주 安州에서는 오랜 가뭄이 든 데다 또 군사들에게 온갖 병이 번갈아 생기는 우환이 있어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본도로 하여금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고, 별단 別單으로 덧붙인 각종 약재는 양의사 兩醫司, 전의감과 해민서로 하여금 넉넉하게 적절히 마련하게 하고, 금

丙子五月初二日

● 咸鏡祈雨香祝下送

一. 咸鏡監司狀啓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祈雨祭香祝，前因本道狀啓，已爲磨鍊下送爲白有如乎。今者旱氣，一向益甚是如，又爲狀啓，今若不得雨，則前頭民事，極爲悶慮是白置。令該司，祈雨祭香祝，又爲磨鍊，急急下送，令本道，連續祈禱，期於得雨事，移文何如？”
崇禎九年五月初一日，右承旨臣睦敘欽次知，啓依允。

● 平安祈雨香祝及藥物下送

一. 平安監司狀啓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祈雨祭香祝段，前因本道監司狀啓，已爲磨鍊下送爲白有如乎。今見兵使柳琳狀啓，安州府中，久旱之餘，又有諸軍等，百病交作之患，極爲可慮。更令本道，虔誠祈禱，期於得雨事，監司處移文爲白乎旡。別單付各種藥材乙良，令兩醫司，優

군禁軍을 따로 정하여 밤낮없이 내려보내 제때 치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승정崇禎 9년 5월 2일 우승지 신 목서흠睦敘欽이 담당하여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數量宜磨鍊，別定禁軍，罔晝夜下送，及時救療，何如？”崇禎九年五月初二日，右承旨臣睦敘欽次知，啓依允。

병자년¹⁶³⁶ 5월 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의 첩정에,

‘이달 1일 개문開門할 때 종일 비가 내렸으므로 본강本江,한강의 평상시 수위를 기준으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 4척 2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丙子五月初三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牒呈內：‘今月初一日，開門量，終日下雨乙仍于，本江常流水基良中，尺量爲乎矣，布帛尺四尺二寸，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啓.

병자년¹⁶³⁶ 5월 13일

● 함경도에 기우제 향축을 내려보내다.

함경 감사의 장계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기우제 향축은 이전에 본도함경도의 장계로 인하여 재삼 마련하여 내려보냈으나,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늘한 바람까지 계속 불어 가뭄이 한결같이 몹시 심하다고 합니다. 만약 끝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할 가뭄이 없어 앞으로 농사가 지극히 애타고 걱

丙子五月十三日

● 咸鏡祈雨香祝下送

一. 咸鏡監司狀啓據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祈雨祭香祝，前因本道狀啓，再三磨鍊下送，而非但尙不得雨，加以淒風連吹，旱氣一向太甚是如爲白乎所，若終不得雨，則無西成之望，前頭民事，極

정입니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기우제 향축을 다시 마련해 내려보내고 본도로 하여금 영험하여 기도할 만한 곳에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송정崇禎 9년 5월 13일 우부승지 신 유백증俞伯曾 이 담당하여 이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병자년¹⁶³⁶ 5월 1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南部} 수표직^{水標直} 이구가중^{李仇加重}의 수본^{手本}에,
‘오늘 묘시^{오전5~7시} 무렵 수표를 살펴보니 평상시 수위에서 7척이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병자년¹⁶³⁶ 5월 2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의 첩정에,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계속 비가 내렸으므로 본

爲渴悶爲白置。令該司，祈雨祭香祝，更爲磨鍊下送，令本道，靈驗可祈處，精備奠物，虔誠祈禱，期於得雨事，移文知委，何如？”崇禎九年五月十三日，右副承旨臣俞伯曾次知，啓依允。

丙子五月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李仇加重手本內：‘今日卯時量，水標看審爲乎矣，常流水良中，七尺加流’是如爲白臥乎事。”啓。

丙子五月二十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牒呈內：‘自今月十八日十九日至，連雨乙仍于，本江常流水基良

강^{本江}의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40여 척이
 들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병자년¹⁶³⁶ 5월 2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이구가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릴 때 수표를 살펴보니 평상시 수위에
 서 9척 5촌이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³⁶ 5월 29일

● 수표에 관한 전교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이번에 홍수가 났는데 물이 불어난 장수^{丈數}를 어찌
 서계^{書啓}하지 않았는가?’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달 20일 한강도 승의 첨정
 에 근거하여 측량한 수심을 당일 입계하였고, 또 24
 일에 남부 수표직 수본에 근거하여 당일 내린 비가
 평상시 물에 비해 9척 5촌이 불어났다고 역시 입계

中, 尺量爲乎矣, 四十餘尺, 加
 漲溢’是如爲白臥乎事.” 啓.

丙子五月二十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李仇加重手本內: ‘今日下雨
 時, 水標看審爲乎矣, 常流水
 良中, 九尺五寸加流’是如爲白
 臥乎事.” 啓.

丙子五月二十九日

● 水標事傳教

一. 曹啓曰: “傳曰‘今番大水,
 水漲丈數, 何不書啓耶’事, 傳
 教矣. 本月二十日, 漢江渡丞
 牒呈據, 水深尺量, 卽日入啓.
 又於二十四日, 南部水標直手
 本據, 當日下雨, 比常時水, 漲
 九尺五寸緣由, 亦已入啓, 而
 厥後更無所報. 故本曹亦不能

하였으나 그 뒤로 다시 보고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조예조 역시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미처 재촉하지 못하여 성상께서 번거롭게 하교하게 하였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⁶³⁶ 5월 30일

● 한강도 승과 수표직을 추고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평상시 홍수가 넘치면 한강도 승과 수표직 등이 흐르는 물의 얕고 깊음을 측량하여 모두 본조에 보고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 번 보고하여 알린 뒤로 이번 홍수 때는 와서 보고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한강도 승과 수표직 등을 담당 관사로 하여금 엄하게 추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⁶³⁶ 6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김이남^{金二男}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릴 때 수표를 살펴보니 평상시 수위에

致察，未及催促來報，至勤下教，惶恐敢啓。”傳曰：“知道。”

丙子五月三十日

● 漢江渡丞及水標直推考

一. 曹啓曰：“常時大水漲溢，則漢江渡丞·水標直等，尺量水流淺深，具報本曹，自是舊例。而當初一番報知之後，今番大水，則不爲來報，極爲過甚，漢江渡丞·水標直等，令攸司，從重推考，何如？”傳曰：“依啓。”

丙子六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金二男手本內：‘今日下雨時，水標看審爲乎矣，常流水良

서 4척 5촌이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병자년¹⁶³⁶ 6월 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의 첩정에,
 ‘이번 6월 6일 문을 열 때를 시작으로 종일 계속 비
 가 내렸으므로 평상시 수위에서 28척 2촌이 불어났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³⁶ 6월 8일

● 기우제 비망기

예조의 단자에,
 “비망기에,
 ‘산을 에워싸는 장마가 한 달이 넘도록 그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고 농사에 해가 되어 우환이 몹시
 크다. 농사를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도 편안하지 않
 으니, 담당 관사는 태일하지 말고 기청제^{祈晴祭}를 정
 성껏 설행하라.’
 하였습니다. 금년의 장마는 가까운 예전에 없던 일

中, 四尺五寸加流’是如爲白臥
 乎事.” 啓.

丙子六月初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牒
 呈內: ‘今六月初六日, 開門時
 爲始, 終日連雨乙仍于, 常流
 水良中, 二十八尺二寸, 加漲’
 是如爲白臥乎事.”

丙子六月初八日

● 祈晴備忘

一. 曹單子: “備忘記: ‘懷襄淫
 雨, 閱月不霽, 傷人害稼, 爲患
 甚鉅, 言念農事, 寢食不寧. 有
 司其不卜日祈晴, 而虔誠設行’
 事, 傳教矣. 今年霖雨, 近古所
 無, 損田害穀, 罔有記極. 臣
 曹亦以此憂慮, 將欲請行祈晴
 祭, 而秋節尙遠, 冀或開霽矣.

이니, 밭이 손상되고 곡식이 해를 입은 것이 끝이 없습니다. 신의 조^曹예^佐 또한 이 점을 우려하여 기청제를 거행하도록 청하러 하였으나 가을이 아직 멀어 혹시라도 날이 개기를 바랐습니다. 성상의 말씀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지극히 합당합니다. 오는 9일에 전례대로 사문영제^{四門營祭}를 설행하고 3일 뒤에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기청제 축문을 별도로 짓기로 결정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요사이 장마의 피해가 가뭄보다 심하여 모든 곡식이 물에 잠겨 백성의 목숨이 끊어지려 합니다. 성상께서 측은히 여기고 유념하여 이렇게 택일하지 말고 기청제를 지내라고 명하셨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다만 기청제 축문은 등록^{謄錄}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는데, 전례대로 고하면 하늘을 감동시킬 가망이 없을 듯합니다. 이번 기청제는 가을이 된 뒤에 범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니, 축문을 별도로 지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응동^{朴應同}의 수본에, ‘이번 6월 7일 밤에 비가 내릴 때 수표를 살펴보니

聖教及此，極爲允當。來初九日爲始，依前例，四門營祭設行，三日而止，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祈晴祝文別爲定奪

一. 政院啓曰：“近日淫雨之害，甚於旱節，百穀漂沈，民命將絕。自上惻然軫念，有此不卜日祈晴之命，甚盛舉也。但祈晴祭祝文，當用謄祿所載，循例所告，似無感格之望。今此祈晴，既非秋後泛常之事，祝文別製設行，何如？”傳曰：“依啓。”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朴應同手本內：‘今六月初七日夜，下雨時，水標看審爲乎矣，

평상시 수위에서 5척이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병자년¹⁶³⁶ 6월 1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김이남^{金二男}의 수본에,
 ‘오늘 인시오전^{3~5시}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이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³⁶ 6월 21일

● 기청제

예조의 단자에,
 “금년의 수재^{水災}는 가까운 옛날에 없던 일로 각종
 곡식이 전부 상했습니다. 며칠 전 성상께서 백성을
 유념하여 기청제를 설행하여 겨우 날이 개었으나,
 그제로부터 장마가 또 내려 겨우 남은 곡식도 장차
 모두 해를 입게 되었으니 앞으로 농사가 지극히 걱
 정스럽습니다. 비록 가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규례
 에 구애받지 말고 택일하지 말고 오는 23일을 시작
 으로 사문영제^{四門營祭}를 다시 설행하여 3일 뒤에 중

常流水良中, 五尺加流’是如爲
 白臥乎事.” 啓.

丙子六月十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金二男手本內: ‘今日寅時量下
 雨, 水標看審爲乎矣, 五尺加
 流’是如爲白臥乎事.” 啓.

丙子六月二十一日

● 祈晴祭

一. 曹單子: “今年水災, 近古
 所無, 各種禾穀, 盡爲傷損.
 頃日自上軫念民生, 設行祈晴
 祭, 纔見開霽, 而自再昨淫霖
 又作, 僅存禾穀, 亦將盡害, 前
 頭民事, 極爲可慮. 雖非秋節,
 不拘常規, 不卜日, 來二十三日
 爲始, 四門營祭更爲設行, 三
 日而止, 何如?” 啓依所啓施

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⁶³⁶ 7월 2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성경^{成景}의 수본에,

‘이달 27일 밤에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이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기묘년¹⁶³⁹ 4월 15일

● 도랑을 보수하고 도로를 청소하다.

예조의 단자에,

“요사이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가뭄이 몹시 심하
여 지금 밀과 보리의 이삭이 꽤는 시기인데 점점 시
들어 마른다고 하니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전례대
로 도랑을 보수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을 우선 거행하라고 한성부에 공
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行爲良如教.

丙子七月二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成景
手本內：‘本月二十七日，夜間
下雨，水標看審，則四尺五寸
加流’是如爲白臥乎事。” 啓.

己卯四月十五日

● 修溝壑·淨阡陌

一. 曹單子：“近日淒風連吹，
旱氣頗甚，當此兩麥發穗之
時，漸至焦枯云，極爲可慮. 依
例修溝壑·淨阡陌·掩骼骨等
事，爲先舉行事，漢城府良中，
移文知委，何如？” 啓依所啓
施行.

기묘년¹⁶³⁹ 4월 16일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요사이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비 내릴 조짐은 전혀 없는데, 이삭이 괜 밀과 보리는 점점 시들고 아직 이삭이 패지 않은 것은 말라서 오그라드니, 큰 흉년이 든 뒤라 실망한 농민이 지극히 걱정스럽 습니다.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풍운 뇌우·산천·우사 등지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 설행하라고 공문을 보내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묘년¹⁶³⁹ 5월 1일

●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내다.

예조 낭청이 대신의 뜻으로 아뢰기를,

“가뭄의 재해가 이렇게 심하여 밀과 보리가 전부 시 들고 밭두둑이 어지러이 갈라졌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 으니, 여러 곳의 기우제를 연속하여 설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 단오제^{端午祭}와 겹쳐 해당 관사의 힘이 부족하니, 형세상 단오제를 지낸 뒤에 설행하 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시일이 점차 지체되어 비록 비가 내리더라도 제때 미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지금 백성의 목숨이 위급하여 뭇사람과

己卯四月十六日

● 初次

一. 曹單子：“近日淒風連吹，全無雨徵，旱氣頗甚，兩麥發穗者，漸至枯損，其未發穗者，旋即乾縮，大無之餘，農人失望，極為可慮。初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風雲雷雨·山川·雲祀等處，不卜日，來十八日設行事，移文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己卯五月初一日

● 遣大臣祈雨

一. 曹郎廳以大臣意啓曰：“旱災此極，兩麥盡枯，田疇亂拆，前頭若數日不雨，則民事更無可望。諸處祈雨祭，不可不連續設行，而適與端午祭相值，該司事力不逮，勢將過後設行云。若爾則時日漸差，雖或得雨，恐無所及。當此民命孔急，上下焦煎之日，常例恐不可拘，社稷·宗廟，以端午前遣大臣

아랫사람이 애태우는 때에 일상적인 규례에 구애받을 수 없을 듯합니다. 사직·종묘는 단오 전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설행하고, 그 밖의 여러 곳은 추 후에 전례를 살펴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대신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사직·종묘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전례대로 택 일하지 말고 이번 5월 3일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묘년¹⁶³⁹ 5월 4일

● 친제를 물러 지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가뭄의 재해가 매우 심하여 이달 8일에 북교·양진·덕진·감악산·송악산과 동자·무녀의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을 입계하였습니다. 이번 7일 사직 친제社稷親祭는 번거로운 듯하니 우선 비가 내리는지 보아 물러 행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行祭，而其他諸處，隨後照例舉行，恐爲得宜，敢啓。”傳曰：“依啓。”

● 再次

一. 曹單子：“大臣啓辭，社稷·宗廟，遣大臣祈雨祭設行事，啓下矣。依前例，不卜日，今五月初三日設行事，各該司良中，移文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己卯五月初四日

● 親祭退行

一. 曹啓曰：“旱災太甚，欲於今月初八日，北郊·揚津·德津·紺岳·松岳山及童子·巫女祈雨設行事，入啓矣。今初七日社稷親祭，則似涉煩黷，姑觀雨候，退行之意，敢啓。”傳曰：“知道。”

● 친제

예조의 단자에,

“예문禮文에,

‘대사大祀, 왕이 지내는 제사의 경우, 제사 7일 전에는 집사 관執事官과 제사에 참석하는 종친·문무백관이 서계誓戒하고, 제사 4일 전에는 아헌관亞獻官 이하가 의식을 연습한다. 만약 빌거나 고할 일이 절박하면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고 하룻밤만 청재淸齋한다.’

하였습니다. 이번 사직 기우 친제社稷祈雨親祭는 이달 7일로 날을 잡아 입계하였으니, 비록 서계는 하지 않더라도 의식 연습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달 5일에 아헌관 이하는 용복戎服 차림으로 의정부에서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친제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재계하는 일을 아웁니다. 이번 5월 7일 사직 기우 친제를 거행할 때, 전하는 별전別殿에서 하루 동안 산재散齋하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致齋하되,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사에서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는 오직 제향祭享에 관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라고 하셨으니 삼가 갖추어 아뢰고 엎드려 교지를 기다립니다. 삼가 아웁니다.”

● 親祭

一. 曹單子：“禮文內：‘大祀，前祭七日應行事，執事官及陪祭宗親·文武百官誓戒，前祭四日，亞獻官以下肄儀，若祈告切迫，則不卜日設行，只清齋一宿亦爲白有置。’今此社稷祈雨親祭，今月初七日推擇入啓，而雖不行誓戒，肄儀則不可不設行。今月初五日，亞獻官以下戒服，議政府良中，依禮文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

● 親祭齋戒

一. 曹單子：“啓爲齋戒事。今五月初七日，行社稷祈雨親祭教是時，殿下散齋一日於別殿，致齋一日於享所教是白乎矣，散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事事，依禮文舉行使內良如教諭乃，謹具啓聞，伏候教旨。謹啓。”

하였다.

●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요사이 비록 2차 기우제를 지냈으나 가뭄이 몹시 심합니다. 일전에 보슬비가 내렸으나 먼지를 적시기도 부족한데 바로 날이 개고 매서운 벌이 찌는 듯하여 밀과 보리가 말라 시들고 밭두둑은 거북등처럼 갈라졌으니 앞으로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 沈虎頭에 이번 5월 28일 예문대로 제관을 가려 정하고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묘년¹⁶³⁹ 5월 24일

● 저자도 등의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대신의 계사로 인하여 기우제를 해당 조로 하여금 차례로 설행하게 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기우제는 전례대로 택일하지 말고 이번 5월 28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 등 3곳에 중신重臣을 보내 설행하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 역시 같은 날 설행하겠습니다.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 祈雨

一. 曹: “近日雖再次祈雨, 旱氣太甚, 日昨微雨, 不足以浥塵, 旋即開霽, 烈日如烘, 兩麥焦枯, 田疇龜拆, 前頭民事, 極爲可慮. 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今五¹月二十八日, 依禮文, 擇定祭官, 精備奠物, 虔誠祈禱, 期於得雨事, 各該司良中, 移文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

己卯五月二十四日

● 楮子島等祈雨

一. 曹單子: “大臣啓辭, 祈雨祭, 令該曹, 以次設行事, 啓下矣. 祈雨祭, 依前例, 不卜日, 今五月二十八日, 楮子島·龍山江·冠岳山等三處, 遣重臣設

1 五: 저본에는 ‘四’.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전례대로 차출하고 배정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京畿監司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전부터 가뭄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입추 이후에는 정전正殿으로 돌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며 피고皮鼓, 가죽 북을 치는 등의 일을 계청啓請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을이 되었으나 여러 곳의 기우제를 곧 거행할 것이니, 정전을 피하고 평상시의 음식 가짓수를 줄이며 북을 치지 않는 등의 일을 우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진년¹⁶⁴⁰ 6월 4일

● 무녀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동활인서東活人署의 첩정에,

‘본서동활인서의 명부에 등재된 무녀巫女는 노약자를 합

行, 朴淵·禾積淵·渡迷津, 辰岩焚柴, 亦爲同日設行爲白乎矣, 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犧牲, 令本道, 依前例差定, 虔誠祈禱, 期於得雨事, 各該司及京畿監司處, 行移, 何如?” 啓依所啓施行.

● 減膳

一. 曹啓曰: “自前旱災時, 入秋以後, 則還御正殿·復常膳·擊皮鼓等事, 啓請舉行矣. 今則秋節雖入, 諸處祈雨, 方爲舉行, 避正殿·減常膳·勿擊鼓等事, 姑爲仍行, 何如?” 傳曰: “允.”

庚辰六月初四日

● 巫女

一. 曹單子: “節呈東活人署牒呈內: ‘本署案屬巫女, 老迷弱并十名, 今此祈雨時, 無以成

하여 모두 10명으로 이번 기우제 때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니, 작년의 전례대로 합쳐서 한 곳에서 설행하겠습니다.’

라고 첩정을 올렸습니다. 동활인서의 무녀 10명만으로는 형세상 설행하기 어려우니, 보고한 대로 서활인서西活人署와 합쳐서 한 곳에서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진년¹⁶⁴⁰ 6월 16일

● 시장을 옮기다.

예조의 단자에,

“누차 기우제를 거행하였으나 아직도 비가 내릴 조짐이 없어 참혹한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니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가을이 이미 다가왔으니 시장을 옮기고 문을 닫는 등의 일은 비록 미처 거행하지 못하더라도 중앙 토룡제中央土龍祭는 관상감의 택일대로 18일에 만들고 19일에 설행하여 2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진년¹⁶⁴⁰ 6월 20일

● 기우제의 향족을 전달하는 것을 중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形. 依上年例, 合一處設行’事牒呈是白有亦, 東活人署, 十名巫女叱分, 勢難設行, 依所報, 合西活人署, 一處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庚辰六月十六日

● 遷市

一. 曹單子: “累次祈禱, 尙無雨徵, 旱乾之慘, 愈往愈甚, 極爲渴悶. 秋節已迫, 遷市·閉門等事, 雖未及舉行, 中央土龍祭, 依觀象監所擇, 十八日造成, 十九日設行, 二日而止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庚辰六月二十日

● 祈雨傳香姑徐

一. “政院啓曰: ‘雨勢如此, 仍

‘비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은데 그대로 기우제의 향을 전달하는 것은 성실하지 않은 듯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향을 전달하지 말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입추 이후의 기우제는 형세상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지금 비록 한 번 비가 쏟아지더라도 메마른 곡식이 소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한 기우제를 중지하는 것도 온당치 않으니, 이전처럼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계하하였다.

爲祈雨祭傳香，似不誠實，何以爲之？傳曰：‘姑勿傳香’事，傳教矣。立秋後祈雨，勢出於不得已也。即今雖得一應需澤，亦未洽於蘇枯之望，已定祈禱，中止未安，仍前設行，何如？”啓姑徐爲良如教。

신사년¹⁶⁴¹ 4월 8일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기근이 겹친 뒤인데 올봄의 가뭄이 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 비가 조금 내렸으나 곧 개었으니 밀과 보리가 손상되어 다시 무성해질 형편이 아닙니다. 밭 갈고 파종하는 시기를 놓쳤으니, 어찌 추수할 가망이 있겠습니까. 백성의 일이 지극히 걱정스럽고 다급하여 나라의 근심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례대로 도랑을 보수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을 한성부로 하여금 규례

辛巳四月初八日

● 初次

一. 曹單子：“連歲凶荒，飢饉荐臻之餘，今春旱乾，又至於此。頃日雖得小雨，旋即開霽，兩麥傷損，更無茂盛之勢，耕種失時，寧有西成之望？民生之事，極爲悶迫，國家之憂，有不可言。依前例，修溝壑·淨阡陌·掩骼等事，令漢城府，依例舉行爲白乎矣，三角山·木覓山·漢江·風雲雷雨·

대로 거행하게 하되, 삼각산·목덕산·한강·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2일에 설행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사년¹⁶⁴¹ 4월 13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로도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비 내릴 조짐이 조금도 없으니 앞으로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에 2차 기우제를 오는 16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사년¹⁶⁴¹ 4월 19일

● 기우제에 대해 물어서 아뢰다.

예조의 단자에,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재차 거행한 뒤에 어찌하여 또 계품하지 않았는가? 물어서 아뢰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2차 기우제는 16일에 거행했

山川·雩祀等處, 初次祈雨祭, 不卜日, 來十二日設行, 虔誠祈禱, 期於得雨事, 移文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巳四月十三日

● 再次

一. 曹單子: “初次祈雨之後, 淒風連吹, 小無雨徵, 前頭民事, 極爲可慮. 社稷·宗廟·北郊等處, 再次祈雨祭, 來十六日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巳四月十九日

● 祈雨問啓

一. 曹單子: “傳曰: ‘祈雨祭再行之後, 何不又爲啓稟耶? 問啓’事, 傳教矣. 再次祈雨祭, 行於十六日, 今日又以三次設行之意, 單子纔呈於政院, 而

고, 오늘은 또 3차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뜻으로 승정원에 단자를 방금 올렸습니다. 지금 하교를 받드니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 이후 아직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더욱 몹시 찌는 듯하니, 밀과 보리가 영글지 않고 밭갈고 파종할 때를 놓쳐 백성의 일이 참으로 망극합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에 오는 23일 예문대로 제관을 선정하고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사년¹⁶⁴¹ 4월 22일

● 4차 기우제를 여러 곳에서 함께 거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한발이 참혹하기가 이미 지극히 위험한 지경에 다다랐으니, 백성의 애타고 걱정하는 모습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기우제를 이미 2차까지 거행했고, 장차 23일에 3차를 설행하는데, 나머지 여러 곳

今承下教，不勝惶恐，敢啓。”
傳曰：“知道。”

● 三次

一. 曹單子：“再次祈雨後，尙無點雨，烘燥益甚，兩麥不成，耕種失時，民生之事，誠爲罔極。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來二十三日，依禮文，擇定祭官，精備奠物，虔誠祈禱，期於得雨事，移文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辛巳四月二十二日

● 四次諸處並舉

一. “曹單子：‘今茲旱魃之慘，已至十分地頭，民生渴悶之狀，寧有極哉？祈雨祭，既已再行，將於二十三日，三次設行，其餘諸處，自當據例，次

도 전례에 근거하여 차례대로 거행해야 합니다. 지금 사헌부의 계사를 보니 실로 사리에 합당합니다. 종묘·사직은 대신^{大臣}을 보내고 대제학으로 하여금 제문을 지어 올리게 하여 오는 24일 설행하여 친히 기도하는 예를 대신하겠습니다. 북교·용산강은 대신을 보내고, 한강·삼각산·목멱산은 근시를 보내 역시 같은 날 설행하겠습니다. 저자도·관악산·도미진·양진은 오는 25일 설행하고, 박연·화적연·송악산·감악산은 오는 27일 설행하되, 모두 중신을 보내 정성을 다해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는 등의 일을 모두 전례대로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기도에 감응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데 달려 있으니, 관직의 높고 낮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마련한 3차 기우제를 그대로 설행하는 것이 마땅한 듯하다.’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가뭄을 만나 기우제를 지내는 일은 원래 시행해야 하는 전례와 절차가 있습니다. 가뭄 재해의 참혹함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경고가 절실하고 백성의 굶주림이 이미 닥쳤으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수양하고 반성하는 일 외에 명산대천에 두루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니, 사헌부

第舉行，而今見憲府啓辭，實合事宜。宗廟·社稷，則遣大臣，令大提學，祭文製進，來二十四日設行，以代親禱之禮。北郊·龍山江，則遣大臣，漢江·三角·木覓山，則遣近侍，亦於同日設行。楮子島·冠岳山·渡迷津·楊津，則來二十五日設行。朴淵·禾積淵·松岳山·紺岳山，來二十七日設行。並遣重臣，盡誠祈禱，期於得雨宜當。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等事，皆以前例，移文知委，何如?’ 傳曰：‘凡祈禱感應，在於致誠，不在於官之高下，已磨鍊三次祭，仍爲設行，似當’事，傳教矣。凡遇旱祈雨之事，自有應行前例節次，而旱災之慘，未有甚於今日，皇天之譴告斯切，民生之飢餓已迫，上下所當惕然恐懼修省之外，名山大川，遍行祈禱之舉，宜無所不用其極。憲府之啓，亦出於此，故臣不拘常規，敢爲啓

의 계사도 이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지 않고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3차 기우제를 위해 이미 향을 받았으니 내일 거행할 것인데, 성상께서 지금 편찮으시므로 비록 친제를 지내고 싶어도 형세상 할 수 없습니다. 종묘·사직에 따로 대신을 보내 대신 지내게 하고, 복교에 중신을 보내 기우제를 거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이전에 계청한 날짜에 우선 설행하고 나머지 여러 곳은 전례를 참고하여 다시 마련하여 아뢰어 계속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기우제 날짜를 물러 거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조의 헌관 망단자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24일에 기우제를 지내면 급박한 듯하다. 25일에 지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성상의 전교대로 25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稟矣。三次祈雨祭，已爲受香，明日將行，而自上方在違豫之中，雖欲行親祭，勢不可行，宗廟·社稷，別遣大臣代行，及北郊，遣重臣行祭之事，不可少緩，依前啓請之日，爲先設行，其餘諸處，則參以前例，更爲磨鍊啓達，連續舉行，何如?”

● 祈雨日子退行

一. 曹單子：“以史曹獻官望單子，傳曰：‘二十四日行祭，似爲窘迫，二十五日爲之，似當矣’事，傳教矣。依上教，二十五日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신사년¹⁶⁴¹ 4월 25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와 사직·종묘에 지내는 대신의 별제를 이어서 거행하였으나 소나기가 잠깐 왔다가 바로 개어 농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4차 기우제를 오는 29일에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라고 경기 감사에게 모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사년¹⁶⁴¹ 4월 27일

●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비망기에,

“내가 덕이 없이 신민의 위자리를 맡아 총명함은 간사함을 살피지 못하고 지혜로움은 어지러움을 중식시키지 못하여 한갓 가뭄이 들고 서리가 내리는 재해만 초래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쳤다. 밤낮으로 전궁궁하여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편안하지 않다. 지금 4월에 다시 가뭄의 변고를 만나 조용히 허물을 반성하니 죄가 실로 나에게 있어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하지만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다. 오늘부터 정전을 피하고 더욱 자신을 책망하며 허물을 생

辛巳四月二十五日

● 五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及社稷·宗廟大臣別祭，相繼舉行，而驟雨乍來，旋即開霽，民事罔知所爲。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嶽山等處，四次祈雨祭，來二十九日設行爲白乎矣，典祀官·兼大祝，自京下送。執事官·犧牲，令本道差定進排事，京畿監司處，并以行移，何如？” 啓依所啓施行。

辛巳四月二十七日

● 避正減膳

一. 備忘記：“予以否德，托乎臣民之上，明不能燭邪，智未能自亂，徒召旱霜之災，以貽民生之害，日夜戰兢，寢食不安。而今當正陽之月，復罹早暵之變，靜省咎懲，罪實在予，痛心覩面，罔知攸濟。自今日避正殿，益加責躬思愆。承旨其代予草教，廣求直言，令該曹，減膳·禁酒等事，另議舉

각할 것이다.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의 초고를 작성하여 널리 바른말을 구하고, 해당 조로 하여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하는 등의 일을 각별히 의논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정전을 피하다.

예조의 단자에,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등의 일을 오늘부터 성상의 하교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복을 치지 않는 등의 일도 거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사년¹⁶⁴¹ 4월 29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계목에,
“기우제를 연달아 거행하였으나, 비 내릴 조짐이 조금도 없어 참혹한 가뭄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앞으로 농사가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오는 5월 4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 등 3곳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 역시 같은 날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은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 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여

行事.”

● 避殿

一. 曹單子：“避正殿·減膳等事，自今日依上教，當爲舉行，而勿擊鼓等事，亦爲舉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辛巳四月二十九日

● 六次

一. 曹啓曰：“祈雨祭連次舉行，而小無雨徵，旱乾之慘，日以益甚，前頭民事，極爲渴悶。來五月初四日，楸子島·龍山江·冠岳山等三處，遣重臣設行，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亦爲同日設行爲白乎矣，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

진배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를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승덕崇德 6년¹⁶⁴¹ 4월 29일 좌승지 신 김옥金垆이 담당하여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신사년¹⁶⁴¹ 5월 5일

● 7차 병류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 이후 비록 비가 조금 내렸으나 곧 개어 흠에 겨우 몇 치만 스며들었습니다. 밭은 소생할 기세가 있는 듯하나 논은 여전히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이앙移秧·제초除草 등의 일을 결코 기대할 수 없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근시近侍를 보내 이달 8일에 설행하되, 민간의 병류도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되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를 내리게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미년¹⁶⁴³ 7월 18일

● 기청제

승정원의 계사에,

事官·犧牲, 令本道差定進排, 虔誠祈禱, 期於得雨事, 各該司及京畿監司處, 移文知委, 何如?” 崇德六年四月二十九日, 左承旨臣金垆次知, 啓依允.

辛巳五月初五日

● 七次屏柳

一. 曹單子: “六次祈雨之後, 雖得小雨, 旋即開霽, 入土纔數寸, 旱田似有回蘇之勢, 水田則龜拆如前, 移秧·除草等事, 決無所望, 前頭民事, 極爲可慮. 風雲雷雨·山川·雩祀, 遣重臣, 三角山·木覓山·漢江, 遣近侍, 今月初八日, 設行爲白乎矣, 閭閻屏柳, 同日爲始, 三日而止, 虔誠祈禱, 期於得雨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

癸未七月十八日

● 祈晴

一. 政院啓辭: “因禮曹啓辭,

“예조의 계사로 인하여 내일 기청제를 지내라고 운허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연일 날이 맑아 하늘은 높고 땅은 시원하니,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성껏 하늘을 섬기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오늘 향을 전달하는 것은 우선 정지하고 비가 다시 내리면 다시 감히 여쭙어도 무방합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⁶⁴⁴ 4월 13일

● 이미 향을 받았으니 그대로 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에,

‘전교하기를, 「기우제의 향^香을 이미 전달하였는가? 아직 향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물러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기우제의 향축^{香祝}은 아침에 비가 내리던 초기에 이미 전하였습시다. 비가 만약 종일 그치지 않으면 그대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성실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제관이 이미 제사 지낼 곳에 나아갔으니 중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운허한다.’

하셨습니다. 제관이 이미 향을 받고 나아갔고, 희생

明日祈晴祭, 允下, 而連日清明, 天高地涼, 仍而行祭, 似非事天以誠之道. 今日傳香, 姑爲停止, 雨勢復作, 更爲敢稟無妨, 惶恐敢啓.” 傳曰: “依啓.”

甲申四月十三日

● 既已受香仍行

一. 曹啓曰: “政院啓辭: ‘傳曰: 「祈雨祭, 已爲傳香耶? 如未傳香, 退行宜當」事, 傳教矣. 祈雨祭香祝, 已傳於朝者下雨之初矣. 雨勢若終日不止, 則仍爲祈雨, 似未誠實, 而祭官既詣祭所, 中止亦涉未安, 令禮曹, 定奪, 何如?’ 傳曰: ‘允’事, 傳教矣. 祭官既已受香進去, 犧牲亦必宰處, 雨勢且止, 遽爲中止, 事涉未安, 仍爲設行, 何如?’ 傳曰: “依啓.”

도 잠을 곳에 있는데 비가 그쳤다고 갑자기 중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대로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⁶⁴⁴ 5월 5일

● 무녀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동서활인서의 첩정에,

‘지금 병자를 치료하는 때에 무녀들이 번갈아 간호하는데, 이번 기우제를 지낼 때 무녀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적은 수의 무녀가 치료를 그만두고 기도할 수 없으니, 양 활인서를 합하여 한 곳에서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⁶⁴⁵ 4월 3일

● 1차 기우제

예조의 계사에,

“사헌부 행 대사헌 이경석^{李景奭}, 장령 오빈^{吳飴}의 계사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하기가 이미 극에 달하였는데, 또 전염병과 천연두가 겹쳐 서울과 지

甲申五月初五日

● 巫女

一. 曹單子: “節呈東西活人署牒呈內: ‘當此病人救療, 巫女等相替看護, 而今此祈雨時, 巫女亦當祈禱’云. 數少巫女, 不可廢救療祈禱, 則合兩署一處設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乙酉四月初三日

● 初次

一. 曹啓辭: “司憲府行大司憲李景奭·掌令吳飴啓辭: ‘連年失稔, 民生之窮困已極, 而又重之以厲疫痘疾, 中外之人, 死亡滔滔. 今復不幸, 纔經督

방 사람 중에 죽은 자가 많습니다. 지금 또 불행하게 겨우 독촉하여 운송하는 큰 부역을 마치자마자 이어서 참혹한 가뭄을 만났습니다. 빗방울이 잠깐 뿌렸다가도 곧 깨끗이 그치고 서늘한 바람이 날마다 불어 샘이 마르고 누런 먼지가 들판에 가득하여 보릿가을을 바라기 어려워 농부가 흐느껴 우니 농사가 이미 급합니다. 이런 때를 만나 기우제를 거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별도로 제관을 가려 정성껏 기도하는 일을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계품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요사이 가뭄의 재해가 참으로 절실하고 다급합니다. 여러 도의 장계가 비록 전부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서울이 이와 같으니 지방은 상상할 만합니다. 기우제의 설행은 입하立夏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니, 대간臺諫의 계사대로 삼각산·목덕산·한강·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일에 우선 설행하며, 도랑을 보수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을 한성부로 하여금 급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運之大役，繼遭亢旱之孔慘，雨點乍灑，旋即杲杲，淒風日吹，泉澤枯涸，黃塵滿野，麥秋難望，農夫啜泣，民事已急。當此之際，祈雨之舉，不可小緩，別擇祭官，虔誠祈禱事，請令禮官，啓稟施行，何如?’ 傳曰：‘依啓’事，傳教矣。近日亢旱之災，誠爲切急，諸道狀啓，雖未齊到，京中如此，外方可想。祈雨祭設行，不必拘於立夏之節，依臺諫啓辭，三角山·木覓山·漢江·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初次祈雨祭，不卜日，來初五日，爲先設行，而修溝壑·淨阡陌·掩骼等事，令漢城府，急急舉行，何如?” 傳曰：“允。”

을유년¹⁶⁴⁵ 4월 12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 바로 날이 개고 비 내릴 조짐이 조금도 없으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부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에 2차 기우제를 오는 16일 설행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⁶⁴⁵ 4월 21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 이후 비록 비가 조금 내렸으나 곧 날이 개고 아직도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이달 23일 예문대로 제관을 선발하고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乙酉四月十二日

● 再次

一. 曹單子：“初次祈雨之後，旋即開霽，小無雨徵，淒風連吹，前頭民事，極為可慮。社稷·宗廟·北郊等處，再次祈雨祭，來十六日設行，虔誠祈禱，期於得雨事，移文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乙酉四月二十一日

● 三次

一. 曹單子：“再次祈雨之後，雖得小雨，旋即開霽，尙無雨徵。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今月二十三日，依禮文，擇定祭官，精備奠物，虔誠祈禱，期於得雨事，移文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을유년¹⁶⁴⁵ 4월 23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이미 설행하였으나 비가 내릴 조짐이 조금도 없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부니, 지금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 등의 장소에 기우제를 오는 29일에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경기 감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⁶⁴⁵ 5월 6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연달아 거행하여 비록 비가 뿌렸으나 곧 날이 개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가뭄이 몹시 심하여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5월 10일에 저자도·용산강·관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보내 설행하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焚柴} 또한 같은 날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

乙酉四月二十三日

● 四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已爲設行, 而小無雨徵, 淒風連吹, 此時若不得雨, 前頭民事, 極爲可慮. 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等處祈雨祭, 來二十九日設行爲白乎旆,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令本道差定進排, 虔誠祈禱, 期於得雨事, 京畿監司處, 并以行移, 何如?” 啓依所啓施行.

乙酉五月初六日

● 五次

一. 曹單子: “祈雨祭連次舉行, 而雖得灑雨, 旋即開霽, 淒風連吹, 旱乾太甚, 民事極爲悶慮. 今五月初十日, 楮子島·龍山江·冠岳山等處, 遣重臣設行, 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 亦爲同日設行爲白乎矣, 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 典祀官·兼大祝·祭物,

하며 진배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⁶⁴⁵ 5월 9일

● 가뭄의 재해로 인한 여제

비변사 낭청이 대신의 뜻으로 아뢰기를,
 “겨우내 눈이 내리지 않았고 봄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아 밭두둑이 거북등처럼 갈라져 호미가 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맥이 전부 마르고 우물 역시 말랐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찬 이슬도 내려 여름이 반이 지나려 하는데 날씨가 춥습니다. 5차 기우제를 지냈으나 비가 내릴 기약이 전혀 없어 앞으로의 농사를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가뭄의 재해를 만나면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는 일이 있었으니, 왕자^{王者}가 백성을 위해 힘을 적에는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속히 담당 관사에 명을 내려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고 성상의 뜻을 여쭙어 관대히 처결하고, 헌관^{獻官}을 선발하여 여제^{厲祭}를 설행하소서. 이어서 신들을 파직하여 음양을 조화시키지 못한 죄를 다스리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고 제사를 설행하는 등의 일

自京下送，執事官犧牲，令本道差定進排，虔誠祈禱，期於得雨事，各該司及京畿監司處，移文，何如？” 啓依所啓施行。

乙酉五月初九日

● 旱災厲祭

一. 備邊司郎廳,² 以大臣意啓曰: “經冬無雪, 春夏不雨, 田疇龜拆, 鋤不入土, 以至泉脉盡枯, 井水亦渴, 淒風長吹, 寒露亦下, 夏月將半, 日候寒冷, 五次祈雨, 邇無雨期, 前頭民事, 言念氣塞. 自前如遇如此旱災, 則亦有審理冤獄之舉, 蓋王者勤民, 無所不用其極故也. 今宜亟命有司, 審理冤枉, 稟旨疏決, 擇差獻官, 設行厲祭, 仍爲策罷臣等之職, 以治不能變理之罪, 不勝幸甚.” 傳曰: “審理設祭等事, 依啓.”²

2 備邊司郎廳: 저본에는 ‘曹啓辭備邊司郎廳’. ‘曹啓辭’를 연문으로 보아 삭제.

은 아뢰 대로 하라.”
하였다.

● 여제

예조의 단자에,
“대신의 계사로 인하여, 이전부터 이와 같은 가뭄의
재해를 만나면 헌관을 선발하여 여제를 설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기우제 제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따로 짓게 하고, 중신^{重臣}을 보내 오는 13일 설행하
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아뢰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⁶⁴⁵ 5월 14일

● 6차 석척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여러 곳의 기우제를 이미 전부 거행하여 얼마 전 비
가 내렸으나 바로 날이 개고 가뭄이 더욱 심해져 앞
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사직·종
묘에 중신^{重臣}을 보내 이번 23일 설행하고, 모화관^{慕華館}
의 석척 기우제^{蜥蜴祈雨祭}도 역시 같은 날 시작하
여 3일 뒤에 중지하되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여 기
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 厲祭

一. 曹單子：“因大臣啓辭。自
前如遇旱災，則擇差獻官，設
行厲祭事，啓下矣。祈雨祭祭
文，令藝文館別撰，遣重臣，
來十三日設行，虔誠祈禱，期
於得雨事，各該司良中，移文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

乙酉五月十四日

● 六次蜥蜴

一. 曹單子：“諸處祈雨，已盡
舉行，而頃雖得雨，旋即開霽，
旱乾益甚，前頭民事，極爲
渴悶。社稷·宗廟，遣重臣，今
二十三日設行爲白乎矣，慕華
館蜥蜴祈雨乙酉置，亦於同日
爲始，三日而止，至誠祈禱，期
於得雨事，移文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⁶⁴⁵ 5월 15일

● 7차 무녀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금년 가뭄의 재해가 참혹하기가 갈수록 심해지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송악산·감악산·오관산에 중신^{重臣}을 보내 이달 30일에 설행하되, 송악산·감악산·오관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게 하겠습니까. 무녀 기우제 역시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되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모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해년¹⁶⁴⁷ 4월 6일

● 1차 기우제

예조의 계사에,

“전교하기를,

‘가뭄의 재해가 이와 같은데 해당 조에서 기우제를 청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물어서 아뢰라.’

乙酉五月十五日

● 七次巫女

一. 曹單子: “今年旱災慘酷, 愈往愈甚, 前頭民事, 極爲渴悶. 松岳山·紺岳山·五冠山, 遣重臣, 今月三十日設行爲白乎矣, 松岳山·紺岳山·五冠山,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犧牲, 令本道差定進排爲乎旅, 巫女祈雨乙良置, 亦於同日爲始, 三日而止, 至誠祈禱, 期於得雨事, 各該司及京畿監司處, 并以行移, 何如?” 啓依所啓施行.

丁亥四月初六日

● 初次祈雨

一. 曹啓辭: “傳曰: ‘旱災若此, 而該曹不請祈雨, 此何故耶? 問啓’事, 傳教矣. 去三月念後, 微雨暫下之後, 旋即杲杲, 凄風連吹, 亢炎孔慘, 雨徵無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이후 보슬비가 잠시 내린 뒤 곧 날이 개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가뭄이 참혹한데 비 내릴 조짐은 기약이 없어 농사가 애타고 급박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기우제를 지내자는 뜻으로 초고를 지어 입계하려고 하였는데, 번거롭게 성상께서 하교하게 만들었으니 황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각산·목멱산·한강·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8일에 설행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정해년¹⁶⁴⁷ 4월 11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 비 내릴 조짐이 조금도 없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에 2차 기우제를 오는 12일 설행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期. 農事悶迫, 故卽朝祈雨之意, 將爲構草入啓之際, 致勤聖教, 不勝惶恐. 三角山·木覓山·漢江·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 不卜日, 來初八日設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丁亥四月十一日

● 再次

一. 曹單子: “初次祈雨之後, 小無雨徵, 淒風連吹, 前頭民事, 極爲可慮. 社稷·宗廟·北郊等處, 再次祈雨祭, 來十二日設行, 虔誠祈禱, 期於得雨事, 移文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

정해년¹⁶⁴⁷ 4월 13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 이후 아직도 비 내릴 조짐이 없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이달 16일 예문대로 제관을 선발하고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해년¹⁶⁴⁷ 4월 16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 이후 비록 먼지를 적시는 비가 내렸으나 바로 날이 개어 가뭄이 이와 같은데, 지금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4차 기우제를 오는 20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게 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경기 감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丁亥四月十三日

● 三次

一. 曹單子：“再次祈雨之後，尙無雨徵，淒風連吹，前頭民事，極爲可慮。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今月十六日，依禮文，擇定祭官，精備奠物，虔誠祈禱，期於得雨事，分付，何如？” 啓依所啓施行。

丁亥四月十六日

● 四次

一. 曹單子：“三次祈雨之後，雖得沍塵之雨，旋即開霽，旱乾如此，此時若不得雨，則前頭民事，極爲悶慮。楊津·德津·五冠山·紺岳·松岳山等處，四次祈雨祭，來二十日設行爲白乎矣，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令本道差定進排，虔誠祈禱，期於得雨事，京畿監司處，并以行移，何如？” 啓依所啓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해년¹⁶⁴⁷ 4월 21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4차까지 이미 설행하였으나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아직도 비 내릴 조짐이 없어 가뭄이 더욱 심하니 농사가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이달 26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 등의 장소에 증신_{重臣}을 보내 설행하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_{焚柴} 역시 같은 날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_{경기도}로 하여금 전례대로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게 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해년¹⁶⁴⁷ 4월 26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여러 곳의 기우제를 거의 다 거행했으나, 붉은 해가 켜켜하고 한발이 더욱 심합니다. 망종_{芒種}이 다가왔는데 들에는 부서진 흙덩이가 없어 올해 농사가 지

施行.

丁亥四月二十一日

● 五次

一. 曹單子: “祈雨祭四次已爲設行, 而淒風連吹, 尙無雨徵, 旱乾益甚, 民事極爲渴悶. 今月二十六日, 楮子島·龍山江·冠嶽山等處, 遣重臣設行, 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 亦爲同日設行爲白乎矣, 朴淵·禾積淵·渡迷津·冠嶽山,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犧牲, 令本道依例差定進排, 虔誠祈禱, 期於得雨事, 各該司及京畿監司處, 移文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

丁亥四月二十六日

● 六次

一. 曹單子: “諸處祈雨, 幾盡舉行, 而赤日杲杲, 魑虐愈甚, 芒種將迫, 野無破塊, 今年民事, 極爲渴悶. 社稷·宗廟·北

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사직·종묘·북교에 중신重臣을 보내 오는 5월 2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해년¹⁶⁴⁷ 4월 29일

● 6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승정원의 계사를 보니,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 받지 말고 택일하지 말고 따로 근신近臣을 보내 며칠 안으로 기우제를 설행하여 기필코 하늘을 감동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당합니다. 풍운뇌우·산천성황·우사와 삼각산·백악산·목멱산·한강에 다음 달 3일 근신을 보내 정성껏 기도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해년¹⁶⁴⁷ 5월 1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연달아 설행하였으나 가뭄의 재해가 갈수록 심해지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송악산·감악산·오관산에 중신重臣을 보내 이달 5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재물은 서울에

郊, 遣重臣, 來五月初二日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

丁亥四月二十九日

● 六次

一. 曹啓曰: “今見政院啓辭, 勿拘常規, 不卜日, 別遣近臣, 數日內, 行祈雨祭, 期於格天得雨, 誠爲至當. 風雲雷雨·山川城隍·雩祀及三角山·白岳山·木覓山·漢江, 以來月初三日, 遣近臣虔禱事, 各該司, 知委, 何如?” 傳曰: “允.”

丁亥五月初一日

● 七次

一. 曹單子: “祈雨連次設行, 而旱災愈往愈甚, 前頭民事, 極爲渴悶. 松岳山·紺岳山·五冠山, 遣重臣, 今月初五日設行爲白乎矣, 典祀官·兼大

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며,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척 기우제蜥蜴祈雨祭 역시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도록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해년¹⁶⁴⁷ 5월 6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여러 곳의 기우제를 애태우고 걱정하며 거행하였으나 가뭄의 재해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앞으로 백성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박연·화적연·도미진에 중신重臣을 보내 이번 5월 10일에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게 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해년¹⁶⁴⁷ 5월 8일

● 9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犧牲, 令本道差定進排爲白乎旆, 慕華館池邊蜥蜴祈雨乙良置, 亦於同日爲始, 三日而止, 設行事, 各該司,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

丁亥五月初六日

● 八次

一. 曹單子: “諸處祈雨, 渴悶舉行, 而旱災日以益甚, 前頭民命近止, 極爲悶慮. 朴淵·禾積淵·渡迷津, 遣重臣, 今五月初十日設行爲白乎矣,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犧牲, 則令本道差定進排, 虔誠祈禱, 期於得雨事, 行移, 何如?” 啓依所啓施行.

丁亥五月初八日

● 九次

一. 曹單子: “祈雨連次渴心舉

“기우제를 연달아 애타는 마음으로 거행하여 얼마 전 빗방울이 떨어졌으나 바로 그 비가 그치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앞으로 백성의 목숨이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풍운뇌우·산천성황·우사·양진·덕진에 중신重臣을 보내 이번 5월 13일 설행하되, 양진·덕진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 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며, 경회루 연못가의 동자·무녀와 민간의 병류屏柳를 10일에 시작하고 3일 뒤에 중지하되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무녀 기우제는 합하여 한 곳에서 지낸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동서활인서의 첩정에,

‘난리 이후 동서활인서의 무녀가 사망하여 거의 다 없어지고 남아 있는 자는 노약자까지 모두 합쳐 겨우 50여 명입니다. 이번 기우제는 형세상 두 곳으로 나누어 설행하기 어려우니 합하여 한 곳에서 설행하겠습니다.’

라고 첩정을 올렸습니다. 무녀의 수가 적으니 형세상 두 곳에서 설행하기 어렵습니다. 보고한 대로 합하여 한 곳에서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行，而頃雖點下，旋即開霽其雨，淒風連吹，前頭民命，極爲渴悶，風雲雷雨·山川城隍·雲祀·楊津·德津，遣重臣，今五月十三日設行爲白乎矣，楊津·德津，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犧牲，令本道差定進排爲白乎旂，慶會樓池邊童子·巫女，閭閻屏柳，初十日爲始，三日而止，虔誠祈禱，期於得雨事，各該司及京畿監司處，并以移文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 巫女祈雨合一處

一. 曹單子. “節呈東西活人署牒呈內，亂後，東西巫女，死亡殆盡，餘存者老弱并僅五十餘名，今此祈雨祭，勢難兩處分作設行，合設一處事，牒呈是白置有亦。巫女數少，則勢難兩處設行，依所報，合一處設行，何如？” 啓依所啓施行。

● 10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여러 곳의 기우제를 이미 다 거행하였으나, 가뭄의 재해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농사가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사직·종묘·북교에 대신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근시^{近侍}를 보내 이번 5월 11일 설행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해년¹⁶⁴⁷ 5월 12일

● 1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연달아 설행하였으나 가뭄의 재해가 갈수록 심해져 백성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용산강·저자도·관악산에 다시 중신^{重臣}을 보내 이번 5월 14일 설행하되, 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게 하며, 춘당대의 동자·맹인 등의 기우제 역시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되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十次

一. 曹單子：“諸處祈雨，已盡舉行，而旱災日以益甚，民事極爲渴悶。社稷·宗廟·北郊，遣大臣，三角山·木覓山·漢江，遣近侍，今五月十一日設行，虔誠祈禱，期於得雨事，各該司，分付，何如？”

丁亥五月十二日

● 十一次

一. 曹單子：“祈雨連次設行，旱災愈往愈甚，生民大命近止，極爲渴悶。龍山江·楮子島·冠岳山，更遣重臣，今五月十四日設行爲白乎矣，冠岳山，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爲白乎脉，春堂臺童子·盲人等祈雨乙良置，亦於同日爲始，三日而止，虔誠祈禱，期於得雨事，各該司及京畿監司處，并以移文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정해년¹⁶⁴⁷ 5월 14일

● 1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가뭄의 재해는 근고^{近古}에 없던 바로, 비옥한 들판이 모두 갈라지고 샘과 강까지 거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농사는 본디 말할 것도 없고, 성상께서 정전^{正殿}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기까지 하셨는데 아직까지 하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신을 높이며 날마다 기도를 일삼는 것이 비록 번거로운 듯하나, 어쩔 수 없다며 비가 내리기를 구하는 방도를 잡자기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풍운뇌우·산천·북교 등의 장소에 설행하는 일을 이달 17일에 정하여 시행하되 대신을 따로 보내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기필코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해년¹⁶⁴⁷ 5월 17일

● 가뭄의 재해로 삭선을 정지하다.

“비망기에,

‘가뭄의 재해가 지극히 참혹하여 백성이 장차 구덩이를 메우게 되었으니,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모두 지극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타는 듯하다. 여러 도로 하여금 삭선^{朔膳}을 정지하게 하며, 삼명일^{三名日}의

丁亥五月十四日

● 十二次

一. 曹啓曰：“今此旱災，近古所無，沃野皆拆，至泉江河，幾至斷流，田事固不足言，自上至於避殿·減膳，尚未回天，靡神不宗，日事祈祝，似涉煩黷，而然不可以爲無可奈何，而求雨之道，斷然遽止。風雲雷雨·山川·北郊等處設行事，今月十七日定行，而別遣大臣，致誠精禱，期得昭假，何如？大臣之意如此，敢啓。”傳曰：“允。”

丁亥五月十七日

● 旱災朔膳停罷

一. “備忘記：‘旱災極慘，民將填壑，慚懼俱極，憂心如焚也。其令諸道，朔膳停罷，三名日方物，亦勿封進’事，傳教矣。自上畏天災，重民命，至於

방물^{方物} 역시 봉진하지 말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성상께서 하늘의 재해를 두려워하고 백성의 목숨을 중시하기가 이 지경에 이르러 여러 도로 하여금 삭선과 삼명일의 방물을 중지하게 하였으니 신민이 누군들 감격하고 찬탄하지 않겠습니까. 복구한 삭선과 방물 등은 흉년이 든 동안 전교대로 정지하고 봉진하지 말라고 서울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복구한 삭선과 방물 등은 흉년이 든 동안 전교대로 정지하고 봉진하지 말되, 새로 난 물산물^{物產}은 정축년^{1637,인조15} 이후 봉진한 수량대로 얻는 대로 봉진할 것】

此極，乃令諸道，停罷朔膳及三名日方物，臣民孰不感激贊嘆？復舊朔膳及三名日方物，限凶歉間，勿爲封進事，京外移文知委，何如？”傳曰：“依啓。”【復舊朔膳及方物等段，限凶歉間，依傳教停罷勿封爲乎矣，新產物膳段，依丁丑以後所封數，隨所得封進事。】

정해년¹⁶⁴⁷ 5월 18일

● 1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누차 기도하였으나 비 내릴 조짐이 전혀 없고 한발이 참혹하기가 갈수록 감해지니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양진·송악산·감악산 등의 장소에 다시 중신^{重臣}을 보내 이번 5월 21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게 하고, 남대문을 닫고 북대문을 열고 시장을 옮기는 일 등도 같은 날을 시작으로 거행하며, 토룡제^{土龍祭}는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설행하게 하라고 각

丁亥五月十八日

● 十三次

一. 曹單子：“累次祈禱，了無雨徵，旱魃之慘，愈往愈甚，極爲渴悶。楊津·松岳山·紺岳山等處，更遣重臣，今五月二十一日設行爲白乎矣，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閉南門·開北門·遷市等事，亦於同日爲始舉行，土龍祭乙良，令日官擇日設行事，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해년¹⁶⁴⁷ 5월 23일

● 토룡 기우제

관상감의,
“오방토룡제를 마련하여 동방 청룡은 갑일^{甲日}이니 이번 5월 24일 조성^{造成}하여 25일·26일 제사를 지내고, 남방 적룡은 병일^{丙日}이니 26일 조성하여 27일·28일 제사를 지내고, 중앙 황룡은 무일^{戊日}이니 같은 달 28일 조성하여 29일·오는 6월 1일 제사를 지내고, 서방 백룡은 경일^{庚日}이니 같은 달 1일 조성하여 2일·3일 제사를 지내고, 북방 흑룡은 임일^{壬日}이니 같은 달 3일 조성하여 4일·5일에 1일을 더하여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라는 첩정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첩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토룡제 길일은 첩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순치^{順治} 4년¹⁶⁴⁷ 5월 19일 동부승지 신 채유^{愼蔡裕後}가 담당하여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各該司及京畿監司處，并以移文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丁亥五月二十三日

● 土龍祭

一. 觀象監：“五方土龍祭磨鍊，東方青龍，甲日是在，今五月二十四日造成，二十五日·二十六日行祭。南方赤龍，丙日是在，二十六日造成，二十七日·二十八日行祭。中央黃龍，戊日是在，同月二十八日造成，二十九日·來六月初一日行祭。西方白龍，庚日是在，同月初一日造成，初二日·初三日行祭。北方黑龍，壬日是在，同月初三日造成，初四日·初五日，加一日行祭。”牒呈據曹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土龍祭吉日，依牒呈施行，何如？”順治四年五月十九日，同副承旨臣蔡裕後次知，啓依允。

기축년¹⁶⁴⁹ 4월 20일

● 1차 기우제

예조의 계사에,

“올해 이른 봄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렸으나 밭 갈고
파종하는 계절에는 비가 때맞추어 내렸고 수량도
적절하여 모든 전답에 물이 풍족하였습니다. 높은
곳도 모두 가득 찻기에 백성이 제때 파종하여 싹이
난 곳이 많았습니다. 보리 역시 모두 무성해질 가망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초 이후로 비가 내리지 않은 지가 20일이
되려 하고, 또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매번 낮이
면 너무 덥고 아침저녁에는 반드시 추우니 비가 내
릴 뜻이 없는 듯합니다. 논은 대부분 메말랐고 밭도
모두 몹시 메말랐으니, 밀과 보리가 태반이 말랐습
니다. 만약 다시 열흘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필시 모
두 손상되어 수확할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보리는
민간에서 가장 시급한 곡식이니, 만약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면 비단 백성의 양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전답의 제초도 뜻대로 하기 어려워 농사가 지극
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메마르기가 아직 몹시 심하지 않을 때 특별히
정성스러운 제사로 기원하면 천지신명을 감동시켜
단비의 혜택을 내리게 하여 메마른 보리를 살려 추
수할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지 말고 따로
근시^{近侍}와 재신^{宰臣}을 보내 종묘·사직·풍운뇌우·산

己丑四月二十日

● 初次

一. 曹啓辭：“今年早春，則雨
水太多，及至耕種之節，雨澤
時降，多小亦適中，田畝皆優
足，雖高水皆盈滿，民得及時
播種，多有立苗處，牟麥亦皆
茂盛之望。自月初以後，不雨
者將至二旬，又有淒風連吹，
每晝間炎燠太甚，朝暮間則必
寒涼，似無下雨之意。水畝舉
皆乾涸，田亦皆乾甚，兩麥太
半焦枯，若更旬日不雨，則必
皆損傷，無望收穫。牟麥乃民
間最急之穀，若終至不實，則
非但民食缺乏，田畝除草，亦
難如意，農事極為可慮。及此
乾枯未主太甚，特為精禋祈
祝，庶幾上格神明，惠以甘雨
之澤，以活牟麥之枯，使西成
有望，此正今日急務，不拘常
規，別遣近侍及宰臣，致祭于
宗廟·社稷·風雲雷雨·山川，
而不卜日，來二十四日設行，何
如？”傳曰：“依啓。”

천에 제사를 지내되, 택일하지 말고 오는 24일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기축년¹⁶⁴⁹ 4월 21일

● 1차 기우제

“예문관이 올린 기우제의 분배 단자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예전의 규례가 이와 같은가? 만약 전례가 아니라면 차례를 뛰어넘어 제사 지내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어 시내와 연못이 말랐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보리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희망이 있었지만 근래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이미 몹시 심하게 말랐습니다. 신들이 급히 기도를 드리고자 어제 제사를 올려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지 말고 따로 근시^{近侍}와 재신^{宰臣}을 보내 종묘·사직·풍운뇌우·산천에 제사 지내기를 청하였습니다.

오늘 성상의 하교를 받고 이전의 규례를 살펴보니 1차 기우제는 삼각산·목덕산·한강·풍운뇌우·산천·우사 등지에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대로 24일에 삼각산 이하 여러 곳에서 설행하고, 또한 한성부로 하여금 도랑을 수리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을 하나하나 이전의 규

己丑四月二十一日

● 初次祈雨

一. “以藝文館祈雨祭分排單子, 傳曰: ‘前規如此乎? 若非前例, 則越次行祭, 似或不可也’事, 傳教矣. 今日不雨已久, 川澤枯渴, 而其中最急者牟麥, 初甚可望, 近緣久旱, 焦枯已甚. 臣等欲急行祈禱, 昨日啓辭, 請不拘常規, 別遣近侍·宰臣, 祭于宗廟·社稷·風雲雷雨·山川矣. 今承聖教, 考諸前規, 則初次祈雨, 行於三角山·木覓山·漢江·風雲雷雨·山川·雪祀等處. 今亦前例, 以二十四日設行於三角以下諸處, 而亦令漢城府, 修溝壑·淨阡陌·掩骼等事, 一一依前規舉行, 何如?” 傳曰: “依啓.”

례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기축년¹⁶⁴⁹ 4월 24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는 오늘 이미 거행하였으나 가뭄의 형세가 아직도 심하여 비가 내릴 조짐이 조금도 없고 전답이 마르기가 전에 비해 더욱 심하니, 보기에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마칠 수는 없으니, 차례대로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에서 2차 기우제를 28일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축년¹⁶⁴⁹ 4월 28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 이후 날이 개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입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오는 5월 2일 예문대로 제관을 선발하고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己丑四月二十四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初次祈雨祭，今日已行，而旱勢猶甚，小無雨徵，田畝乾枯，比前益甚，所見極爲可慮，不可一番祈禱而遂已，依次序，社稷·宗廟·北郊等處，再次祈雨祭，二十八日設行，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己丑四月二十八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再次祈雨之後，仍爲開霽，淒風連吹，前頭民事，極爲悶迫。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來五月初二日，依禮文，擇定祭官，精備奠物，虔誠祈禱，期於得雨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기축년¹⁶⁴⁹ 5월 1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 이후 아직도 비가 내릴 조짐이 없어 새로 난 밀과 보리의 싹이 형세상 장차 마르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고 다급합니다.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4차 기우제를 오는 7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게 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경기 감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축년¹⁶⁴⁹ 5월 3일

● 헌관과 감찰에게 말을 지급하다.

예조의 계사에,
“이전에 제관으로 차출된 관원이 하루 목을 거리를 가면 헌관과 감찰에게 모두 탈 말과 짐말 각 1필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축년¹⁶³⁷ 난리 이후 역마의 수가 적어 헌관이 탈 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특별히 임시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역로驛路가 난리 초기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고, 말을 지급하는 규례도 대부분 복구되었습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己丑五月初一日

● 四次祈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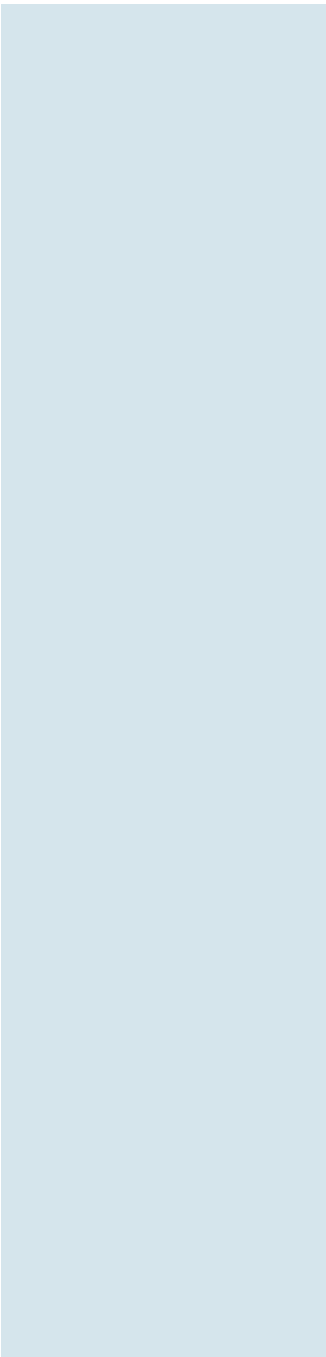
一. 曹單子：“三次祈雨之後，尙無雨徵，兩麥新反新出之苗，勢將枯乾，前頭民事，極爲悶迫。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等處，四次祈雨祭，來初七日設行爲白乎矣，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犧牲，令本道差定進排，虔誠祈禱，期於得雨事，京畿監司處，并以行移，何如？” 啓依所啓施行。

己丑五月初三日

● 獻官監察給馬

一. 曹啓辭：“在前差祭之官，經宿之程，則獻官·監察，並給騎卜馬各一匹矣。丁丑亂後，驛馬數少，故只給獻官所騎馬，其餘特爲權減。今則驛路，不至如亂之初，給馬之規，亦多復舊，令該曹，詳考舊例處置，何如？” 傳曰：“允。”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효종조

경인년¹⁶⁵⁰ 5월 23일

● 1차 기우제

예조의 계사에,
“이달 4일 비가 내렸으나 겨우 쟁기날만큼 채우고 바로 날이 개었습니다. 이후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무더위가 참혹하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전례대로 도랑을 수리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을 한성부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하고, 삼각산·목덕산·한강·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 설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경인년¹⁶⁵⁰ 5월 24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 단비가 조금 내려 몹시 기쁘고 다행스러웠으나 바로 날이 개고 며칠 뒤로 뜨거운 햇빛이 이전과 같아 곡식이 장차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먼지를 적시는 보슬비가 내렸으나 이것은 가뭄의 징조이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

孝廟朝

庚寅五月二十三日

● 初次祈雨

一. 曹啓辭：“今月初四日，雨下僅滿一犂，而旋即開霽，此後淒風長吹，亢炎孔慘，前頭民事，極爲可慮。依前例，修溝壑·淨阡陌·掩骼等事，令漢城府，急速舉行，而三角山·木覓山·漢江·風雲雷雨·山川·雪祀等處，不卜日，來十八日設行之意，敢啓。” 傳曰：“依啓。”

庚寅五月二十四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初次祈雨後，小得甘霖，殊爲喜幸，而旋即開霽，數日以來，曝陽如前，禾穀將爲枯損。即今雖有溫塵微雨，乃是旱徵也，前頭民事，極爲可慮。社稷·宗廟·北郊，再

정스럽습니다. 사직·종묘·북교에 2차 기우제를 택
일하지 말고 오는 27일 설행하되, 제관을 선발하고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인년¹⁶⁵⁰ 5월 29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 이후 한결같이 메마르고 햇볕이 쨍쨍하
여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
극히 걱정스럽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
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택일하지 말고 3차
기우제를 오는 6월 2일 설행하되, 제관을 선발하고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예문대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
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인년¹⁶⁵⁰ 5월 28일

● 2차 기우제

석강^{夕講}할 때 특진관 예조 참판 이경헌^{李景憲}이 탑전^{榻前}
에서 아뢰기를,

次祈雨祭, 不卜日, 來二十七日
設行爲白乎矣, 擇定祭官, 精
備奠物, 十分虔誠祈禱, 期於
得雨事, 知委舉行, 何如?” 啓
依所啓施行.

庚寅五月二十九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 “再次祈雨之後,
一向嘆乾, 杲杲出日, 點雨不
下, 前頭農事, 極爲可慮. 風雲
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
覓山·漢江沈虎頭, 不卜日, 三
次祈雨祭, 來六月初二日設行
爲白乎矣, 擇定祭官, 精備奠
物, 依禮文, 十分虔誠祈禱,
期於得雨事, 各該司良中分付,
何如?” 啓依所啓施行.

庚寅五月二十八日

● 再次祈雨

一. 夕講時, 特進官曹參判李,
榻前所啓: “再次祈雨之後, 一

“2차 기우제 이후 한결같이 메말랐으니, 택일하지 말고 다시 거듭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사람의 말에 ‘기우제는 말단적인 일이다.’라고 하였으나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속히 하라.”
 하였다.

경인년¹⁶⁵⁰ 6월 27일

● 4차 기우제

“비망기에,
 ‘지금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어서 메뚜기의 재해까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는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더욱 심하다. 덕 없는 과인이 큰 티전을 맡아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한갓 고생만 시키니, 장차 추수를 바랄 가망이 없다. 우리 백성이 어떻게 한 해를 보내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허물은 나한 사람에게 있다. 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밤낮으로 걱정하고 애태우느라 마치 내 몸이 아픈 듯하여 편안히 지낼 수가 없다. 승지는 나 대신 교서의 초고를 작성하여 바른말을 널리 구하여 부족한 점을 보충하게 하라. 또 서울과 지방의 여러 옥사를 관대히 처결하여 적체된 죄수가 없게 하라. 기도가 비록 말단적인 일이라고 하나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해당 조로 하여금 시행해야 하는데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속히 거행하게 하라.’

向嘆乾，不卜日，更行再次，何如？”上曰：“古人言‘祈雨乃末節’，而亦不可不爲，從速爲之可也，”

庚寅六月二十七日

● 四次祈雨

一. “備忘記：‘今茲旱暵，愈往愈甚，仍之以蝗災，無處不然，而西北尤甚。以寡昧之否德，叨守丕基，惠澤不及下民，徒貽困苦，將缺西成之望，殆我民生，何以卒歲？靜言思之，咎在予一人，下民何辜？日夜憂煎，若痛在己，無以寧處。承旨代予草教，廣求直言，以補不逮。且令中外疏決庶獄，無使淹滯。祈禱雖云末節，亦不可忽也。又令該曹，如有應行而未行者，則使之趁卽舉行’事，傳教矣。頃日三次祈雨於三角等處之後，其時得雨頗洽，故京畿例有次第應行之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지난번 3차 기우제를 삼각산 등의 장소에서 거행한 뒤 그때는 자못 흠족하게 비가 내렸으므로 차례로 지내야 하는 경기의 여러 곳에서는 아직 설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뭄이 더욱 혹심하여 들판이 불타는 듯하니 백성의 일이 지극히 참혹합니다. 성상의 우려와 염려가 미치는 곳에는 반드시 감응하는 이치가 있을 것이니, 차례가 되어 시행해야 하는데 시행하지 않은 곳은 경기의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입니다. 각별히 정성껏 기도하는 일을 오는 7월 1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되 심상하게 하지 말고 급히 진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경인년¹⁶⁵⁰ 6월 28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누차 기도하였으나 가뭄의 재해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지금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오는 7월 4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보내 설행하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焚柴} 역시 같은 날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

處, 而未及設行矣. 目今旱虐愈酷, 田野如焚, 生民之事, 極爲慘然. 自上憂念所及, 亦必有感通之理. 當次應行, 而未行處, 則畿甸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 各別虔誠精禱, 來七月初一日設行, 而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犧牲, 則令本道差定, 除尋常, 急急進排, 何如?” 傳曰: “依啓.”

庚寅六月二十八日

● 五次

一. 曹單子: “累次祈禱, 旱災日以益甚. 此時若不得雨, 則前頭民事, 極爲渴悶. 來七月初四日, 楮子島·龍山江·冠嶽山等處, 遣重臣設行, 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 亦爲同日設行爲白乎矣, 朴淵·禾積淵·

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전례대로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게 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인년¹⁶⁵⁰ 7월 3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이달 3일 주강^{書講}할 때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재해가 박두하면 으레 택일하지 않았으니, 오는 5일에 급히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인년¹⁶⁵⁰ 7월 5일

● 친제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사직 기우 친제^{社稷祈雨親祭} 때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하루 동안 산재^{散齋}하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致齋}하되,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으며,

渡迷津·冠嶽山,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犧牲, 令本道依例差定進排, 虔誠精禱, 期於得雨事, 各該司及京畿監司處, 移文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

庚寅七月初三日

● 六次

一. 曹單子: “今月初三日晝講時, 社稷·宗廟·北郊等處, 遣大臣, 祈雨祭設行事, 傳教矣. 災迫則例不卜日, 來初五日, 急急設行事, 分付各該司, 何如?” 啓依所啓施行.

庚寅七月初五日

● 親祭齋戒

一. 曹單子: “社稷祈雨親祭教是時, 殿下散齋一日於別殿, 致齋一日於享所, 凡散齋, 不吊喪問疾,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齋, 唯啓享祀事, 依禮文

치재할 때에는 제향에 관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들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7월 10일 사직 기우 친제 때 여러 향관^{享官}과 근시^{近侍}의 관원으로 따라 올라와야 하는 자는 모두 이들 동안 본사^{本司}에서 묵으며 산재^{散齋}하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致齋}하며, 배향관^{陪享官} 및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로서 유문^{壘門}을 지키는 자는 각각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인년¹⁶⁵⁰ 7월 6일

● 친제의 보부

오는 10일 사직 기우 친제를 거행할 때 향관들은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8일에 각기 본사^{本司}에서 하룻밤 청재하고 9일 동틀 무렵 먼저 향소에 나아갔다가 길 왼쪽에서 향^香을 지영^{祇迎}한 뒤, 이어 대가^{大駕}가 오면 국궁^{鞠躬}하고 지나가면 평신^{平身}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가라고 각 관사에 통지하였다.【보부】

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 諸享官齋戒

一. 曹單子: “今七月初十日, 社稷祈雨親祭敎是時, 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並散齋二日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 陪享官及諸衛之屬守衛壘門者, 各於本司, 淸齋一宿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

庚寅七月初六日

● 親祭報府

一. 來初十日, 行社稷祈雨親祭時, 諸享官黑團領, 初八日, 各於本司, 淸齋一宿, 初九日, 質明先詣享所爲白如可, 道左香祇迎後, 仍爲大駕將至鞠躬, 過則平身, 各其就次事, 各司知委. 【報府】

● 기우제를 지낼지 수의하다.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연달아 설행하였으나 가뭄의 재해가 한결
같이 이와 같고 가을이 다가왔는데 빗방울이 떨어
지지 않으니 앞으로 백성의 목숨이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근신
近臣을 보내 이달 10일에 설행하되, 모화관慕華館 연못
가의 석척 기우제蜥蜴祈雨祭도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도록 설행하는 일을 각 해당 관사에 공문
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고,
‘석척 기우제는 시행해야 하는 일이니 빠뜨릴 수 없
을 듯하나 예전부터 몹시 무례하였고 그 효과도 없
었다. 지금 절기가 이미 늦었으니 대신들과 논의하
여 처리하라.’

라고 한 단자에 근거하여 판하判下한 문건을 첨부하
였습니다.

대신들과 논의하였더니 영의정 이경여李敬輿는,
‘신이 성상의 명을 삼가 받들고 종묘에서 기도드릴
때 용안을 직접 보니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절박
하고 또 백성이 거의 다 죽게 된 것을 염려하였습니
다.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 하늘이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음덕을 입지 못하여 헛
별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는 모두 신의 성의가 천
박하여 하늘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두렵
고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방금 예조의

● 祈禱收議

一. “曹單子：‘祈禱連次設行，
而旱災一向如此，秋節將迫，
點雨不下，前頭民命，極爲渴
悶。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遣近臣，今月初十日設行爲白
乎矣。慕華館池邊蜥蜴祈雨乙
良置，亦於同日爲始，三日而
止，設行事，各該司良中，移文
知委，何如?’ 啓依允。‘蜥蜴祈
雨，則應行之事，似不可闕，而
自前殊涉褻慢，亦無其實。今
且節候已晚，議于大臣處之爲
良如教’事單子據，粘連判下是
白有亦。議于大臣，則領議政
李敬輿以爲：‘臣恭承上命，禱
祀于太廟，親見玉色憂民之切
迫，且念蒼生大命之近止，非
不渴誠將事，或冀宜佑，而未
蒙陰鷺，赫日猶熾，無非臣精
意淺薄，未得導達天心，忱惕
慚懼，若無所容。卽奉因禮曹
公事，特念議處之命，有若敗
事之人，何敢容議其得失? 第
該曹之請，亦出於萬分不得已
之計，雖文具末節，靡極不用

공문으로 인하여 논의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일을 망친 사람이 어찌 감히 그 득실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해당 조의 청 역시 만부득이한 계책에서 나왔으니, 비록 형식적이고 말단적인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몹시 무례하다는 성상의 말씀이 참으로 옳으나 예로부터 간혹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신은 그 이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시행해야 하는 일은 그대로 시행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또 생각건대 탕왕湯王이 상림桑林에서 여섯 가지로 자신을 책망하자 천 리에 단비가 내렸으니,¹ 대궐에서 기도하면 큰 효험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신이 바라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음양의 조화를 돕지 못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한갓 군주에게 허물을 돌리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우의정 조익趙翼은,

‘신이 얼마 전 명을 받들고 사직에 가서 제사 지냈습니다. 지금 가뭄이 타는 듯하고 밭두둑이 메말라 백성이 거의 죽게 된 때에 명을 받들고 기도하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여 하늘을 감동시켜 백

耳. 殊涉褻慢, 聖教允當. 然從前或有因此得雨之時, 臣未知其理何居, 應行之事, 仍爲設行, 抑或無妨. 仍念桑林六責, 千里滂霈, 禁中祈禱, 卽有丕應, 愚臣區區所望, 只在於此. 添在鼎席, 未能贊變理之化, 而不自反己, 徒歸之君上, 臣罪萬死, 伏惟上裁.’ 右議政趙翼以爲: ‘臣昨日承命, 往祭于社稷. 當此旱災如焚, 田疇滌滌, 民命近止之日, 受命禱祀之, 臣何敢不竭其寸誠, 冀或上格天心, 以救蒼生, 而夜來祈祈之雨, 似有沛然之望, 乃於祭後便止, 以至杲杲, 此無非臣虔誠有所不盡, 未能動天之故也. 恐懼縮伏, 只俟罪戾. 禮曹啓辭, 蜥蜴祈雨之事, 殊涉褻慢, 誠如聖教. 以理推之, 亦未得其說, 此固出於渴悶之至, 以冀萬一之幸. 然臣之愚意, 更觀數日, 諸處山川, 祈禱設行之後, 更議爲之似當. 伏惟上裁, 何如?’ 啓依領相議施行爲乎矣, 旱暵至此, 蒼生

1 탕왕(湯王)이 …… 내렸으니: 은나라 탕왕 때 7년 동안 가뭄이 이어지자 자신을 희생으로 삼아 상림에서 기우제를 지내며 여섯 가지 일을 자책하자 비가 내렸다. 여섯 가지 일은 정사에 절도가 없는가, 백성이 생업을 잃었는가, 대궐이 화려한가, 여인의 간청이 심한가, 뇌물이 통하는가, 참소하는 자가 많은가이다.

성을 구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밤부터 비가 쏟아질 가뭄이 있었으나 제사를 지낸 뒤에 곧 그치고 날이 째째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이 정성을 다하지 않아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앞드린 채 그저 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조가 계사를 올린 석척 기우제(蜥蜴祈雨祭)의 일은 몹시 무례하니 참으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치로 미루어 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본디 애테우고 근심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만에 하나 요행을 바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다시 며칠 동안 보다가 여러 산천에 기우제를 설행한 뒤 다시 논의하여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성상께서, ‘영의정의 논의대로 시행하되, 가뭄이 이 지경에 이르러 백성이 거의 죽게 되었다.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여 묵묵히 기도하였으나 빗방울도 보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타는 듯하다. 경들의 지극한 정성에 힘입어 밤사이 겨우 단비가 내렸으나 곧 그쳐 가뭄이 없으니 장차 어찌하겠는가. 나는 예전에 부득이한 일에 출입을 면하지 못하였다. 직접 기도하고자 하는데 어떠한지 모르겠다. 나의 정성이 천박한 탓에 필시 하늘을 감동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나 내 몸으로 희생을 대신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수의(收議)하여 아뢰라.’

之大命近止，日夜竭誠默禱，而不見點雨，方寸如焚。賴卿等之至誠，夜來僅得甘霖，而須臾而止，無有可望，其將奈何？予嘗於不得已之舉，則未免出入矣，欲爲親禱，未知如何。以予淺薄之誠，必難格天，而以身代犧，其可已乎？收議以啓’爲良如教事單子據，曹粘連判下是白有亦。議于大臣，則領議政李敬輿·右議政趙翼以爲：‘頃者，玉候傷暑，數日內未寧，幸以神明所佑，僅得復常，而其後旱炎極酷，大地如焚。永思殿朔望及大祭，無不親行，玉體勞傷必多，羣下之情，皆懷憂慮。今又有此親禱之教，其爲勞動，非止如國中行禮，臣等區區之誠，決不敢將順。而第今久旱至此，若復數日不雨，則農事尤無可望，哀我蒼生，舉將填壑。伏見聖心憂瘁，每發於傳教者，無不出於至誠，凡在瞻聆，孰不感激？雖成湯以身代犧，周宣側身修行，比我殿下憂民之誠，

라고 한 단자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판하判下하신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대신들에게 논의하니 영의정 이경여와 우의정 조익은,

‘요즈음 옥체가 더위에 상하여 며칠 동안 편치 않으셨으나 다행히 신명의 도움으로 겨우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가뭄이 지극히 혹심하여 대지가 불타는 듯합니다. 영사전永思殿 삭망朔望과 대제大祭를 모두 친행하였으니 옥체가 과로로 필시 많이 손상되었을 것이라 신하들이 모두 우려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친히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수고가 도성에서 예를 행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들의 구구한 정성으로는 결코 감히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오랜 가뭄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만약 다시 며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더욱 가망이 없어 슬프게도 우리 백성이 모두 죽어 구덩이를 메울 것입니다. 삼가 보건대, 성상께서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며 매번 전교로 하시는 말씀이 모두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습니다. 듣는 사람이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제 몸으로 희생을 대신한 성탕成湯과 몸을 기율여 수양한 주 선왕周宣王이라도 백성을 걱정하는 우리 전하의 정성에 비하면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어찌 감동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끊어져 가는 백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亦無以過，天意豈有不感動之理乎？庶可以救生民垂絕之命，臣等無容更議，伏惟上裁.’
領敦寧府事金尙憲·領中樞府事金堉在外，不得獻議，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啓依議施行爲乎矣，數日內舉行爲良如教.

하셨습니다. 영돈녕부사 김상헌^{金尙憲}, 영중추부사 김육^{金瑬}은 지방에 있어 헌의^{獻議}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논의한 대로 시행하되 며칠 내로 거행하라고 하였다.

경인년¹⁶⁵⁰ 7월 7일

● 친제의 택일

예조의 계사에,
 “사직 기우 친제를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으로 하여금 잡게 하였더니 8일은 성산^{聖算}, 9일은 불의^{不宜}, 10일은 국기^{國忌}, 11일은 천적^{天賊}, 12일은 십악절명^{十惡絕命}으로 모두 구기^{拘忌}가 있으나 13일은 조금 평길^{平吉}하다고 합니다. 재해가 닥치면 으레 택일하지 않으니, 멀리 13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10일은 비록 국기일이나 제사에 방해되지 않을 듯하니, 서계^{誓戒}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이날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庚寅七月初七日

● 親祭擇日

一. 曹啓辭：“社稷祈雨親祭事，命下矣。吉日，令日官推擇，則初八日聖筭，初九日不宜，初十日國忌，十一日天賊，十二日十惡絕命，皆有拘忌，而十三日，稍爲平吉云。災迫則例不卜日，不可等待十三日之遠，初十日，雖國忌，似無妨碍於祀事，除誓戒肆儀，是日行祭之意，敢啓。”傳曰：“知道。”

경인년¹⁶⁵⁰ 7월 8일

● 친제에 음악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일로 수의하다.

“예조의 계사에,

‘대사^{大祀}는 졸곡^{卒哭} 이후 음악을 사용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동향^{冬享}과 납향^{臘享}부터 사직·종묘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천단^{天壇} 친제는 지극히 중요한 조처이므로 음악을 사용하는 일을 의주^{儀注}에 마련하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비록 그러하나 대신에게 의논하라.’

라고 전교하였습니다. 영의정 이경여^{李敬輿}와 우의정 조익^{趙翼}은,

‘국恤^{國恤} 3년 내에는 비록 종묘 오향^{五享}의 중대한 일도 임금이 제물을 올리는 예를 친행할 수 없습니다. 비단 슬퍼할 일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편한 일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은 일이 평상시와 다르니, 전殿 안에서 최마^{衰麻}를 벗고 길복^{吉服}을 입어 백성을 위해 사단^{社壇}에서 비가 내리기를 빌 것이니, 그 애통하고 절박하여 부득이하기는 묵최^{墨衰}차림으로 전쟁에 나가 난리를 막아 백성을 구하는 뜻과 대략 같습니다. 이미 전쟁에 나갔다면 정기^{旌旗}·금고^{金鼓}를 어찌 설치하지 않아 군사들의 이목이 의지할 바가 없게 하겠습니까. 이는 군율에 있어 당연하니,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종고^{鐘鼓}와 우악^{羽籥}을 설치하는 것은 전적으

庚寅七月初八日

● 親祭用樂定奪事收議

一. “曹啓辭：‘大祀則卒哭後用樂，載在禮文，故自上年冬享及臘享，始爲用樂於社稷·宗廟矣。今此天壇親祭，舉措極重，用樂一節，儀注中磨鍊以入之意，敢啓。’傳曰：‘事雖然，而議于大臣之事’傳教矣。領議政李敬輿·右議政趙翼以爲：‘國恤三年之內，雖宗廟五享之重，人君不得親行圭璧之禮者，不但哀有所專，亦此等難便之事而然也。今則事異常道，殿內脫衰麻御吉服，爲生民祈澤于社壇，其痛迫切急不得已之舉，如墨衰臨戎，以遏亂略，以救斯民之意略同。已爲臨戎，則旌旗金鼓，安得不設，使三軍耳目無所寄也？此在師律當然，何與於己也？況此鍾鼓羽籥之設，專爲降格神明，無所干於不聞之中也。依該曹公事施行，似爲當。然莫重變禮，難以臆定，伏惟上裁。’”傳曰：‘宋宣仁后有言

로 신명을 강림하게 하기 위해서이니, 상중에 음악을 듣지 않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조의 공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막중한 변례(變禮)를 억측으로 정하기 어려우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송(宋)나라 선인황후(宣仁皇后)가 ‘만약 나라에 이익이 있다면 나는 머리카락과 피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만백성을 위해 자신을 책망하여 비가 내리기를 비는 방도는 본디 감히 사사로운 마음을 참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망극하고 놀라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속히 낭청을 지방에 있는 대신에게 보내 수의(收議)하여 오게 하여 미진하다는 후회가 없게 하라.”

하였다.

● 친제에 음악을 사용할지 수의하다.

예조의 계사에,

“사직 친제 때 음악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지방에 있는 두 대신에게 해당 조의 낭청 2원을 궐문을 열고 내보내어 급히 수의하여 오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두 대신이 있는 곳은 거리가 멀지 않은데, 해당 조의 낭청과 서리에게 말을 지급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비록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내보내더라도 거동 이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문을

曰：‘苟有利於國家，吾無愛於髮膚.’ 爲萬民責躬祈澤之道，固不敢不忍私情，而心神罔極震駭，不知攸爲，亟遣郎廳于在外大臣處，收議以來，俾無未盡之悔。”

● 親祭用樂收議

一. 曹啓辭：“社稷親祭時用樂與否，在外兩大臣處，以該曹郎廳二員，開門出送，急急收議以來事，命下矣。兩大臣所在之處，相去不遠，而該曹郎廳及書吏，既有給馬之教，雖待開門出送，亦可以趁舉動前回來，城門非時開閉，事係重

제때가 아닌데 여닫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출발시켜 보내라.” 하였다.【회계한 시각은 2경 4점이다.】

● 친제에 음악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다.

영돈녕부사 김상헌金尙憲은,

“하늘의 재해가 절박하여 성상께서 여섯 가지 일로 자책하신 날부터 조회를 정지하는 것이 합당한 듯 합니다. 정신이 혼미하여 헌의獻議할 수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영중추부사 김육金瑬은,

“임금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방도는 오직 지성으로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찌 반드시 노래와 음악으로 하겠습니까. 성상께서 이처럼 혹심한 가뭄의 재해를 만나서, 백성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여 사직단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여 이 제사를 직접 지내시니, 관원을 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중에 있으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사사로운 마음에 차마 할 수 없으니, 하늘을 섬기는 정성에 조금이나마 집중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 듯합니다. 탕왕湯王이 상림桑林에서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자책하였고, 송 인종宋仁宗은 대궐에 홀로 서서 밤을 새웠는데,² 당시 음악을 사용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

2 송 인종(宋仁宗)은 …… 새웠는데: 송 인종 때 수도에 가뭄이 들자 왕소

大, 何以爲之? 敢啓.” 傳曰: “然則待開門, 發送可也.” 【回啓之時, 二更四點.】

● 親祭不用樂

一. 領敦寧府事金尙憲以: “天災切迫, 自上六事自責之日, 徹朝似當. 精神昏迷, 不能獻議, 伏惟上裁.” 領中樞府事金瑬以爲: “人君感天之道, 唯在於至誠而已. 豈必以聲音鍾鼓爲哉? 聖上遭此亢旱之災, 爲生民焦勞憂煎, 祈澤於社稷之壇, 親行此祭, 與遣官不同. 哀疚中用樂, 已有不忍私情之意, 則事天之誠, 恐或有一分之不專也. 成湯之於桑林, 六事以自責, 宋仁之於禁中, 獨立而終宵, 未聞當時之有樂也. 聖上哀痛惻怛之誠, 自可以孚感天心, 恐不在於用樂與否之間也. 老臣病伏之中, 昏憤不省, 敢進瞽言. 伏惟上裁.” 傳曰: “依在外大臣議.”

니다. 성상께서 애통해하며 슬퍼하시는 정성이 저절로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니, 음악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은 듯합니다. 늙은 신은 병을 앓고 있는 중이라서 혼미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감히 어리석은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방에 있는 대신의 논의대로 하라.”

하였다.

경인년¹⁶⁵⁰ 7월 9일

● 친제의 복색을 결정하다.

“예조의 계사에,

‘고사¹故事에 사직 기우 친제 때 전하의 복색²服色은 예문³禮文에 따르면 면복⁴冕服을 입고 예를 행하며, 모든 관원 역시 조복⁵朝服을 입고 제사에 참석합니다. 지금은 성상께서 한창 상을 치르는 중이니 평상시의 규례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천단⁶天壇에 제물을 직접 올리는 일은 상야⁷桑野와 경림⁸瓊林³에서 기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으니, 하늘을 감동시키는 이치가 무성하여 흠향하는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숙하고 공경하게 제사를 지내는 데 달려 있으니 말단

(王素)의 권유에 따라 멀리 태을궁(太乙宮)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니 비가 내렸다.

3 상야(桑野)와 경림(瓊林): 상야는 은나라 탕왕이 기우제를 지낸 상림(桑林)을 말하고, 경림은 송나라의 경림원(瓊林苑)이다.

庚寅七月初九日

● 親祭服色定奪

一. “曹啓辭: ‘故事, 社稷祈雨親祭時, 則殿下服色, 禮文乃以冕服行禮, 而百官亦用朝服陪祭矣. 今則自上方在瑩疚之中, 不當援以常例, 天壇之親奠圭璧, 不啻桑野瓊林之禱, 藹然感通之理, 可致盼饗之報, 此在於肅敬將事, 似不責服色之末. 取考己卯年親祭膳錄, 則以翼善冠·袞龍袍行禮, 而百官則黑團領陪祭如儀矣. 今以袞龍袍, 若爲未安, 則代以黑團領袍·玉帶·黑靴子, 而

적인 복색을 책망하지 않을 듯합니다.

기묘년¹⁶³⁹ 친제등록^{親祭謄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예를 행하였으며, 모든 관원은 의례대로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제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 곤룡포가 만약 온당하지 않다면 흑원령포^{黑圓領袍}·옥대^{玉帶}·흑화자^{黑靴子}로 대신하고, 배향^{陪香}할 때도 이 복색을 써도 무방할 듯합니다. 변례^{變禮}에 해당하는 일이니 대신과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에게 논의하니, 영의정 이경여^{李敬輿}와 우의정 조익^{趙翼}은, ‘해당 조의 계사가 변례에 임시로 대처하는 방도에 맞는 듯하니, 이대로 시행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영돈녕부사 김상헌^{金尙憲}과 영중추부사 김육^{金堉}은 지방에 있어 헌의^{獻議}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논의가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하니, 수의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陪香時，亦用此服，似或無妨。係是變禮，議大臣定奪，何如?’ 傳曰：‘依啓’事，傳教矣。議于大臣，則領議政李敬輿，右議政趙翼以爲：‘該曹啓辭，似得權宜處變之道，依此施行，恐或無妨，伏惟上裁。’ 領敦寧府事金尙憲·領中樞府事金堉在外，不得獻議。大臣之意如此，上裁。” 傳曰：“依議。”

경인년¹⁶⁵⁰ 7월 16일

● 친제에 근시 이하는 사사로이 연습하다.

“예조의 사직 기우 친제 의주^{儀注}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이번 친제는 막중한 예식이나 날짜가 촉박하여 의식을 연습할 수 없으니, 그때 가서 만약 잘못하여

庚寅七月十六日

● 親祭近侍以下私習

一. “以禮曹，社稷祈雨親祭儀注，傳曰：‘今此親祭，禮儀莫重，而日期催迫，不得肄儀，臨時若或顛倒失禮，則極涉未

예를 잃으면 지극히 온당치 않다. 근시와 집사들 및 대소 관원은 따로 사사로이 연습하여 십분 마음을 써서 잘못하는 우환이 없도록 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방금 친제 의주를 보니, 제례가 막중하고 절목도 많습니다. 9일 이른 아침에 대소 집사 관원들이 모두 사직의 제사 지내는 곳에 먼저 나아가니, 미리 사사로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시는 어가를 따라 제사 지내는 곳으로 나아간 뒤 편의에 따라 사사로이 연습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분부하였습니다. 지금 하교를 받고 해당 조의 낭청을 불러 전교를 면전에 서 전달하고 따로 신칙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가뭄의 재해에 대한 비망기

비망기에,

“이번에 가뭄의 재해가 망극하여 얼마 전 간언을 구하는 하교를 내려 잘못을 듣고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 지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런데 침묵하는 풍조가 생겨 바른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덕이 없는 나를 보좌하기 부족하여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다고 치부하는 것인가. 하늘이 갈수록 마음을 돌리지 않아 한 사람의 일 때문에 백성에게 이처럼 혹독한 재해가 미치니, 이를 생각하면 지극히 부끄럽고 두려워 마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듯하다.

이미 몸을 기울여 덕을 닦지 못하여 천재지변을 초

安, 近侍及諸執事·大小官員, 另爲私習, 十分用心, 俾無顛倒之患’事, 傳教矣. 卽見親祭儀注, 則莫重祭禮, 節目且多, 初九日早朝, 大小諸執事官員, 皆將先詣社稷祭所, 不可不預爲私習, 近侍如隨駕, 進往祭所後, 隨便私習似當. 故以此分付矣, 今承下教, 招致該曹郎廳, 面諭傳教, 另爲申飭之意, 敢啓.” 傳曰: “知道.”

● 早災備忘

一. 備忘記: “因茲旱災之罔極, 頃下救言之教, 得聞闕失, 望其匡救, 已有日矣. 含默成風, 讜言無聞, 予之否德, 不足輔歟? 抑亦歸之於無可奈何歟? 天心不回, 愈往乃爾, 以一人之事, 災及蒼生, 若此之酷, 興言及此, 慚懼俱極, 若隕淵谷. 旣不能側身修德, 以致天災地怪, 便設祈禳, 仰干天澤, 非也. 情迫于中, 其

래하였으니, 기우제를 지내 하늘의 은택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마음이 다급하니 그만둘 수 있겠는가. 나의 제관과 집사들은 대소 관원을 막론하고 각기 두려움을 다하여 재계하여 하늘을 감동시키라. 또 해당 조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고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며, 백성을 편하게 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을 모두 구획하여 아뢰라.” 하였다.

신묘년¹⁶⁵¹ 5월 13일

● 기우제문을 따로 짓기로 하다.

조강^{朝講}할 때 예조 판서 이기조^{李基祚}가 아뢰기를,
“올해 초봄에는 비가 충분히 내려 제법 풍년이 들 가망이 있었는데 근래는 가뭄이 몹시 심합니다. 경기는 삼남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는지만 삼남의 모내기한 곳은 더욱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비가 내리려 하다가 내리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으니, 여러 사람의 논의가 모두 기도하는 일을 속히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례대로 차례차례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우려가 어찌 끝이 있겠는가. 연달아 비가 내릴 조짐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농사는 하루가 급하니 기다릴 수 없다. 몹시 근심스럽고 아프면 반드시 부모를 부르는 것이 사람의 마

可乃已? 凡我祭官執事, 無大無小, 各盡寅畏, 以致直清, 庶格天心. 又令該曹, 恤貧窮甄賢能, 凡便民救民之策, 區盡畫以聞.”

辛卯五月十三日

● 祈雨祭文別撰

一. 朝講時, 曹判書李所啓:
“則今年春初, 雨澤優洽, 頗有豐稔之望矣. 近來旱氣太甚, 京畿則不至如三南, 而三南移秧之地, 尤極可慮. 欲雨不雨, 以至於今, 羣議皆以爲祈禱之舉, 不可不速行云. 請依例, 次第舉行, 何如?” 上曰:
“近日憂慮, 曷有其極? 連有雨徵, 而迄今不雨, 民事一日爲急, 不可等待. 而憂痛切迫, 必呼父母, 人之情也. 祈雨之舉, 不可不從速舉行, 必須虔誠設行, 則豈無見效之理乎?”

음이다.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속히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정성껏 설행하면, 어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기우제 축문은 매번 등록에서 약간의 문자를 사용할 뿐이었으니 참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구절_{句節} 수를 늘려 이야기를 자세히 하여 간절하고 다급한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예문관으로 하여금 사람을 선발하여 지어 올리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본조 역시 유념하여 착실히 거행하라.”

하였다.

● 도랑을 수리하다.

예조의 단자에,

“답전 계사로 인하여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전례대로 도랑을 수리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을 한성부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하되, 삼각산·목멱산·한강·풍운 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6일 설행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순치 8년¹⁶⁵¹ 5월 13일에 아뢰니, 도랑을 수리하는 등의 일은 거행하되 기도는 다시 형세를 보아 처

又啓曰：“祈雨祭祝文，每用謄錄若干文字而已，誠爲未安，必須多其句數，曲盡辭說，以見懇迫之誠，可也。令藝文館，擇人製進，似爲宜當。”上曰：“依爲之。本曹亦須留念，着實舉行，可也。”

● 修溝壑

一. 曹單子：“因榻前啓辭，祈雨祭設行事，啓下矣。依前例，修溝壑·淨阡陌·掩骼等事，令漢城府，急速舉行爲白乎矣，三角山·木覓山·漢江·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初次祈雨祭，不卜日，來十六日設行，虔誠祈禱，期於得雨事，移文知委，何如？”順治八年五月十三日啓，修溝壑等事乙良，舉行爲乎矣，祈禱乙良，更爲

리하겠다고 하였다.

신묘년¹⁶⁵¹ 5월 18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전에 본조의 기우제 설행 단자로 인하여 판부에,
‘도량을 수리하는 등의 일은 거행하되 기도는 다시
형세를 보아 처리하겠다.’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한창 비가 내리고 날
씨가 무더워 큰비가 내릴 가망이 있을 듯하였으나
비가 조금 내리고 곧 그쳐 겨우 먼지를 적셨습니다.
며칠 동안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햇벌이 쨍쟁하
니, 만약 모내기할 시기가 지나면 결코 추수할 가망
이 없습니다.

경상도의 경우는 이전에 연석에서 남쪽에서 온 대
관^{臺官}의 말을 들으니 절반 넘게 모내기를 하였다고
하였으니, 가뭄의 근심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홍
청 감사^{洪淸監司}의 장계로 말하자면 여러 곳에 기우
제를 설행하는 일과 서울에서 기도하는 일은 조금
도 늦출 수 없을 듯합니다. 이전에 계청한 대로 삼각
산·목덕산·한강·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0일 설행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觀勢處之爲良如教.

辛卯五月十八日

● 初次

一. 曹啓曰: “前因本曹祈雨祭
設行單子判付內, 修溝壑等事
舉行, 祈禱更爲觀勢處之事,
命下矣. 其時雨澤方下, 日氣
蒸鬱, 似有大霑之望, 而小雨
旋止, 僅能涸塵, 數日內, 淒風
連吹, 杲杲出日, 若過此移秧
之期, 則斷無西成之望. 嶺南
則前於筵中, 聞南來臺官之言,
移秧過半云, 似無旱乾之患,
而以洪淸監司狀啓言之, 則諸
處祈雨設行之舉, 京中祈禱之
事, 似不可少緩. 依前啓請, 三
角山·木覓山·漢江·風雲雷雨
·山川·雩祀等處, 初次祈雨,
不卜日, 來二十日設行, 何如?”
傳曰: “依啓.”

신묘년¹⁶⁵¹ 5월 20일

● 대신에게 기우제를 지내게 하다.

주강^{晝講}할 때 지사 임담^{林潭}이 탑전에서 아뢰기를,
“근래 가뭄이 이처럼 혹독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의
모내기한 곳은 결코 추수할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기우제를 거행하는 일이 비록 형식적인 듯하지만 그
만들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당 조에서 필시 차례로 거행하겠지만 지성으로
지내지 못할 듯하다. 오늘내일 사이에는 끝내 효과
를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더욱 모르겠다.”

하였다. 임담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친제^{親祭}를 지내어 비가 내리는 효험을 얻
은 적이 많습니다. 근래 옥체가 어떠한지 보고 기우
제를 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친행은 어렵지 않으나 어찌 효과를 얻는다고 확신
하겠는가?”

하였다. 임담이 아뢰기를,

“하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이를 벗어나지 않을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차례가 있는 듯하니 지금은 안 된다. 전례
대로 기다리고 대신^{大臣}과 중신^{重臣}이 먼저 지내라.
이 뜻을 해당 조에 말하라.”

하였다. 수찬 김종일^{金宗一}이 아뢰기를,

辛卯五月二十日

● 大臣祈雨

一. 晝講時，知事林潭榻前所
啓：“近來旱乾此酷，兩南移
秧處，則斷無秋成之望云。祈
雨之舉，雖似浮文，而亦不可
廢矣。”上曰：“該曹想必次第
舉行，而恐不能至誠行之，今
日明日，終不見效，尤不知何
以爲之也。”林潭啓曰：“自前
多有親祭得雨之效。近觀玉候
之如何，親行祈雨之舉，似爲
宜當。”上曰：“親行非以爲難，
而得效亦何可必也？”林潭啓
曰：“昭格天意，似不外此也。”
上曰：“此事似有次第，而今則
不可，依例等待，大臣·重臣，
先爲行之，可也。此意，言于該
曹。”修撰金宗一曰：“請行親
祭，事極宜當，而不爲允從，臣
竊恐事天之誠有所不至也。昔
宋仁宗時，王素因天旱，有此
請，而仁祖初不聽從，終乃親
行得雨。玉候平寧，則事當趁
卽舉行矣。”上曰：“此言則然
矣。身無疾病，無不可親行之

“친제를 지내도록 청한 일이 지극히 마땅한데 따르지 않으시니, 신은 하늘을 섬기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옛날 송 인종^{宋仁宗} 때 왕소^{王素}가 가뭄으로 인하여 이렇게 청하였는데, 인종이 처음에는 따르지 않았으나 마침내 친행하여 비가 내렸습니다. 옥체가 평안하면 속히 거행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몸에 질병이 없으니 친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반드시 효과가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또 대신은 나와 한 몸이므로 대신이 먼저 지내기를 기다린 뒤에 하고자 할 뿐이다. 지금처럼 급박할 때 어찌 달리 고려할 일이 있어 그렇겠는가.”

하였다. 김종일이 아뢰기를,

“핑계를 대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다리는 사이에 행여 때가 늦었다는 탄식이 있을까 걱정해서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서 한 말은 대충 한 듯하다. 해당 조에 다시 말하여 먼저 대신으로 하여금 지내게 하라.”

하였다.

事, 而必得其效, 亦未可期. 且大臣則與予一體, 故欲待大臣之先行, 然後爲之耳. 當此迫急之時, 寧有他顧慮之事而然耶?” 金宗一曰: “非以爲有所退託而不行也, 但恐等待之際, 或有後時之歎也.” 上曰: “前言似爲泛然, 更言于該曹, 先使大臣行之, 可也.”

신묘년¹⁶⁵¹ 5월 21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 아직 비가 내릴 조짐이 없고 가뭄

辛卯五月二十一日

● 再次

一. 曹單子: “初次祈雨之後,

이 더욱 심해지니,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에 어제
탑전에서 결정한 대로 대신을 보내 2차 기우제를 택
일하지 말고 오는 23일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정
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묘년¹⁶⁵¹ 5월 23일

● 친제^{親祭} 비망기

비망기에,

“과인이 어둡고 임금답지 않아 즉위한 이래 천재지
변이 없는 날이 없으니, 아침저녁으로 두려워 마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것 같다. 지금은 농사철인데
비가 내리지 않은 지가 거의 40여 일이라 추수할 가
망이 전혀 없다. 나라는 백성에 의지하고 백성은 먹
을 것을 하늘로 삼는데 백성이 없으면서 나라가 있
을 수 있겠는가. 조용히 허물을 반성하면 참으로 나
에게 있으니 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걱정하
는 마음이 타는 듯하여 가슴과 머리가 쪼개지는 듯
하다.

아, 상제^{上帝}께서 어찌 내 한 몸에 재앙을 내리지 않
고 백성에게 대신 반계 하는 것이 이처럼 심한가. 차
라리 죽어서 모르고 싶다. 승지는 나를 대신해 교서
의 초고를 짓고 바른말을 널리 구하여 대소 신민에
게 모두 숨김없이 잘못을 지적하여 아뢰게 하라. 오

尙無雨徵，旱乾益甚，社稷·
宗廟·北郊等處，依昨日榻前
定奪，遣大臣，再次祈雨，不卜
日，來二十三日，精備奠物，虔
誠祈禱，期於得雨事，各該司，
移文知委，何如？” 啓依所啓
施行。

辛卯五月二十三日

● 親禱備忘

一. 備忘記：“寡昧不辟，忝位
以來，天災時變，無有虛日，夙
夜恐懼。若隕淵谷，及至今日，
正當農月，不雨殆四十餘日，
頓無西成之望。國依於民，民
以食爲天，無民而國存者有之
乎。靜省厥咎，實在於予小子，
民何辜？慮心如焚，若剋心頭。
嗚呼，上帝何不降殃於予一身，
而俾民替受，若是其甚乎？寧
欲溘然而不知也。承旨代予草
教，廣求直言，大僚小民，咸使
指陳闕失，無有隱諱。自今日
減常膳·禁酒等事，各別嚴飭
舉行。”

날부터 평상시의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하는 등의 일을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 이후 성상의 하교가 지극히 간절하여 감응하는 이치가 어긋나지 않아 즉시 비가 내렸으나 만나질 만에 곧 개어 충분히 내리지 않아 도랑이 모두 말랐습니다. 도성을 보면 지방을 알 수 있으니, 메마른 곡식이 소생하는 효과를 보지 못한 듯합니다. 부득이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지 말고 풍운뇌우·산천·우사에는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는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 지극히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가뭄의 재해가 여기에 이르러 지극히 걱정스럽고 답답하여 내가 친행하고자 하니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묘년¹⁶⁵¹ 5월 25일

● 친제의 장소를 결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친행하겠다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전

● 三次

一. 曹單子：“再次祈雨之後，聖教懇至，感應之理不爽，雨澤即下，而半日旋霽，不爲隆洽，溝渠皆涸，視都知野，恐未見蘇枯潤焦之效。不得已勿拘常規，風雲雷雨·山川·雩祀，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不卜日，來二十七日，十分虔誠祈禱，期於得雨事，各該司良中，移文知委，何如？” 啓，旱災至此，極爲悶迫，予欲親行，依例舉行爲良如教。

辛卯五月二十五日

● 親祭處所定奪

一. 曹啓曰：“祈雨祭親行事，命下矣。自前祈雨親行時，或

부터 기우제를 친행할 때는 사직이나 남교에서 하였는데, 일시적인 하교에서 나왔고 정해진 규례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 설행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에서 행하겠다.”
하였다.

● 친제의 택일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 길일을 일관_{日官}에게 물었더니 27일은 구기_{拘忌}하는 일이 있고, 28일은 조금 길하다고 하니, 이날로 정하여 행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할 모든 일은 즉시 각 관사에 분부하되, 날짜가 촉박하니 잘못할 우환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크고 작은 집사와 관원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27일 이른 아침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나아가 예식을 연습하라고 역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친제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28일 사직 기우 친제를 올릴 때 전하는 별전에서 이틀 동안 산재하고, 향소에서 하루 동안 치재합니다.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담당 관원은 형살_{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으며, 치

社稷，或南郊，出於一時，下教，未有定規，今則設行，于何處乎？敢稟。”傳曰：“行于社稷，可也。”

● 親祭擇日

一. 曹啓曰：“祈雨親祭吉日，問于日官，則二十七日有拘忌之事，二十八日稍吉云，以此日定行爲當。凡干預備之事，卽爲分付于各司，而日期催迫，恐有顛倒之患，大小諸執事官員，除肄儀，二十七日早朝，先詣祭所習禮之意，亦爲分付，何如？”傳曰：“允。”

● 親祭齋戒

一. 曹單子：“今二十八日社稷祈雨親祭教是時，殿下散齋二日於別殿，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不吊喪問疾，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祀

재할 때에는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들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28일 사직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近侍} 관원 중에 따라 올라와야 할 자는 모두 본사에서 이틀 동안 묵으며 산재^{散齋}하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致齋}하며, 배향관 및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로서 유문^{壘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친제의 보부

각 관사의 보부초^{報府草}에,
“오는 28일 사직 기우 친제를 거행할 때, 향관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흑단령^{黑團領}·품대^{品帶} 차림으로 26일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清齋}하고, 27일 동틀 무렵 먼저 향소^{享所}로 가서 사사로이 예식을 연습하다가 대문 안 길 왼쪽에서 향^香을 지영^{祇迎}한 뒤 대가가 오면 국궁^{鞠躬}하고 지나면 평신^{平身}하고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하였다. 【어가를 따르는 모든 관원은 흑단령·품대 차림으로 제사에 참석한다.】

事, 依禮文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 諸享官齋戒

一. 曹單子: “今二十八日社稷祈雨親祭時, 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並散齋二日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 陪享官·諸衛之屬守衛壘門者, 各於本司清齋一宿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親祭報府

一. 各司報府草: “來二十八日, 行社稷祈雨親祭時, 諸享官除肄儀, 以黑團領·品帶, 二十六日, 各於本司清齋一宿, 二十七日質明, 先詣享所, 私習禮爲白有如可, 大門內道左, 香祇迎後, 仍爲大駕將至鞠躬, 過則平身, 各其就次事.”
【一. 隨駕百官, 以黑團領·品帶, 陪祭入參事.】

● 친제의 복색과 음악 사용 여부를 결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해 7월 사직 기우 친제 때 성상께서 흑원령·오서대를 착용하고 예를 행하였는데, 그때 대신이 아뢰된 일로 인하여 음악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음악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면 길복吉服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번 제사는 대상大祥 이후이니 작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복冕服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출궁할 때의 복색은 흑단령·오서대로 마련하는 것이 역시 마땅할 듯하여 감히 여쭙니다.’

하니, 대신과 논의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김육金堉, 좌의정 이시백李時白은

‘해당 조에서 마련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른 논의가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는 일이 있어 헌의하지 못하였고, 영돈녕부사 김상헌金尙憲은 지방에 있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수의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 親祭服色及用樂定奪

一. “曹啓曰：‘上年七月，社稷祈雨親祭時，自上御黑圓領·烏犀帶行禮，而其時因大臣所啓，至於用樂，若用樂行祭，則不可不進御吉服。且今番行祭，在大祥之後，與上年有異，以冕服磨鍊似當。出宮時服色，則以黑團領·烏犀帶磨鍊，亦似得宜。敢稟。’傳曰：‘議于大臣處之’事，傳教矣。議于大臣，則領議政金堉·左議政李時白以爲：‘該曹磨鍊施行，似爲得宜，無容別議，伏惟上裁。’領中樞府事李敬輿有故，不得獻議，領敦寧府事金尙憲在外。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傳曰：‘依議。’

신묘년¹⁶⁵¹ 6월 29일

● 기청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이미 가을이 되었는데 이처럼 비가 내리니, 앞으로 대례^{大禮}를 치를 때 날이 개지 않을 우환이 없지 않다. 기청제를 설행하여 대례를 온전히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해당 조와 의논하여 처리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가을이 되었는데 무더위가 몹시 심하고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례가 다가왔는데 장마가 그치지 않을 우환은 신하들이 모두 염려하는 것입니다.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사문영제^{四門營祭}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일을 시작으로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계하한 뒤 승정원의 계사로 인하여 1일에 향을 받으러 나아갔다.】

신묘년¹⁶⁵¹ 7월 15일

● 기청제에 감찰을 정하여 보낸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크고 작은 제향에 감찰을 차임하여 보내는 것이 원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돈의문^{敦義門} 기청제^{祈晴祭}의 제관들을 추고하도록 청하였을 때 감찰도 함께 거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지^{傳旨}를 받들 때 다시 자세

辛卯六月二十九日

● 祈晴祭設行事

一. 曹啓曰：“傳曰：‘秋節已入，而陰雨如此，前頭大禮之時，恐不無不霽之患，設祈晴以完大禮如何？議于該曹處之’事，傳教矣。目今秋節已入，炎蒸太甚，陰雨不止，前頭大禮迫近，霖潦不霽之患，群下之所共慮。聖教如此，四門營祭，不卜日，來初二日爲始設行，三日而止事，移文知委，何如？”傳曰：“允”【啓下後，因政院啓辭，初一日受香進去。】

辛卯七月十五日

● 祈晴祭監察定送事

一. 政院啓曰：“凡大小祭享，監察差往，自是規例，故敦義門祈晴祭官等請推時，並舉監察矣。捧傳旨時，更加詳問，則祈晴祭則監察不往云，憲府書

히 물었더니, 기청제에는 감찰이 가지 않는다고 하고, 사헌부의 서리가 검척하러 나아갔습니다. 감찰의 추고를 청하는 말은 써넣지 않고, 해당 서리는 담당 관사로 하여금 수금하여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리가 관원을 검척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마땅치 않으니, 앞으로는 감찰을 정하여 보내게 하라.”

하였다.

신묘년¹⁶⁵¹ 7월 19일

● 2차 기청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앞으로 대례^{大禮}가 겹쳤으니 의식을 연습하는 등의 일을 하느라 비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루하게 내리고 갠 날이 항상 적으니, 비단 대례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일도 걱정입니다. 다시 기청제를 지내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 사문영제^{四門祭}를 택일하지 말고 내일부터 3일 연속으로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吏以檢飭事進去，監察請推則不爲書入，而當該書吏，令攸司囚治之意，敢啓。”傳曰：“知道，以下吏檢飭官員，事體不當，今後使之監察定送。”

辛卯七月十九日

● 祈晴再度設行事

一. 曹啓曰：“前頭大禮重疊，習儀等事，殆無虛日，而霖雨支離，晴日常少，非但有妨於大禮，事亦爲可慮，不可無更爲祈晴之舉，四門祭，不卜日，自明日連三日設行，何如?” 傳曰：“允。”

임진년¹⁶⁵² 4월 2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시독관 이태연^{李泰淵}이 답전에서 아뢰기를,

‘가뭄을 만나면 수신하고 반성하라는 이야기가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가뭄의 재해가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절기가 늦은 뒤에는 기도하여 비가 내리더라도 이미 농사는 어쩔 수 없으니, 속히 기우제를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신하고 반성하라는 말이 어찌 평범한 이야기이겠는가. 기우제에 관한 일은 해당 조에 말하여 거행하라.’

하였습니다. 좌승지 박장원^{朴長遠}이 아뢰기를,

‘이전부터 관리를 보내 비가 내리기를 비는 일은 원래 절차가 있으니,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8일은 종묘에 친제^{親祭}하는 날이므로 4, 5일만 남았습니다. 지난 후에 거행합니까? 예전부터 택일하지 않고 거행하였는데, 지금은 모든 관원이 이미 제사에 차임되어 서계^{誓戒}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당 조에 물어서 다시 내게 물어 처리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오늘 시독관 이태연이 아뢰기를,

‘지금 가뭄의 재해가 이와 같으니, 절기가 늦은 뒤에

壬辰四月初二日

● 初次

一. 曹啓曰：“侍讀官李泰淵榻前所啓：‘遇旱修省之說，似涉常談，而目今旱災如此，故敢達。節晚之後，雖祈禱得雨，已無及於農事，不可不及今速行祈雨祭矣。’上曰：‘修省之說，豈是常談？祈雨祭事，言于該曹舉行，可也。’左承旨朴長遠曰：‘自前遣官祈雨，自有節次，今則何以爲之？且初八日，乃宗廟親祭之日，而只隔四五日，過後行之乎？自前或不卜日行之，而今則百官既已差祭受誓戒，何以爲之？敢稟。’上曰：‘問于該曹，更爲稟處，可也。’事，傳教矣。今日侍讀官李泰淵所啓：‘目今旱災如此，節晚之後，則雖祈雨，恐無及於農事，及今速行祈雨，何如？’傳曰：‘祈雨祭，言于該曹舉行，可也。’承旨所啓：‘自前遣官祈雨，自有節次，今則何以爲之？今則初八日，乃宗廟親祭，過後行之乎？’

는 비록 비를 빌더라도 농사는 어찌할 수 없을 듯합니다. 지금 속히 비를 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기우제는 해당 조에 말하여 거행하라.’

하셨습니다. 승지가 아뢰기를,

‘예전부터 관원을 보내어 비가 내리기를 비는 것은 원래 절차가 있으니,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8일은 종묘 친제인데 지난 뒤에 거행하겠습니까? 간혹 택일하지 않고 거행하였는데 모든 관원이 모두 차임되어 이미 서계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당 조에 물어서 다시 내게 물어 처리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근래 가뭄의 재해가 몹시 심하고 서늘한 바람이 항상 부니, 기우제를 거행하는 일을 예조에서 마침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경연관이 아뢴 말을 보니 이와 같습니다. 친제할 때 모든 관원이 이미 서계를 받았으나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일 먼저 지내면 방해가 없을 듯합니다. 전례대로 도랑을 수리하고 도로를 보수하며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을 한성부로 하여금 우선 거행하게 하고, 삼각산·목덕산·한강·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1차 기우제를 같은 날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或不卜日行，百官皆差已受誓戒，何以爲之？敢稟。’上曰：‘問于該曹，更爲稟處’事，傳教矣。近日旱災太甚，淒風長吹，祈雨舉行之事，自曹方欲啓稟，而卽見經筵官所啓如此。親祭時，百官雖已受誓戒，而不卜日，來初五日先行，則恐無妨碍。依前例，修溝壑·淨阡陌·掩骼等事，令漢城府，爲先舉行，而三角山·木覓山·漢江·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初次祈雨祭，同日設，何如？”傳曰：“允。”

임진년¹⁶⁵² 4월 7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 아직 비가 내릴 조짐이 없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부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 설행하되,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제관을 선발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⁶⁵² 4월 12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 이후 비록 비가 뿌렸으나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가뭄이 더욱 심하여 앞으로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삼각산·목멱산·풍운뇌우·산천·우사·한강 침호두^{沈虎頭}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4일 설행하되,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제관을 선발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비록 비가 뿌렸으나 가뭄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걱정하는 마음이 타는 듯하다. 규례대로 거행하지

壬辰四月初七日

● 再次

一. 曹單子：“初次祈雨之後，尚無雨徵，淒風連吹，前頭民事，極為可慮。社稷·宗廟·北郊等處，再次祈雨祭，不卜日，來初十日，設行為白乎矣，精備奠物，擇定祭官，虔誠祈禱，期於得雨事，移文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壬辰四月十二日

● 三次

一. 曹單子：“再次祈雨之後，雖得灑雨，而淒風連吹，旱乾益甚，前頭民事，極為可慮。三角山·木覓山·風雲雷雨·山川·雩祀·漢江沈虎頭，不卜日，來十四日設行，精備奠物，擇定祭官，虔誠祈禱，期於得雨事，移文知委，何如？”啓，雖得灑雨，旱乾至此，憂念如焚，勿爲循例舉行，別遣重臣，各別虔誠設行，宜矣。

말고 따로 중신重臣을 보내 각별히 정성껏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⁶⁵² 4월 15일

● 정전을 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부덕한 내가 왕위를 이어받아 만백성의 위에 의탁하였으나 신민에게 터럭만큼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해마다 한갓 홍수와 가뭄의 재해만 끼치니, 참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건딜 수 없다. 오늘날 참혹한 가뭄은 근고에 없던 것인데, 슬프다. 우리 백성이 거의 죽게 되었다.

아, 하늘이여. 죄는 과인의 몸에 있으니 나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찌하여 죄 없는 백성을 해칠 수 있습니까. 가만히 허물을 살피면 실로 나에게 있으니, 오늘부터 정전正殿을 피하여 더욱 자신을 책망하고 허물을 반성할 것입니다.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하는 등의 일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각별히 거행하게 하라.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의 초고를 써서 조정의 잘잘못과 민생의 질고에 대해 바른말을 널리 구하여 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라.
그리고 생각건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번갈아 수양

壬辰四月十五日

● 避殿

一. 曹啓曰：“備忘記：‘眇能否德，叨承丕緒，托乎兆民之上，無一毫裨補于臣庶，徒貽水旱災異沴於年年，固不勝其慙懼。及至今日，旱暵之慘，近古所無，哀我民生，大命近止。嗚呼皇天，罪在寡躬，降罰予一人，理之常也。胡寧忍之於無辜之民？靜省厥咎，宜在予小子，自今日，避正殿，益加責躬省愆，減膳·禁酒等事，令該朝政得失，民生疾苦，廣求直言，以補不逮。仍念上下交修，古今之通義，召災致沴，實由寡昧之不德，其在百執事，亦豈無其失乎？飭令中外官吏，各勤乃職，恐懼修省，以答天譴’事，傳教矣。亢旱之慘，近

하는 것이 고금의 공통된 의리이다. 재해를 부른 것은 실로 부덕한 과인 때문이지만 모든 관원도 어찌 잘못이 없겠는가. 서울과 지방의 관리를 신칙하여 각기 직분을 근면히 수행하고 두려워하며 반성하여 하늘의 견책에 답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참혹한 가뭄이 근고에 없던 바이니 성상께서 두려워하고 성상의 말씀이 간절하니, 듣는 사람이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하니, 복을 치지 말고 음악을 중지하는 등의 일도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일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술을 금하였으니 모든 술을 바치지 말라.”

하였다.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비망기에,

‘재해가 박두하여 눈썹이 타는 것처럼 급하고 근심이 간절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니 한결같이 평상시의 규례만 따를 수 없다. 먼저 대신을 보내 정성껏 기도하라고 해당 조에 말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古所無，自上憂遑恐懼，聖旨懇惻，凡在瞻聆，孰不感動？自今日，避正殿·減膳·禁酒，則勿擊鼓·撤樂等事，亦令各該司，一體舉行，何如？”傳曰：“依啓。既已禁酒，則凡酒勿爲供進。”

● 四次

一. 曹單子：“備忘記：‘災迫燃眉，憂切焚灼，不可一循常規，先遣大臣虔祈事，言于該曹’事，傳教矣。社稷·宗廟·北郊等處，遣大臣，祈雨祭，不卜日，來十八日設行事，各該司良中，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⁶⁵² 4월 19일

● 사직 친제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가뭄이 날로 극심하여 내가 몸으로 희생을 대신하여 우리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기우제를 친행하겠다고 해당 조에 말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전부터 기우제를 친행하는 장소는 사직과 남교 두 곳 중 한쪽으로 하교하여 설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우제는 어느 곳에서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사직에서 친제를 하겠다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祈雨親祭}하는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여 길일을 잡았더니 22일이 길하므로 이날 설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미리 준비할 모든 일을 즉시 각 관사에 분부하고, 또 대소 집사와 관원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21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장소로 나아가 의식을 연습하라고 역시 분부하며, 제관 이하는 오늘부터 산재·치재를 함께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壬辰四月十九日

● 社稷親祭

一. 曹啓曰：“備忘記：‘亢旱日極，予當以身代犧，慰我民生，祈雨祭親行事，言于該曹’事，傳教矣。自前祈雨親祭處所，社稷·南郊兩處中，一從下教設行矣。今此行祭，以何所爲之？敢稟。”傳曰：“社稷親祭爲之，可也。”

一. “曹啓曰：‘祈雨親祭事命下，似當不卜日設行，而吉日推擇，則今二十二日合吉，以此日設行爲當。凡于預備之事，卽爲分付于各司，且大小諸執事官員等，除肄儀，二十一日平明，先詣祭所習儀之意，亦爲分付。祭官以下，自今日散·致齋，並令依例舉行，何如？’傳曰：‘似涉太迫，二十三日間爲之，可也’事，命下矣。更問于日官，則二十三日，頗有拘忌，不

하니, 전교하기를,

‘너무 촉박한 듯하니 23일 무렵에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일관^{日官}에게 물었더니 23일은 제법 구기^{拘忌}가 있어 길한 22일만 못하다고 합니다. 성상께서 출궁하여 제사를 지내는 일은 중대하니, 신중히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택일한 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 만약 너무 촉박하면 24일로 물러 행하더라도 무방할 듯하다고 합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이전에 정한 날짜에 하라.”

하였다.

● 친제의 산재와 치재

예조의 단자에,

“이번 22일 사직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오늘부터 전하는 별전^{別殿}에서 이틀 동안 산재^{散齋}하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致齋}하되,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는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 아뢰라고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들과 근시 관원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若二十二日之合吉云. 自上出宮行祭, 舉措重大, 不可不慎擇. 仍前擇日舉行, 似或宜當, 而如或太迫, 則退行於二十四日, 亦爲無妨云. 惶恐敢稟.”
傳曰: “然則前定日爲之可也.”

● 親祭散致齋

一. 曹單子: “今二十二日社稷祈雨親祭教是時, 自今日, 殿下散齋二日於別殿, 致齋一日於享所, 凡散齋, 不吊喪問疾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齋, 唯啓享祀事, 依禮文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諸享官近侍之官齋戒

一. 曹單子: “今二十二日社稷

“이번 22일 사직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과 근시 관원 중에 따라서 올라와야 할 자는 오늘부터 모두 이틀 동안 본사에 묵으며 산재하고, 향소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배향하는 모든 관원과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로서 유문(塿門)을 지키는 자는 내일부터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⁶⁵² 4월 21일

● 여러 도의 물선을 바치는 일을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가뭄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비전 외의 각 전에 여러 도의 물선을 바치는 일을 정지하라고 해당 조에 말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즉시 각 도에 분부해야 마땅하나, 이른바 물선에는 삼명일과 단오의 물선이 있습니다. 또 매달 물선을 봉진하는 규례가 있으니, 일의 체모로 헤아려 참으로 전부 바치기를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단오와 5월의 물선은 4월 20일 무렵 각 도에서 모두 이미 감독하여 봉하였고, 또 탄신일의 물선도 필시 이미 나누어 지정하여 마련하였을 것이니 형세상 모두 중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6월 이후 매달의 물선은 대비전 이외에는 우선 올해

祈雨親祭時，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自今日，並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塿門者，自明日，各於本司清齋一宿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辰四月二十一日

● 諸道物膳停進

一. 曹啓曰：“備忘記：‘旱災至此，大妃殿外各殿，諸道物膳停進事，言于該曹’事，傳教矣。所當卽爲分付于各道，而所謂物膳，有三名日及端午物膳，又有每朔物膳封進之規，揆以事體，固不可盡爲停進。而至於端午及五月朔物膳，則各道皆已監封於四月念間，且誕日物膳，亦必已爲分定措備，勢不可並令中止矣。六月以後各朔物膳，大妃殿外，姑令限今年停進，似爲便當。以此意，分付諸道，何如？”傳曰：“允。”

에 한해 정지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여러 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⁶⁵² 4월 24일

● 남교에서 친히 기도하겠다는 전교

예조가 아뢰기를,
“엿그제 비가 내릴 조짐이 있어 하늘이 감응한 듯하였으나 조금 내리다가 곧 그치고 가뭄이 여전하니 농사가 망극합니다. 기우제를 차례대로 지내면 지방의 산천·양진 등 다섯 곳에서 거행해야 하는데, 일이 평상시의 규례와 다르니, 근시^{近侍}와 중신^{重臣} 중에 별도로 차임하여 보내어 속히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과인이 덕이 없고 성의가 얕아 하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여 가뭄이 지금 더욱 혹독하니 몹시 부끄럽고 두렵다. 어찌 덕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핑계 대겠는가. 내가 다시 자신을 책망하고 남교에서 친히 기도할 것이니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 남교에서 친제를 지내기로 하다.

예조의 단자에,
“남교 기우 친제^{南郊祈雨親祭}의 길일을 일관으로 하여

壬辰四月二十四日

● 南郊親禱事傳教

一. 曹啓曰：“再昨雨意，似有所感應，而乍下旋止，旱曝猶前，民事罔極。以祈雨祭次第爲之，則當行於外山川·楊津等五處，而事異常規，近侍及重臣中，別爲差遣，趁速舉行，何如？”傳曰：“寡昧德薄誠淺，不能昭格天心，旱災到此猶酷，深用慙懼，而豈可諉之於德薄而無可奈乎？予當更爲責躬，親禱於南郊，劃卽舉行。”

● 南郊親祭

一. 曹單子：“南郊祈雨親祭吉日，令日官推擇，今月二十七日

금 잡게 하였더니 이달 27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의식을 연습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남교 기우 친제를 거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전부터 성 밖의 교단郊壇에서 친제할 때는 성상께서 으레 2경 초각에 동가動駕하여 도성을 나가 단소壇所로 나아가고,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며 야차野次에 묵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관과 집사들은 규례대로 들어가 청제하고, 이튿날 먼저 제사 지낼 장소에 나아가 예식을 연습하고 받들어 행하라고 역시 각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27일 남교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오늘부터 전하는 이틀 동안 산제散齋하고 하루 동안 치제致齋하되, 산제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으며, 치제할 때에는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爲吉云。以此日舉行事，知委各該司，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習禮

一. 曹啓曰：“今此南郊祈雨祭親行事，命下矣。自前城外郊壇親祭時，則自上例於二更初，動駕出城詣壇所，仍爲行祭還宮，而無野次經宿之規矣。今亦依此舉行宜當，祭官·諸執事，依例入清齋，翌日先詣祭所，習禮奉行之意，亦爲知委各司，何如？”傳曰：“依啓。”

●齋戒

一. 曹單子：“今二十七日南郊祈雨親祭教是時，自今日，殿下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

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27일 남교 기우 친제를 지낼 향관들과 근시_{近侍} 관원 중에 따라서 올라와야 할 자는 오늘부터 모두 이틀 동안 본사에 묵으며 산재하고, 향소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모든 관원과 여러 위_衛에 소속된 자로서 유문_{壘門}을 지키는 자는 내일부터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⁶⁵² 4월 25일

● 단소를 수리하다.

4월 24일 대신·육경·삼사의 장관을 인견하였을 때 예조 판서 임담_{林潭}이 아뢰기를,

“친제_{親祭}하겠다는 하교를 이미 내렸는데 남교의 제단은 무너진 곳이 많아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수리하고 청소하라고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단소_{壇所}를 평상시 수리하지 않다가 제사 지낼 때가 되어서야 청소하면 일이 몹시 부당하니, 해

● 齋戒

一. 曹單子：“今二十七日南郊祈雨親祭時，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自今日，並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壘門者，自明日，各於本司清齋一宿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辰四月二十五日

● 壇所修補

一. 四月二十四日，大臣·六卿·三司長官引見時，禮曹判書林潭所啓：“親祭之教已下，而南郊祭壇，多有頽圯處，今明日內修補灑掃之意，各別申飭，何如？” 上曰：“然矣。凡壇所，常時不能修補，及其祭祀，然後始爲灑掃，事甚不當。言于該官，各別修治，此後常時守

당 관원에게 말하여 각별히 수리하고, 앞으로는 평상시 수직^{수직}하며 한 가지 일도 가벼이 하지 말라. 신직할 때 낭청을 보내 검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비망기에,
“올해 가뭄의 재해가 망극하여 이렇게 다시 친히 기도하는 일이 생겼으니,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제관·집사와 나의 모든 신료들이 누군들 두려워하며 정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다만 번갈아 수양하고 경계하는 방도는 그만둘 수 없으니, 승지는 나의 지극한 뜻을 유념하여 한결같이 사직에 제사 지낼 때의 전례대로 각별히 엄히 신직하여 더욱 소홀히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단상을 수리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남교 친제^{南郊親祭} 때 단상^{壇上}을 수리하라고 이미 분부하였습니다. 호조·공조 낭청과 본조의 낭청을 따로 보내 함께 검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출궁할 때의 복색

26일 성상이 출궁할 때는 익선관·곤룡포를 입고 소여^{小輿}를 타며, 같은 날 초경 3점에 출궁하여 제사를

直, 一事不輕. 申飭時, 遣郎廳看檢, 可也.”

一. 備忘記: “今茲旱災罔極, 有此更爲親禱之舉, 予雖不言, 祭官·執事及凡我大僚, 孰不惕念盡誠? 而第念交修戒飭之道, 在所不已, 承旨體予至意, 一依社稷時例, 各別嚴飭, 更加毋泛.”

● 壇上修補

一. 曹啓曰: “南郊親祭時, 壇上修補修理事, 已爲分付矣. 別遣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 眼同看檢, 何如?” 傳曰: “依啓.”

● 出宮服色

一. 二十六日自上出宮時, 以翼善冠·兗袞龍袍, 御小輿, 同日

지낼 때는 먼복冕服을 입고, 배종陪從하는 모든 관원은 흑단령을 입고, 제사를 지낼 때는 조복朝服을 입고, 제관은 지영祗迎할 때 흑단령을 입고 제사를 지낼 때는 제복祭服을 입으라고 계하하였다. 대가大駕의 도가導駕는 없다.【소가리 1, 돼지 반짝】

初更三點出宮，行祭時冕服。百官陪從黑團領，行祭時朝服。祭官則祗迎時黑團領，行祭時祭服事，啓下。無大駕導駕。【牛加里一猪半隻】

임진년¹⁶⁵² 5월 26일

● 기청제를 대신과 논의하여 결정하다.

“예조의 계사에,

‘전교하기를,

「근래 장마가 이처럼 지극히 걱정스러우니, 얼마 전 연석에서 기청제를 지내자는 말을 해당 조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전부터 기청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가을이 되기를 기다린 뒤에 으레 설행하였으나, 작년 6월 장마가 크게 지고 마침 부묘^{附廟}하는 예식이 박두하였으므로 성상께서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특별히 기청제를 지내게 하여 마침내 날이 개었습니다. 올해 가뭄이 든 뒤 단비가 내리자마자 점차 장마가 되어 날씨가 흐려 한 달이 되도록 개지 않습니다. 지금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걱정은 지난날 가뭄을 걱정하던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변통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앞으로 여름이 멀었고, 비가 내리는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막중한 변통하는 일을

壬辰五月二十六日

● 祈晴祭議大臣定奪

一. “曹啓辭：‘傳曰：「近日霖潦，如是悶極，頃日筵中祈晴之說，令該曹議處」事，命下矣。自前祈晴之舉，必待秋節後，例爲設行，而上年六月，霖雨大作，適值祔廟之禮迫近，故自上不待秋候，特令祈晴，乃爲得晴矣。今年亢旱之餘，纔得甘雨，轉成霪霖，日氣陰霾，浹月不霽。目今上下之憂，少無異於向日悶旱之時，祈晴一事，似當變通。而第念前頭夏節尙遠，潦雨之作，又未知其如何，莫重變通之舉，非該曹所敢擅便，伏惟上裁。’傳曰：‘議于大臣處之事，傳教’矣。議于大臣，則領議政鄭太

해당 조에서 감히 제멋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논의하여 처리하라.’

라고 전교하였습니다. 대신에게 논의하니,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비가 재해가 되어 장차 농사를 망칠 것이니 기청제를 급히 지내야 합니다. 어찌 가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마침 차자箚子를 올리려던 때에 삼가 하문을 받고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아뢰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좌의정 김육金瑬은,

‘하늘에서 장마가 내려 제수를 해치니 어찌 조문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 옛글에 있습니다. 조문도 하는데 기청제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얼마 전 연석에서 이미 그 뜻을 아뢰었는데, 성상께서 우선 며칠 동안 보겠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잠시 개었다가 곧 비가 내려 형세상 그치지 않을 듯한데 가을이 멀었으니 한 달 뒤에는 전례에 구애받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은 영의정의 논의와 같고, 전 영의정 이경석李景奭과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는 모두 강가에 있고 성문이 이미 닫혀서 수의收議하지 못하였고, 영돈녕부사 김상헌金尙憲은 지방에

和以爲：‘雨水爲災，將害農事，祈晴之舉，在所汲汲，何可諉之等待秋節？臣方欲上箚之際，伏承下詢，敢陳愚見，伏惟上裁。’左議政金瑬以爲：‘天降霖雨，害於棗盛，若之何不吊者，傳有其說，吊亦爲之，祈何可無？臣頃於筵中，已達其意，自有上姑觀數日之教，纔晴旋雨，勢將不止，而秋節遠在，一朔之後，似不可拘於前例。令該曹，不卜日舉行，似爲宜當。伏惟上裁。’右議政李時白議，與領議政議同。前領議政李景奭·領中樞府事李敬輿，俱在江上，城門已閉，不得收議。領敦寧府事金尙憲在外。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傳曰：“依議劃卽舉行。”

있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수의대로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 기청제 택일

예조의 단자에,

“기청제를 설행하라고 계하셨습니다. 전례대로 사문영제四門禁祭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기청제는 다시 상황을 보아 하기로 하다.

예조의 계사에,

“기청제를 설행하는 일은 대신의 수의收議에 따라 즉시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내릴 때는 흐리고 개기가 무상하니, 오늘 비가 그칠 듯합니다. 비록 계속 갠다고 믿기는 어려우나 날이 갠 뒤에 그대로 기청제를 지내는 것도 온당치 않은 듯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형세를 보아 하라.”

하였다.

● 祈晴祭擇日

一. 曹單子：“祈晴祭設行事，啓下矣。依前例，四門禁祭，不卜日，來二十八日爲始設行，三日而止事，各該司良中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祈晴更爲觀勢爲之

一. 曹啓辭：“祈晴祭設行事，以大臣收議，有劃卽舉行之命矣。潦雨之時，陰晴無常，今日雨勢垂晴，雖難恃其永爲開霽，然向晴之後，仍行祈晴之舉，亦似未妥，何以爲之？敢稟。”傳曰：“更爲觀勢爲之。”

임진년¹⁶⁵² 6월 13일

● 기청제는 가을 이후에 하기로 하다.

예조의 계사에,

“전교하기를,

‘장마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전에 결정한 기청제를 어찌 설행하지 않는가? 해당 조에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청제를 예전에 설행하지 않은 것은 비가 그칠 듯하였기 때문인 듯한데, 지금 전교를 받고 이전에 결정한 대로 택일하지 말고 14일 향향을 받고 15일을 시작으로 사문영제^{四門營祭}를 설행하되 해당 조로 하여금 제관을 속히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제관을 각별히 선발하라.”

하였다.【사간원의 계사로 인하여 가을이 되기를 기다린 뒤에 하라고 승전을 받들어 설행하지 않았다.】

임진년¹⁶⁵² 7월 2일

● 입추 이후 보사제를 지내기로 결정하다.

반송사^{伴送使} 예조 판서 임담^{林潭}의 장계에,

“신이 예전에 『오례의^{五禮儀}』에서 각처의 제향의^{祭享儀} 절목을 살펴보니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바로 보사제를 거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시행하지 않고 전폐하여 집사에게는 두루 상을 주었으나 향소^{享所}에 보답하는 예식은 매년 빠

壬辰六月十三日

● 祈晴祭秋節後爲之

一. 曹啓辭：“傳曰：‘霖霖至此，而前日定奪祈晴祭，何不設行耶？’言于該曹’事，傳教矣。祈晴祭，前日不爲設行者，似是雨勢開霽所致。今承傳教，依前定奪，不卜日，十四日受香，十五日爲始，四門營祭設行，令該曹，祭官速爲差出，何如？”傳曰：“依啓。祭官各別擇差。”【因諫院啓辭，待秋節後爲之事，奉承傳，不爲設行。】

壬辰七月初二日

● 立秋後報祀定奪

一. 伴送使曹判書林潭狀啓內：“臣曾於『五禮儀』中，考見各處祭享儀節目，則‘凡祈禱有應，輒行報祀’云。而近年以來，全廢不行，賞例遍及於執事，報禮每缺於享所。臣未知

졌으니 신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필시 빠뜨린 전례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상께서 지성으로 가뭄을 걱정하여 친히 교단郊壇에 나아가 기우제를 거행한 뒤로 다행히 비가 내렸으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믿어 터럭만큼도 간격이 없습니다. 신의 조曹·예조에서 즉시 보사제를 지내도록 아뢰고자 하였으나, 예의禮儀의 소주小註에 ‘기우제의 보사報祀는 입추 이후에 설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그때 가서 아뢰어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가을이 머지않았으니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

그러나 폐지된 전례를 거행하는 일인데, 신이 비록 외직에 나갔으나 예관禮官을 맡아 하늘을 공경하고 귀신을 섬기니, 제사를 지내는 중대한 예식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소견을 아웁니다. 보사제를 지낼지 여부를 본조로 하여금 다시 예문을 살펴 성상의 뜻을 여쭙어 처리하게 하소서. 황공한 마음으로 급히 아웁니다.”

라는 내용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한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본조의 판서 임담은 비록 지방에 있으나 보사제를 시행하지 않는 일에 연연하여 이렇게 급히 아뢰었습니다. 폐지된 전례를 거행하려는 뜻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신들이 『오례의』를 가져다 살펴보니, 보사 아래 소주에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보사한다. 홍수와 가뭄에 기도하였으면 입추 이후에 보사한다.’라고 하였으니,

厥由。必是欠典是白乎等以，向日自上至誠憫旱，親詣郊壇，祈雨行祭之後，幸而得雨，天人交孚，間不容髮。臣曹即欲啓請報祀，而禮儀小註中有曰：「祈雨報祀，則立秋後設行」云，故臣擬於臨時啓稟定奪爲白有知乎，今者秋節不遠，似當依禮文舉行，而係是修舉廢典，臣身雖出外職，忝禮官，敬天事神，祀禮莫大，不得不濫陳愚見爲白去乎，報祀當否，令本曹，更考禮文，稟旨以處，何如爲白乎喻？惶恐馳啓”爲白臥乎事據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本曹判書林堦，身雖在外，眷眷於報祀之不行，有此馳啓爲白臥乎，所其修舉廢墜之意，可謂切矣。臣等取考『五禮儀』，則報祀下小註中，有曰：‘凡祈有應則報祈，水旱則待立秋後報。’禮文本意，必非偶然。而自壬辰以後，廢而不行，其所謂賞例遍及於執事，報禮每缺於享所云者，實爲未安是白如乎。日者親祭

예문의 본뜻은 필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임진년 이후로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으니,
그가 이른바 ‘집사에게는 두루 상을 주었으나 향소
에 보답하는 예식은 매번 빠졌다.’라는 말은 실로 온
당치 않습니다. 얼마 전 남교에서 친제하며 기도하
자 즉시 비가 쏟아져 천 리를 적셨으니, 지금 입추
이후에 예문대로 설행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
합니다.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길일을 택하여 거행하
게 하되, 앞으로는 일정한 범식으로 정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고 순치 9년 7월 2일 동부승지 신 이척연^{李惕然}이
담당하여 아뢰니,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⁶⁵² 7월 15일

- 남교 보사를 친행하는 일을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하다.

“예조의 단자에,
‘반송사^{伴送使}의 장계에 근거한 예조의 회계에,
「남교 보사제의 길일을 택해 설행하도록 윤허를 내
리셨습니다. 오늘 일관으로 하여금 날을 잡게 하였
더니 7월 13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예문대
로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되, 친제^{親祭}를
지낸 뒤 보사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중대하니 제관
을 규례대로 차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대신을 차임하여 보내 그 체모를 무겁게 하는 것이

南郊, 有禱卽應, 沛然下雨, 千里滂沱, 則趁今立秋之後, 依禮文設行, 似不可已. 令日官, 擇吉舉行爲白乎矣, 自今以後, 定爲恒式, 何如?” 順治九年七月初二日, 同副承旨臣李惕然次知, 啓依允.

壬辰七月十五日

- 南郊報祀親幸議大臣定奪一. “曹單子: ‘伴送使狀啓據曹回啓. 「南郊報祀, 擇吉設行事, 允下矣. 令日官推擇, 則今七月十三日爲吉云. 以此日, 依禮文設行事, 分付各該司爲白乎矣, 親祭後報祀, 事體重大, 祭官不可循例差下, 令該曹, 差遣大臣, 以重其禮, 何如?’ 順治九年七月初五日啓. 「今茲報祀禮, 當親行, 本曹

어떻겠습니까?

라고 순치 9년 7월 5일 아뢰니,

「이번 보사제는 친행할 것이니 본조는 논의하여 아뢰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관하를 첨부하였습니다. 『오례의(五禮儀)』를 살펴보니 풍운뇌우·기우·보사 등의 제사의 헌관은 2품으로 채워 써넣으니, 봄가을 지내야 하는 제사에 비하면 그 절차를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사철에 가뭄이 들면 모든 방도를 다하여 기도하므로 관원을 보내 설행할 적에 각기 차례가 있습니다. 대신이 제사를 지냈는데 끝내 비가 내리지 않은 뒤에야 성상이 친제하니, 이것은 백성을 위한 부득이한 일로 실제로는 한때의 특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보사제의 복구는 친제를 지내고 비가 내린 뒤이니, 성상께서 관원을 보내 설행(攝行)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몹시 성대한 일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군주가 백성을 위해 친히 기도한 일이 이전의 역사에 분명히 실려 있어 살펴볼 수 있으나, 보사제는 친히 행한 글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진년¹⁵⁹² 이후 전적이 흩어져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습니다. 신들은 견문이 적어 감히 함부로 논의할 수 없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순치 9년 7월 7일 아뢰니,

‘대신에게 논의하여 처리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관하를 첨부하였습니다.

議啓」爲良如教據，粘連判下是白有亦。考諸『五禮議』，則風雲雷雨·祈雨·報祀等祭，獻官以二品書填，比諸春秋應行節祭，則其節文之降殺可知是白乎矣。唯只方農亢旱，則祈禱之方，無所不用其極是白乎等以，遣官設行，各有次第，至於大臣行祭，而終不得雨，然後自上親祭，此是爲民不得已之舉，實出於一時之特命是白如乎，今此報祀復舊於親祭得雨之後，則自上不欲遣官攝行，甚盛舉也教是白乎矣。第念人君之爲民親禱，昭載前史，班班可考。而報祀一節，絕無親行之文岔不喻，壬辰以後，文籍散失，亦無前例之可據。臣等以謏聞寡見，不敢輕議，上裁，何如?’ 順治九年七月初七日啓，‘議于大臣處之’爲良如教事據，粘連判下是白有亦。議于大臣，則前領議政李景奭以爲：『五禮儀』所載，風雲雷雨·祈雨·報祀等祭，獻官以二品爲之者，可見其祈報

대신에게 논의하였더니 전 영의정 이경석李景奭은,
『오례의』에 실린 「풍운뇌우·기우·보사 등의 제사의
헌관은 2품으로 한다.」라는 말에서 기도하고 보사하
는 관원이 모두 2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후가 강역의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은 예법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보사제 역시 제사입니다. 친히 보
사제를 지내는 것이 어찌 예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
까. 이번에 성상께서 친히 기도하여 비가 내렸기에
만백성이 이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성상께서 보사제
를 친히 지내려 하신다면 전례의 유무를 막론하고
예법상 당연한 듯합니다.

상림桑林의 기도가 어찌 관례를 따라 한 것이겠습니
까. 더구나 여러 해 공경히 기도하자 곧장 비가 쏟아
아졌고, 이번의 감응은 더욱 지극히 분명하여 하룻
사이에 팔도에 모두 비가 내렸습니다. 친히 보사제
를 지내 보답하는 뜻을 펴는 것은 실로 더욱 경계하
고 조심하며 감히 편안히 있지 못하는 지극한 정성
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이 어리석은 견해로 어찌 감
히 그 사이에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무더위
가 아직 치성하고 성상의 몸을 돌보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제문도 미리 준비해야 하니 그 의도가 있습니
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한 체후가 있다면 조심하
여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또한 성의입니다. 살펴 주시
면 몹시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之官，皆以二品也。諸侯祭邦
內山川，禮也。以此推之，則
報祀亦祭也。親行報祀，豈曰
非禮？今者自上親禱得雨，萬
民因此以活，自上欲爲親行報
祀，無論前例之有無，禮似當
然。桑林之禱，曷嘗依故常以
爲之乎？況連年虔禱，輒見沛
然，今番冥應，尤極昭昭，一
日之間，八路同然。親行祀事，
以伸報謝之意，實出於益加戒
謹，不敢違寧，至誠之發乎中
者，如臣瞶陋之見，何敢容議
於其間？而但念炎熱尙熾，聖
躬不可不顧護，祭文亦爲預備
者，意有在焉。如或有不不安
之候，慎勿強作，是亦誠也。監
察幸甚，伏惟上裁.’領議政鄭
太和以爲：‘凡祈禱有應，輒行
報祀，自是禮文所載，而近年
廢而不行，殊涉欠缺，似當有
講定復舊之舉。況在亢旱之
極，親祭郊壇，始得大霽之雨，
則報謝之禮，尤不可闕。臣嘗
與左相，論及此事，其意亦然。
竊擬陳達於登對之日，旋聞禮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바로 보사제를 거행한다.』는 원래 예문에 실려 있으나 근래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으니 몹시 흠결입니다. 강론하여 복구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더구나 지극한 가뭄이 들어 교단에서 친제하자 비로소 비가 쏟아졌으니, 보사하는 예식을 더욱 빠뜨릴 수 없습니다. 신이 예전에 좌의정과 이 일을 의논하였는데 그의 뜻도 그러하였습니다. 어전에 나오는 날 아뢰려고 하였는데 예관이 아뢰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신은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오례의』에 보사제를 친행한다는 글은 없으나 친히 기도하고 친히 보사하는 일은 안 될 것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신은 예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감히 억측으로 대답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좌의정 김육^{金堧}과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은, ‘비가 내리기를 빌어 응답이 있으면 보사하는 것이 당연한 예법입니다. 예전에 친제를 지내거나 중신^{重臣}과 대신^{大臣}을 보냈을 때는 비록 비가 내리더라도 보사한 적이 없었으니, 신은 항상 빠뜨린 전례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날이 지극히 덥고 성상의 체후도 평상시와 같지 않으니, 한밤중에 거둥하면 몸이 상할 우환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또 곡식이 한창 무성하네 길가와 단상 주변을 비록 밟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여도 필시 손상이 많을 것이니 이 또한 백성을 위해 걱정스러운 점입니다. 성상께서 보사하고자 하시는 것은 실로 상제를 마주하는 지극한 정성에

官啓稟，臣誠喜幸于心矣。『五禮儀』，雖無報祀親行之文，親自祈禱，親自報謝，恐無不可，而臣非識禮之人，敢以臆見仰對。伏惟上裁。’ 左議政金堧·右議政李時白以爲：‘凡祈雨之時，有應則有報，禮之當然，而自前親祭，及遣重臣·遣大臣之時，雖或得雨，未有報祀，臣常以爲欠典。今則日氣極熱，聖候未能如常，冒夜舉動，恐有添傷之患。且禾穀方盛，路邊壇邊，雖戒踐踏，必多傷損，此亦爲民而可慮者也。聖上之欲爲報祀，實出於對越之至誠，而臣隣之所憂，不可不念，如不得已，則令大臣攝行，與祈雨無異。伏惟上裁。’ 領中樞府事李敬輿，病不收議。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 順治九年七月初六日啓，依領議政議施行爲良如教。

서 나온 것이나, 신민의 걱정도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다면 대신에게 설행하게 해도 기우제와 차이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는 병으로 수의收議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은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순치 9년 7월 6일 아뢰니, 영의정의 논의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보사제의 택일

예조의 단자에,

“남교 보사를 친행하겠다고 계하하셨습니다. 친제親祭의 길일을 일관으로 하여금 잡게 하였더니 오는 9월 18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달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삼정승의 차자箚子로 인하여 보사제는 설행하지 않았다.】

임진년¹⁶⁵² 9월 13일

● 보사제를 지낼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다.

예조의 기사에,

“남교 보사 친제南郊報祀親祭를 이미 이번 18일로 계하하셨습니다. 청재단자淸齋單子를 내일 입계할 것입니다. 다만 당시 삼공의 연명 차자箚子를 보니,

● 報祀祭擇日

一. 曹單子：“南郊報祀祭親行事，啓下矣。親祭吉日，令日官推擇，則來九月十八日爲吉云。以此日舉行事，知委各該司，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因三公箚子，報祀祭，勿爲設行。】

壬辰九月十三日

● 報祀行否更爲定奪

一. 曹啓辭：“南郊報祀親祭，既以今十八日，啓下。淸齋單子，明日當爲入啓。而但觀其時三公聯名箚子，則‘有水旱，

‘홍수와 가뭄이 있어 농사를 아직 단정할 수 없으니, 이달 그믐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달 초에 택일 하여 친제를 지내도 늦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으니, 농사의 풍흉으로 보사제를 지낼지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팔도 중에 가뭄 또는 홍수로 칠도가 거의 큰 흉년이 들었으니, 대신의 차자 내용으로 따지자면 다시 결정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설령 보사하는 예식을 끝내 중지할 수 없더라도 보사 친제는 본디 예문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상께서 얼마 전 능행陵幸 하였는데 지금 날씨가 서늘한 때에 밤새 친제를 지내느라 옥체를 힘들게 움직이면 상황까 걱정입니다. 2품 관원이 지내야 하는 제사이니 대신에게 지내게 하더라도 각별히 보사하는 뜻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여러 사람의 논의가 모두 보사제는 반드시 지낼 필요 없고, 성상께서 친행하는 것은 더욱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논의하여 성상의 뜻을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農事猶未斷定. 稍俟今月之晦, 開月之初, 卜日親祭, 亦未爲晚’之語, 則似當以農事豐歉, 定其報祀行否. 而八道之中, 或以旱災, 或以水災, 七道幾於大無, 以大臣筮意論之, 不可無更爲定奪之舉. 設或報祀之禮, 不可終止. 報祀親祭, 本非禮文所載, 而自上纔經陵幸, 當此日氣涼冷之時, 冒夜親祭, 勞動玉體, 則恐有所傷, 二品官當行之祭, 雖使大臣行之, 別致報謝之意, 亦足著矣. 群議皆以爲報祀不必行, 而尤不必自上親行云. 令廟堂更議, 稟處, 何如?” 傳曰: “允.”

임진년¹⁶⁵² 9월 14일

● 보사제는 대신을 보내 설행하기로 하다.

이번 9월 13일 대신·비국당상·양사의 장관을 인견하였을 때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예조의 초기草記를 보았더니 남교 보사는 비록 중지

壬辰九月十四日

● 報祀遣大臣設行

一. 今九月十三日, 大臣·備局堂上·兩司長官引見時, 領議政鄭太和所啓: “得見禮曹草

할 수 없으나 친제親祭로 말하자면 예문에 실려 있지 않으니, 해당 조의 초기대로 대신을 보내 섭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 사람의 논의가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좌의정 김육金堉에게 묻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김육이 아뢰기를,

“신이 지방에 있을 때 이미 영의정과 상의하였는데, 신의 소견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논의가 이와 같으니 대신을 보내 섭행하라.”

하였다.

● 산재와 치재

이번 9월 18일 남교 보사제는 대신을 보내 섭행하라고 계하하였다. 향관들은 이틀 동안 산재하고 정침正寢에 묵으며, 본사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였다.

● 보사는 절제의 규례대로 지내기로 결정하다.

예조의 계사에,

“보사제는 비록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으나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고, 또 예전에 지낸 전례도 없습니다. 이번 보사제는 근거할 곳이 없는데, 만

記，則南郊報祀，雖不可止，而至於親祭，則不載於禮文中，依該曹草記，遣大臣攝行宜當。群議如此，故敢達。”上問于左議政金堉曰：“卿意則如何？”金堉曰：“臣在外時，已與領相相議，則臣之所見，亦無異同矣。”上曰：“群議如此，則遣大臣攝行，可也。”

● 散致齋

一. 今九月十八日，行南郊報祀祭，遣大臣攝行事，啓下爲有置。諸享官，散齋二日，宿於正寢，致齋一日於本司事，知委各該司。

● 報祀依節祭例定奪

一. 曹啓辭：“報祀祭，雖載於『五禮儀』，而行祭儀節則不著，又無曾行之例。今此報祀祭，無可考據，若用祈雨之例，則

약 기우제의 전례를 따르면 소략한 듯합니다. 삼헌^{三獻}, 사용하는 음악, 희생의 수를 한결같이 봄가을 절제^{祭節}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⁶⁵² 9월 15일

● 기고제와 보사제 절차는 봄가을 절제대로 하기로 하다.

예조의 계사에,

“이번 보사제는 임진년¹⁵⁹² 이전은 비록 알 수 없지만 이후로는 설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오래 폐지된 예식을 갑자기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조의 오래된 문서는 남은 것이 없으니 근거 삼을 것이 없습니다. 이번 일은 처음에 친제^{親祭}로 마련했다가 설행하는 예식으로 바꾸었으니, 그 일의 체모는 2품 관원이 헌관이 될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 따위와 삼헌^{三獻}, 음악을 사용하는 등의 일을 봄가을 절제대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어제 아뢰었는데, 성상께서 대신에게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교하셨으니, 지금 이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사제는 필시 폐지하지 않고 계속 거행할 것이니, 지금 대신에게 하문하여 강론할 때 반드시 명백하게 결정하여야 훗날 따라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조의 계사에 한 단락이 누락되어 부득불 다시 이렇게 아뢰입니다.

似爲草畧，三獻·用樂及犧牲之數，一依春秋節祭爲之，何如？”傳曰：“問于大臣處之。”

壬辰九月十五日

● 祈告報祀節目依春秋節祭事

一. 曹啓辭：“今此報祀祭，壬辰以前，則雖未能知，以後則一無設行之時，久廢之禮，猝然修舉，本曹久遠文籍，蕩失無存，無可考據。而今番之事，則初以親祭磨鍊，變爲攝行之禮，則其事體有別於二品官爲獻官之時，故犧牲之類及三獻·用樂等事，依春秋磨鍊之意，昨日啓稟。因上教議大臣停當，今當依此舉行。而此後報祀祭，必將仍行不廢，今當詢問大臣講定之時，必須明白定奪，方可遵行於日後，而昨日本曹啓辭中，有脫漏一款，不得不更此申啓。『五禮儀』齋官條，風雲雷雨·祈告·報祀，

『오례의五禮儀』 재관조齋官條에 풍운뇌우·기고·보사報祀의 헌관은 2품으로 실려 있고, 삼각산·한강은 3품으로 실려 있습니다. 재계조齋戒條에 보사는 소사小祀에 있으며, 소사는 희생으로 돼지 1마리를 사용하고, 또 삼헌과 음악을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교단의 보사를 예문대로 2품 관원이 설행할 때 만약 이번에 섭행한 전례를 인용하면 지나친 듯합니다. 앞으로는 성상께서 친히 기도한 뒤의 보사제는 친제 또는 섭행으로 봄가를 절제대로 마련하고, 관원을 보내 기도한 뒤의 보사제는 모든 절목을 한결같이 소사대로 마련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보사제를 봄가를 절제의 규례대로 행하기로 하다.

“예조의 계사에,

‘보사제는 비록 『오례의五禮儀』에 있으나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절차가 분명하지 않고 또 예전에 지낸 전례도 없습니다. 이번 보사제는 근거 삼을 곳이 없습니다. 만약 기우제의 전례를 따르면 소략한 듯하니, 삼헌, 사용하는 음악, 희생의 수를 한결같이 봄가를 절제節祭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에게 물어 처리하라.’

라고 전교하였습니다. 대신에게 물으니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김육金堧은,

獻官以二品載錄，三角·漢江，則三品載錄，而齋戒條，報祀在於小祀之中，小祀則性用猪一口，又無三獻·用樂之事。郊壇報祀，依禮文，以二品官設行之時，若以今番攝行之例援據，則似爲過重。今後自上親行 祈告後，報祀則或以親祭，或以攝行，依春秋節祭磨鍊，遣官祈告後報祀，則凡干節目，一依小祀磨鍊，以爲定式，何如?” 傳曰：“依啓。”

● 報祀祭春秋節祭例行事

一. “曹啓辭：‘報祀祭，雖在於『五禮儀』，而行祭儀節則不著，又無曾行之例。今此報祀祭，無可考據，若用祈雨之例，則似爲草畧，三獻·用樂，犧牲之數，一依春秋節祭爲之，何如?’ 傳曰：‘問于大臣處之’事，傳教矣。問于大臣，則領議政鄭太和·左議政金堧以爲：‘若用祈雨之例，則果爲草畧，依春秋節祭爲之，實爲合當。該

‘만약 기우제의 전례를 따른다면 과연 소략하니, 봄
가을 절제대로 하는 것이 실로 합당합니다. 해당 조
의 제사 외에는 별다른 논의를 용납하지 않으니, 삼
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전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은,

‘제사에 관한 일은 담당 관원이 따로 있습니다. 『오례
의』에 이미 근거 삼을 만한 글이 없으니, 신처럼 어
리석은 자가 근거 없는 소견으로 성상의 하문에 대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경』에 드러난 것으로
보면, 가을과 겨울에 새전(賽田)에 보답하는 일은 그
예식이 성대합니다. 해당 조에서 이른바 봄가을 절
제대로 하겠다는 말이 마땅한 듯합니다. 삼가 바라
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는 병으로 수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曹啓辭之外，無容別議，伏惟
上裁.’ 前領敦寧府事李景奭
以爲：‘籩豆之事，有司存焉。
而『五禮儀』，既無可據之文，
則如臣瞽陋者，有難以杜撰之
見仰答清問，而以著於『詩經』
者觀之，則秋冬報賽田事，其
禮盛矣。該曹所謂依秋春節祭
爲之者，似乎得宜，伏惟上裁.’
領中樞府事李敬輿，病不收
議。大臣之意如此，上裁，何
如?” 傳曰：“允。”

계사년¹⁶⁵³ 4월 28일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약방 제조가 입진(入診)하였을 때 상이 이르기를,
‘근래 가뭄이 자못 심하다. 며칠 전의 비도 적시다가
그쳤으니 나는 이 때문에 걱정스럽다. 기우제를 급
히 유념하여 거행하라고 해당 조에 말하라.’

癸巳四月二十八日

● 初次

一. 曹單子：“藥房提調入診時，
上曰：‘近來旱氣頗甚，頃日之
雨，亦灑潤而止，予用悶慮，祈
雨祭，急速惕念舉行事，言于

라고 전교하였습니다. 삼각산·목덕산·한강·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일에 우선 설행하되, 도량을 수리하고 도로를 청소하고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 또한 한성부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해당 조로 하여금 제관을 각별히 선발하게 하라.”

하였다.

該曹事，傳教矣。三角山·木覓山·漢江·風雲雷雨·山川·雪祀等處，初次祈雨祭，不卜日，來初一日，爲先設行，而修溝壑·淨阡陌·掩骼等事，亦亦令漢城府，依例舉行，何如？”
傳曰：“依啓。令該曹，祭官各別擇差。”

계사년¹⁶⁵³ 4월 29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지금 막 비가 내리니 한편으로 기우제를 설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논의 하여 처리하게 하라.’

라고 전교하였습니다. 이전에 기우제를 지낼 때도 그런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단지 택일을 계하하였을 뿐이고 아직 향^香을 전달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거행할 수는 없습니다. 전례도 이와 같습니다. 1일 기우제는 정지하고 거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癸巳四月二十九日

● 停止

一，曹啓曰：“傳曰：‘今方下雨，而一邊設行祈雨祭，未知如何。令禮官議處’事，傳教矣。在前祈雨之時亦然，而今則只卜日啓下而已，未及傳香，則不當仍行，前例亦如此。初一日祈雨祭，停止勿行，何如？”
傳曰：“允。”

계사년¹⁶⁵³ 7월 18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봄과 여름에 오래 가뭄이 든 뒤에 단비가 충분히 내려 망종^{芒種}의 절기에 때맞추어 파종하였으니 농민들이 모두 만족하여 풍년이 들 가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3일 한바탕 소나기가 내린 뒤 지금 이미 반달이 지났는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쬘어 더위가 타는 듯하고, 날마다 가물어 곡식이 타들어 갑니다. 비단 기장과 조뿐만 아니라 그루같이한 곡식까지 날마다 메마르고, 물을 끌어들이는 논도 물줄기가 끊어졌습니다. 지방에서 온 사람이 몹시 걱정하며 모두 말하기를,

‘김맨 뒤의 가뭄이 봄과 여름보다 심한데 만약 대엿새가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가는 가망이 없다.’

하였으니, 지금 걱정은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평상시 기우제는 으레 여름철에 거행하고 입추가 지난 뒤에 정지합니다. 지금은 입추의 절기가 이미 며칠 지났는데 해가 쨍쨍하여 더 이상 비가 내릴 조짐이 없어 곡식이 말라 죽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죽어가는 백성을 생각하면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이 한시가 급합니다. 입추가 지났다는 핑계로 평상시의 규례를 지키며 말라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친제^{親祭}도 입추가 이미 지난 뒤에 설행하였으니, 중신^{重臣}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종묘사

癸巳七月十八日

● 再次

一. 曹啓曰：“春夏久旱之餘，甘澤洽降，得趁芒種之節，播種及時，九農愜望，庶幾有西成之登。本月初三日，一陣驟雨之後，今已半月，烈日下曝，歔歔如火，日日所嘆，谷蕪將焦，非但黍粟，及根耕日就枯萎，水田引渠之處，亦且斷流。自外方來者，大以爲憂，皆言‘鋤後之旱，有甚於春夏之時，若過五六日不雨，則田家失望’云。即今憂悶，無過於此。常時祈雨，則例行於夏節，至立秋後停止，今則立秋之節，已過數日，出日杲杲，更無其雨之徵。坐見嘉穀之枯，念切民命之近，虔祈之設，一日爲急，不可諉諸立秋之過，拘守常規。立視焦損，頃年親祭，亦有設行，於立秋已過之時，宜令重臣撰詞，致誠祈雨於宗社·山川等處，不卜日，來二十日設行，何如？”傳曰：“依啓，誠切悶迫，二十日亦似遠矣。”

직과 산천 등지에 지성으로 비가 내리기를 비는 것이 마땅합니다. 택일하지 말고 오는 20일에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참으로 몹시 걱정스럽고 다급하니 20일은 먼 듯하다.”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에서 기우제를 실행하는 일로 초기_{草記}를 올리니, 전교하시기를,

‘아뢴 대로 하라. 참으로 몹시 걱정스럽고 다급하니 20일은 먼 듯하다.’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성상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다만 20일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일곱 곳의 제관이 내일 향을 받아야 하니, 그전에는 형세상 당겨 정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계사년¹⁶⁵³ 윤7월 1일

- 지방 산천에 연달아 기우제를 거행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 28일 서울 산천에 세 차례 기우제를 지내고 지금 3일이 되었는데 비록 비가 내릴 조짐은 있으나

一. 曹啓曰：“以本曹祈雨祭設行事草記，傳曰：‘依啓，誠切悶迫，二十日亦似遠矣’事，傳教矣。聖教誠爲允當，而但二十日，只隔一日，七處祭官，明日當爲受香，其前勢未及進定之意，敢啓。”傳曰：“知道。”

癸巳閏七月初一日

- 連行外山川似不必

一. “曹啓曰：‘去二十八日，內山川三度祈雨，今至三日，而雖有雨徵，沛然難期。外山川各處祈禱，所當次第舉行，而

쏟아지기를 기약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 산천의 각 처에서 기도하는 일을 차례로 거행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사람이 논의하며 혹자는 「근래 비가 비록 원근에 두루 내리지는 않았으나, 우선 길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로 말하자면 경기도에는 비가 내린 곳이 거의 3분의 2이니, 이후 비록 비가 오더라도 이미 말라 죽은 것은 다시 소생할 가망이 없다. 입추가 지난 지 이미 오래이니 지방 산천에 기도드리는데는 안 된다.」라고 하고, 혹자는 「입추가 지난 지 이미 오래이나 절기가 몹시 늦으니, 지금 만약 원근에 두루 내리면 이삭이 괜 곡식, 그루같이하여 김매 곡식, 싹이 난 메밀은 그래도 어찌할 방법이 있다. 송악산·감악산 등 다섯 곳은 온 나라의 진산^{鎭山}이므로 기도가 있으면 으레 나라의 안이라고 축사^{祝辭}를 쓰니, 역시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전남·경상 양도에서 급히 아뢴 보고를 보니 더욱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절기가 비록 늦었으나 입추 이후 지방 산천에 기도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경인년¹⁶⁵⁰에 사직에 친제^{親祭}를 지내자 즉시 비가 내렸으므로 지방 산천에는 지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의 논의가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모두 증대하고 어려우므로 신의 조^曹·예^祭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게 하문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卽今群議，或以爲：「近來雨澤，雖不得遍及遠近，姑以途路傳聞之說言之，則京畿一道，得雨之處，幾至三分之二，此後雖或得雨，已爲枯損者，則更無回蘇之望，立秋已久，至于外山川祈禱則不可」云。或以爲：「立秋雖久，節候則最晚，今若遠近周洽，則含穗各穀，根耕除草，木麥立苗，則猶可及之，而如松岳·紺岳等五處，乃一國之所鎮望，故凡有所禱，例以邦域之內爲祝辭，亦不可少緩」云。且見全南·慶尙兩道馳啓，則尤極渴悶。節候雖晚，立秋後外山川祈禱，乃是罕有之舉，而庚寅年，則社稷親祭，卽有雨澤，故不及於外山川矣。今則群議，執此兩款，俱係重難，臣曹不敢擅便，問于大臣定奪，何如？」傳曰：「依啓」事，傳教矣。議于大臣，則領議政鄭太和以爲：「旱乾至此，早穀之發穗未實者，雖已枯損，未有回蘇之勢，而晚種各穀，及今得雨，則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가뭄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른 곡식 중에 이삭이 패었으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이미 말라 죽어 희생할 형세가 없지만, 늦게 심은 여러 곡식은 지금 비가 내리면 그래도 가뭄이 있으니, 지방 산천에 기도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敬奭,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은,

‘옛날에 눈이 내리지 않아도 기도하였으니, 비가 내리지 않아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다만 비가 내리지 않아 기도하는 것은 항상 거행하는 전례이고, 절기가 지나 기도하는 것은 항상 있지 않은 일입니다. 가을이 깊어 가는데 이미 세 번 기도하였으니, 지금 또 두루 지방의 산천에 사람을 보낸다면 예법의 의미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기도하며 우선 기다리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한갓 하늘의 도움만 바라고 사람의 일에서 구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정성이 아닙니다.’

더구나 왕도정치에서 수행해야 할 일 중에 죄수를 염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체된 죄수 중에 풀어 줄 만한 자는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지 말고 즉시 풀어 주고, 중죄수 중에 죄는 무거우나 정상이 가벼운 자는 특별히 현의하게 하고, 지방도 일체 시행하게 한다면, 정성껏 빌고 급한 사

猶有可望，外山川祈禱之舉，恐不可已也。伏惟上裁。’領敦寧府事李景奭·右議政李時白以爲：‘古者不雪猶祈，不雨而祈，何可疑焉？只以不雨而祈者，常行之典也。過節而祈者，不常有之舉也。秋節向深，祈禱已三，今又徧走群望于外，則求諸禮意，無已瀆乎。恐不如默禱而姑俟也。且徒責於冥佑，而不求諸人事，非祈禱之誠也，況王政之所當修者，孰有重於慮囚乎？滯囚之可決者，不拘常規，卽爲疏決，重囚之罪重情輕者，特令獻議，外方亦令一體施行，則虔祈救急之道，恐有愈於區區牲幣之陳也。愚妄之懷如此，不敢不達。伏惟上裁。’領中樞府事李敬輿以爲：‘今日之事急矣。求雨之道，宜無所不用其極，圭璧旣卒，又徧群望，恐不可以節序已過而小緩也。然桑林千里之澤，實由於六事之責躬，則內外交修，本末兼盡，致期昭格，似合以實之道矣。臣病

정을 구제하는 방도는 구구하게 희생을 바치는 것보다 나을 듯합니다. 어리석고 망녕된 소회가 이와 같아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는,

‘오늘의 일이 급하니 비를 구하는 방도는 무슨 일이든 다 해야 합니다. 기우제를 지냈다면 또 여러 산천에 두루 기도해야 하니,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조금 늦출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상림桑林에서 기도하자 천 리에 비가 내린 일은 실로 여섯 가지 일로 자신을 책망하였기 때문이니, 안팎으로 함께 수양하고 본말을 모두 지극히 하여 하늘이 감동하기를 기약하는 것이 실상으로 하는 방도에 합당할 듯합니다. 신은 병중이라 혼미하여 취할 만한 말이 없으나 근심하고 애태운 나머지 감히 묵묵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좌의정 김육金瑬은,

‘지난번 가뭄이 제법 심하여 비록 가을이 된 뒤이지만 부득이 종묘, 사직, 산천 여러 곳에 기도하여 다행히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지방의 일은 비록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상류의 강물이 조금 불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익은 곡식에 해가 되니, 지방 산천의 기우제를 두루 지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은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裡昏憤，辭意無取，而憂煎之餘，不敢含默。伏惟上裁。’ 左議政金瑬以爲：‘頃者旱災頗甚，雖在秋節之後，不得已祈禱宗廟·社稷·山川諸處，幸得小雨。外方之事，雖未詳知，上流江水，亦或少漲云。此後多雨，則或害於成熟之穀，外山川祈雨，似不必遍爲。伏惟上裁。’ 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 傳曰：“所當依領議政議施行，而更觀今明日處之，可也。”

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의 논의대로 시행해야 하나 오늘내일 다시 보
 아서 처리하라.”
 하였다.

갑오년¹⁶⁵⁴ 5월 22일

● 입추 전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금년은 봄부터 여름까지 비 내리고 개는 것이 때에
 맞아 밭 갈고 김매는 일을 모두 제때 하였으니 풍년
 을 기약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장마가 한 달
 이 지나도록 개지 않아 여러 곡식의 싹이 미처 무성
 해지지 않아 상한 것이 지극히 많고 그루같이 또한
 이미 때를 놓쳤으니 농사에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입추 전에 기청제를 지내는 일이 근래는 규례가 없
 으나, 여러 곡식이 입은 참혹한 재해가 가을 이후 비
 가 내린 것보다 심하니, 근래의 규례에 구애받을 수
 없습니다. 전례대로 사문영제^{四門營祭}를 택일하지 말
 고 설행하되, 내일부터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을 전에 사문영제를 지내는 것은 평상시의 규례
 와 다른 듯하니 경솔히 할 수 없다.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甲午五月二十二日

● 立秋前祈晴

一. 曹啓曰：“今年自春至夏，
 雨暘時若，耕耘皆得其時，豐
 稔可期，而近來霖雨，浹月不
 霽，各穀未及茁盛，損害極多，
 根耕亦已失時，農事缺望云。
 立秋前祈晴，近無規例，而各
 穀被災之慘，有甚於秋後之
 雨，不可拘於近規。依前例，
 四門營祭，不卜日設行，自明日
 爲始，三日而止事，分付各該
 司，何如？”傳曰：“秋前營祭，
 似異常規，不可率爾爲之，問
 于大臣處之。”

갑오년¹⁶⁵⁴ 5월 24일

● 기청제를 지낼지 수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에게 문의하니, 영중
추부사 이경여^{李敬輿},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 좌의
정 김육^{金堉}, 연양부원군 이시백^{李時白}, 우의정 구인후^{具仁晔}는,
‘장마가 이 지경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곡식이 이미
많으니, 예조가 사문영제를 지내도록 청한 것은 부
득이한 데서 나왔습니다. 기우제와 기청제는 원래
제때가 있으니, 때에 앞서 기청제를 지내는 것이 어
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불행하여 기청제를 지낸
뒤 다시 비가 내리지 않아 한탄하면 장차 또 기우제
를 지낼 것이니 또한 몹시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사
람의 일을 수행하기에 힘써 하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오늘날 먼저 할 일입니다. 제때가 아닌데 기도
하는 것이 신들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성상의 하
교가 실로 타당하니 다른 논의를 용납하기 어렵습
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은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
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수의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甲午五月二十四日

● 祈晴收議

一. 曹啓曰：“云云事，傳教矣。
議于大臣，則領中樞府事李敬輿·領敦寧府事李景奭·左議政金堉·延陽府院君李時白·右議政具仁晔以爲：‘滯雨至此，害穀已多，禮曹之請禁，蓋出於不得已，而祈雨·祈晴，自有其時，先時而祈晴，未知如何。脫或不幸，祈晴之後，復有悶雨之嘆，則將又祈雨，不亦爲煩瀆之甚乎？務脩人事，庶回天心，乃今日之所當先區區焉，惟祈禱之不以時，臣等未見其得也。聖教實當，難容別議。伏惟上裁。’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傳曰：“依議。”

갑오년¹⁶⁵⁴ 6월 28일

● 입추 후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참혹한 홍수가 겨우 지나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다시 이렇게 가뭄이 들었으니 장차 어찌하겠는가. 농사를 생각하면 나는 죽어서 모르고 싶다. 비록 말단적인 일이라지만 손놓고 앉아 있을 수 없으니, 해당조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참혹한 수재가 일어나 집이 떠내려가고 가라앉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초순 이후로는 가뭄이 또 심하였습니다. 지금 입추가 지났는데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아 온갖 곡식이 날마다 누렇게 마르고 있으니, 앞으로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신의 조(曹, 예조에 서) 규례를 벗어나 기우제를 지내도록 아뢰고자 하였는데, 방금 성상의 하교를 받으니 재해를 유념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뜻이 말 밖으로 넘칩니다. 이번 기우제는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중신(重臣)을 보내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일에 설행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속히 통지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甲午六月二十八日

● 立秋後祈雨

一. 曹啓曰：“傳曰：‘纔經懷襄之慘，驚懼之心未定，淒風連吹，復有此亢旱，其將奈何？言念民事，予欲湔然而不知也。雖云末節，亦不可束手而坐，其令該曹議處’事，傳教矣。‘水災之慘，至於漂沒，而初旬以後，亢旱又甚，今過立秋，點雨不下，百穀日就萎黃，前頭民事，十分可慮。臣曹方欲撥例爲祈雨之啓矣，即承聖教，軫災憂民之意，溢於辭表，今茲將事，似不可拘泥常規。特遣重臣，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初一日設行，虔誠祈禱，期於得雨事，急速知委舉行，何如？’傳曰：‘依啓。立秋後祈雨，曾亦有前規乎？考啓事’傳教矣。取考膳錄，則上年七月，遣重臣，再度設行，庚寅年七月，至於親祭社稷，而皆在立秋之後矣，敢啓。”傳曰：“知道。”

‘아뢰 대로 하라. 입추 이후에 기우제를 지낸 전례가 있는가? 살펴서 아뢰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작년 7월 중신을 보내 재차 설행하였고, 경인년¹⁶⁵⁰ 7월 사직에 친제^{親祭}하기까지 하였는데 모두 입추 이후였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갑오년¹⁶⁵⁴ 7월 1일

- 2차 기우제는 3일을 기다리지 말고 높은 품계의 관원을 차임하여 보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1차 기우제를 오늘 이미 설행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를 사직·북교에서 설행할 것인데 평상시의 규례로 헤아리면 3일을 기다려 2차를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만약 4일이 지나 종묘 추향 뒤에 설행하면 규례를 벗어나 특별히 거행하는 제사가 조금 느슨해질 듯합니다. 3일에 가까워져 설행하면 글을 짓고 희생을 준비하는 사이에 또 너무 바쁠 듯한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1차 제관은 이미 2품 중신^{重臣}을 차임하여 보냈으니, 2차 관원은 높은 품계의 관원을 차임하여 보내야 할 듯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3일이 비록 바쁘고 촉박한 듯하나

甲午七月初一日

- 再次不待三日崇品差遣

一. 曹啓曰：“初次祈雨祭，今日已爲設行。再次之祭，設行於社稷·北郊矣。揆以常規，則所當待三日再行，而需澤尙闊，若過初四日，宗廟秋享後設行，則撥例特行之祀，似爲稍緩，從近初三日設行，則撰辭具牲之際，又涉太忙，何以爲之？且初次祭官，既已二品重臣差遣，再次之官，似當有崇品差遣之舉，並此仰稟。”傳曰：“依啓。初三日，雖忙迫，事急不得不已矣。”

일이 급하니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갑오년¹⁶⁵⁴ 7월 2일

● 대제와 겹치니 향을 받는 날을 결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며칠 내 자못 비 내릴 조짐이 있었는데 대제^{大祭}가
박두하였으니 일이 바쁘고 촉박하다. 그러므로 형세
를 보아 하게 하였다. 오늘은 나쁜 바람이 거세게 불
고 비 내릴 조짐이 전혀 없으니 그 근심을 이루 말
할 수 있겠는가. 해당 조로 하여금 2차 기우제를 속
히 거행하게 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2차 기우제는 당초의 제사대
로 종묘·사직·북교에 높은 품계의 중신^{重臣}을 따로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일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되,
종묘 대제가 마침 4일이고 내일 향을 받으니, 부득
이 4일에 향을 받고 5일에 설행하겠습니다. 감히 아
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을미년¹⁶⁵⁵ 5월 23일

● 대신에게 수의하다.

예조의 단자에,

甲午七月初二日

● 大祭相值受香定奪

一. 曹啓曰：“傳曰：‘數日來，
頗有雨徵，迫近大祭，事涉忙
迫，故使之觀勢爲之矣。今日
則惡風大吹，頓無雨徵，其悶
可言。令該曹，再次祈雨祭，趁
卽舉行’事，傳教矣。再次祈雨
祭，依當初啓辭，宗廟·社稷·
北郊，別遣崇品重臣，所當不
卜日事辦行祭，而宗廟大祭，
適在於初四日，而明日受香，
不得已初四日受香，初五日設
行之意，敢啓。”傳曰：“知道。”

乙未五月二十三日

● 議大臣

一. 曹單子：“頃日祈雨事，榻

“지난번 기우제의 일에 대해 탐전에서 명을 받고 다시 며칠 뒤에 보아 설행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날씨가 차갑고 가뭄의 조짐이 이미 드러났는데 비가 내릴 가뭄이 없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맥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6일 설행하되, 도랑을 수리하고 도로를 청소하고 드러낸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도 한성부로 하여금 우선 거행하게 하라고 분명히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라고 계하하였다. 여기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판하하신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대신에게 수의하니, 영돈녕부사 김육金瑬, 영의정 이시백李時白, 좌의정 구인후具仁厚는,

‘지난번 탐전에서 다시 며칠 보아 기우제를 설행하겠다고 이미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서늘한 바람이 날마다 불고 가뭄이 더욱 심하니, 만약 이때를 지나면 농사는 끝입니다. 해당 조의 기사대로 조속히 설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임금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은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수의대로 하라고 계하하였다.

前承命，更觀數日後設行事，定奪矣。即今日氣淒冷，旱徵已發，了無其雨之望，前頭民事，殊極可慮。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二十六日設行，而修溝壑·淨阡陌·掩骼等事，亦令漢城府，爲先舉行事，申明知委，何如？”啓，“問于大臣處之”爲良如教事，曹啓目：“粘連判下是白有亦。議于大臣，則領敦寧府事金瑬·領議政李時白·左議政具仁厚以爲：‘頃於榻前，更觀數日，祈雨設行，已有成命。而淒風日吹，旱氣尤甚，若過此時，則民事已矣，依該曹啓辭，趁速設行宜當。伏候睿裁。’右議政沈之源，病不收議。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啓依議爲良如教。

을미년¹⁶⁵⁵ 7월 4일

● 기우제를 지내기로 결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각 도의 농사에 관한 장계를 계속 받아 보니 모두 비가 두루 충분히 내렸다고 하였으나 경상도 대구 등 11개 고을은 5월 2, 3일 비가 뿌린 뒤 빗방울이 내리지 않아 제방과 보의 물이 고갈되고 콩, 기장, 조가 모두 누렇게 뒀다고 하였으니, 경상도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며칠 전 동풍이 오래 불어 한창 이삭이 패는 곡식에 해가 되고, 산에 가까운 땅은 비록 먹구름이 모여 장차 비가 내릴 것 같다가도 곧 다시 해가 쨍쨍 하여 이전처럼 가물었습니다. 앞으로 입추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민의 바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1차 기우제는 전에 이미 거행하였으니 2차로 정성을 다하여 전례대로 차례로 설행하여 비가 쏟아지기를 바라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대신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을미년¹⁶⁵⁵ 7월 6일

● 기우제를 그대로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乙未七月初四日

● 祈雨定奪

一. 曹啓曰：“續接各道啓下農事狀啓，則皆稱雨水周足，而慶尙道大丘等十一邑，自五月初二三日灑雨之後，點雨不下，堤堰防淤之水枯竭，而豆太黍粟，盡爲焦黃云，嶺南民事，殊極可慮。目今數日前，東風長吹，有害於方秀之穀，近山之地，則雖或雲陰歛翕，若將作雨，而旋復杲杲，亢陽如故，前頭立秋，只隔兩日，若不及今得雨，則無以慰三農之望。祈告初次，則前日已行矣。再次虔誠，依舊例，次第設行，期回霈然之澤，似不可已。大臣之意亦如此，敢啓。”傳曰：“依啓。”

乙未七月初六日

● 祈雨仍行

一. 曹啓曰：“傳曰：‘日勢如此，祈雨更觀爲之乎？’仍爲設行

‘날씨가 이와 같으니 기우제를 다시 보아 설행해야겠는가? 그대로 설행해야겠는가?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즉시 수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신들이 삼가 들으니 경기의 농사는 근래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곡식이 전부 말랐고, 농부가 비를 바라는 것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역시 때맞추어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였으므로 어제 아뢰었습니다. 오늘 아침 비가 잠깐 내리고 곧 그쳤으며, 먹구름이 비록 흩어지지 않았으나 비가 쏟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제물을 이미 제사 지낼 곳에 준비하였는데 갑자기 중지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그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을미년¹⁶⁵⁵ 7월 17일

● 기우 천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친행하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전부터 기우제 친행은 사직이나 남교 중에 일시적으로 내린 하교에서 나왔고 정해진 규례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곳에서 설행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사직에서 하라고 전교하였다.

乎? 令禮官卽爲議處’事, 傳敎矣. 臣等竊聞, 畿甸農事, 則近來雨澤久愆, 禾穀盡枯, 田家望雨, 不啻飢渴, 大臣亦以爲及時祈告似當云, 故昨日啓稟矣. 今朝過雨, 一霎旋止, 雲陰雖未解綴, 而難期霈然之澤, 況祭物既已備待於祭所, 遽爾中止, 未知如何. 伏惟上裁.” 傳曰: “仍爲之.”

乙未七月十七日

● 祈雨親祭

一. 曹啓曰: “祈雨祭親行事, 命下矣. 自前祈雨親行, 或社稷, 或南郊, 出於一時下教, 而未有定規. 今則設行何處乎? 敢稟.” 傳曰: “社稷爲之, 可也.”

● 친제의 택일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는 택일하지 말고 속히 거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전부터 비록 택일하지 말라는 하교가 있어도 만약 구기^{拘忌}가 있으면 으레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일관에게 물으니 19일·20일은 모두 구기가 있고, 21일은 평길^{平吉}하다고 하니, 21일로 정하여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리 준비할 모든 일은 즉시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되, 기일이 촉박하니 제관 이하 집사 관원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20일 이른 아침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나아가 전례대로 의식을 연습하라고 역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7월 21일 사직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전하는 이틀 동안 별전^{別殿}에서 산재^{散齋}하고 하루 동안 향소^{享所}에서 치재^{致齋}하되,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으며, 치재할 때에는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 親祭擇日

一. 曹啓曰：“祈雨親祭，不卜日趁即舉行事，命下矣。自前雖有不卜日之教，若有拘忌，則例不爲行祭。問于日官，十九日·二十日，皆有拘忌，二十一日平吉云，以二十一日定行爲當。凡干預備之事，卽爲分付于各該司，而日期臨迫，祭官以下諸執事官，除肄儀，二十日早朝，先詣祭所，依前例習禮之意，亦爲分付，何如？”傳曰：“允。”

● 齋戒

一. 曹單子：“今七月二十一日，行社稷祈雨親祭教是時，殿下散齋二日於別殿，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不吊喪問疾，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一. 曹單子：“今七月二十一日，

“이번 7월 21일 사직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과 근시^{近侍} 관원 중에 따라 올라와야 하는 사람은 모두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며 산재하고, 향소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배향관^{陪享官} 및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로서 유문^{墻門}을 지키는 자는 각각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친제의 예식 연습

예조의 단자에,

“이번 친제 때 성상께서 사직에 나아간 뒤 근시와 예의사^{禮儀使} 이하 집사 관원들은 단상에서 예식을 연습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신년¹⁶⁵⁶ 7월 14일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근래 장마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록 말단적인 일이라지만 사문영제^{四門禁祭}를 어찌 일찍 하지 않는가? 해당 조에 말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기청제는 오직 오래 비가 내린 뒤에 하는데, 이번 비는 비록 10일에 시작되었으나 비가 내리기도 하고 개기도 하다가 어제에 이르

行社稷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一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享官諸衛之屬守衛墻門者，各於本司清齋一宿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親祭習禮

一. 曹單子：“今此親祭時，自上詣社稷後，近侍及禮儀使以下諸執事官，壇上習禮爲之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丙申七月十四日

● 祈晴

一. 曹啓曰：“傳曰：‘昨今之淫雨至此，雖云未務，四門禁祭，何不早爲之乎? 言于該曹’事，傳教矣. 祈晴祭，惟在於久雨之後，而今番之雨，雖始於初十日，或雨或晴，到昨日始大注，日數不多，故四門禁祭，未及仰稟行之矣. 昨日之雨，終

러 비로소 크게 쏟아졌으니, 날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문영제를 미처 여쭙어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제의 비는 하루 종일 밤까지 내려 시내와 도랑이 넘치고 평지가 강이 되었으니 필시 곡식이 손상되는 우환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비 내리는 형세도 역시 개지 않으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설행하여 3일 뒤 중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정유년¹⁶⁵⁷ 4월 19일

- 기우제를 지낼지 대신에게 수의하고 술을 금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4월 18일 주장^{晝講}할 때 동지사 채유후^{蔡裕後}가 아뢰기를,

‘충청도의 가뭄이 몹시 심하고 경상도도 그렇다고 합니다. 경기는 비록 간혹 비가 내렸으나 두루 충분하지 않아 가뭄이 제법 심합니다. 앞으로 망종이 다가왔는데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비는 일이 있어야 합당한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日達夜, 川渠漲溢, 平陸成江, 必有禾穀損傷之患, 而卽今雨勢, 亦不開霽, 四門禱祭, 不卜日, 來十五日爲始設行, 三日而止宜當. 以此分付各該司, 何如?” 傳曰: “允.”

丁酉四月十九日

- 祈雨議大臣禁酒

一. 曹啓曰: “今四月十八日晝講時, 同知事蔡裕後所啓: ‘湖西旱災太甚, 嶺南亦然云, 而京畿則雖或小雨, 不能周洽, 旱乾頗甚, 前頭芒種迫近, 民事極爲可慮, 合有祈雨之舉, 何以爲之乎?’ 上曰: ‘議于大臣處之事, 傳教矣. 議于大臣, 則領議政鄭太和·領敦寧府事金堉·延陽府院君李時白·左議政沈之源·右議政元斗杓

‘대신에게 수의하여 처리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에게 수의하니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영돈녕부사 김육金瑬, 연양부원군 이시백李時白, 좌의정 심지원沈之源, 우의정 원두표元斗杓는, ‘충청도와 경상도의 가뭄 재해가 더욱 심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모두 전합니다. 경기는 비록 비가 조금 내렸으나 충분하지 않았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아직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농사가 애타고 걱정스럽기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소서. 또 가뭄을 만났을 때는 오래 술을 금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매번 걸치레가 되고 말아 일이 착실하지 않습니다. 역시 해당 조로 하여금 다시 서울과 지방에 신칙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厚는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수의한 대로 시행하고 어공御供하는 술을 먼저 없애라.”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은 이미 대신에게 수의하여

以爲：‘湖西·嶺南旱災尤甚之說，人皆傳之，京畿雖得小雨，而不能周洽，淒風連吹，尙無雨徵，民事之渴悶，何可量也？祈雨之舉，不容少緩，宜令禮官，卽爲舉行。且遇旱之時，例有禁酒之令，而每歸虛文，事不着實，亦令該曹，更加申飭中外似當，伏惟上裁。’綾川府院君具仁厚，病不收議。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傳曰：“依議施行，御供之酒，爲先減除。”

● 初次

一. 曹啓曰：“祈雨設行事，旣已議大臣，定奪啓下矣。風雲

결정하고 계하셨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한강·삼각산·목멱산 등의 장소에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1일 먼저 설행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되, 도랑을 수리하고 도로를 청소하고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 또한 한성부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며, 술을 금지하는 등의 일은 대신의 헌의대로 서울과 지방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정유년¹⁶⁵⁷ 4월 22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를 지낸 뒤 아직 빗방울이 내리지 않아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직·종묘·북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설행하되, 제관을 선발하고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유년¹⁶⁵⁷ 4월 26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雷雨·山川·雩祀·漢江·三角山·木覓山等處，初次祈雨祭，不卜日，來二十一日，爲先設行，虔誠祈禱，期於得雨，而修溝壑·淨阡陌·掩骼等事，亦令漢城府，劃卽舉行，而禁酒等事，依大臣獻議，申飭京外，何如?” 傳曰：“依啓.”

丁酉四月二十二日

● 再次

一. 曹單子：“初次祈雨之後，尙未得點雨，民事極爲可慮。社稷·宗廟·北郊，再次祈雨祭，不卜日，來二十五日設行爲白乎矣，擇定祭官，精備奠物，虔誠祈禱，期於得雨事，知委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丁酉四月二十六日

● 三次

一. 曹單子：“初次祈雨之後，

“1차 기우제 이후 비록 비가 조금 내렸으나 곧 개었고, 2차 기우제 이후 아직 빗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니다. 망종^{芒種}이 이미 지나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8일 설행하여 정성껏 비가 내리기를 빌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유년¹⁶⁵⁷ 4월 29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 이후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 앞으로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서 4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월 2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전례대로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각별히 정밀히 가려차출하고 배정하며 평범하게 보지 말고 진배하여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경기 감사에게 아울러 통지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雖得小雨，旋即開霽，再次之後，尚不下點雨，芒重已過，民事誠可渴悶。風雲雷雨·山川·雪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三次祈雨祭，不卜日，來二十八日設行，虔誠祈禱事，知委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丁酉四月二十九日

● 四次

一. 曹單子：“三次祈雨之後，尚未得雨，前頭民事，誠爲渴悶。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四次祈雨祭，不卜日，來五月初二日設行爲白乎矣，典祀官·兼大祝·祭物，依前例，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令本道差定，各別精擇，勿視尋常進排，十分虔誠祈禱之意，京畿監司處，并以知委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

정유년¹⁶⁵⁷ 5월 1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계사에,
“방금 신 채유후^{蔡裕後}가 답전에서 종묘·사직 기우제를 5월 5일로 여쭙어 정하였습니다. 5일 종묘에서 규례대로 지내는 단오제는 부득이 물러 6일에 지내겠습니다. 종묘·사직은 대신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는 근시 3원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제하한 뒤에야 각 관사에 통지할 수 있으므로 감히 이렇게 거듭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정유년¹⁶⁵⁷ 5월 8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오래 가뭄이 든 뒤 하루 종일 큰비가 내렸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마른 흙이 겨우 젖고 논에 물이 차지 않았으니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마침내 정지할 수 없습니다. 6차 기우제는 저자도·용산강·관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는 모두 11일에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정갈하게 준비하여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정밀히 가려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게 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비가

丁酉五月初一日

● 五次

一. 曹啓辭：“卽者臣裕後於榻前，宗社祈雨祭，以五月初五日，稟定矣。初五日，宗廟例行端午祭，不得已當爲退行於初六日。而宗廟·社稷，則遣大臣，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則近侍三員進去，以此啓下，然後方可知委各司，故敢此申稟。”傳曰：“依啓。”

丁酉五月初八日

● 六次

一. 曹單子：“久旱之餘，大雨終日，誠爲多幸，而乾土纔濕，稻田未水，祈雨之舉，不可遂停。六次祈雨祭，楮子島·龍山江·冠岳山等處，遣重臣，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並於十一日設行爲白乎矣，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精備下送，而執事官·犧牲，則令本道差定精擇進排，十分虔誠祈禱

내리기를 빌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아울러 통지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유년¹⁶⁵⁷ 5월 10일

● 도시에서 북을 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병조의 계사에,
‘금군^{禁軍}의 이번 춘하등 도시^{春夏等都試}를 연달아 일 때문에 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날씨가 몹시 더워 시사^{試射}할 때가 아니나, 도시의 일이 중요하니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신에게 결정하여 내일 시장^{試場}을 열려고 하는데, 근래 음악을 중지하였기에 도시에서도 북을 칠 수 없어 맞히지 못하면 징을 치고 맞히면 징을 칠 것입니다. 맞히는 경우와 맞히지 못하는 경우에 징을 치는 횟수의 많고 적음이 각기 다르지만, 복잡한 중에 혼잡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으니, 시소^{試所}에서 북을 치는 일은 북을 치지 않는다는 예문에 구애받아서 안 될 듯 합니다. 북을 치고 징을 쳐서 맞히고 맞히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조에서 감히 제멋대로 정할 수 없으니 예조로 하여금 속히 결정하게 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事, 各該司及京畿監司處, 並
以知委舉行, 何如?” 啓依所
啓施行.

丁酉五月初十日

● 都試擊鼓

一. 曹啓曰: “兵曹啓辭: ‘禁軍
今春夏等都試, 連因事尙未設
行, 卽今日氣甚熱, 試射非時,
而都試事重, 有不可廢. 故定
奪於大臣, 明日將爲開場, 而
近緣撤樂, 都試亦不得擊鼓,
不中者擊鐃, 中者亦擊鐃, 中
不中數多少, 雖各不同, 紛擾
之中, 或有混雜難辨之弊, 試
所擊鼓, 似不當拘於「不擊鼓
」之文, 依例應鼓應鐃, 以便
辨別中不中宜當, 而本曹不敢
擅便, 令禮曹急速定奪, 以爲
舉行之地, 何如?’ 傳曰: ‘允’
事, 命下矣. 撤樂後復設, 例
限秋節, 未復設前, 不當用擊
鼓之舉, 而中不中皆擊鐃, 混
雜難辨云者, 雖果如該曹之所
啓稟, 然中者則都廳輒舉旗以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음악을 중지한 뒤 다시 설행하는 일은 으레 가을철까지 한정하니, 다시 설행하기 전까지는 북을 칠 수 없습니다. 맞히거나 맞히지 못하는 경우에 모두 징을 치면 혼잡하여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은 비록 과연 해당 조에서 아뢴 대로 이나, 맞히는 경우는 도청都廳이 깃발을 들어 보이고, 당상도 깃발을 들어 응답하니, 맞히고 맞히지 못하고를 구분하기 어려울 우환은 없을 듯합니다. 이 때 문에 평상시의 규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같은 여름에는 활의 아교가 모두 풀어지니 응시應試하여 멀리 쏘기 어렵다. 가을이 된 뒤에 하라.” 하였다.

示之，堂上亦舉旗以應之，似不患於中不中之難辨，不必以此撓改常規，敢啓。”傳曰：“如此暑月，弓膠皆解，應試遠射，實難爲矣，待秋節後爲之，可也。”

정유년¹⁶⁵⁷ 5월 12일

● 야원 돼지를 써서 추고하다.

도미진 기우제 헌관 양원군陽原君의 장계에,
“신이 도미진 기우제 헌관으로 향을 받고 도착하였더니 제물은 수량대로 바쳤고, 희생은 조금 말라 제향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물러나 다시 준비하라고 재촉하였더니, 색리色吏가 말하기를, ‘본부의 돼지가 제향에 합당하지 않아 감사가 관문關文을 보내어 수원부水原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만나절 내에는 다시 준비할 길이 없어

丁酉五月十二日

● 猪瘠推考

一. 渡迷津祈雨祭獻官陽原君
狀啓內：“臣渡迷津祈雨祭獻官，以受香來到，奠物依數捧上爲白遣，犧牲段暫瘦，不合祭享乙仍于，退出改備催促爲白乎矣，色吏言內：‘本府段，猪口不合祭享爲白乎等，以監司移關水原府持來是如爲白

형세상 부득이하여 예전에 가져온 돼지를 바쳐 제사에 사용하였습니다.”

라는 장계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막중한 제사에 사용할 희생을 야윈 물건으로 구차하게 채워 진배하였으니 지극히 온당치 않습니다. 해당 고을의 수령은 본도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고, 지만遲晩하는 공초供招를 받아 공의功議를 아뢴 뒤 처치하라고 경기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순치 14년 5월 12일 우승지 신 이해李楷가 담당하여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去乎，半日之內，萬無改備之路是白乎等以，勢不得已，前來豬口，以捧上祭用’爲白臥乎事”，狀啓據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莫重祭用犧牲，以瘦瘠之物，苟充進排，極爲不當，該邑守令，令本道推考，遲晩取招，功議啓聞後，處置之意，京畿監司處，行移，何如？”順治十四年五月十二日，右承旨臣李楷次知，啓依允。

정유년¹⁶⁵⁷ 6월 23일

● 종묘·사직에 중신을 보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을 탐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사직·종묘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설행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삼가 예조의 초기草記를 보니, 25일에 중신重臣을 보내 기우제를 설행하도록 청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丁酉六月二十三日

● 廟社遣重臣

一. 曹啓曰：“祈雨祭設行事，榻前定奪矣。社稷·宗廟，遣重臣，不卜日，來二十五日設行，虔誠祈禱，期於得雨事，分付各該司，何如？”傳曰：“依啓。”

● 祈雨停止

一. 政院啓曰：“伏見禮曹草記，請以二十五日，遣重臣祈雨祭設行事，蒙允矣。臣等之

신들은 삼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주가 하늘을 섬기는 도리는 원래 근본이 있으니, 기도는 말단입니다. 성상께서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인지 지금 3개월이 되었습니다. 오직 수신하고 반성하여 더욱 쉬지 않고 노력한다면 하나의 이치가 감응하기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를 것이니, 어찌 이전에 비가 내려 적셨던 것처럼 단비가 내리지 않을 줄 알겠습니까. 만약 열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곧 기도한다면 하늘을 거역하고 귀신을 번거롭게 하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가을이 다가오면 기우제를 지내지 않으니, 금^金의 기운이 항상 왕성하여 가을장마가 되어 도리어 곡식을 해칠까 걱정해서입니다. 옛사람이 시기에 순응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입추가 4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기우제를 지낼 때가 더욱 아닙니다. 기우제를 설행하라는 명을 중지하소서. 신들은 성상과 가까운 자리에서 직책을 맡고 있으니 얕은 견해를 감히 숨길 수 없어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정유년¹⁶⁵⁷ 6월 26일

● 위판을 결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종묘·북교에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로 초기^草

意，竊以爲不可也。人君事天之道，自有其本，祈禳是末也。聖上避殿·減膳，于今三箇月矣。惟當反躬修省，益加不息之功，則一理相感，捷於影響，甘澍之降，安知不如前日之浹洽乎？若因十日不雨，而便行祈禳，則其不幾於抗天而瀆神乎？況秋節將迫，則不行祈雨者，金氣方旺，恐其爲秋霖，而反害於穀，古人順時之義，蓋可知矣。立秋只隔四日，祈雨尤非其時，請寢祈雨祭設行之命。臣等待罪近密，區區淺見，不敢有隱，惶恐敢啓。”傳曰：“依啓。”

丁酉六月二十六日

● 位版定奪

一. 曹啓曰：“以社稷·宗廟·北郊祈雨祭設行事草記，傳

記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 나의 애타고 걱정하는 마음은 형언하기 어려우니, 이 밖에 시행해야 할 곳이 있으면 널리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어떠한가? 다시 논의하여 처리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전부터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북교에 아울러 지낼 때가 있었으나 다른 곳은 설행한 규례가 없습니다. 비록 널리 설행하려 해도 필시 내일 아침 향을 받는 시간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들으니 성황제신·풍운뇌우·산천의 위판을 모두 북교에 모시고 가서 일시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선 이전대로 결정하고 세 곳에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구차한 듯하니 우선 하지 말라.”

하였다.

● 종묘·사직에 기우제를 지낼 때 북교도 일체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사간원의 계사에,

‘근일 가뭄의 재해가 혹심하여 이삭이 패려는 곡식이 거의 다 메말랐습니다. 해당 조에서 기우제를 지내자는 청이 실로 백성의 바람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곧 승정원의 계사 때문에 도로 정지하였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가을이 멀었

曰：‘依啓，此間煎閱，難以形言，此外如有應行之處，則廣設祈澤如何？更爲議處’事，命下矣。自前廟社設祭時，有北郊並行之時，而無他處設行之規。且雖欲廣設，必未及於明早受香，而伏聞城隍諸神·風雲雷雨·山川位版，皆奉往北郊，一時行祭云。今姑依前定奪，三處設行，何如？”傳曰：“此則似爲苟且，姑勿爲之，可也。”

● 廟社時北郊一體行

一. 曹啓曰：“諫院啓辭：‘近日旱災甚酷，將秀之穀，幾盡焦枯，該曹祈雨祭之請，實協衆民之望，而旋以政院啓辭，還爲停止，前頭民事，誠極可慮。秋節遠近，勢不暇顧，請命該曹 趁速設行。’答曰：‘依啓’事，傳教矣。前者榻前，祈雨祭設

는지 가까운지는 형세상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속히 실행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전에 탐전에서 기우제를 실행하는 일에 대해 성상의 하교를 받아 결정하여 거행하려다가 중지하고 말았기에 민심이 한창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간의 계사로 이렇게 실행하라는 명이 내렸는데 일이 몹시 다급하니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 실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27일은 국기일國忌日이므로 비록 온당하지 않으나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이전에 결정할 때 사직·종묘 두 곳만 계하하셨는데, 이전부터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는 북교에서도 함께 지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실행하되, 세 곳에 모두 중신重臣을 보내 정성껏 기도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나의 애타고 걱정스러운 마음은 형언하기 어렵다. 이 밖에 시행해야 할 곳이 있으면 널리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어떠한가? 다시 논의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行事，承聖教定奪將行，而未
免中止，衆情方鬱。今以臺諫
啓辭，有此設行之命，事甚切
迫。不卜日，來二十七日設行爲
當。但二十七日，卽國忌日，雖
涉未安，勿拘常規，因爲設行。
前日定奪時，只以社稷·宗廟
兩處，啓下矣。自前廟社設祭
時，亦有北郊並行之時云，今
亦設行，而三處皆遣重臣，虔
誠祈禱事，分付于各該司，何
如？”傳曰：“依啓。此間煎悶，
難以形言，此外如有應行之處，
則廣設祈澤如何？更爲議處。”

정유년¹⁶⁵⁷ 6월 28일

●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오랜 가뭄에 비가 조금 내렸으나 곧 날이 개었으니 농사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다급합니다. 기우제를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풍운뇌우와 산천·우사 두 곳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덕산·한강 세 곳에는 제관을 가려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30일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유년¹⁶⁵⁷ 7월 23일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청제를 설행하는 일을 이미 아뢰어 탑전에서 윤택을 받았습니다. 예문대로 사문영제^{四門禁祭}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고,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게 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그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丁酉六月二十八日

● 祈雨

一. 曹單子：“久旱小雨，旋即開霽，民事誠爲悶迫，祈雨祭不可少緩。風雲雷雨·山川及雩祀兩處，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三處，則擇遣祭官，不卜日，來三十日設行事，知委各該司，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丁酉七月二十三日

● 祈晴

一. 曹啓曰：“祈晴祭設行事，既已陳達，榻前蒙允矣。依禮文，四門禁祭，不卜日，來二十五日爲始，三日而止事，分付各該司，使之精備祭物，虔誠祈禱，期於得晴，何如？” 傳曰：“允。”

무술년¹⁶⁵⁸ 4월 25일

● 기우제를 지내기로 결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4월 24일 소대^{召對}할 때 상이 좌승지 한진기^{韓震琦}에게 이르기를,

‘김휘^{金徽}가 기우제를 설행하도록 아뢰었으나 실질적인 덕을 닦지 못하고 한갓 기도만 일삼는 것은 겉치레인 듯하므로 우선 며칠 보아 시행하겠다고 전교하였다. 그 뒤 비록 비가 조금 내렸으나 여전히 충분치 못하여 망종이 머지않았는데 파종을 마치지 못하였다. 예조 판서에게 말하여 상의하여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신 홍명하^{洪命夏}가 얼마 전 서쪽에서 오면서 지나는 길에 농사를 보았는데, 청천강 이북 지역은 비가 두루 충분히 내렸고, 청천강 이남 지역은 가뭄 기운이 있는 듯하나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황해도 지방에 이르자 연일 비가 내렸고, 개성^{開城} 동쪽은 밭의 곡식에 비가 충분히 내렸으나 유독 서울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에 연신^{筵臣}이 아뢰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농사를 유념하여 특별히 전교를 내리셨으니, 신의 조^曹,예조는 속히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농사 상황을 아뢰는 장계로 보건대 현재 가뭄을 걱정하는 말이 없으니, 다시 4, 5일 동안 본 뒤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戊戌四月二十五日

● 祈雨定奪

一. 曹啓曰：“今四月二十四日召對時，上謂左承旨韓震琦曰：‘金徽啓行祈雨祭，而未修實德，徒事祈禱，似涉文具，故姑觀數日行之爲教矣，其後雖得小雨，猶未沾洽，芒種不遠，付種未畢，言于禮曹判書，相議爲之，似當矣’事，傳教矣。臣命夏，纔自西來，沿路所過，目見農事，則清北雨澤周足，清南似有旱氣，不至大段矣，及到海西地方，連日雨下，松都以東，雨洽田穀，而獨於京城，得雨不多，筵臣所以陳達，而自上軫念民事，特下傳教，臣曹似當趁即舉行，而以外方農事形止狀啓觀之，則時無悶旱之語，更觀四五日後，稟處，何如？”傳曰：“允。”

무술년¹⁶⁵⁸ 5월 4일

● 기우제를 지내기로 결정하다.

이번 5월 3일 소대^{召對}할 때 예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지난번 성상께서 농사를 유념하여 기우제를 성상께 여쭙어 정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농사 장계를 보니 가뭄이 대단하지는 않으므로 다시 대엿새 보았다가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겠다고 아뢰었습니다. 근래 경기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농사가 걱정스럽습니다. 하루 이틀 지난 뒤 기우제를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을 이미 아뢰었습니다. 풍운 뇌우·산천·우사·한강·삼각산·목멱산 등의 장소에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일 설행하되, 도랑을 수리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을 또한 한성부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戊戌五月初四日

● 祈雨定奪

一. 今五月初三日召對時, 禮曹判書洪命夏所啓: “頃者自上軫念民事, 有祈雨祭稟定之教, 而以外方農事狀啓觀之, 則旱氣不至大段, 故更觀五六日, 稟處之意, 啓達矣. 近來畿內, 久不得雨, 農事可慮, 過一兩日後, 祈雨祭設行, 何如?” 上曰: “依爲之.”

● 初次

一. 曹啓曰: “祈雨設行事, 既已稟啓矣. 風雲雷雨·山川·雲祀·漢江·三角山·木覓山等處, 初次祈雨祭, 不卜日, 來初七日設行, 而修溝壑·淨阡陌·掩骼等事, 亦令漢城府, 劃卽舉行之意, 知委, 何如?” 傳曰: “依啓.”

무술년¹⁶⁵⁸ 5월 6일

● 비가 내려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오늘 향을 받아야 하는데 비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으니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무술년¹⁶⁵⁸ 6월 12일

● 기우제를 지내기로 결정하다.

이번 6월 11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을 때 승지 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

“가뭄이 이와 같으니 다시 며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조 판서가 여기 있으니 기우제를 급히 설행하라는 뜻을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어제와 오늘 연달아 비가 내릴 조짐이 있었으므로 미처 아뢰어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날씨를 보고 내일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戊戌五月初六日

● 下雨停止

一. 曹單子：“祈雨祭，今當受香，而雨勢如此，姑爲停行，何如？” 啓依所啓施行。

戊戌六月十二日

● 祈雨定奪

一. 今六月十一日，大臣·備局堂上引見時，承旨趙復陽所啓：“旱氣若此，更數日不雨，則民事極爲可慮。禮判在此，祈雨祭急爲設行之意，使之稟處，何如？” 洪命夏曰：“昨今連有雨徵，故未及啓請矣。姑觀日勢，明日稟處，何如？” 上曰：“依爲之。”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인견하였을 때 가뭄의 재해가 이와 같아 농사가 걱정스러우니 기우제를 속히 설행하라고 연신筵臣이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연달아 비가 내릴 조짐이 있어 우선 날씨를 보아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짙은 구름이 이미 흩어지고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풍운뢰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5일에 설행하되, 도랑을 수리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을 또한 한성부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15일은 먼 듯하니 그래도 할 수 있으면 14일에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 기우제 날짜를 결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에서 기우제를 오는 15일에 설행하는 일로 초기草記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15일은 먼 듯하니 그래도 할 수 있으면 14일에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가뭄의 재해가 이 지경에 이

● 初次

一. 曹啓曰：“昨日引見時，旱災若此，民事可慮。祈雨祭急急設行事，筵臣啓達，而近日連有雨徵，姑觀日勢，以爲稟處之地矣。卽者密雲已散，天無雨意，前頭民事，誠極可慮。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初次祈雨祭，不卜日，來十五日設行，而修溝壑·淨阡陌·掩骼等事，亦令漢城府，劃卽舉行之意，知委，何如？”傳曰：“依啓，十五日似遠，猶可及爲，則十四日爲之似當。”

● 祈雨日子定奪

一. 曹啓曰：“本曹以祈雨祭，來十五日設行事草記，傳曰：‘依啓，十五日似遠，猶可及爲，則十四日爲之，似當’事，傳教矣。旱災至此，祈雨之舉，一日爲急，所當依聖教，卽爲舉行。

르렀으니 기우제를 지내는 일은 하루가 급합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즉시 거행해야 하는데, 다만 14일 설행하면 내일 향을 받아야 하고, 다섯 곳의 제문은 현재 지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필사하는 일은 형세 상 하룻밤 사이에 주선하기 어렵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일로 말하자면 급박함을 면치 못하니 정결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부득이 15일에 설행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무술년¹⁶⁵⁸ 6월 25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며칠 전 큰비가 연달아 쏟아졌으므로 기우제를 1차로 설행한 뒤 우선 정지하고 다시 날씨를 보아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래 동풍이 계속 불고 날씨가 추우니, 비록 물이 있는 밭의 곡식도 말라 죽었습니다. 지방의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를 보니 충청도와 전라도의 가뭄이 가장 심하여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지 말고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따로 보내 정성껏 비가 내리기를 빌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而但十四日設行，則明日當爲受香，而五處祭文，時未撰出，書寫之役，勢難周旋於一夜之間。至於祭物措備，未免窘迫，恐或欠精。不得已以十五日設行之意，敢啓。”傳曰：“知道。”

戊戌六月二十五日

● 再次

一. 曹啓曰：“頃日大雨，連日注下，故祈雨祭，初次設行之後，姑爲停止，更觀日勢，以爲稟處之地矣。近來東風連吹，日氣淒涼，雖有水之田，禾穀枯損，以外方雨澤狀啓觀之，兩湖旱氣最甚，前頭民事，極爲可慮。勿拘常規，不卜日，來二十七日，社稷·宗廟·北郊等處，別遣重臣，虔誠祈雨事，分付各該司，何如？”傳曰：“允。”

무술년¹⁶⁵⁸ 6월 28일

● 3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2차 기우제 이후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해가 쨍쨍하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일에 설행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해년¹⁶⁵⁹ 4월 19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 농사 상황에 대한 장계를 잇달아 보았더니 각도에 비록 비가 조금 내리기는 하였으나 모두 충분하지 못합니다. 지금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가뭄 조짐이 현저합니다. 경기는 망종^{芒種}이 이미 지났으나 아직 파종하지 못한 곳이 많고, 양남^{兩南}은 가뭄이 제법 심하여 모내기할 가망이 전혀 없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걱정스러운 상황은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2일 설행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戊戌六月二十八日

● 三次

一. 曹啓曰：“再次祈雨之後，尚未得雨，烈日杲杲，前頭民事，極爲渴悶。風雲雷雨·山川·雩祀，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三次祈雨祭，不卜日，來初一日設行，虔誠祈禱，期於得雨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己亥四月十九日

● 初次祈雨祭

一. 曹啓曰：“近日續見農事形止狀啓，則各道雖得小雨，皆未周洽，即今淒風連吹，顯有旱徵，京畿則芒種已過，而尚多未付種之處，兩南則旱乾頗甚，決無移秧之望，前頭民事可慮之狀，人皆傳之。初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二十二日設行，虔誠祈禱，期於得雨，而修溝壑·淨阡

하되, 도랑을 수리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드러난 해골을 묻어 주는 등의 일을 또한 한성부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기해년¹⁶⁵⁹ 4월 23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 아직 비가 내릴 조짐이 없어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직·종묘·북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6일 설행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해년¹⁶⁵⁹ 6월 4일

● 사문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에,
‘장마가 지루하여 한 달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아 지방의 참혹한 수재는 곳곳이 모두 그러합니다. 밀과 보리가 물에 잠기고 곡식이 손상되어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다급합니다. 기청제는 오래 입추 이후에 거행하므로 여쭙어 청하지 않았으나,

陌·掩骼等事, 亦令漢城府, 劃即舉行, 何如?” 傳曰: “允.”

己亥四月二十三日

● 再次祈雨祭

一. 曹單子: “初次祈雨之後, 尙無雨徵, 前頭民事, 極爲可慮. 社稷·宗廟·北郊, 再次祈雨祭, 不卜日, 來二十六日設行, 虔誠祈禱, 期於得雨事, 知委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己亥六月初四日

● 四門禱祭

一. 曹啓曰: “政院啓辭: ‘霖雨支離, 經月不止, 外方水災之慘, 處處皆然, 兩麥漂沈, 禾穀損傷, 前頭民事, 誠極悶迫, 而祈晴之祭, 例行於立秋後, 故不得稟請矣. 卽今雨勢彌盛, 頓無開霽之望, 若復等

지금은 비 내리는 기세가 더욱 성대하고 날이 갠 가
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또 기다리며 지체하다가
재해가 더욱 혹독해지면 기도를 하더라도 필시 어
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의 형편이 몹시 급하여 평상
시의 규례를 따질 수 없습니다. 예전에 가을 이후에
가뭄의 재해가 생기면 기우제를 지낸 때가 있었으
니, 입추 전에 기청제를 지내도 안 될 것이 없을 듯
합니다. 더구나 가을이 머지않으니 변통하는 방도
가 있어야 합니다. 기청제를 속히 설행하도록 해당
조로 하여금 성상의 뜻을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원상_{院相}의 뜻도 이와 같으니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장마가
지루하여 곡식이 손상되니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잠
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신의 조_曹, 예_{예조}에서는 평상시
의 규례에 구애받아 미처 여쭙어 처리하지 못하였
습니다. 지금 승정원의 계사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일에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도록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기해년₁₆₅₉ 7월 13일

● 기청제를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待遲延, 至於災害轉酷, 則雖
行祈禱, 必將無及, 事勢切急,
不可論以常規, 曾因秋後旱
災, 亦有祈雨之時, 則立秋前
祈晴, 恐無不可, 況秋節不遠,
合有變通之道. 祈晴祭, 從速
設行事, 令該曹稟處, 何如?
院相之意亦如此, 敢啓.’ 傳
曰: ‘依啓’事, 傳教矣. 霪雨支
離, 禾穀損傷, 祈晴之舉, 不容
少緩, 而臣曹則拘於常例, 未
及稟處矣. 今此政院啓辭, 誠
爲得宜, 四門禁祭, 不卜日, 來
初六日爲始, 三日而止, 設行
事, 知委各該司, 何如?” 傳
曰: “允.”

己亥七月十三日

● 祈晴祭設行

一. 曹啓曰: “數月大雨之餘,

“몇 달 동안 큰비가 내린 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근래에 가뭄이 들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비는 백성이 바라던 것인데 비가 쏟아지듯 내려 연일 그치지 않고, 사방의 구름이 아직 갠 형세가 없으니 필시 곡식이 손상되는 우환이 많을 것입니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영제四門禳祭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5일에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도록 설행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久無雨澤，近來有旱乾之漸，今番之雨，農民所望。而雨下如注，連日不歇，四方同雲，尙無開霽之勢，必多禾穀損傷之患，祈晴之舉，不可少緩。四門禳祭，不卜日，來十五日爲始，三日而止，設行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기해년¹⁶⁵⁹ 7월 14일

● 기청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청제를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비가 깨끗이 그쳤으니 기청제를 설행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己亥七月十四日

● 祈晴祭停止

一. 曹啓曰：“祈晴祭設行事，命下矣。今日雨勢快晴，祈晴祭，不當設行之意，敢啓，”傳曰：“知道。”

기해년¹⁶⁵⁹ 8월 2일

● 사문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금년에 날씨가 지극히 치우친 피해는 근래에 없던 재해인데, 지금 추수하는 철을 맞이하여 장마가 또

己亥八月初二日

● 四門禳祭

一. 曹啓曰：“今年極備之害，近來所無之災，而當此西成之節，淫霖又復如注。今見水標

쏟아지는 듯합니다. 지금 수표^{水標}의 보고를 보니, 빗물이 몹시 많아 새벽부터 불어난 양이 이미 6척이 넘었다고 합니다. 먹구름이 사방에 뽁뽁하여 날이 갠 가망이 조금도 없으니 앞으로의 농사에 필시 손상되는 우환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기청제를 거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4일에 시작하여 3일 후 중지하도록 설행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所報，則潦水甚多，曉來所漲，已過六尺之高。屯雲四密，少無開霽之望，前頭穡事，必多損傷之患。此時祈晴之舉，不可少緩。四門祭，不卜日，來初四日爲始，三日而止，設行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현종조

경자년¹⁶⁶⁰ 2월 28일

● 기우제를 지낼지 대신에게 수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해 겨울 무렵 한두 번 비가 뿌리고 봄이 온 뒤로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아 시내와 못이 마르고 땅이 메말라 가을보리가 장차 말라 죽게 되었고, 봄보리는 이미 과중하였으나 전혀 생기가 없다고 합니다. 팔도에 기근이 든 가운데 금년의 가뭄 재해가 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이달 안에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보릿가을에 더 이상 가뭄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논의는 「때맞추어 기우제를 지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하고, 「절기가 아직 이르니 천천히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도 합니다. 본조가 제멋대로 정할 수 없으니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한 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휴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에게 수의하니, 영돈녕부사 이정석^{李景奭}은,

‘이르고 늦고를 따지지 말고 즉시 기우제를 지내자는 것이 신의 망녕된 논의입니다. 옛날에는 겨울에 눈이 내리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아도 기도하는데, 하물며 겨울과 봄에 비가 내

顯廟朝

庚子二月二十八日

● 祈雨議大臣

一. 曹啓曰：“上年冬間，一番灑雨，開春之後，點雨不下，川澤涸渴，土脉嘆乾，秋穀勢將枯損，春穀雖已播種，而頓無生意云。八路飢饉之中，今年旱災，又至於此，言念民事，極爲渴悶。此月之內，若不得雨，則前頭麥秋，無復可望。群議多以爲不可不及時祈雨，而或云，節候尙早，徐議爲之似當。本曹不能擅便，議大臣定奪後，舉行，何如？”傳曰：‘允’事，傳教矣。議于大臣，則領敦寧府事李景奭以爲：‘不計早晚，趁卽祈雨，乃臣之妄論也。古者，當冬禱雪，冬不下雪，猶爲之禱，況冬春無雨，已迫清明，秋牟消息，已無可望，春耕種不入土，外方餓殍之說，聞來慘然。若論其本末，

리지 않았고 이미 청명^{淸明}이 다가왔으니 어떻겠습니까. 가을보리 소식은 이미 가망이 없고, 봄갈이한 종자는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지방의 굶어 죽은 시체 이야기를 들으면 참혹합니다. 만약 그 본말을 따지자면 덕을 닦고 형벌을 줄이며 부역을 가볍게 하여 주공^{周公}의 열두 가지 황정^{荒政}⁴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참으로 그 근본입니다. 백성을 위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일도 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은 백성의 일을 늦출 수 없다고 들었고, 늦출 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겨울부터 봄까지 가뭄이 재해가 되었으니 때맞추어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참으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옛일을 살펴보면 비록 겨울철이라도 눈이 내리기를 기도한 일이 있었으니, 지금 농사가 애타고 근심스러운 때에 절기의 이르고 늦음을 어찌 논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영종추부사 심지원^{沈之源}은,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고 봄에 비가 내리지 않아 밀과 보리가 말라 죽어 이미 가망이 없고 봄보리도 생기가 없으니, 올해 만약 풍년이 들지 않으면 앞으로

4 주공(周公)의 …… 황정(荒政):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나오는 열두 가지 흉년 대책이다. 이익을 흠고[散利], 세금을 경감하고[薄征], 형벌을 완화하고[緩刑], 부역을 완화하고[弛力], 금령을 해제하고[舍禁], 기찰을 없애고[去幾], 예식을 생략하고[省禮], 상례를 줄이고[殺哀], 음악을 중지하고[審樂], 혼인을 늘리고[多婚], 귀신을 찾아 제사 지내고[索鬼神], 도적을 제거하는 것[除盜賊]이다.

修德省刑, 輕徭薄賦, 以盡周公十二荒政之道, 固其本也. 爲民禱雨, 亦不可不急, 臣聞民事不可緩也, 未聞其可緩也. 伏惟上裁.’ 領議政鄭太和以爲: ‘自冬及春, 旱嘆爲災, 趁時祈雨, 誠不可已. 考之古事, 雖當冬節, 亦有祈雪之舉, 則屬此民事渴悶之日, 節候早晚, 奚暇論哉?’ 領中樞府事沈之源以爲: ‘冬不雪春不雨, 兩麥枯損, 已無可望, 春牟亦無生意, 今年若不豐登, 則前頭民事, 誠爲渴悶, 虔誠祈雨, 似不可少緩. 伏惟上裁.’ 延陽府院君李時白·行判中樞府事元斗杓, 病不收議. 右議政鄭維城以爲: ‘三冬無雪, 春寒已極, 東作失時, 種不入土, 前頭民事, 誠爲渴悶, 趁此時祈雨, 在所汲汲, 節候早晚, 非所暇論. 伏惟上裁.’ 大臣之意如此, 上裁, 何如?” 傳曰: “依議施行.”

의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정성껏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을 듯하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연양부원군 이시백^{李時白}, 행판중추부사 원두표^{元斗杓}는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였고, 우의정 정유성^{鄭維城}은,

‘겨울 내내 눈이 내리지 않았고 봄추위가 이미 지극한데 봄농사의 때를 놓쳐 종자가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이때 기우제를 지내는 일이 몹시 급하니, 절기의 이르고 늦음은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수의한 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경자년¹⁶⁶⁰ 2월 29일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을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하여 계하하셨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 설행하되,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제관을 선발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庚子二月二十九日

● 初次祈雨

一. 曹單子：“祈雨祭設行事，議大臣定奪，啓下矣。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初次祈雨祭，不卜日，來二十七日設行，精備奠物，擇定祭官，虔誠祈禱，期於得雨事，知委舉行，何如？”

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 보슬비가 비록 뿌렸으나 먼지도 적시지 못하였으니 지금의 농사가 참으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2차 기우제를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30일 설행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2차 기우제는 우선 중지하기로 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비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으니 내일 기우제는 설행하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경자년¹⁶⁶⁰ 4월 8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겨울 이래 한결같이 가물고 며칠 전 비록 비가 조금 내렸으나 역시 충분하지 않았고 서늘한 바

啓依所啓施行.

● 再次祈雨

一. 曹單子：“初次祈雨之後，微雨雖灑，輕塵未浥，目今民事，誠爲切悶，再祈之舉，不容少緩。社稷·宗廟·北郊等處，再次祈雨祭，不卜日，來三十日設行，而虔誠祈禱，期於得雨事，知委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

● 再次姑徐

一. 政院啓曰：“雨勢如此，明日祈雨祭，似當勿爲設行，敢稟.”傳曰：“知道.”

庚子四月初八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自去冬以來，一向旱乾，頃日雖得小雨，而亦未周洽，淒風連吹，芒種不遠，

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망종이 머지않았는데 늦벼를 아직 파종하지 못한 곳이 제법 많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결코 그만둘 수 없으니,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에 설행하되,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제관을 선발하고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자년¹⁶⁶⁰ 4월 11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해가 짙 짙하여 아직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2차 기우제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직·종묘·북교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3일 설행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자년¹⁶⁶⁰ 4월 16일

● 범 머리를 돼지머리로 대신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얼마 전 경기 감사 조형^{趙珩}의 장계에,

而晚稻尙未付種處頗多，前頭民事，極爲可慮，祈雨之舉，決不可已。風雲雷雨·山川·雪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初十日設行，精備奠物，擇定祭官，虔誠祈禱，期於得雨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庚子四月十一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初次祈雨之後，淒風連吹，日出杲杲，尙無雨徵，再次祈禱，在所不已。社稷·宗廟·北郊，不卜日，來十三日設行事，知委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

庚子四月十六日

● 虎頭代猪頭

一. 曹啓曰：“卽者京圻監司趙珩狀啓以爲：‘今月十八日祈雨

‘이달 18일 기우제 때 범 머리를 진배해야 하나, 지난해 도내에서 일 년 내내 범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감영에도 현재 재고가 없으므로 급히 아뢰입니다.’

하였습니다. 감영에 범 머리의 재고가 없으니 달리 얻을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제사 지낼 날이 이미 다가왔으니 형세상 찾아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범 머리를 강에 담그는 원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이번에는 우선 돼지머리를 대신 사용하게 하는 것이 완전히 그만두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제사를 지낸 뒤 사용한 돼지머리를 강에 던지되, 저자도에서 제사 지내고 거위를 가라앉히는 규례대로 하면 무방할 듯합니다. 이 뜻을 봉상시에 분부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곳에 널리 구해도 얻지 못하면 다시 내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 이후 비록 하루 비가 내렸으나 아직 충분하지 못하니,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 설행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祭時，虎頭當爲進排，而上年道內終年不得捉虎，營中時無遺儲，緣由馳啓’云。虎頭營中無儲，則他無可得之處，況且祭日已迫，勢未及訪問求覓，雖未知其必以虎頭沈江之本意，而今番則姑令猪頭代用，或有愈於全然廢而不行。祭後以其所用猪頭投江，如楮子島祭後沈鵝之例，似無所妨。此意分付奉常寺舉行，何如？”傳曰：“廣求諸處，如或不得，則更稟處之，可也。”

● 三次祈雨

一. 曹單子：“再次祈雨之後，雖得一日之雨，猶未周洽，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三次祈雨祭，不卜日，來十八日設行，虔誠祈禱，期於得雨事，知委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

경자년¹⁶⁶⁰ 4월 17일

● 범 머리를 오부와 서울 가까운 고을에서 찾다.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의 초기^{草記}에 대해 전교하기를,

‘여러 곳에 널리 구해도 얻지 못하면 다시 내게 물어 처리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범 머리는 민간에서 가질 물건이 아니니, 한성부로 하여금 오부^{五部}에 분부하여 각 방^坊의 여러 곳에 두루 물어 반드시 얻기를 기약하며, 또한 본도에서 서울 가까운 약간 고을에 급히 통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여 기우제 이전에 도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자년¹⁶⁶⁰ 4월 25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어제 세 곳에 기우제를 지낸 이후 우박이 잠시 쏟아졌으나 곧 그쳤습니다. 날씨가 서늘하여 가뭄이 들 조짐이 더욱 심한데 망종^{芒種}이 이미 임박하여 농사가 애타고 걱정입니다. 사전^{祀典}에 따라 여러 곳에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참으로 조급도 늦출 수 없습니다.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 설행하고,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기우제를 오는 29일

庚子四月十七日

● 虎頭五部近京邑求覓

一. 曹啓曰：“以本曹草記，傳曰：‘廣求諸處，如或不得，則更稟處之，可也’事，傳教矣。虎頭非閭閻間所有之物，而請令漢城府，分付五部，使之遍問於各坊諸處，期於必得，亦令本道，馳通於近京若干邑，多般求覓，回報於祈雨祭前，何如？”傳曰：“允。”

庚子四月二十五日

● 四次祈雨

一. 曹單子：“昨日三處祈雨之後，雨雹片時暴下，旋即開霽，天氣淒冷，旱徵益甚，芒種已迫，民事渴悶，祀典諸處，祈雨之舉，誠不容少緩。三角山·木覓山·漢江，遣近侍，不卜日，來二十七日設行，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祈雨祭，來

에 선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정갈하게 준비하여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게 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라고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자년¹⁶⁶⁰ 5월 28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 이후 비가 내릴 가망이 전혀 없고 서늘한 바람이 날마다 불어 한발이 더욱 심하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1일에 선행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뢰니,
‘비록 기우제를 선행하였으나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고 서늘한 바람과 뜨거운 햇볕이 전보다 더욱 심해지니 농사가 참담하여 규례에 구애받을 수 없다. 내 병이 낫지 않아 비록 행할 수 없으니, 이번에 종묘·사직은 대신이 대신 행하라.’
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관하하신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종묘·사직 기우제는 성상의 하교대로 대신에

二十九日設行，而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精備下送，執事官·犧牲，令本道差定進排，十分虔誠祈禱之意，京畿監司處，知委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

庚子五月二十八日

● 七次祈雨

一. “曹單子：‘六次祈雨之後，頓無得雨之望，淒風日吹，旱魃益甚，前頭民事，誠爲渴悶。風雲雷雨·山川·雩祀，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祈雨祭，不卜日，來六月初一日設行，虔誠祈禱，期於得雨事，知委舉行，何如?’” 啓，“雖行祈雨，而雨徵頓無，淒風烈日，益甚於前，民事慘惻，不可拘例。予病未差，雖不得行，今番則宗廟·社稷以大臣代行”爲良如教，“粘連判下是白有亦。宗廟·社稷祈雨祭，依聖教，當以大臣代行，而第念來初一日，與宗廟朔祭相值。取考『五禮

게 대신 행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오는 1일은 종묘 삭제(宗廟朔祭)와 겹칩니다. 『오례의(五禮儀)』를 가져다 살펴보니 제사조(祭祀條) 소주(小註)에 ‘삭망제(朔望祭)가 별제(別祭)와 겹치면 별제만 설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일은 기우별제만 설행하고 삭제는 설행하지 말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자년¹⁶⁶⁰ 7월 23일

● 가을철 이후의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오늘 입진하였을 때 상이 이르기를,
 ‘근래 가뭄이 몹시 심하고 동풍이 계속 불어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다. 예전부터 가을철 이후로도 기우제를 지낸 때가 있었는가?’
 하니, 영의정이 아뢰기를,
 ‘겨울에도 눈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규례가 있으니, 비록 가을철이 되더라도 가뭄의 재해가 이와 같으면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전례를 찾아내어 속히 내게 물어 처리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계사년¹⁶⁵³ 7월 28일과 을미년¹⁶⁵⁵ 7월 10일 기우제를 지냈고, 기묘년¹⁶³⁹과 경인년¹⁶⁵⁰에는 입추 이후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지금 가뭄이 몹시

儀』，則祭祀條小註，朔望若值別祭，只行別祭云。初一日行祈雨別祭，朔祭則不爲設行事，分付，何如？”啓依所啓施行。

庚子七月二十三日

● 秋節後祈雨

一. 曹啓曰：“今日入診時，上曰：‘近日旱氣太甚，東風連吹，農事極爲悶慮。自前秋節後，亦有祈雨之時乎？’領議政曰：‘冬日亦有祈雪之規，雖屆秋節，旱災如此，則不必拘於常規矣。’上曰：‘前例考出，急速稟處’事，傳教矣。取考臚錄，則癸巳七月二十八日，乙未七月初十日，祈雨，而已卯·庚寅兩年，則立秋後，遣大臣祈雨矣。目今旱既太甚，秋節向晚，不得不祈雨，則即當致誠虔禱，期於數日內得雨。社稷·宗廟，遣大臣，風雲雷雨·山川

심하고 가을이 늦어 가니, 기우제를 지내지 않을 수 없다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여 며칠 안에 비가 내리기를 기약해야 합니다. 사직·종묘는 대신을 보내고, 풍운뇌우·산천·우사는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은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동시에 함께 설행하는 것이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비가 하루가 급하나 이처럼 겹쳐서 설행하는 사이에 정갈하지 못한 폐단이 있을 듯하다. 사직·종묘만 대신을 보내 우선 설행하라.”

하였다.

경자년¹⁶⁶⁰ 7월 26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사직·종묘 기우제 이후 현재 비가 내릴 조짐이 없고 가뭄의 재해가 몹시 급박하여 곡식이 말라 죽으니 기도하는 일이 하루가 급합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8일 함께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雩祀, 遣重臣, 三角山·木覓山·漢江, 遣近侍, 不卜日, 來二十五日, 一時並行, 何如?”
傳曰: “目今雨澤, 一日爲急, 然如此疊行之際, 似不無不精之弊, 只社稷·宗廟, 遣大臣, 姑先設行, 可也.”

庚子七月二十六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 “社稷·宗廟祈雨之後, 時無雨徵, 旱災甚迫, 禾穀枯死, 祈禱之舉, 一日爲急. 風雲雷雨·山川·雩祀, 遣重臣, 三角山·木覓山·漢江, 遣近侍, 不卜日, 來二十八日, 並爲設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경자년¹⁶⁶⁰ 9월 5일

● 9월 이후 기우제를 지낸 적이 없다.

예조가 아뢰기를,
“인견을 마치고 나간 뒤 각 해에 기우제를 지낸 날짜를 살펴보니, 임추 이후에 기우제를 지낸 일이 8월에는 간혹 있었으나 9월에는 설행한 일이 없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4월 1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봄이 이미 다 지나 농사일이 한창 급한데 1월 이후로 비가 지극히 적게 내려 가뭄이 근래 더욱 심합니다. 때때로 가랑비가 내렸으나 먼지도 적시지 못하여 우물과 샘이 모두 마르고 시내와 도랑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뻥뻥하여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고, 보리가 무성해지다가 장차 다시 메마르게 되고 밭 갈 때가 점차 늦어지는데 전혀 흙을 얻지 못하였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풍운 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3일 설행하겠습니다. 어제 황해감사 정만화^{鄭萬和}의 장계를 보니 도내의 가뭄이 또

庚子九月初五日

● 九月以後曾無祈雨

一. 曹啓曰：“引見罷出後，取考各年祈雨祭月日，則立秋後祈雨，或在於八月，而九月則曾無設行之事矣，敢啓。”傳曰：“知道。”

辛丑四月初一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春序已盡，農務方急，而自正月以後，雨澤至少，旱暵之氣，近來尤甚，時有霹靂，曾未溫塵，井泉皆涸，川溝將絕，淒風密雲，雨意邈然。牟麥向茂，將至還枯，耕節漸晚，全不起土，前頭民事，誠極悶慮，祈雨之舉，不可少緩。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初三日設行，而昨見黃海監司鄭萬和狀啓，則道內旱氣，亦甚可憂，本道祀典所載處，祈雨祭香祝，急速下送，使之虔

한 심하여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본도에서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곳에 기우제의 향축(香祝)을 급히 내려보내 정성껏 기도하게 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4월 4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 간절히 구름만 바라보았는데 곧 서늘한 바람이 불고 해가 쨍쨍하게 나와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가뭄이 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직·종묘·북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일 설행하되, 제관을 선발하여 정성껏 기도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4월 6일

● 기우제를 지내기로 결정하다.

영중추부사 정유성(鄭維城)이 청대(淸對)하였을 때 도승지 남용익(南龍翼)이 아뢰기를,
“가뭄 재해의 참혹함이 이미 지극히 위험한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신들이 방금 짧은 글로 소회를 아

誠祈禱，期於得雨事，並爲分付，何如?” 傳曰：“依啓.”

辛丑四月初四日

● 再次

一. 曹單子：“初次祈雨之後，望雲徒切，淒風旋吹，出日杲杲，全無雨徵。今年旱氣，又至於此，前頭民事，極可悶慮。社稷·宗廟·北郊，再次祈雨祭，不卜日，來初六日設行，而擇定祭官，虔誠祈禱事，知委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

辛丑四月初六日

● 祈雨定奪

一. 領中樞府事鄭維城請對時，都承旨南龍翼所啓：“旱災之慘，已到十分地頭，臣等纔以草草文字，仰陳所懷矣。其

되었습니다. 그중 기우제는 결코 평상시의 전례를 고수하여 날짜를 물릴 수 없습니다. 이번 3차 기우제는 중신^{重臣} 또는 대신^{大臣}을 차임하여 보내 속히 설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3차 기우제는 대신을 차임하여 보내 종묘·사직에서 속히 설행하라.”

하였다.

● 종묘 사직 기우제

“승정원이 아뢰기를,

‘3차 기우제는 모레 대신을 보내 사직·종묘에서 설행하라고 방금 답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물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모레는 하향 대제^{夏享大祭}입니다. 날짜가 겹치니 막중한 제사를 결코 하루 사이에 겸하여 지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9일로 물러 지내면 점차 지체될 것이고, 만약 내일로 당겨 정하면 제법 균색할 듯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에 이와 같은 때는 어떻게 하였는가? 예전의 규례를 살펴 아뢰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두 제사가 하루에 겹치는 것은 실로 드문 일이니 근거 삼을 만한 전례를 쉽게 찾아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묘의 경우는 하룻밤 사이에 두 제사를 연달아 지내는 것은 사리에 있어서 결코 안 됩니다. 내일은 형세상 몹시 균색하

中祈雨祭，決不可膠守常典，遲退日子，今此三次祭，差遣重臣或大臣，急速設行，不可少緩。”上曰：“三次祈雨祭，差遣大臣，急速設行於宗廟·社稷，可也。”

● 廟社祈雨

一. “政院啓曰：‘三次祈雨祭，明明日遣大臣，設行于社稷·宗廟事，纔已定奪於榻前矣。退而更思，則明明日即夏享大祭也，日子相值，莫重祀事，決不可兼行於一日之內。若退行於初九日，則漸至遲延，若進定於明日，則頗涉窘急，何以爲之？敢稟。’傳曰：‘自前如此之時，何以爲之乎？前規相考以啓’事，命下矣。兩祭相值於一日，實是稀有之事，可據前例，不但未易考出，至於宗廟，則一夜之間，連行兩祭，其在事理，決有所不可，而明日則勢甚窘急，初九日退行之外，

고, 9일로 물러 지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이렇게 거듭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의 형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9일로 정하여 지내
라.”
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4월 10일

● 기우 친제를 지낼지 대신에게 수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4월 9일 입시하였을 때 좌승지 이익한^{李翊漢}이
아뢰기를,
‘기우제를 연달아 지냈으나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으니, 지금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신^{大臣}이 연
달아 지냅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이러한 때 출입하기는
불편하다. 그러나 지금 이처럼 몹시 위험한 지경이
되었으니 성의가 하늘에 닿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앞
아서 미진한 일을 초래할 수 없다. 친제를 지내고자
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대신과 유신^{儒臣}에게 수의
收議하여 아뢰게 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에게 수의하니 영중추부
사 이경석^{李景奭}은,
‘신은 팔다리에 병이 있으나 감히 병을 말하지 못하

更無他策，何以爲之？敢此申
稟.” 傳曰：“事勢至此，以初九
日定行，可也。”

辛丑四月初十日

● 祈雨親祭議大臣

一. 曹啓曰：“今四月初九日入
侍時，左承旨李翊漢所啓：‘祈
雨祭，連次爲之，而雨意邈然，
今若不雨，則大臣連次爲之
乎？何以爲之？’ 上曰：‘若非不
得已事，則此時出入非便，而
今則到此十分地頭，不可自爲
誠意未格，而致致未盡之事。
欲爲親祭事，令禮官，大臣·儒
臣處，收議以啓’事，傳教矣。
議于大臣，則領中樞府事李景
奭以爲：‘臣有臂脚之疾，而不
敢言病，今日禱于太廟，而微
誠未格，賤患轉劇，旱災之孔
慘，皆若微臣一身之罪，呻痛
之中，惶懼縮伏，不敢對人。茲

고 오늘 종묘에서 기도하였으나 얇은 정성이 하늘에 닿지 않고 미천한 신의 병이 점차 심해지며 가뭄의 재해가 참혹하니 모두 신 한 사람의 죄 같습니다. 신음하던 중에 두렵고 위축되어 감히 남을 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예조 낭관이 와서 성상의 하교를 전하였는데 말뜻이 간절하니, 아마도 친히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늘의 응험이 곧장 올 것입니다.

신이 이어서 엎드려 생각하니, 이번 혹독한 가뭄은 국가의 존망과 관계되니, 정성껏 기도하는 일을 참으로 그만둘 수 없고, 또한 속히 대사면의 은전을 거행해야 가마미 있을 것입니다. 신은 인조조에 대사헌의 자리를 맡아 심리를 대충하여 비가 잠시 내리다가 곧 그쳤기에 재차 행하기를 청하여 큰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이 일은 늦출 수 없을 듯합니다. 성상께서 만약 앓는 병이 없다면 하교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눈병의 근원이 몹시 깊은 것이 가장 걱정스러우니, 다시 며칠 동안 보아 차례로 거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선 현재 정승이나 다른 대신에게 산천에 다시 지내게 한다면 신처럼 병 들고 못난 자도 감히 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조조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하문하셨으니 감히 전례를 아웁니다.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지금 성상의 체후로 만드시 직접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자 하시니 이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者禮曹郎官，來傳上教，辭意懇惻，意者似不待親禱，而冥應立至也。臣仍伏思惟，今此酷旱，實係存亡，虔祈誠不可已，亦須速行大霽之典，然後庶幾可望。臣於仁祖朝，忝爲大司憲，見審理草草，乍雨旋止，請再行而致大雨，而今日此舉，恐不可緩也。自上若無所患之症，依下教行之宜矣。而眼患源委深重，最其悶慮，且合更觀數日，次第舉行，姑令時相若他大臣，更行於山川，則如臣病劣，亦不敢辭。仁祖朝嘗有此事，今因下詢，敢達舊例，上裁，何如?’ 領議政鄭太和以爲：‘以今日聖候，必欲親自禱雨，是心足以感回天意，而聖躬所患，時未平復，誠不可力疾行禮，姑宜大臣連次虔祈，伏惟上裁。’ 左議政沈之源以爲：‘無狀小臣，承命禱雨，誠意淺薄，未能上格，旱乾斯酷，雨意邈然，惶愧之至，措躬無地。伏承下詢，辭意懇惻，此心足以感天矣。第自上所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앓는 병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 참으로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예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대신에게 연달아 정성껏 기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은,

‘형편없는 신이 명을 받들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였으나 성의가 알아 하늘에 닿지 못하였습니다. 가뭄이 이처럼 혹독하고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으니 지극히 두렵고 부끄러워 몸둘 곳이 없습니다. 삼가 하문을 받으니 말씀이 간절하여 이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성상께서 앓는 병이 현재 회복되지 않았으니 결코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우선 대신에게 연달아 정성껏 기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행 판중추부사 정유성鄭維城은,

‘성상께서 앓는 병이 아직 쾌차하지 않았는데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친히 정성껏 기도하고자 이렇게 하문하셨으니, 이는 실로 재해를 만나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불편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하늘의 보응을 바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성상께서 재해를 우려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하기가 이와 같으니, 이는 비록 직접 기우제를 지내지 않더라도 이 마음이 재해를 없애고 비를 내리게 하기 충분합니다. 며칠 사이에 반드시 비가 쏟아질 것이나, 이후로 대신을 연

患, 時未平復, 決不可强疾行祭, 姑令大臣連次虔祈宜當, 伏惟上裁.’ 行判中樞府事鄭維城以爲: ‘聖上所患之症, 未及快復之中, 欲爲力疾親行虔祈, 有此下詢, 此出於遇災憂遑, 强作違豫氣力, 斯致冥應, 聖心之憂災警懼至此, 此雖不親行祈祭, 此心足以弭災致雨, 數日之內, 必有沛然之澤, 而此後遣大臣連次致祭, 則在所不已. 至於自上親祭, 則未寧諸症, 雖似少差, 皆未復常, 前頭祥祭, 恐不得親行, 群下以此, 皆以爲慮, 如臣忝在保護之任者, 決不可請行親祭, 伏惟上裁.’ 右參贊宋浚吉以爲: ‘今日旱災, 一至此極, 聖念憂遑, 至有親禱之意, 如使聖體康安, 動作無憂, 則自盡誠意, 冀回天心, 豈不大幸而至善? 第於再作, 仰瞻天顏, 眼候彌苦, 差效尙遠, 冒夜力疾, 萬一添傷, 則其爲宗社臣民之憂, 尤何可盡言? 惟在聖明, 自量氣力, 毋或强作, 亦不害爲事

달아 보내 제사를 지내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친히 제사하는 일은 불편한 여러 증세가 비록 조금 나은 듯하나 모두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상제^{祥祭}도 친히 지낼 수 없을 듯 하니, 신하들은 이 때문에 모두 염려합니다. 신은 보호하는 직임을 맡고 있으니 결코 친제를 행하도록 청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우참찬 송준길^{宋浚吉}은, ‘오늘날 가뭄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성상께서 근심하고 두려워 친히 기도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만약 성상의 체후가 건강하여 움직여도 걱정이 없다면 스스로 성의를 다하여 하늘의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몹시 다행하고 지극히 좋지 않겠습니까.

다만 엇그제 용안을 우리러보니 눈병이 더욱 심해져 나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밤중에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가 만에 하나 병이 심해지면 종묘사직과 신민의 우려를 더욱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오직 밝으신 성상께서 스스로 기력을 헤아려 행여 억지로 몸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하늘을 섬기는 도리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대신과 유신의 뜻은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天以實之道矣，伏惟上裁.’ 大臣及儒臣之意如此，上裁，何如?” 傳曰：“大臣再行，近無其規，當以親祭磨鍊，而群臣之請至此，姑以大臣·近臣代行。”

“대신이 재차 행하는 것은 근래에 규례가 없으니 친 제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신하들의 청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선 대신과 근신_{近臣}이 대신 행하라.” 하였다.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4차 기우제에 대해 이미 답전에서 직접 하교를 받았 습니다. 오는 12일에 설행해야 하는데, 풍운뇌우·산 천·우사는 대신을 보내고 삼각산·목멩산·한강 침 호두_{沈虎頭}는 근시_{近侍}를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통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4월 12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연달아 비를 빌었고 대신이 재차 제사를 지내기까 지 하였으나 서늘한 바람이 날마다 불고 먼지와 안 개가 사방을 막아 비 내릴 조짐이 막연하고 물과 못 이 다 말라 앞으로 백성의 목숨이 형세상 몹시 위태 롭고 다급합니다.
5차 기우제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 의 장소에 중신_{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6일 에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정갈

● 四次祈雨

一. 曹啓曰：“四次祈雨祭，既於榻前，親承下教。來十二日，當爲設行。風雲雷雨·山川·雩祀，遣大臣，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行祭事，知委，何如？”傳曰：“允。”

辛丑四月十二日

● 五次

一. 曹單子：“連次禱雨，至於大臣再行祀事，而淒風日吹，塵霧四塞，雨氣邈然，水澤盡渴，前頭民命，勢甚危迫。五次祈雨祭，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遣重臣，不卜日，來十六日設行，而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精備下送，執事官·犧牲，令本道

하게 준비하여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게 하여 정성을 다해 비가 내리기를 빌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4월 17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여러 번 정성껏 빌었으나 빗방울이 내리지 않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가뭄의 재해가 날로 심하여 앞으로 백성이 죽어 구덩이를 채울 날이 박두하였으니 비를 비는 일이 하루가 급합니다.

6차 기우제를 오는 20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보내 설행하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焚柴} 역시 같은 날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가려 차임하게 하고, 희생 또한 본도로 하여금 진배하게 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差定進排，十分虔誠祈禱之意，各該司及京畿監司處，知委舉行，何如？” 啓依允。

辛丑四月十七日

● 六次

一. 曹單子：“累次虔祈，點雨不下，淒風連吹，旱災日甚，前頭民命，舉迫填壑。禱雨之事，一日爲急，六次祈雨祭，來二十日，楮子島·龍山江·冠岳山等處，遣重臣設行，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亦爲同日設行爲白乎矣，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令本道擇差，犧牲亦令本道進排，使之虔誠精禱，期於得雨事，各該司及京畿監司處，知委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

신축년¹⁶⁶¹ 4월 21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여러 곳의 기우제를 거의 다 거행했으나 가뭄 귀신의 재해가 날로 심하여 앞으로 백성의 목숨이 지극히 위태롭고 다급합니다. 사직·종묘·북교에 중신^{重臣}을 보내 7차 기우제를 오는 23일 설행하여 정성껏 비가 내리기를 빌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4월 24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연이어 비를 비느라 지방 산천까지 가서 제물을 바쳤으나 가뭄이 날로 심하여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근시^{近侍}를 보내 8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6일 설행하여 정성껏 비가 내리기를 빌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辛丑四月二十一日

● 七次

一. 曹單子: “諸處祈雨, 幾盡舉行, 而旱魃之災日甚, 前頭民命, 事極危迫. 社稷·宗廟·北郊, 遣重臣, 七次祈雨祭, 來二十三日設行, 虔誠祈禱事, 知委舉行, 何如?” 啓遣大臣設行.

辛丑四月二十四日

● 八次

一. 曹單子: “連次禱雨, 並走群望, 珪璧既卒, 旱災日甚, 前頭民事, 誠極渴悶. 風雲雷雨·山川·雩祀, 遣重臣, 三角山·木覓山·漢江, 遣近侍, 八次祈雨祭, 不卜日, 來二十六日設行, 虔誠祈禱事, 知委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신축년¹⁶⁶¹ 4월 27일

● 9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가뭄이 든 나머지 비록 한 번 비가 내리더라도 흙덩이를 부수지 못하고 곧 다시 날이 개니 농사철 백성의 일이 참으로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다시 중신重臣을 보내 9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게 하겠습니다.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와 민간의 병류屏柳는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되, 정성껏 기도하여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7월 23일

● 입추 이후의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경상도와 전라도의 메마른 땅은 이미 어쩔 수 없고, 경기의 농사는 조금 가망이 있습니다. 지금 곡식의 이삭이 패는 때에 가뭄의 재해가 이와 같이 혹심하여 들판이 메말랐습니다. 어제 아침에 비록

辛丑四月二十七日

● 九次

一. 曹單子：“旱乾之餘，雖得一雨，未及破塊，旋復開霽，三農民事，誠極可慮。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更遣重臣，九次祈雨祭，不卜日，來初一日設行為白乎矣，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為白乎旅，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閭閻屏柳，同日為始，三日而止，虔誠祈禱，期於得雨事，各該司及京畿監司處，知委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

辛丑七月二十三日

● 立秋後祈雨

一. 曹啓曰：“今年兩南赤地，已無可為，近圻農事，稍有可望。即今禾穀發穗之時，旱災此酷，田野焦枯，昨朝雖得驟雨，旋即開霽，圻甸近邑亦不

소나기가 내렸으나 곧 날이 개었고, 경기가 가까운 고을도 고루 적시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입추 이후에 기우제를 지내는 일은 이미 가까운 전례가 있고, 대신大臣의 뜻도 이와 같으니,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覓山·漢江 등지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7월 27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 계속 흐리면서 비가 내리지 않아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2차 기우제는 사직·종묘·북교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30일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7월 29일

● 2차 기우제는 조금 물리기로 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이조의 2차 기우제 헌관 망단자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이번 기우제는 평범한 제사가 아니다. 30일에 지내면 이튿날이 대례大禮이니 치재致齋에 방해가 된다.

均霑云. 立秋後設祭祈雨, 已有近例, 而大臣之意亦如此, 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不卜日, 來二十五日設行, 何如?” 傳曰: “允.”

辛丑七月二十七日

● 再次

一. 曹單子: “初次祈雨之後, 連陰不雨, 前頭農事, 誠極渴悶. 再次祈雨祭, 社稷·宗廟·北郊, 遣重臣, 不卜日, 來三十日設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辛丑七月二十九日

● 再次祈雨差退

一. 政院啓曰: “以吏曹再次祈雨祭獻官望單子, 傳曰: ‘今此祈雨, 非尋常之祭, 而三十日行之, 則明日大禮, 有妨於致齋, 何如是定日耶’事, 命下矣.

어찌하여 이와 같이 날짜를 정하였는가?’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단지 비를 빌려는 뜻만 알고 치재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조曹, 예조에서 이미 계하받았으므로 헌관의 망단자를 규례대로 봉입捧入 하였는데, 지금 하교를 받고서 조금 물리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였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하루가 급하니 멀리 물릴 수 없다. 1일에 설행하라.’라고 전교하였습니다. 기우제는 택일하지 않고 설행하는 규례가 있는데 지금 기우제는 하루가 급하여 처음에는 30일에 설행하도록 계하받았습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으니 지극히 온당하여 1일에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였습니다. 예문禮文에 종묘의 삭망朔望 제사와 별제別祭가 겹치면 별제만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기우제는 예문대로 별제만 지내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윤7월 2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재차 설행하였으나 비가 내릴 조짐이 없어 농사가 애타고 걱정입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 두 곳은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 세

‘徒知祈雨之意，不覺有妨於致齋，該曹既已啓下，故獻官望單子循例捧入矣。今承下教，以差退之意，分付該曹矣，敢啓.’ 傳曰：‘一日爲急，不可遠退，初一日行之，可也’事，傳教矣。凡祈雨祭，有不卜日設行之規，而卽今祈雨，一日爲急，初以三十日設行事，啓下矣，今承聖教，極爲允當，初一日行之事，分付各該司，而禮文內，宗廟朔望，若值別祭，則只行別祭云。今此祈雨祭，依禮文，只行別祭之意，敢啓.” 傳曰：“知道.”

辛丑閏七月初二日

● 三次

一. 曹單子：“祈雨祭，再次設行，而天無雨意，農事渴悶。風雲雷雨·山川·雩祀兩處，則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

곳은 평상시 규례에 구애받지 말고 특별히 근시^{近侍}를 보내되, 한강 침호두^{沈虎頭}는 오는 4일에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⁶⁶¹ 윤7월 3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이 아뢰기를,

‘오늘 서울에 3차 기우제의 헌관^{獻官} 이하가 향축^{香祝}을 받고 건명문^{建明門} 안에 도착하자마자 큰비가 이처럼 내렸습니다. 헌관들이

「오늘의 제사는 비가 내리기를 빌기 위해서인데 비가 쏟아지니, 그대로 제사 지낼 곳으로 가는 것은 성실한 도리가 아닌 듯하다.」

하고 그대로 궐문에 머물러 신들로 하여금 성상의 뜻을 여쭙어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계속 행할지 여부를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습니다. 헌관이 향을 받은 뒤 비 때문에 정지하는 것은 비록 전례가 없으나 비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으니, 우선 오늘내일 보아 다시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三處，則勿拘常規，特遣近侍，而漢江則沈虎頭，來初四日設行，何如?” 啓依所啓施行。

辛丑閏七月初三日

● 祈雨停止

一. 曹啓曰：“政院啓曰：‘今日京城，三次祈雨祭獻官以下受香祝，纔到建明門內，大雨如此，獻官等以爲「今日之祭，爲是祈雨，而雨勢滂沱，仍詣享所，似非誠實之道」，仍留闕門，使臣等稟旨定奪云。仍行與否，令禮官急速議處，何如?’ 傳曰：‘允’事，傳教矣。獻官受香之後，因雨停止，雖無前例，而雨勢如此，姑觀今日，更爲稟處，何如?’ 傳曰：“允。”

신축년¹⁶⁶¹ 윤7월 4일

● 기우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어제 예조의 초기^{草記}에 대해 오늘내일 다시 보아 내
게 물어 처리하라고 하였다. 지금 비가 내릴 듯하다
가 끝내 비가 쏟아지지 않았는데, 기우제를 지낼지
지내지 않을지 어찌 내게 물어 처리하지 않는가? 즉
시 회계^{回啓}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제는 비가 충분히 내리
지 않았으나 오늘은 비가 내릴 듯하였으므로 내일
다시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하교를 받으니 황
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오는 6일에 풍
운뇌우·산천·우사 두 곳은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
산·목덕산·한강 세 곳은 평상시 규례에 구애받지
말고 특별히 근시^{近侍}를 보내되, 한강은 침호두^{沈虎頭}
를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辛丑閏七月初四日

● 祈雨設行

一. 曹啓曰：“傳曰：‘昨日禮曹
草記，更觀明日稟處矣。今
日似有雨意，而終無雨澤，爲
不爲問，何不稟處乎？卽卽回
啓’事，命下矣。昨日之雨，雖
未周洽，今日似有雨意，故欲
爲明日更爲啓稟矣。今承下
教，不勝惶恐，來初六日，風
雲雷雨·山川·雩祀兩處，則
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
三處，則勿拘常規，特遣近侍，
而漢江則沈虎頭設行，何如？”
傳曰：“允。”

기우제등록 제2책

1679~1694년

「기우등록」3

祈雨謄錄 三

기미년¹⁶⁷⁹ 己未

신유년¹⁶⁸¹ 辛酉

임술년¹⁶⁸² 壬戌

계해년¹⁶⁸³ 癸亥

갑자년¹⁶⁸⁴ 甲子

을축년¹⁶⁸⁵ 乙丑

병인년¹⁶⁸⁶ 丙寅

정묘년¹⁶⁸⁷ 丁卯

무진년¹⁶⁸⁸ 戊辰

기사년¹⁶⁸⁹ 己巳

경오년¹⁶⁹⁰ 庚午

신미년¹⁶⁹¹ 辛未

임신년¹⁶⁹² 壬申

계유년¹⁶⁹³ 癸酉

갑술년¹⁶⁹⁴ 甲戌*

* 甲戌: 저본에는 '甲', 문맥에 근거하여 보충

속종조 기미년¹⁶⁷⁹부터 갑술년¹⁶⁹⁴까지

기미년¹⁶⁷⁹ 6월 4일

● 1차 기우제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비망기備忘記에,

‘지난달 비가 조금 내린 뒤로 지금 한 달이 다 되도록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비가 내리려 하다가 내리지 않아 아직 단비가 내리지 않았다. 한창 곡식이 자랄 시기에 가뭄이 이처럼 심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이다. 해당 조曹, 예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근래의 심한 가뭄은 경기가 가장 심한데, 경기의 각 도에 간혹 소나기가 연달아 내린 곳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우제를 아직 제청啓請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록 비가 내릴 조짐이 없지 않으나 동풍이 계속 불고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농사가 애타고 걱정스럽기가 참으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1차 기우제를 오는 8일 설행하여 정성껏 기도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肅廟朝己未至甲戌

己未年六月初四日

● 初次

一. 曹啓曰：“備忘記：‘自前月小雨之後，今幾一朔，而淒風連吹，欲雨而不雨，尙靳甘霖，正當禾穀長養之日，亢旱如此，言念民事，誠爲渴悶。令該曹，不卜日，虔誠祈禱’事，命下矣。近來亢旱，畿內最甚，而圻內各道中，或不無連得驟雨之處，故祈雨祭未及啓請矣。卽今雖不無雨徵，而東風連吹，尙靳霈澤，民事之渴悶，誠如聖教。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初次祈雨祭，來初八日設行，虔誠祈禱之意，分付，何如?”

기미년¹⁶⁷⁹ 6월 9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單子}에,

“근래 비록 비가 조금 내렸으나 메마른 곡식을 소생 시키기 부족하니, 2차 기우제의 거행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사직·종묘·북교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2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미년¹⁶⁷⁹ 6월 1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유시영^{柳時英}의 첩정^{牒呈}문에,
‘이번 (비가 내린) 뒤에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준으로 포백척^{布帛尺} 2척 2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미년¹⁶⁷⁹ 6월 18일

● 3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12일에 2차 기우제를 설행한 뒤 다행히 하룻밤 비가 내렸는데, 비록 충분히 적시지는 못하였으

己未六月初九日

● 再次

一. 曹單子：“近日雖得小雨，不足以蘇枯，再次祈雨之舉，不容少緩。社稷·宗廟·北郊，不卜日，來十二日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己未六月初十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柳時英牒呈內：‘今番之後，本津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二尺二寸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己未六月十八日

● 三次

一. 曹啓曰：“今十二日，再次祈雨祭設行之後，幸得一宵之雨，雖未浹洽，而連有雨微，

나 계속 비가 내릴 조짐이 있으므로 우선 정지하였습니다. 지금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어 가뭄이 더욱 혹심하고 바다 가까운 고을은 더욱 심하다고 하니, 기우제의 거행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1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미년¹⁶⁷⁹ 6월 21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지냈으나 한결같이 가물기만 하니, 4차 기우제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6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執事와 희생犧牲은 본도本道, 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進排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미년¹⁶⁷⁹ 6월 24일

● 강화도 기우제

강화 유수江華留守 윤이제尹以濟의 서장書狀에,

故姑爲停止矣。卽今雨意漠然，亢旱太酷，近海之邑尤甚云，祈雨之舉，不容少緩。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不卜日，來二十一日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己未六月二十一日

● 四次

一. 曹單子：“三次祈雨，一向旱乾，四次祈雨祭，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不卜日，來二十六日設行，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各該司及京圻監司處，知委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己未六月二十四日

● 江華祈雨

一. 江華留守尹以濟書狀：“自

“5월 이후로 지금까지 간간이 비가 조금 내렸으나
두루 적시지 못하였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너무도 염
려됩니다. 한편으로 기우제를 설행한다는 연유를
급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기미년¹⁶⁷⁹ 6월 26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 이후 한결같이 가물고 비 내릴 조짐이
전혀 없으니 지금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
다.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焚柴}를 같은 날 전
례대로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
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
관·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
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五月以後，至于今，間得小雨，
亦未周洽，前頭穡事，萬分可
慮，一邊祈雨祭設行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己未六月二十六日

● 五次

一. 曹單子：“四次祈雨之後，
一向嘆乾，雨意漠然，卽今
民事，誠爲渴悶。朴淵·禾積
淵·渡迷津·辰岩焚柴¹，同日
亦爲依例設行爲白乎矣，朴
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
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
送，執事官及犧牲，則令本道
差定進排事，各該司·京圻監
司處，移文知委，何如？”啓依
所啓施行爲良如教。

1 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저
본에는 ‘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朴
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 ‘朴淵禾積
淵渡迷津辰岩焚柴’는 연문으로 보아
삭제.

기미년¹⁶⁷⁹ 6월 27일

● 5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기로 하다.

예조의 단자에,

“비망기에,

‘한창 여름철을 만나 가뭄이 혹독하여 비 내릴 조짐이 전혀 없다. 정성껏 기도한 것도 이미 여러 차례인데 서늘한 바람이 연이어 불고 뜨거운 폭염이 타는 듯하다.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이니 그저 평상시의 규례만 따를 수 없다. 사직·종묘·북교에 대신^{大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며, 또 경기는 더욱 심한 재해를 입었다고 하니, 역시 본도로 하여금 각 여러 고을의 영험한 곳에 속히 기도하라고 즉시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5차 기우제를 저자도와 일곱 곳에 오는 7일 설행하라고 어제 이미 계하를 받아 통지하였습니다.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저자도 등의 장소는 지금 우선 정지하고, 사직·종묘·북교에 대신을 보내 이전에 정한 대로 2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기미년¹⁶⁷⁹ 6월 2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中部水標直} 김준징^{金俊澄}의 수

己未六月二十七日

● 五次大臣

一. 曹單子: “備忘記: ‘正當南訛之節, 嘆暘肆酷, 雨意漠然, 虔誠祈禱, 已至累度, 而淒風連吹, 烈炎如焚, 言念民事, 誠極渴悶, 不可徒循常規. 社稷·宗廟·北郊, 遣大臣, 不卜日設行, 且圻甸尤甚被災云, 亦令本道, 各其列邑靈驗處, 斯速祈禱事, 卽爲分付’事, 命下矣. 五次祈雨祭, 楸子島七處, 來初七日設行事, 昨已啓下, 知委矣. 聖教如此, 楸子島等處, 則今姑停止, 社稷·宗廟·北郊, 遣大臣, 以前定初二日設行事, 知委, 何如?” 傳曰: “允.”

己未六月二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金俊澄手本內: ‘今日下雨, 水

본_{手本}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흘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미년₁₆₇₉ 7월 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성충립_{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미년₁₆₇₉ 7월 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_{漢江渡丞} 유시영_{柳時英}의 첩정
 牒呈에,
 ‘어제 비가 내린 뒤 본진_{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
 준으로 포백척_{布帛尺} 3척 2촌이 붙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己未七月初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己未七月初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柳
 時英牒呈內: ‘昨天下雨後, 本
 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三
 尺二寸加漲溢’是如爲白臥乎
 事.”

기미년¹⁶⁷⁹ 7월 10일

● 6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아, 지금 곡식이 자라는 시기에 나쁜 바람이 연달아 불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비 내릴 조짐이 전혀 없다. 추수할 가마가 없으니 농사가 얼마나 절박한가. 며칠 내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불쌍한 우리 백성이 모두 죽어 구덩이를 메울 것이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마음이 타는 듯하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아직 설행하지 않은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4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焚柴}는 역시 전례대로 같은 날 설행하겠습니다.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己未七月初十日

● 六次

一. 曹啓曰：“備忘記：‘噫，當此禾穀發蘇之節，惡風連吹，烈陽下曝，雨意漠然，西成望斷，民事之切迫，爲如何哉？數日之內，如不得雨，則哀我生靈，舉將填壑。興言及此，心焉如灼。其令禮官，未及設行處，不卜日，虔誠祈禱’事，命下矣。六次祈雨祭，不卜日，來十四日，楮子島·龍山江·冠岳山，遣重臣，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亦爲依例，同日設行，而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事，各該司及京圻監司處，移文知委，何如？”傳曰：“允。”

기미년¹⁶⁷⁹ 7월 14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 이후 비 내릴 조짐이 전혀 없으니 다시 기도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에는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는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7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미년¹⁶⁷⁹ 7월 17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 이후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이다. 다시 정성껏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직·종묘·북교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0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미년¹⁶⁷⁹ 7월 20일

● 친제 비망기

비망기에,

“삼복^{三伏}이 이미 지났고 절기가 또 늦었으며 정성껏

己未七月十四日

● 七次

一. 曹單子：“六次祈雨之後，雨意漠然，不可無更爲祈禱之舉。風雲雷雨·山川·雩祀，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遣近侍，不卜日，來十七日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己未七月十七日

● 八次

一. 曹單子：“七次祈雨後，猶未得雨，誠極渴悶，不可不更虔誠更禱。社稷·宗廟·北郊，遣重臣，不卜日，來二十日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己未七月二十日

● 親祭備忘

一. 備忘記：“三庚已過，節序又晚，虔誠祈禱，亦至累次，

기도한 것도 여러 차례인데 비가 내리려 하다가 내리지 않아 아직 단비가 내리지 않았다. 며칠 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불쌍한 우리 생령이 거의 다 죽어서 구덩이를 메울 것이다. 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타는 듯하다. 사직에 친히 기도할 것이니, 해당 조에 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속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택일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 기우 친제를 택일하지 말고 거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께서 가뭄을 걱정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여기고 상림桑林에서 친히 기도한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¹ 비록 택일하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으나 날짜 역시 잡지 않을 수 없어 일관日官에게 물었더니, 23일이 평길平吉하다고 하였으나 날짜가 급박하여 형세상 거행하지 못합니다. 24일·25일·26일은 모두 불길하며, 27일이 길하다고 하니 이날 거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농사가 절박하여 하루가 급한데 너무 느슨한 듯하다. 23일로 정하여 시행하라.”

1 상림(桑林)에서……않습니다: 은나라 탕왕 때 7년 동안 가뭄이 이어지자 자신을 희생으로 삼아 상림에서 기우제를 지내며 여섯 가지 일을 자책하자 비가 내렸다. 여섯 가지 일은 정사에 절도가 없는가, 백성이 생업을 잃었는가, 대궐이 화려한가, 여인의 간청이 심한가, 뇌물이 통하는가, 참소하는 자가 많은가이다.

而欲雨不雨，尙靳甘霖，數日之內，如未得雨，則哀我生靈，舉將填壑。言念及此，心焉如灼。當親禱于社稷，令該曹，不卜日，趁卽舉行。”

● 擇日

一. 曹啓曰：“社稷祈雨親祭，不卜日舉行事，命下矣。聖上閔旱心切，不啻若疾痛在己，桑林親禱，雖有不卜日之教，日子亦不可不推擇。聞于日官，則以爲二十三日平吉，而日子急迫，勢未及舉行，四日·五日·六日，皆爲不吉，二十七日爲吉云，以此日舉行之意，敢啓。”傳曰：“民事之切迫，一日爲急，似爲太緩，以二十三日定行，可也。”

하였다.

●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7월 23일 사직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전하께서는 이틀 동안 별전別殿에서 산재散齋하고, 하루 동안 향소享所에서 치재致齋하되,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사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에는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 아뢰도록 예문대로 거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7월 23일 사직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享官들과 근시近侍의 관원으로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本司에서 묵으며 산재하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겠습니다. 제사에 참석하는 모든 관원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墻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사적으로 연습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 기우 친제 때 대소 집사관들은 의식 연

● 齋戒

一. 曹單子：“今七月二十三日，社稷祈雨親祭教是時，殿下散齋二日於別殿，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何如？”

一. 曹單子：“今七月二十三日，社稷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墻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

● 私習

一. 曹單子：“今此社稷祈雨親祭教是時，大小諸執事官，除

습을 면제하고, 22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내는 곳에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재소^{齋所}에 나아간 뒤 중사<sup>中
 使</sup>·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모두 사적으로 의식을 연
 습하여 위의^{威儀}를 잃지 말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였다.

기미년¹⁶⁷⁹ 7월 21일

- 사직 친제를 정지하고 대신이 대신 지내기로
 하다.

7월 21일 약방^{藥房}이 청대^{淸對}하여 입시하였을 때 사
 직 기우제는 대신^{大臣}이 대신 지내고 축문은 대제학
 이 지어 내며, 제사 지낼 때의 집사들은 평상시 규례
 에 따르지 말고 시종신을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고
 탑전^{榻前}에서 결정하였다.

- 선농단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내기로 하다.
 승정원의 계사에,
 “선농단의 기우제는 비록 사전^{祀典}에 실리지 않았으
 나 가뭄의 재해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모든 방법
 을 다 해야 합니다. 또 연전에 치재^{致齋}하다가 비가
 내렸으니, 지금 만약 사직·선농단에 모두 대신을 보
 내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대신들의 뜻은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뢰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肆儀，二十二日平明，先詣祭
 所爲白有如可，大駕詣齋所
 後，與中使·近侍，依例並爲私
 習儀，勿爲失儀事，知委，何
 如？”

己未七月二十一日

- 社稷親祭停止，大臣代行
 今七月二十一日，藥房請對入
 侍時，社稷祈雨祭，以大臣代
 行，祝文使大提學撰出，祭時
 諸執事，不依常例，以侍從臣，
 各別擇差事，榻前定奪。

- 先農遣大臣祈雨
 一. 政院啓辭：“先農祈雨，雖
 不載祀典，旱災到此，宜無所
 不用其極。且於年前致齋而得
 雨，今若與社·壇一體，遣大
 臣，同日行祭，則似爲宜當，諸
 大臣之意如此，故敢稟。” 傳
 曰：“先農壇，亦爲遣大臣，致
 祭宜矣。”

“선농단에도 대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기미년¹⁶⁷⁹ 7월 2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고성원^{高成元}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의 단자에,
“사직·선농단 기우제는 오늘 향^향을 받아야 하지만
비가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으니 지금 우선 정지하
고, 앞으로의 상황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4월 6일

● 박태손이 상소하여 기우제에 관한 일을 여쭙어 처리하다.

수찬 박태손^{朴泰遜}의 상소에,

己未七月二十二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高成元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祈雨停止

一. 曹單子：“社稷·先農祈雨
祭，今日當爲受香，而雨勢如
此，今姑停止，以觀前頭，何
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酉四月初六日

● 朴泰遜上疏祈雨一款稟處

一. 修撰朴泰遜上疏內：“伏
以，臣落傷之後，癡血壅滯於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낙상을 입은 뒤로 응혈^{凝血}이 허리와 등 사이를 막아 숨을 쉬거나 몸을 굽히고 펴 때 당기고 아프며, 오른편 팔다리는 더욱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마비되어 다리를 절며 점차 메달라 가니, 침상에 몸져누워 돌아눕는데도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십 일간 조리하였으나 한결같이 위독 해지니, 다시는 일어나 사람 노릇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대로 소명을 어겨 태만한 죄를 자초하였으니, 신의 죄는 여기에 이르러 더욱 큼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굽어살피고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을 체직하여 치료에 전념하여 살길을 찾도록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신이 중병에 걸려 힘을 쓰지 못하고 헛되이 직명을 지니고 있으면서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니, 이는 전하를 크게 저버린 것입니다. 이에 감히 소회를 간략히 아뢰어 성상께서 헤아려 살피시는 데 대비합니다.

이어서 삼가 생각건대,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흉년이 거듭되어 경신년¹⁶⁸⁰ 이후 조금 풍년이 든 해가 한 번도 없었으니, 굶주린 백성이 비록 죽어서 구덩이를 메우지는 않았으나 평소의 마음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난겨울의 혹한으로 보리가 얼어 죽어 남은 것이 거의 없고, 또 봄 가뭄을 만났으니 장래 곡식이 익기를 더욱 바랄 수 없습니다.

지금 소만^{小滿}이 이미 지나고 망종^{芒種}이 머지않았는데, 흄비가 갈수록 심해지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

腰脊之間，呼吸屈伸，牽引酸痛，右邊手脚，受傷尤甚，蹇澁不仁，漸至偏枯，委頓床席，轉側須人，調治屢旬，一向危篤，決無復起爲人之望。坐違召命，自速違慢之誅，臣之罪戾，至此尤大。伏乞聖慈，曲垂矜憐，亟遞臣職，俾得專意治療，以尋生路，千萬幸甚。顧念臣身嬰重疾，既未陳力，虛帶職名，口又不言，則是負殿下多矣。茲敢略陳所懷，以備財察焉。仍竊伏念，國運不幸，凶歉荐仍，庚申以來，無一歲稍，黎民之阻飢者，雖未及填壑，而平生之心，喪之久矣。前冬酷寒，牟麥凍損，餘存無幾，又值春旱，將來成熟，更無可望，而目今小滿已過，芒種不遠，土靈彌日，淒風連吹，雨意邈然，播種愆期，農民之遑遑，不翅若涸轍之喁喁。言念民事，已到燒眉之境，此君臣上下憂遑焦悶脩省之日，而朝家恬然，尚未知警，臣竊痛焉。夫悶旱脩省之道，祈禱也，疏

며 비 내릴 조짐이 전혀 없어 파종할 날이 늦어지니, 다급한 백성의 처지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의 물고기가 입을 뻐끔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이미 눈썹을 태울 만큼 급한 지경에 도달하였으니, 이는 군신 상하가 걱정하고 애태우며 수신하고 반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태연하여 아직도 경계할 줄 모르니, 신은 삼가 통탄스럽습니다.

가뭄을 걱정하여 수신하고 반성하는 도리는 기도하고,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고, 간언을 구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고, 정전(正殿)을 피하는 대여섯 가지 일뿐입니다. 이것이 비록 말단적인 일이지만 옛날에 이것으로 비를 내리게 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버리고는 다시 다른 방도가 없으니, 지금 때맞추어 거행하여 하늘의 노여운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삼가 보니, 근래 기우제는 반드시 절기가 늦은 뒤에 거행하면서 천천히 택일하고 느릿느릿 시행합니다. 죄수를 관대히 처결하는 따위의 일은 가뭄이 몹시 심해져 산이 불타고 물이 마른 때에 하니, 비록 바로 단비가 내린다 한들 이미 죽은 곡식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은 삼가 걱정스럽습니다.

또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가뭄이 들지 않은 해가 없고, 가뭄이 들면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들어주지 않아 감응이 항상 늦어지니, 이는 필시 하늘의 노여움이 이미 심하여 끝내

決也, 求言也, 減膳·撤樂也, 避殿也, 唯在五六事而已. 此雖末務, 古之以此致雨者, 不爲不多, 舍此更無他道, 則今當及時舉行, 庶回天怒, 而竊觀近來禱雨之祀, 必舉於節晚之後, 徐徐卜日, 緩緩行之, 而疏決等事, 乃在旱既太甚, 山焦水涸之時, 縱使隨得甘雨, 何益於已死之穀哉? 臣竊悶焉. 且殿下卽祚以來, 歲未有不旱, 旱未嘗不禱, 而天聽冥漠, 感應常罕,² 此豈必天怒已甚, 終不可回而然哉? 夫不虛應者, 非上天乎? 可感神者, 唯至誠³也. 古者成湯之桑林責躬, 宋帝之禁中虔禱, 高皇帝之鍾山自暴, 皆中心痛迫, 若癢在躬, 故終能⁴感格神祇, 裨其滂沱, 而今乃視之以尋常節目, 行之又不及時, 而曰我

2 罕: 저본에는 '무'. 『승정원일기』 숙종 7년 4월 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 誠: 저본에는 '誠'. 『승정원일기』 숙종 7년 4월 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 能: 저본에는 '結'. 『승정원일기』 숙종 7년 4월 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헛되이 호응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아니겠으며, 신령을 감동시킬 방법은 오직 지성뿐입니다.

옛날 성탕(成湯)은 상림(桑林)에서 자신을 책망하였고, 송나라 황제는 대궐에서 정성껏 기도하였으며, 고황제(高皇帝)는 종산(鍾山)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는데, 모두 마음이 아프고 다급하여 마치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처럼 여겼으므로 결국 천지신명을 감동시켜 큰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상한 절차로 보고 때맞추어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기도하였다.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였다. 간언을 구하였다. 음식 가짓수를 줄였다. 음악을 중지하였다. 정전(正殿)을 피하였다.’라고 하니, 이러고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이른바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호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옥사를 판결하며, 흔쾌히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고 마음에 거스르는 말에서 도를 구하며, 굶주려 떠도는 백성을 구휼하고 상제(上帝)의 진노를 생각하소서. 음식 가짓수는 줄이지 않을 수 없고 음악은 중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전을 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애통하게 여기고 삼가고 두려워하는 방법이 모두 지극한 정성에서 나오고 외면적인 헛된 절차가 없다면, 어질게 덮어 주는 하늘이 어찌 마음을 돌릴 이치가 없겠습니까.

祈禱也，疏決也，求言也，減膳也，撤樂也，避殿也，以是而欲求雨，則眞所謂緣木求魚也。伏願殿下，深加警惕，籲天以側怛，折獄以哀矜，克恢翕受之量，求道逆心之言，軫黃臚之顛連，念上帝之燁怒，膳不能不減，樂不忍不撤，殿不敢不避。凡所以盡傷而祇懼者，無一不出於至誠，而略無虛文之外假，則仁覆之天，豈無轉移之理哉？且念殿下，文定厥祥，親迎有日，而略去繁文，務從省約，實我東無疆之休。夫周歌絡，漢美綈練，唐稱澣濯，斯皆前代之休聞，今事之儀則，而近來風俗日靡，奢侈成習，蓋是宮中高髻之所化，有識之寒心，固已久矣。而今殿下，克懋躬行，去奢從儉，實甚盛也。然伏聞較諸近例，不爲不減，而云之古禮，亦云已侈。伏願聖明，深覺往事，痛革弊習，罔曰已約，益加撙節，罔曰非奢，益廣儉德，器用之物，輿服之飾，金銀珠玉，一

또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상서에 부응하여 친영할 날이 머지않았는데,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제 거하며 줄이고 간략히 하는 쪽을 따르도록 힘썼으니 실로 우리나라의 끝없는 복입니다. 주(周)나라는 치락(絺繻)을 노래하였고, 한(漢)나라는 제련(絺練)을 아름답게 여겼으며, 당(唐)나라는 한탁(澣濯)을 칭송하였으니,² 이는 모두 과거의 아름다운 소문으로 지금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 풍속이 갈수록 쇠퇴하고 사치가 버릇이 되었습니다. 궁중의 사치가 변화시킨 것이니,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몸소 실천에 힘써 사치를 버리고 검소를 따르니 실로 성대합니다. 그러나 삼가 들으니, 근래의 규례와 비교하면 줄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옛날의 예법에 비교하면 이미 사치하다고 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지난일을 깊이 깨닫고 폐습을 통렬히 개혁하소서. 이미 검약하다고 말씀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며, 사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말고 더욱 검소한 덕을 넓히소서. 사용하는 물건과 수레와 의복의 장식, 금은보화를 일체 물리치며 소박함을 숭상하여 대례(大禮)를 이루신다면 시

切屏斥, 敦尚樸素, 以成大禮, 則正之於始, 所以戒終, 先之於上, 所以導下也. 此實化民成俗之先務, 而亦是遇災警懼之一道, 故敢此並陳焉. 臣無任戰灼祈懇之至, 謹昧死以聞.” 答曰: “省疏具悉. 憂愛陳戒之言, 誠甚切至, 予用嘉尚, 而可不體念焉? 禱雨一款, 當令該曹稟處, 爾其勿辭, 調理察職.”

2 주(周)나라는……칭송하였으니: 치락은 거친 베이다. 주 문왕(周文王)의 비 태사(太妃)가 이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시경』 「갈담(葛覃)」은 이를 칭송한 노래이다. 제련은 거친 비단이다. 한 문제(漢文帝)가 검소하여 이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한탁은 세탁이다. 군주의 의복을 세탁하지 않는 법인데, 당 문종(唐文宗)은 검소하여 옷을 세 번이나 빨아 입었다.

작이 바르게 되어 끝을 경계하고, 위에서 앞장서서 아래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는 실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급선무이며, 또한 재해를 만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한 가지 방도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아울러 아웁니다. 신은 지극히 두렵고 떨리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건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웁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여 경계를 아뢴 말이 참으로 지극히 간절하다. 내가 가상히 여기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우제를 지내는 일은 해당 조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조리하고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봄 가뭄이 몹시 심하여 파종할 때가 늦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며 비 내릴 조짐이 막연합니다. 망종이 머지않아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러우니, 기우제를 규례대로 설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대신^{大臣}에게 문의하니, 우선 하루 이틀 보아 계품^{啓稟}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수찬 박태손^{朴泰遜}의 상소로 인하여 해당 조로 하여금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게 하라고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

● 初次

一. 曹啓曰：“春旱太甚，播種愆期，淒風連吹，雨意邈然，芒種不遠，民事極慮。祈雨之舉，不可不依例設行，故纔已問議于大臣，將欲姑觀一兩日，啓稟矣。今因修撰朴泰遜上疏，令該曹稟處事，批下矣。初次祈雨祭，風⁵雲雷雨·山川

5 風：저본에는 없음. 문맥에 근거하

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9일 설행하여 정성껏 기도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4월 10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3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4월 14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7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零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初九日設行，虔誠祈禱之意，知委⁶，何如？”
傳曰：“允。”

辛酉四月初十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社稷·宗廟·北郊，不卜日，來十三日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爲良如教。

辛酉四月十四日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零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不卜日，來十七日設行事，知委，何如？” 啓依啓施行爲良如教。

여 보충

6 委: 저본에는 ‘意’.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

신유년¹⁶⁸¹ 4월 18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이달 16일 다행히 비가 내렸으나 곧장 날이 개었고 더 이상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기우제의 거행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4차 기우제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2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4월 24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 이후 한결같이 가물고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지금 농사가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焚柴}에 같은 날 역시 전례대로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辛酉四月十八日

● 四次

一. 曹單子: “今月十六日, 雖幸得雨, 旋即開霽, 更無雨意, 祈雨之舉, 不容少緩. 四次祈雨祭, 楊津·德津·五冠山·紺岳·松岳山, 不卜日, 來二十二日設行,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 各該司及京圻監司處,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酉四月二十四日

● 五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之後, 一向嘆乾, 雨意漠然, 卽今民事, 誠極渴悶. 五次祈雨祭, 不卜日, 來二十七日, 楮子島·龍山江·冠岳山, 遣重臣, 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 同日亦爲依例設行爲白乎矣, 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則令本道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4월 28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이번 기우제가 이미 5차를 넘겼으나 먹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더욱 심해지니, 지금 농사가 참으로 다급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월 2일에 사직·종묘·북교에 중신^{重臣}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4월 28일 대신^{大臣}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을 때 6차 기우제를 지낼 세 곳의 헌관^{獻官}은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탑전^{榻前}에서 결정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5월 3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그간 기우제가 이미 6차를 넘겼으나 참혹한 가뭄의 재해가 한결같이 이와 같으니 지금 농사가 참으로

差定進排事, 各該司·京圻監司處, 移文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酉四月二十八日

● 六次

一. 曹單子: “今此祈雨, 已過五次, 而密雲不雨, 旱氣益甚, 目今民事, 誠爲切急, 祈禱之舉, 不容少緩. 六次祈雨祭, 不卜日, 來五月初二日, 社稷·宗廟·北郊, 遣重臣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一. 今四月二十八日, 大臣備局堂上引見時, 六次祈雨三處獻官, 遣大臣設行事, 榻前定奪.

辛酉五月初三日

● 七次

一. 曹單子: “前後祈雨, 已過六次, 而旱災之慘, 一向如此, 目今民事, 誠爲渴急. 七次祈

애타고 급합니다. 7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일에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근시近侍를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가뭄 재해에 대한 비망기

비망기에,
“아, 보잘것없는 내가 이렇게 나라의 형세가 몹시 어려울 때를 만나 큰 기틀을 맡기는 부탁을 외람되게 받았다. 은혜로운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천재지변이 거듭 일어나 밤낮으로 위태롭고 두려워 마치 썩은 노끈으로 말을 모는 것 같다.

이번 여름의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재해는 예전에 없던 일이다. 절기가 망종을 지나 기우제를 이미 지냈는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비가 내릴 조짐은 더욱 없으니, 비록 잠시 가랑비가 내리더라도 비유하자면 불타는 화로에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이나 수레에 실린 땔나무의 불을 한 국자의 물로 끄려는 것과 같다. 어떻게 이처럼 메마른 전답을 적시기를 바라겠는가.

5월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오히려 보리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데, 더구나 지금 여러 해 흉년이 들어 백성의 곤란이 한창 지극한 때 참혹한 가뭄이 또 이 지경에 이르러 불쌍한 우리 생령의 목숨이 거의 죽게 생겼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떨

雨祭, 不卜日, 來初七日, 風雲雷雨·山川·雩祀, 遣重臣, 三角山·木覓山·漢江, 遣近侍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旱災備忘

一. 備忘記: “嗚呼, 藐予小子, 值此國勢之孔艱, 叨承付托之丕基, 字惠之澤, 未究於小民, 災異之作, 疊見而層出, 日夕危懼, 凜乎若朽索之馭馬也. 今夏極無之災, 振古所無, 節過芒種, 圭辟既卒, 而淒風連吹, 雨意愈漠, 雖有暫時霖霖, 譬如烘爐點雪, 車⁷薪勺水, 其何望沃此焦涸之田畝乎? 五月不雨, 猶謂無麥, 而矧今比歲不登, 民困方極之餘, 亢旱之慘, 又至於斯, 哀我生靈, 大命近止, 興言及此, 不覺心寒氣塞也. 至於地震之變, 重發於數日之內, 未知其何樣禍機, 潛伏冥冥之中, 而仁天之

7 車: 저본에는 ‘東’ 『승정원일기』 숙종 7년 5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리고 숨이 막힌다. 심지어 지진의 번고가 며칠 안에 거듭 일어났으니, 무슨 화란이 그 속에 잠복해 있기에 어진 하늘의 경고가 이처럼 간절한지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은 나 한 사람에게 있으니, 먹고 자는 것도 편안하지 않아 어찌할지 모르겠다. 승지는 나 대신 교서敎書의 초고를 지어 바른말을 널리 구하여 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라. 그 밖에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고 술을 금지하는 따위의 일은 해당 조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

아, 지금의 재해는 참으로 덕 없는 과인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관원들도 어찌 서로 권면하는 방도가 없겠는가. 너희 대소 신료들은 나의 지극한 우려를 유념하고 화합에 힘써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끊어 버리고 탕평의 공정한 도리를 넓히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백성에게 해가 되는 정사의 폐단은 헤아려 변통하여 하늘의 견책에 조금이나마 답하고 시국의 어려움을 구제하라.”

하였다.

●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는 등의 일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삼가 비망기를 보니 재해를 만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뜻이 말 밖으로 넘치니, 보고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감동하여 울지 않겠습니까. 성상의 하교대로 오늘부터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

警告, 若是其淳淳丁寧耶? 靜言思之, 咎在一人, 食息靡安, 罔知攸措. 承旨代予草教, 廣求直言, 以匡不逮, 其他減膳·撤樂·禁酒等事, 宜令該曹, 劃卽舉行. 噫, 今茲災沴, 寔由於寡昧之否德, 而其在群工, 豈無交相勉勵之道乎? 咨爾大小臣僚, 體予至慮, 務盡寅協, 割斷一己之私慮, 克恢蕩平之公道. 凡係弊政之無益於國而有害於民者, 亦宜裁量變通, 少答天譴, 以濟時艱.”

● 減膳撤樂等事

一. 曹啓曰: “卽伏見備忘記, 遇災警惕之意, 溢於辭表, 凡在瞻聆, 孰不感泣? 依聖教, 自今日減膳·撤樂·禁酒等事, 分付各該司, 而勿擊鼓一款,

지하고 술을 금지하는 등의 일을 각 해당 관사에 분 부하겠습니다. 복을 치지 않는 일도 일체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전장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각처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여쭙다

“5월 3일 시임·원임대신^{大臣}, 2품 이상, 삼사^{三司}가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병자년¹⁶³⁶ 난리에 광주^{廣州}·쌍령^{雙嶺}·험천^{險川}과 김화^{金化} 등지에 군병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전부터 몹시 가물 때는 간혹 근시^{近侍}를 보내 비가 내리기를 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광주·김화와 기타 전장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전에 제사를 지낸 장소를 해당 조로 하여금 상고해 내어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광주와 김화 이외에 전장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전에 제사를 지낸 장소를 문서에서 찾아보니, 강화^{江華}·남원^{南原}·금산^{錦山}·달천^{鎭川}·원주^{原州}·진주^{晉州}·상주^{尙州}·울산^{蔚山}·토산^{兔山}이 곧 옛날의 전장으로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연달아 비가 내렸다는 보고

亦爲一體舉行, 何如?” 傳曰: “允.”

● 戰亡各處致祭稟

一. “今五月初三日, 時任·原任大臣·二品以上·三司, 引見入侍時, 領議政金所啓: ‘丙子之亂, 廣州·雙嶺·險川及金化等地, 軍兵甚多, 自前苦旱之日, 或遣近侍禱雨矣. 今亦依前例行祭, 何如?’ 上曰: ‘廣州·金化及其他戰亡之地, 曾前致祭處所, 令該曹, 考出稟處, 可也’ 事, 傳教矣. 廣州·金化外, 戰亡之地, 曾前致祭處, 考見文書, 則江華·南原·錦山·鎭川·原州·晉州·尙州·蔚山·兔山, 乃是古戰場設祭處也. 兩南則連有雨澤之報, 姑觀前頭, 舉行宜當, 而京圻·江原道·黃海道·公清道, 旱災特甚, 民事罔極, 事當及今致祭, 江華·雙嶺·險川·金化·

가 있으니, 우선 앞으로의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기·강원도·황해도·공청도는 가뭄의 재해가 특히 심하니 농사가 망극하여 지금 제사를 지내야 마땅합니다.

강화·쌍령·협천·김화·달천·토산 등의 장소에 우선 근시를 보내 설행하고, 서교西郊에 민충단^{愍忠壇}이 있는데 이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간혹 제사를 지낸 일이 있으니, 이번에도 일체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제사 지낼 곳이 누락되어 다시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장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여러 곳을 써서 들일 적에 강화가 누락되었으나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니 황공한 마음을 건디지 못하겠습니다. 또 여러 사람의 논의를 들으니 원주의 전장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강화와 원주 두 곳에 모두 일체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각 기우제의 택일

예조의 단자에,

“쌍령·협천·김화·토산·달천·강화·원주와 민충단 등의 장소에 근신^{近臣}을 보내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獐川·兔山等處，爲先遣近臣設行，而西郊有愍忠壇，在前旱乾時，或有致祭之舉，今亦一體舉行，何如?” 傳曰：“允。”

● 致祭落漏更稟

一. 曹啓曰：“戰亡諸處書入之際，江華落漏，而未能致祭，不勝惶恐。且聞諸議，原州地戰亡處，亦宜致祭云，江華及原州兩處，並爲一體舉行，何如?” 傳曰：“允。”

● 各祭擇日

一. 曹單子：“雙嶺·險川·金化·兔山·獐川·江華·原州及愍忠壇等處，遣近臣，祈雨祭設

계하하셨습니다. 민충단에 제사를 지낼 길일을 일관_{日官}으로 하여금 잡게 하였더니 5월 12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관_{祭官}은 해당 조로 하여금 근신을 차출하게 하고, 제물과 집사는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며, 쌍령 등 7곳의 집사는 본도로 하여금 여제_{厲祭}의 전례대로 각별히 가려 뽑으며 제물을 정갈히 준비하여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분부하되, 향축과 폐백을 내려보내는 등의 일 역시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상고_{相考}할 일입니다. 계하받은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며, 전장에서 죽은 장사에게 제사를 지낼 때 따로 제단 하나를 설치하되 상중하 세 단계로 나누어 설치하고, 제물과 집사 등은 한결같이 전례대로 각별히 정밀하게 준비하고 가려 뽑아 기다리다가 근신이 향축을 받고 내려가면 즉시 설행하라고 미리 분부하되, 문서가 도착한 날짜에 대해 공문을 보낼 일입니다.”

신유년¹⁶⁸¹ 5월 8일

- 8차 기우제는 동자기우제와 겸하여 지내기로 하다.
- 예조의 단자에,

行事，啓下矣。愍忠壇致祭吉日，令日官推擇，則今五月十二日爲吉云。祭官令該曹，近臣差出，而祭物·執事，則令各該司舉行，雙嶺等七處，執事乙良，令本道依厲祭例，各別擇差，祭物精備，不卜日設行之意，分付爲白乎矣，香祝幣下送等事，亦令該司，磨鍊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一. “爲相考事，啓下內辭緣，奉審施行爲旂，戰亡將士致祭時，別設一壇，分爲上中下，三級分設事及祭物·執事等，一依前例，各別精備擇差，以待爲有如可，近臣受香祝下去，卽爲設行之意，預爲分付爲乎矣，到付日時移文向事。”

辛酉五月初八日

- 八次祈雨童子兼行
- 一. 曹單子：“七次祈禱之後，尙未得雨，旱魃益甚，前頭民

“7차 기우제를 지낸 뒤로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더욱 심하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8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2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보내 설행하고,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는 일을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겠습니다.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적동자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와 민간의 병류屏柳 역시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5월 13일

● 9차 기우제는 동자기우제와 겸하여 지내기로 하다.

예조의 단자에,
“8차 기우제 이후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의 재해가 갈수록 심해지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9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9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진도 일체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

事, 誠爲渴悶. 八次祈雨祭, 不卜日, 來十二日, 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 遣重臣設行, 而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犧牲, 則令本道差定進排事, 各該司及京圻監司處, 知委爲乎旆, 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閭閻屏柳, 亦於同日爲始, 三日止事, 分付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酉五月十三日

● 九次祈雨童子兼行

一. 曹單子: “八次祈禱之後, 尚未得雨, 旱災愈往愈甚, 前頭民事, 極爲渴急. 九次祈雨祭, 不卜日, 來十九日, 楮子島·龍山江·冠岳山, 遣重臣, 朴淵·禾積淵·渡迷津, 一體設行爲白乎矣, 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犧牲, 則令本道差定進排

사에게 통지하며, 경회루慶會樓 연못가의 석척동자기
우제를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분부
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5월 14일

● 기우 비망기

비망기에,
“그간의 기도가 거의 10차에 이르렀으나 서늘한 바
람이 계속 불고 비가 내릴 조짐이 갈수록 아득하여
모든 곡식이 메마르고 시내와 못이 전부 말랐다. 농
민이 호미를 놓아 추수할 가망이 없으니, 이를 생각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떨린다. 나의 정성이 알아
본디 하늘을 감동시키기 어려우나, 희생을 대신하여
친히 기도하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 택일하지
말고 18일에 사직 기우 친제를 해당 조로 하여금 즉
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친제로 저자도 등의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 기우 친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 거행하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이날 거
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겠습니다. 19일 저

事, 各該司及京圻監司處, 知
委爲白乎旆, 慶會樓池邊蜥蜴
童子祈雨, 同日爲始, 三日止
事, 分付舉行, 何如?” 啓依所
啓施行爲良如教.

辛酉五月十四日

● 祈雨備忘

一. 備忘記: “前後祈禱, 幾至
十次, 而淒風連吹, 雨意愈邈,
百穀焦枯, 川澤俱涸, 農民釋
鋤, 西成望斷, 興言及此, 不覺
心寒也. 以予微誠, 固難望感
回天心, 而代犧親禱之舉, 不
容暫緩. 不卜日, 十八日, 社稷
祈雨親祭事, 令該曹. 趁卽舉
行.”

● 親祭楮子等停

一. 曹啓曰: “社稷祈雨親祭,
不卜日, 來十八日舉行事, 命下
矣. 依聖教, 以此日舉行之意,
分付各該司, 而十九日, 行九

자도 등 6곳에서 거행하는 9차 기우제는 지금 잠시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성상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18일 사직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전하께
서는 이틀 동안 별전에서 산재하고, 향소에서 하
루 동안 치재하며,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
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
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는 오직 제
향에 관한 일만 아뢰도록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과 모든 관원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18일 사직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近侍
의 관원으로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
本司에서 이틀 동안 묵으며 산재하고, 향소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모든 관원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궁문宮門을 수위守衛하는 자는 각
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次祈雨祭，楮子島等六處，則
今姑停止，何如？”傳曰：“允。”

● 自上齋戒

一．曹單子：“今五月十八日，
社稷祈雨親祭教是時，殿下散
齋二日於別殿，致齋一日於享
所，凡散齋，不吊喪問疾不聽
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
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何
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享官百官齋戒

一．曹單子：“今五月十八日，
社稷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
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
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
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
墻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
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爲良如教。

● 의식 연습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 기우 천제 때 대소 집사 관원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17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재소^{齋所}에 나아간 뒤 중사^{中使}·근시^{近侍}와 전례대로 함께 사적으로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5월 1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성이선^{成二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폈더니 2척 3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5월 21일

● 9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친히 기도하신 뒤 계속 비가 내릴 조짐이 있어 날마다 단비가 내리기를 바랐으나 소나기가 겨우 먼지를

● 習儀

一. 曹單子：“今此社稷親祭敎是時，大小諸執事官，除肄儀，十七日平時，先詣祭所爲白有如可，大駕詣齋所後，與中使·近侍，依例私習，俾無失儀之弊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敎。

辛酉五月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成二善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二尺三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辛酉五月二十一日

● 九次

一. 曹單子：“親禱之後，連有雨徵，日望甘澍之應，而驟雨謹得沍塵，亢旱愈往愈甚，連

적시고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니, 연달아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계하받은 대로 9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진도 일체 설행하겠습니다.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며, 경회루 연못가에서 석척동자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를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次祈雨之舉，不容停止，依前啓下，九次祈雨祭，不卜日，來二十五日，楮子島·龍山江·冠岳，遣重臣，朴淵·禾積淵·渡迷津，一體設行，而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令本道差定進排事，各該司及京圻監司處，知委爲白乎跡，慶會樓池邊蜥蜴童子祈雨，同日爲始，三日止事，分付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신유년¹⁶⁸¹ 5월 2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서상윤^{徐尙胤}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폈더니 2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辛酉五月二十二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徐尙胤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 충원의 치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 忠原致祭停止

一. 政院啓曰：“忠原等七處致

“충원^{忠原} 등 7곳의 치제 관원은 오늘 향^香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니 우선 조금 물리고, 다시 날씨를 보아 향을 받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允하다고 전교하였다.

● 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9차 기우제를 25일 설행하라고 이미 계하받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비 내리는 기세가 이와 같으니 그대로 향^香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정지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允하다고 전교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5월 24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유시영^{柳時英}의 첩^牒呈^呈문^文에,
‘이달 22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강물이 포백척^{布帛尺} 2척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祭官, 今日當爲受香, 而卽今雨下如此, 姑爲差退, 更觀日候, 受香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祈雨停止

一. 政院啓曰: “九次祈雨祭, 二十五日設行事, 既已啓下矣. 昨今雨勢如此, 不可不仍爲受香, 姑爲停止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辛酉五月二十四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柳時英牒呈內: ‘今月二十二日, 下雨之後, 本津江水, 以布帛尺二尺之高, 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신유년¹⁶⁸¹ 6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유시영^{柳時英}의 첩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강물을 살펴보

니 5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 전장에서 죽은 자에게 치제하다.

6월 3일 대신^{大臣}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하여 입시

하였을 때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지난번 입시하였을 때 신이 여러 곳의 전장에서 죽
은 자에게 근시^{近侍}를 보내 제사를 지내자는 뜻을 계
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선 기우제를 정지하였고, 전장에서 죽은 자를 위
한 제사 역시 도로 중지되었습니다. 언뜻 들으니 각
처에서 제물을 모두 이미 정돈하여 준비하였고, 제

辛酉六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柳
時英牒呈內, 今番下雨後, 本
津江水看審, 則五尺五寸加漲
溢’是如爲白臥乎事.”

● 戰亡致祭

一. 今六月初三日, 大臣·備局
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所
啓: “頃日入侍時, 臣以諸處戰
亡, 遣近侍設祭之意, 啓稟定
奪矣. 厥後以得雨之故, 姑停
祈雨祭, 而戰場之祭, 亦在還
寢之中, 似聞各處祭物, 皆已
整備, 守令之差祭者及各邑下

사에 차임된 수령 및 각 고을의 하인이 여러 날 기다리다가 도로 중지되었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파하고 돌아갔기에 오가느라 폐단만 끼쳤다고 합니다. 전장에서 죽은 자를 위한 제사는 가뭄의 재해가 아니더라도 설행해야 하는데, 설행하려 하다가 도로 정지하였으니 일의 체모가 전도되었습니다. 예전에 결정한 대로 설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 결정한 대로 설행하라.”
라고 분부하였다.

● 행회

예조가,
“상고_{相考}할 일입니다. ……하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한결같이 결정한 대로 상고하여 제물과 집사를 속히 나누어 지정하고, 각별히 정성껏 마련하고 가려 뽑아 기다리다가 근신이 향축을 받아 내려가면 즉시 설행하라고 분부하되, 문서가 도착한 일시를 공문으로 보내십시오.”
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6월 1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준징_{金俊徵}의 수본에,

人累日等候，及聞還寢，始爲罷歸，往來之徒賂弊端。戰場之祭，雖非旱災，亦可設行，而將設還停，事體顛倒，依前定奪，使之設行，何如？” 上曰：“依前定奪設行事，分付。”

● 行會

一. 曹：“爲相考事云云事，傳教教是置。一依定奪相考，祭物·執事急速分定，各別精備擇差，以待爲有如可，近臣受香祝下去，即時設行之意，分付爲乎矣，到付日時移文向事。”

辛酉六月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金俊徵手本內：‘去夜下雨，水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준장金俊徵의 수본에,

‘오늘 오후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3촌 높이 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6월 1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서상윤徐尙胤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俊徵手本內: ‘今日午後, 下 雨看審, 則三尺三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辛酉六月十三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徐尙胤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신유년¹⁶⁸¹ 6월 15일

● 전장에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을 택 일하는 정식

6월 13일 대신^{大臣}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
였을 때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옛날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원래 고사가 있으니, 본디 그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여 달래고자 해서이고, 원래
비가 내리기를 빌려고 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
금 해당 조에서 조처를 잘못하였고, 또 택일하지 않
았기 때문에 각 고을의 관리가 십여 일 동안 기다리
느라 여러 가지로 폐단을 끼쳤으니 정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으면
택일하여 거행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리가 기다릴 때 참으로 폐단이 있으니, 앞으로는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 택일하여 보내라고 해
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6월 1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영만^{金英萬}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7촌 높이로 흘

辛酉六月十五日

● 戰亡致祭擇日定式

一. 今六月十三日, 大臣·備局
堂上引見入待時, 左議政閔所
啓: “故戰場致國殤, 自有故
事, 本欲慰解⁸其冤鬱之舉, 元
非祈雨而設. 今因該曹舉措失
當, 又以不爲卜日之故, 各邑官
吏, 待候十餘日, 貽弊多端, 不
可無定式, 此後如許致祭事,
亦宜擇日舉行矣.” 上曰: “官
吏待候之際, 誠爲有弊, 今後,
則量其遠近, 擇日以送事, 分
付該曹.”

辛酉六月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⁸ 解: 지본에는 ‘群’. 『승정원일기』 숙종
7년 6월 1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6월 21일

● 입추가 되어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6월 24일은 바로 입추 절기이니 평상시의 음식
과 북 치는 일을 회복하는 일을 규례대로 거행하라
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성이선^{成二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3촌 높이로 흘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7월 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고성원^{高成元}의 수본에,

金英萬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七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辛酉六月二十一日

● 立秋復膳

一. 曹啓曰：“今六月二十四日，
乃是立秋節，復常膳·擊鼓等
事，依例舉行之意，分付，何
如?” 傳曰：“允.”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成二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三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辛酉七月初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高成元手本內：‘今日下雨，水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7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유년¹⁶⁸¹ 7월 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南部水標直}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5월 22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근일 가뭄이 몹시 심하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농사가 지극히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을 얼마 전 탑전에서 여쭙았더니, 우선 며칠 기다린 뒤에 다시 여쭙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지금 비 내릴 조짐이 도로 흩어지고 햇볕이 뜨거우니, 각도에서 급한 사정을 아뢰는 장계가 계속해서 도착하

標看審，則六尺七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辛酉七月初七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成忠立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壬戌五月二十二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近日旱氣太甚，淒風連吹，民事極爲可慮，故祈雨祭設行事，頃於榻前取稟，則姑待數日後更稟事，下教矣。今則雨意還散，烈日杲杲，各道告急之啓，連續來到，焚悽之憂，中外同然，不可不

고 있습니다. 가뭄을 걱정하는 마음은 서울과 지방이 같으니, 1차 기우제를 속히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설행하여 정성껏 기도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5월 23일

● 기우제에 중신을 보내기로 하다.

비변사 낭청이 영의정과 좌의정의 뜻으로 아뢰기를, “25일에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이번 달은 다 지나가나 가뭄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당장의 농사가 참으로 다급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한결같이 평상시의 규례만 따를 수 없으니, 특별히 중신^{重臣}을 보내 설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렇게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5월 25일

● 2차 기우제에 특별히 대신을 보내기로 하다.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를 이미 설행하였으나 비 내릴 조짐이 전혀 없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부니, 만약 며칠 지나면 백성의 목숨이 거의 끊어질 것입니다. 2차 기

急速舉行初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二十五日設行，虔誠祈禱之意，知委，何如？” 傳曰：“允。”

壬戌五月二十三日

● 祈雨重臣

一. 備邊司郎廳，以領·左相意啓曰：“二十五日祈雨祭設行事，既已啓下矣。今月垂盡，旱乾至此，目前民事，誠爲切急，祈禱之節，不可一循常規，特爲遣重臣設行似宜。以此分付該曹，何如？” 傳曰：“允。”

壬戌五月二十五日

● 再次特遣大臣

一. 曹單子：“初次祈雨祭，已爲設行，而雨意邈然，淒風連吹，若過數日，則民命近止，再次祈雨祭，社稷·宗廟·北郊，

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8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신大臣을 보내 설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5월 2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6월 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촌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遣重臣，不卜日，來二十八日設
行之意，知委，何如？” 啓遣大
臣設行爲良如教。

壬戌五月二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壬戌六月初二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⁹水標
直趙允同手本內：‘去夜下雨，
水標看審，則七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9 中部：저본에는 ‘中部中部’，‘中部’를
연문으로 보아 삭제

임술년¹⁶⁸² 6월 3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4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6월 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壬戌六月初三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三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允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四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壬戌六月初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1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우제는 앞으로 상황을 잠시 보기로 하다.

예조의 단자에,
“근신이 올린 상소로 인하여 기우제를 연속하여 설
행하도록 비국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즉시 이대로 거
행해야 하나, 어제 이미 비가 내렸고 지금 비가 내릴
조짐이 있으니, 우선 앞으로 보고 성상께 여쭙어 처
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5월 26일

● 정전을 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삼가 비망기를 보니 재해를 만나 경계하고 두
려워하는 뜻이 말 밖으로 넘칩니다. 보고 듣는 사람
이 누군들 감동하여 울지 않겠습니까. 성상의 하교
대로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지하는 등의 일
을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정전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允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一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祈雨姑觀前頭

一. 曹單子：“因近臣陳疏，祈
雨祭連次設行事，自備局已爲
定奪矣。即當依此舉行，而昨
既得雨，方有雨徵，姑觀前頭
稟處，何如？” 啓依所啓施行
爲良如教。

壬戌五月二十六日

● 避正殿

一. 曹啓曰：“即伏見備忘記，
遇災警惕之溢於辭表，凡在瞻
聆，孰不感泣？依聖教，減膳·
禁酒等事，分付各該司，而自
前避正殿，則有撤樂·勿擊鼓
之例，今亦依前舉行，何如？”

正殿을 피하면 음악을 중지하고 복을 치지 않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6월 1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8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6월 1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8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傳曰：“允。”

壬戌六月十二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五尺八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壬戌六月十四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允同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八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6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주생곤^{朱生坤}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壬戌六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朱生坤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
 直¹⁰成忠立手本內：‘今日下雨，
 水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¹⁰ 直：저본에는 없음. 문맥에 근거하
 여 보충

임술년¹⁶⁸² 6월 2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주생곤^{朱生坤}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6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7월 1일

● 정전으로 돌아오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5일 유시^{酉時}가 바로 입추^{立秋} 절기이니, 정전으
로 돌아오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고 북을 치는
등의 일을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7월 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壬戌六月二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朱生坤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五尺六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壬戌七月初一日

● 還御正殿

一. 曹啓曰：“今月初五日酉時，
乃是立秋節，還御正殿，復常
膳·擊鼓等事，依例舉行之意，
分付，何如?”

壬戌七月初二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

하였다.

임술년¹⁶⁸² 7월 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축생^{金丑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5월 8일

● 박 참의의 상소에 대한 비답

이조 참의 박세채^{朴世采}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그대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아
된 일은 참으로 절실하니 내가 유념하겠다. 한창 여
름철을 맞아 가뭄이 몹시 심하고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농사의 절박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壬戌七月初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丑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癸亥年五月初八日

● 朴參議疏批

一. 吏曹參議朴世采上疏，答
曰：“省疏具悉爾懇。所陳之
事，誠爲切實，予當體念，而正
當南訛之節，旱乾太甚，雨意
漠然，民事之切迫，可勝云論，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일은 해당 조로 하여금 내
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봄은 비가 적절히 내려 밀과 보리가 무성하니
얼마 남지 않은 백성이 거의 회복할 가망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입하^{立夏} 이래로 비가 내리려다 내리지
않아 한창 파종할 때를 만나 가뭄이 이 지경에 이
르렀으니 기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한데, 어
떤 이가 우선 며칠 기다리고자 하였으므로 미처 계
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유신^{儒臣}이 상소로 아
된 일이 이와 같으니,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
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1차 기
우제를 오는 11일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집사와 제물을 가려 차임하다.

이달 10일 이조 참의 박세채^{朴世采}가 청대^{淸對}하여 입
시하였을 때 크고 작은 제향에 집사들을 각별히 가
려 차임하고 제물은 십분 정갈하게 하라고 탐전^{榻前}
에서 하교하였다.

禱雨一款，令該曹，稟處焉。”

● 初次

一. 曹啓曰：“今春雨水適中，
兩麥茂盛，子遺之民，庶幾有
回蘇之望，而入夏以來，欲雨
不雨，正當播種之際，旱乾至
此，祈禱之舉，似不可已，而
或欲姑待數日，故未及啓稟
矣。今此儒臣疏陳之事如此，
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
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
初次祈雨祭，來十一日設行之
意，分付，何如？”傳曰：“允。”

● 執事祭物擇差

一. 今月初十日，吏曹參議朴
世采請對入侍時，凡大小祭享
諸執事，各別擇差，祭物十分
致精事，榻前下教。

계해년¹⁶⁸³ 5월 11일

● 2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1차로 기도한 뒤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해당 조로 하여금 종묘·사직·북교에 대신^{大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즉시 거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종묘·사직·북교에 2차 기우제를 성상의 하교대로 대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4일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단소를 수리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이달 10일 내적간^{內摘奸}할 때 한강 기우제단의 홍문^{紅門}이 부서진 곳을 속히 수리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癸亥五月十一日

● 再次大臣

一. 曹啓曰：“備忘記：‘一次祈禱之後，¹¹ 淒風連吹，雨意漠然，言念農事，罔知攸措。其令該曹，宗廟·社稷·北郊，遣大臣，不卜日，趁卽舉行’事，命下矣。宗廟·社稷·北郊，再次祈雨祭，依聖教，遣大臣，不卜日，來十四日設行之意，分付各該司，何如？”傳曰：“允。”

● 壇所修改

一. 政院啓曰：“今月初十日，內摘奸時，漢江祈雨祭壇，紅門折破處，速爲修改事，分付該曹之意，敢啓。”傳曰：“知道。”

¹¹ 後: 저본에는 없음. 문맥에 근거하여 보충

계해년¹⁶⁸³ 5월 14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설행한 뒤 비가 내릴 조짐이 없어 백성의 목숨이 거의 끊어질 지경이니, 애타고 걱정하는 마음이 불타는 것보다 더합니다.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덕산 한강 침호두^{沈虎頭}에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7일 설행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5월 16일

● 제관의 재계와 목욕

전교하기를,

“가랑비가 바로 그치고 가뭄이 더욱 혹심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이다. 모든 제사의 헌관과 집사는 나의 애타고 걱정하는 마음을 유념하여 각별히 재계하고 목욕하여 정성껏 기도하여 우리 백성을 살리라고 엄히 신칙하고 분부하라.”

하였다.

癸亥五月十四日

● 三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設行之後，雨意邈然，民命近止，焦憂渴悶，不啻如惓。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不卜日，來十七日設行事，知委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癸亥五月十六日

● 祭官齋沐

一. 傳曰：“霖霖旋止，旱氣愈酷，言念民事，誠極渴悶。凡祭獻官·執事，體予焦憂之意，各別齋沐，虔誠祈禱，以活我生靈事，嚴飭分付。”

계해년¹⁶⁸³ 5월 17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이미 설행하였으나 겨우 비가 조금 내리다가 곧 개었고, 뜨거운 해와 서늘한 바람에 밀과 보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농사가 시급하여 눈썹이 타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4차 기우제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1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5월 22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 이후 비록 가랑비가 적셨으나 곧장 개어 한결같이 메마르니, 지금 농사가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6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진 진암 분시^{焚柴}는 같은 날 역시 전례대로 거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

癸亥五月十七日

● 四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已爲設行, 而僅得小雨, 旋即開霽, 烈日淒風, 兩麥將盡, 民事之急, 不啻燃眉. 四次祈雨祭, 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 遣重臣, 不卜日, 來二十一日設行,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 各該司及京圻監司處,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癸亥五月二十二日

● 五次

一. 曹單子: “四次之後, 雖有霖霖之澤, 旋即開霽, 一向旱乾, 卽今民事, 誠極渴悶. 五次祈雨祭, 不卜日, 來二十六日, 楮子島·龍山江·冠岳山, 遣重臣, 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 同日亦爲依例舉行爲白乎矣, 朴淵·禾積淵·渡迷津

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감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
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冠岳山，典祀官·兼大祝·祭
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
令本道差定進排事，各該司及
京圻監司處，知委，何如？” 啓
依所啓施行爲良如教。

계해년¹⁶⁸³ 5월 26일

● 6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기로 하다.

비망기에,

“근래 가뭄이 더욱 혹심하여 뜨거운 햇볕이 타는 듯
하고 먹구름이 곧 흩어지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
어 모든 곡식이 메말라 추수할 가망이 없다. 이를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해당 조로 하여금
기우제를 종묘·사직·북교에 다시 대신^{大臣}을 보내 택
일하지 말고 즉시 설행하라.”

하였다. 이번 5월 26일 영의정·예조 판서가 청대하
여 입시하였을 때 6차 기우제를 같은 달 29일 설행
하라고 탑전^{櫺前}에서 결정하였다.

癸亥五月二十六日

● 六次大臣

一. 備忘記：“近日亢旱愈酷，
烈炎如焚，密雲旋散，淒風繼
作，百穀焦枯，西成望斷，言
念及此，罔知攸措。其令該曹
祈雨祭，宗廟·社稷·北郊，更
遣大臣，不卜日，趁卽設行”事，
今五月二十六日，領議政·禮
曹判書請對入侍時，六次祈雨
祭，以同月二十九日設行事，櫺
前定奪。

계해년¹⁶⁸³ 5월 30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그저께 소나기가 내렸으나 겨우 먼지를 적시고 곧
개어 해가 나와 쟁쟁하고 하늘을 보면 아득하니 더

癸亥五月三十日

● 七次

一. 曹單子：“再昨驟雨，僅能
浥塵，而旋即開霽，出日杲杲，
視天夢夢，歎燥漸甚，泉井皆

위가 점차 심해지며 샘과 우물이 모두 말랐습니다. 며칠 안으로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백성이 다 죽을 것입니다. 정성껏 기도하는 방도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니, 7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에 다시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 다시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3일 설행하며,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척동자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와 민간의 병류屏柳를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기우 친제

비망기에,
“아, 참혹한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니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타는 듯하고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분다. 이번 달도 이미 다 지나갔는데 비 내릴 조짐이 없어 들판이 깨끗하고 샘과 우물이 모두 말랐다. 며칠 내로 비가 내려 적시지 않으면 장차 황무지가 되어 백성이 씨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를 말하자니 차라리 자신을 불태워 하늘의 견책에 답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이어서 생각건대, 과인의 성의가 얇아 참으로 하늘의 마음을 돌리기 부족하나, 백성의 일이 망극하니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성의가 얇고 덕이 없다는 핑계로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치부하겠는가. 내가 몸으로 희생을 대신하여 사직에 친히 기도하겠다. 예관禮

渴，數日內，若不得雨，則民將盡劉，虔祈之道，所當靡不用極。七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更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更遣近侍，不卜日，來六月初三日設行，而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閭閻屏柳，同日爲始，三日止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祈雨親祭

一. 備忘記：“噫，亢旱之慘，愈往愈甚，晝則烈炎如焚，夜則淒風連吹，今月已盡，雨意漠然，田野濯濯，泉井俱涸，數日之內，若不得霑潤之澤，則將未免赤地，民無孑遺矣。興言及此，寧欲¹²自焚，以答天譴，而不可得也。仍念寡昧，誠意淺薄，固不足以感格天心，而民事罔極，到此至頭，亦豈可諉以誠淺德薄，而置之於

12 欲：저보에는 '知'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숙종 9년 5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官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내달 4일로 정하여 시행하라. 또한 사신詞臣에게 분부하여 기우제문에 허물을 떠맡고 내 몸을 불태우겠다는 뜻으로 따로 말을 만들어 지어 넣게 하라.” 하였다.

● 7차 기우제는 우선 정지하고 친제를 거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 기우 친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4일 거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이날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겠습니다. 3일에 7차 기우제를 거행하는 풍운뇌우·산천 등 5곳과 동자기우·병류 등의 일은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재계

예조의 단자에,
“오는 6월 4일 사직 기우 친제 때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이틀 동안 산재散齋하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致齋하되,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無可奈何乎? 予當以身代犧, 親禱于社壇, 其令禮官, 不卜日, 以開月初四日定行, 而亦且分付詞臣, 祈雨祭文中, 引咎焚躬之意, 別爲撰辭添入.”

● 七次姑停, 親祭舉行

一. 曹啓曰: “社稷祈雨親祭, 不卜日, 來六月初四日舉行事, 命下矣. 依聖教, 以此日舉行之意, 分付各該司, 而初三日, 行七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等五處及童子祈雨·屏柳等事, 今姑停止, 何如?” 傳曰: “允.”

● 齋戒

一. 曹單子: “來六月初四日, 社稷祈雨親祭教是時, 殿下散齋二日於別殿, 致齋一日於享所, 凡散齋, 不吊喪問疾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唯啓享祀事, 依禮文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예조의 단자에,

“오늘 6월 4일 사직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近侍의 관원으로 따라서 올라와야 하는 자들은 모두 본사本司에 묵으며 이를 동안 산재하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모든 관원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堧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사적으로 연습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 기우 친제 때 대소 집사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3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내는 곳에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채소齋所에 나아간 뒤 중사中使·근시近侍와 전례대로 함께 사적으로 연습하여 위의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친제를 정지하다.

이번 6월 1일 약방藥房이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상이 이르기를,

“가뭄의 재해가 이처럼 혹심하니 백성의 일이 망극하다. 과인의 얄은 성의가 하늘의 마음을 돌리기 부족하다는 것을 본디 알고 있으나, 모든 방도를 다

一. 曹單子：“來六月初四日，社稷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堧門者，各於本司清齋一宿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私習

一. 曹單子：“今此社稷祈雨親祭教是時，大小諸執事，除肄儀，初三日平明，先詣祭所爲白有如可，大駕詣齋所後，與中使·近侍，依例並爲私習，俾無失儀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親祭停

一. 今六月初一日，藥房請對入侍時，上曰：“旱災此酷，民事罔極，寡昧¹³淺薄之誠意，固

13 昧：저본에는 ‘昧’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

하는 도리에 있어서 정성껏 친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몸이 수고롭고 상하는 것은 돌아보기 어려우나, 두 자전^{慈殿}께서 자식이 병들까 걱정하는 마음이 부지런하고 간절한 정도에 그치지 않으며, 대신^{大臣}의 말이 또 이와 같다. 그러므로 부득이 위로는 두 자전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경들의 마음을 따라 지금은 우선 정지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예전에 정한 날짜에 남교^{南郊}에서 섭행하게 하라.”
라고 답전^{榻前}에서 하교하였다.

이번 6월 1일 약방 도제조가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남교에 대신^{大臣}을 보내 정성껏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며, 제사 지내는 날은 4일로 그대로 정하며, 제문은 대제학에게 지어 바치게 하되 자신을 탓하는 뜻으로 따로 말을 만들라고 답전에서 하교하였다.

● 남교에 대신을 보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약방의 청대로 인하여 사직 친제를 지금 우선 정지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예전에 정한 4일에 남교에서 섭행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등록^{騰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정사년¹⁶⁷⁷ 6월 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본조에서 대신의 뜻으로 따로 남교에 대신을 보내 친히 기도하는 일을 대신하고, 저자도·용산강은 따로 중신^{重臣}을 보냈으며, 축문^{祝文}은 대제학으로

知天心之難回，而其在靡所不用其極之道，不可不虔誠親禱，一身之勞傷，有難暇恤，而兩慈殿惟疾之憂，既不啻勤切，大臣之言又如此，故不得已上承兩慈殿之意，下順卿等之心，今姑停止。令大臣，以前定日，攝行於南郊事。”榻前下教。

一. 今六月初一日，藥房都提調請對入侍時，南郊遣大臣，虔誠祈雨，祭日則以初四日仍定，祭文亦令大提學撰進，而罪己責躬之意，別爲措辭事，榻前下教。

● 남郊大臣

一. 曹啓曰：“因藥房請對，社稷親祭，今姑停止，令大臣，以前定初四日，攝行於南郊事，命下矣。取考騰錄，則丁巳六月，因酷旱，本曹以大臣之意，別遣大臣於南郊，以代親禱之意，楸子島·龍山江，則別遣重臣，祝文則令大提學製進，

하여금 지어 바치게 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오늘의 일과 같으니,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6월 2일

● 서울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로 하다.

이번 6월 1일 약방이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가뭄의 재해가 이와 같은 때에는 각지의 전장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근시^{近侍}를 보내 제사를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신해년¹⁶⁷¹에는 기근과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서울 가까운 곳에 매장하였는데, 이곳은 원통하고 억울한 기운이 모여 있으니, 우선 근시를 보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뭄의 재해가 이와 같으니 모든 방도를 다 해야 한다. 서울 근처에 먼저 제사를 지내라.”

하였다.

● 택일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약방이 청대하였을 때 영의정이 아뢴 말로 인하여 신해년¹⁶⁷¹ 기근과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서

一如今日之事。依此舉行，何如？” 傳曰：“依啓。”

癸亥六月初二日

● 京城死人設祭

一. 今六月初一日，藥房請對入侍時，領議政所啓：“自前旱災如此之時，各處戰亡之地，有遣近侍致祭之事矣。至於辛亥年，死於饑疫之類，埋瘞於京城近處，此是冤鬱之氣所萃，爲先遣近侍致祭，似當矣。” 上曰：“旱災如此，宜無所不用其極，京城近處，爲先致祭，可也。”

● 擇日

一. 曹啓曰：“昨日藥房請對，因領議政所啓，辛亥年，死於饑疫之類，埋瘞於京城近處

을 근처에 매장한 곳에 근시^{近侍}를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 무오년¹⁶⁷⁸에도 가뭄의 재해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었으니, 동서남 세 곳 교외의 정결한 곳에 단소^{壇所}를 설치하고, 제문은 여제^{厲祭}에 비해 우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하여 제문을 지어 내고, 택일하지 말고 근시를 보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5일에 근신을 세 곳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휴한다고 전교하였다.

● 기우제를 지내는 곳의 폐단을 금지하다.

이번 6월 1일 약방이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기우제를 지낼 때는 서울과 지방에 모두 폐단이 있는데, 지방 산천의 기우제는 그 폐단이 특히 심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에 진배하는 잡다한 물건을 각 면에 나누어 지정하니, 굶주린 백성이 농사를 그만두고 달아나는 결과를 면하지 못합니다.

감악산^{紺岳山}은 적성^{積城} 땅인데 본현^{本縣} 적성현은 작고 피폐한 고을로 온 경내 사람들이 대기한 기간이 6, 7 일이나 되었다고 하니, 민간의 수고와 비용을 이미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적간^{摘奸}하는 중사^{中使}와 제관^{祭官}이 데리고 간 하인들이 요구하는 물건 또한 적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비는 것은 백성을 위해 서인데, 백성이 폐단을 받아 원통하다고 호소하는 일이 도리어 이와 같습니다. 지방 산천의 기우제는 사

者, 遣近侍致祭事, 命下矣. 曾於戊午年, 因旱災, 亦有此舉, 而東西南三郊淨潔處, 設壇所, 祭文則比厲祭, 從優磨鍊, 撰出祭文, 不卜日, 遣近侍設祭矣. 今亦依此例, 來初五日, 遣近臣三處, 何如?” 傳曰: “允.”

● 祈雨所作弊禁斷

一. 今六月初一日, 藥房請對入侍時, 領議政金所啓: “凡祈雨祭之時, 京外俱有弊端, 而至於外山川祈雨, 則其弊特甚. 祭所進排雜物, 分定於各面, 飢餒之民, 未免廢農奔走. 紺岳山則乃是積城之地也, 本縣以十室殘邑, 舉一境待候, 殆至六七日之久云, 民間勞費, 已不可勝言, 而摘奸中使與祭官所帶下人輩, 責徵之物, 亦且不貲. 禱雨本是爲民, 而民之受弊呼冤, 乃反如此, 外山川祈雨, 既是祀典, 則無他變通之道, 而其間弊端, 不可不

전祀典이니 달리 변통할 방도가 없으나, 그 사이의 폐단은 엄히 금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적간하는 일은 근면한지 태만한지 검사하는 것이니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으나, 매번 살필 수도 없으니, 간간이 보내는 것이 폐단을 줄이는 방도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적간은 앞으로 참작하여 하고, 하인들이 요구하는 폐단 역시 대내에서 금지할 것이다. 제관이 데리고 간 하인이 폐단을 만드는 일은 해당 조로 하여금 엄히 신칙하여 금지하게 하라.”

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6월 3일

● 사망한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의 재계

승정원이 아뢰기를,

“이번 5일에 기근과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묻은 곳에 제사를 지낼 것인데, 이는 모두 기우제를 지내는 일의 체모와 차이가 있으나 시사^{視事}를 탈품^{頻稟}해야 할 듯합니다. 치재^{致齋} 등의 절목^{節目}은 등록^{謄錄}을 상고하니 무오년¹⁶⁷⁸ 6월에도 이 제사를 지냈는데, 시사는 한창 더운 때라 이미 탈품하였기에 다시 여쭙는 일이 없었습니다. 문서로 말하자면 제사 지내기 하루 전 평상시처럼 출납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 당시에는 달리 치재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제사에는 반드시 재계가 있어야 신

嚴加禁斷. 且摘奸之舉, 檢察其勤慢, 雖不可全廢, 亦不必每每察爲之, 間間發遣, 似合除弊之道矣.” 上曰: “內摘奸則今後當斟酌爲之, 下輩責微之弊, 自內亦當禁斷, 祭官所帶下人作弊之事, 則自該曹, 嚴飭禁斷, 可也.”

癸亥六月初三日

● 死亡人致祭齋戒

一. 政院啓曰: “今初五日, 將致祭於饑疫死亡人等埋瘞處, 此皆祈雨祭, 事體雖若有間, 而似當有視事頻稟. 致齋等節目, 故考見謄錄, 則戊午六月, 亦行此祭, 而視事則時當盛熱, 既已頻稟, 姑無更稟之事, 而至如文書, 則行祭前一日, 出納如常. 以此觀之, 其時則別無致齋之舉, 而第念有祭必齋, 乃所以交神明. 而況今此

명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사는 가뭄을 걱정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더욱 공경을 다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모레 시사와 치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탈품하고 치재는 한결같이 기우제와 같이 하라.”

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6월 5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이미 설행하였으나 먹구름이 도로 흩어지고 비 내릴 조짐이 더욱 없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8차 기우제를 우사^{雩祀}에 다시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는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8일 설행하며,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척동자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와 민간의 병류^{屏柳} 역시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종묘 기우 친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5일 주강^{晝講}에 입시하였을 때 8일에 종묘 기우제를 친행하는 일을 탐전에서 하교하셨습니다. 이

祭, 出於閔旱之意, 則尤不可無致敬之道, 再明視事及致齋一款,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頃稟, 致齋一如祈雨祭爲之, 可也.”

癸亥六月初五日

● 八次

一. 曹單子: “七次祈雨祭, 已爲設行, 而陰雲還散, 雨意愈邈, 言念民事, 罔知攸措. 八次祈雨祭, 雩祀更遣重臣, 三角山·木覓山·漢江, 近侍, 不卜日, 來初八日設行, 而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 閭閻屏柳, 亦於同日爲始, 三日止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宗廟祈雨親祭

一. 曹啓曰: “今月初五日, 晝講入侍時, 初八日, 宗廟祈雨祭親行事, 榻前下教矣. 以此

날 거행하겠다는 뜻을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셨습니다. 8일에 8차 기우제를 행하는 우사 등 4곳과 동 자기우·병류 등의 일은 지금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영녕전은 대신이 섭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8일 종묘 기우 친제를 하겠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종묘 친제 때 영녕전에도 대신^{大臣}을 보내 섭행하는 예가 있어야 합니다. 전례대로 같은 날 대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6월 8일 종묘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이틀 동안 산재하고 향소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에는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日舉行之意，分付各該司，而初八日，行八次祈雨祭，雩祀等四處及童子祈雨·屏柳等事，今姑停止，何如？”傳曰：“允。”

● 永寧殿大臣攝行

一. 曹啓曰：“今月初八日，宗廟祈雨親祭事，下教矣。宗廟親祭時，永寧殿亦有遣大臣攝行之禮，依前例，同日遣大臣行祭事，知委，何如？”傳曰：“允。”

● 齋戒

一. 曹單子：“今六月初八日，宗廟祈雨親祭教是，殿下散齋二日於別殿，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一. 曹單子：“今六月初八日，

“이번 6월 8일 종묘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近侍} 관원으로 따라 올라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에서 이틀 동안 묵으며 산재하고, 향소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관원들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묘문^{廟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조복^{朝服}을 입고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공경히 맞이하는 일이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8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은 7일 새벽 먼저 향소에 나아가되, 4품 이상은 조복을 입고 5품 이하의 흑단령^{黑團領}을 입으며, 종묘 동문 밖 동쪽 가까운 적당한 곳에서 공경히 맞이하겠습니다. 영녕전^{永寧殿}의 향관들은 7일 새벽 이미 흑단령을 입고 향을 받아 나아갔으니, 대가가 종묘에 도착할 때 전례대로 계속 흑단령을 입고 공경히 맞이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宗廟祈雨親祭敎是時，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廟門者，各於本司清齋一宿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敎。

● 祇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以朝服，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白有}如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白有}昆，今初八日，祈雨親祭敎是時，諸享官，初七日質明，先詣享所，四品以上朝服，五品以下黑團領，宗廟東門外近東，隨地之宜，祇迎爲白乎矣，永寧殿諸享官，則初七日質明，既以黑團領，受香進去，大駕詣宗廟時，依前例，仍以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敎。

계해년¹⁶⁸³ 6월 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6월 9일

● 8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비가 조금 내리다가 곧 그치고 가뭄이 더욱 혹심하
니 농사가 다급하여 눈썹이 타는 정도에 그치지 않
는다. 해당 조로 하여금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연
속해서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께서 친히 기도하신
뒤에 계속 비가 내릴 조짐이 있었으므로 우선 며칠
기다렸다가 기도해야 하는 일을 다시 청하고자 하였
습니다. 그런데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예전에
계정한 대로 8차 기우제를 우사^{雩祀}에 다시 중신^{重臣}
을 보내고 삼각산·목덕산·한강에 다시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2일 설행하며, 모화관^{慕華}
館 연못가의 석척동자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와 민간의 병

癸亥六月初七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癸亥六月初九日

● 八次

一. 曹啓曰：“傳曰：‘小雨旋止，
旱暵愈酷，民事切急，不啻燃
眉，其令該曹，祈雨祭，不卜日，
連次設行’事，命下矣。自上親
禱之後，連有雨意，故姑待數
日，欲請應行祈禱之舉矣。上
教如此，依前啓請，八次祈雨
祭，雩祀，更遣重臣，三角山·
木覓山·漢江，更遣近侍，不卜
日，來十二日設行，而慕華館
池邊蜥蜴童子祈雨·閭閻屏
柳，亦於同日爲始，三日而止
事，知委，何如？”傳曰：“允。”

류屏柳 또한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6월 14일

● 맹인기우제

이번 6월 14일 주장^{書講}에 입시하였을 때 동지사 이익상^{李翊相}이 아뢰기를,
“8차 기우제 이후 가뭄의 재해가 갈수록 심해지니 앞으로의 농사가 너무도 다급합니다. 9차로 지방 산천의 기우제와 경회루 연못가의 석척동자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를 지금 전례대로 행하도록 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의 논의를 들으니, 예전에 맹인이 기도하면 번번이 영험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만 본조의 등록에 출처가 보이지 않으므로 감히 설행하도록 청할 수 없습니다. 봉상시의 등록을 살펴보니, 과연 맹인과 무녀가 기우제를 지냈다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뭄을 걱정하는 때에는 모든 방도를 다 해야 하니, 이번에도 전례대로 설행하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묘·사직·산천에 두루 기도하였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없다. 맹인이 기도하는 일은 예조의 등록과 대내의 문서를 살펴보니 인조조에 종종 있었다. 이번 에 지방 산천의 기우제에도 일체 설행하고, 동자기우

癸亥六月十四日

● 盲人祈雨

一. 今六月十四日, 晝講入侍時, 同知事李翊相所啓: “八次祈雨之後, 旱災愈往愈甚, 前頭民事, 萬分渴急. 九次外山川祈雨祭及慶會樓池邊蜥蜴童子祈雨, 今將依例請行. 而聞諸外議, 曾前以盲人祈禱, 輒得靈驗云. 但本曹謄錄, 無見出處, 故雖不敢全請設行. 考見奉常寺謄錄, 則果有盲人·巫女祈雨之文. 當此悶旱之日, 宜無所不用其極, 今亦依前設行, 恐無所妨矣.” 上曰: “宗廟·社稷·山川, 遍行祈禱, 雨意邈然, 盲人祈禱, 禮曹謄錄, 考見自內文書, 則仁祖朝, 比比有之. 今於外山川祈雨, 亦爲一體設行, 而童子祈雨, 則姑爲停止, 可也.”

제는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상립李尙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우제를 지낼지 다시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예조 참판 이익상李翊相이 아뢴 말로 인하여 동자
기우제는 우선 정지하고, 지방 산천의 기우제와 맹
인의 기우제를 지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8차 기
우제 이후 가뭄이 더욱 혹독하니 만약 며칠이 지나
도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팔도의 참혹한 기근이 필
시 경술년¹⁶⁷⁰과 신해년¹⁶⁷¹ 같을 것입니다. 생각이 여
기에 미치니 밤낮으로 애타고 걱정하여 장차 9차 기
우제를 청하고 경회루의 동자기우제를 함께 행하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아 동
자기우제는 우선 정지하고, 맹인의 기우제 역시 중
신重臣을 보내 기도하는 날 함께 설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처럼 비가 내리니, 우선 앞으로 보았다
가 다시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尙立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祈雨更稟

一. 曹啓曰: “因本曹參判李所
啓, 童子祈雨, 姑爲停止, 外山
川祈雨及盲人祈禱事, 命下矣.
八次祈雨之後, 旱魃愈酷, 若
過數日, 未蒙甘澤, 則八路飢
荒之慘, 必如庚辛兩年. 思之
至此, 夙夜焦慮, 將請九次祈
雨, 兼行慶會樓童子祈禱矣.
上教如是, 童子祈雨, 姑爲停
止, 盲人祈禱, 亦於遣重臣祈
禱之日, 兼爲設行, 而即今雨
勢如此, 姑觀前頭, 更爲稟處,
何如?” 傳曰: “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6월 1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김수산^{金壽山}의 첩정^{牒呈}에,

‘이달 14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6월 2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癸亥六月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金壽山牒呈內: ‘今月十四日, 下雨之後, 本津常流水基良中尺量, 則以布帛尺五尺五寸, 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癸亥六月二十三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成忠立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계해년¹⁶⁸³ 6월 25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김수산^{金壽山}의 첩정^{牒呈}에,
‘이달 23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
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9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금이^{崔金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윤6월 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癸亥六月二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金壽山牒呈內: ‘今月二十三日, 下雨後, 本津常流水基良中尺量, 則以布帛則尺九尺五寸, 流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崔金伊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是如爲如爲白臥乎事.”

癸亥閏六月初一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成忠立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윤6월 5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지건^{李之建}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계해년¹⁶⁸³ 윤6월 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癸亥閏六月初五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之建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八尺五寸流下’ 是
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七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癸亥閏六月初九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允同手本內: ‘去夜下雨, 看
審則五尺流下’ 是如爲白臥乎
事.”

하였다.

● 정전으로 돌아오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16일 자정^{子正} 2각^刻은 입추^{立秋} 절기이니, 정전으로 도로 나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등의 일을 모두 17일부터 거행해야 합니다. 경고^{更鼓}로 말하자면 입추에 들어간 뒤 즉시 복구해야 할 듯합니다. 자정 2각에 이전대로 징을 친 뒤 북을 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해년¹⁶⁸³ 윤6월 14일

● 정전에 돌아가는 날을 다시 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가을 이후 정전^{正殿}으로 도로 나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며 북을 치는 등의 일에 대해 얼마 전 계하하셨습니다. 12일 자정 2각은 입추 절기이니, 16일부터 거행해야 하는데, 계사에 ‘십육일^{十六日}’의 ‘육^六’자를 ‘칠^七’자로 잘못 써서 아뢰었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으니 황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정전에 도로 나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등의 일을 16일에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還御正殿

一. 曹啓曰：“今月十六日，子正二刻，乃是立秋節，還御正殿·復常膳等事，並自十七日，方可舉行，而至於更鼓，則似當入節後，即爲復舊。子正二刻，則依前擊鉦，以後則擊鼓事，分付，何如？”傳曰：“允。”

癸亥閏六月十四日

● 還御日改定

一. 曹啓曰：“秋節後，還御正殿·復常膳·擊鼓等事，纔已啓下矣。十二日子正二刻，乃是立秋節，則當自十六日舉行，而啓辭中，十六日六字，誤以七字書啓，累日之後，始爲覺察，不勝惶恐。還御正殿·復常膳等事，十六日舉行之意，分付，何如？”傳曰：“允。”

계해년¹⁶⁸³ 7월 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4월 13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상익^{金尙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5월 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癸亥七月初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八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甲子四月十三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尙益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甲子五月初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5월 2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5월 22일

● 수표를 입계하지 않아 조사하여 다스리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방금 전교하신 뜻으로 수표직^{水標直}과 예조 서리를
불러 조사하여 물었더니, 수표직은,
‘어제 오후 물이 4척 2촌 불어났다고 다시 본조에
수본을 올렸습니다.’
하였고, 본조 서리는,
‘1척이 더 넘친 뒤에야 입계하는 것이 원래 규례인
데, 어제저녁 내린 비가 밤에 내린 비에 비해 2촌만
불어났으므로 입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수표직이 이미 수본을 올린 뒤 해당 조
에서 중간에 덮어 두었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해
당 색리^{色吏}를 전교대로 치죄하겠습니다. 감히 아뢰

甲子五月二十一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甲子五月二十二日

● 水標不爲入啓查治
一. 政院啓曰：“卽以傳教之
意，水標直及禮曹書吏，招致
查問，則水標直以爲：‘昨日午
後，以水漲四尺二寸之意，更
爲手本本曹’云。本曹書吏以
爲：‘一尺加漲之後，方爲入啓，
自是規例，昨晚下雨，比夜雨
加漲，只是二寸，故不爲入啓’
云。水標直既已手本之後，該
曹之中間掩置，極爲可駭。當
該色吏，依傳教治罪之意，敢
啓。”傳曰：“夜與晝雨，日子既

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밤과 낮의 비는 날짜가 다르고, 또 많건 적건 이미
불어났다는 수본을 올렸는데 즉시 아뢰지 않았으니
일이 몹시 놀랍다. 해당 색리만 다스릴 수 없으니 해
당 낭청을 추고하라.”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5월 2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박세무^{朴世茂}의 침정^牒
문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준으로 포백척^{布帛尺} 7척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5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異, 且多少間, 既有加漲手本,
則不爲趁卽啓知, 事甚可駭.
不可只治其該吏, 當該郎廳,
推考.”

甲子五月二十三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朴
世茂牒呈內: ‘今番下雨後, 本
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七
尺, 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甲子五月二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갑자년¹⁶⁸⁴ 6월 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백령^{林栢齡}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6월 14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甲子六月初二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林栢齡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趙貴一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八尺五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甲子六月十四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趙貴一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六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갑자년¹⁶⁸⁴ 6월 25일

● 1차 기우제에 종신과 근시를 보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봄부터 여름까지 비 내리고 해 뜨는 것이 순조로워 모든 곡식이 무성하여 풍년이 들 가망이 있었는데, 불행히 곡식이 나고 자라는 계절을 맞이하여 나쁜 바람이 열흘 동안 거세게 불고 가랑비가 잠깐 뿌렸다가 개어 무더위가 타는 듯하고 비 내릴 조짐이 갈수록 아득하여 밭이 갈라지고 곡식이 말라 죽고 있다. 이것이 농사에서 이른바 김맨 뒤의 가뭄이니, 농사가 다급하고 경황없기가 거의 봄여름의 가뭄보다 심하다. 하루 이틀 지나서 끝내 이달 안에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불쌍한 우리 백성은 씨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말이 여기에 미치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찢어지고 숨이 막힌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속히 정성껏 기도하여 무고한 백성이 죽어 구덩이를 메우는 우환이 없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나쁜 바람이 계속 불고 뜨거운 해가 쨍쨍하여 자라는 곡식이 거의 말라 죽었으니, 만약 며칠 내로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지극히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조부, 예조에서 한창 기도를 게척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으니 말씀이 간절하여 귀신을 울릴 만합니다.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맥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

甲子六月二十五日

● 初次祈雨重臣·近侍

一. 曹啓曰：“備忘記：‘自春徂夏，雨暘時若，百穀蕃蕪，庶有西成之中矣。不幸正當發蘇長養之節，惡風浹旬大吹，霖霖乍作旋霽，烈炎如焚，雨意愈漠，田疇龜拆，禾穀焦枯，此農所謂鋤後之旱，民事之遑遑切急，殆有甚於春夏之旱，一日二日，終不得需澤於今月¹⁴之內，則哀我生民，靡有孑遺。興言及此，不覺心斷而氣塞也。其令禮官，不卜日，斯速虔誠祈禱，使無辜赤子，得免填壑之患’事，命下矣。惡風連吹，烈日杲杲，發蘇之穀，幾盡枯損，若不得甘霖於數日之內，則前頭民事，誠極可慮，故臣曹方欲啓請祈禱矣。今承聖教，辭旨惻怛，可以泣神鬼矣。初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雲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14 月：저본에는 ‘日’. 『송정원일기』 속 중 10년 6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평상시의 규례를 고집하지 말고 특별히 중신과 근시를 보내 설행하라.”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6월 27일

● 2차 기우제에 대신을 보내다.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9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6월 29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에 다시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다시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월 1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不卜日，來二十七日設行事，知委，何如？”傳曰：“依啓，不可膠守常規，特遣重臣·近侍設行，可也。”

甲子六月二十七日

● 再次祈雨大臣

一. 曹單子：“再次祈雨祭，社稷·宗廟·北郊，遣重臣，不卜日，來二十九日設行事，知委，何如？”啓遣大臣設行爲良如教。

甲子六月二十九日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更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更遣近侍，不卜日，來七月初一日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갑자년¹⁶⁸⁴ 7월 1일

● 4차 기우제에 대신과 중신을 보낸다.

이번 7월 1일 예조 판서가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4차 기우제는 남교에 대신^{大臣}을 보내 설행하고, 저자도·용산·한강에 중신^{重臣}을 보내 모두 오는 4일 설행하되, 제문^{祭文}은 홍문관 제학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라고 답전에서 결정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7월 4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는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8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 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전라도에 기우제 향축을 내려보낸다.

전라 감사의 장계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전라 감사 이사명^{李師命}의 장계를 보니, 도내에 가뭄의 재해가 참혹하여 다른 도보다 심하니, 앞으로 농사가 참

甲子七月初一日

● 四次大臣重臣

一. 今七月初一日, 禮曹判書請對入侍時, 四次祈雨祭, 南郊, 遣大臣攝行, 楮子島·龍山·漢江¹⁵, 遣重臣, 並來初四日設行, 而祭文則令弘文提學製進事, 榻前定奪.

甲子七月初四日

● 五次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 遣重臣, 不卜日, 來初八日設行, 而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令本道差定進排之意, 各該司及京圻監司處,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全羅祈雨香祝下送

一. 全監狀啓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觀此全羅監

¹⁵ 江: 저본에는 없음. 문맥에 근거하여 보충

으로 망극합니다. 지금 비록 절기가 늦었으나 정성껏 기도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 지리산 등 세 곳에 급히 향축을 보내 감사와 품계가 높은 수령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뢰어 윤험을 받았다.【『기우제등록』에 있다.】

● 향축 금군을 내려보낸다.

전교하기를,

“전라 감사 이사명李師命의 장계로 지리산 등의 장소에 기우제 향축을 내려보내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해당 조에서 이미 복계覆啓하여 윤험을 내렸다. 본도의 가뭄이 몹시 심하여 농사가 망극하니, 정성껏 기도하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 향축과 폐백을 오늘 안으로 따로 금군을 정하여 밤낮없이 내려보내라고 즉시 분부하라.”

하였다.

● 전장에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낸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가뭄의 재해가 갈수록 혹심해지니 기도하는 방도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전장에서 죽은 자가 있는 곳에 근시近侍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일에 대해 해당 조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속히 거행하

司李狀啓，則道內旱災之慘，甚於他道，前頭民事¹⁶，誠爲罔極，今雖節晚，不可無虔誠祈禱之舉。智異山等三處，急速香祝，令監司及秩高守令，不卜日祈雨，何如？”啓依允。

【在於祈雨謄錄】

● 香祝禁軍下送

一. 傳曰：“全羅監司李■狀啓，智異山等處祈雨祭，香祝下送，不卜日設行事，自該曹，既已覆啓允下矣。本道旱乾太甚，民事罔極，虔誠祈禱之舉，不容暫緩。香祝幣當日內，別定禁軍，罔夜下送事，卽即分付。”

● 戰亡致祭

一. 曹啓曰：“傳曰：‘旱災愈往愈酷，凡係¹⁷祈禱之方，靡所不

16 事：저본에는 없음. 문맥에 근거하여 보충

17 係：저본에는 ‘除’. 『승정원일기』 숙종 10년 7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제사 지낸 곳은 문서를 살펴보니 금산^{錦山}·진주^{晉州}·남원^{南原}·상주^{尙州}·달천^{鎭川}·원주^{原州}·울산^{蔚山}·강화^{江華}·토산^{兔山}·김화^{金化}·쌍령^{雙嶺}·험천^{險川} 12곳이며, 서교^{西郊}의 민충단^{愍忠壇} 역시 예전에 제사를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거리의 원근을 헤아려 일관^{日官}에게 참작하여 날을 잡게 하고 향축을 내려보내 전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제관은 이조로 하여금 차출하게 하라.”

하였다.

● 전망 치제의 택일

예조가 아뢰기를,

“전장에서 죽은 자가 있는 곳들에 근시^{近侍}를 보내 제사를 지내는 길일은 거리의 원근을 헤아려 일관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택일하게 하고 설행하라고 계하를 받았습니다. 제사를 지낼 길일을 일관으로 하여금 잡게 하였더니, 민충단은 이번 7월 9일, 강화·쌍령·험천은 같은 달 12일, 달천·원성·김화·토산은 같은 달 15일, 금산·상주는 같은 달 18일, 진주·남원은 같은 달 19일, 울산은 같은 달 21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거행하되 전례대로 행회^{行會}하였다가 지체되면 일이 몹시 걱정스러우니, 경기

用其極，戰亡等處，遣近侍致祭事，令該曹考例，斯速舉行’祭事，命下矣。曾前致祭處，考見文書，則錦山·晉州·南原·尙州·鎭川·原州·蔚山·江華·兔山·金化·雙嶺·險川十二處，而西郊愍忠壇，亦曾有致祭之舉。此等處，計其道里遠近，令日官參酌卜日，下送香祝，依前例舉行，何如？”傳曰：“依啓。祭官令吏曹差出。”

● 戰亡祭擇日

一. 曹啓曰：“戰亡等處，遣近侍，致祭吉日，計其道里遠近，令日官參酌卜日設行事，啓下矣。行祭吉日，令日官推擇，則愍忠壇，今七月初九日，江華·雙嶺·險川，同月初九日，鎭川·原城·金化·兔山，同月十五日，錦山·尙州，同月十八日，晉州·南原，同月十九日，蔚山，同月二十一日爲吉云。以此日舉行，而循例行會，以致

를 제외하고 전례대로 파발을 보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동교와 서교의 경술년¹⁶⁷⁰과 신해년¹⁶⁷¹에 굶어 죽은 백성이 묻힌 곳에 여제^{厲祭} 또한 근시를 보내 설행하라.”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7월 5일

● 굶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장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근신을 보내기로 하고 제사 지내는 길일을 잡아 초기를 올렸더니, ‘아뢴 대로 하라. 경술년¹⁶⁷⁰과 신해년¹⁶⁷¹에 굶어 죽은 백성이 묻힌 곳에 여제^{厲祭} 또한 근시^{近侍}를 보내 설행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문서를 가져다 살펴보니, 작년에 가뭄의 재해로 인하여 동교, 서교, 남교에 근신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동교, 서교, 남교의 정결한 곳에 단소^{壇所}를 설치하고 오는 9일 근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遲滯，則事甚可慮。除圻甸外，依前例發馬知委，何如？”傳曰：“依啓。東西郊庚辛餓死民人等處厲祭，亦爲遣近侍設行，可也。”

甲子七月初五日

● 餓死致祭

一. 曹啓曰：“戰亡處，遣近臣致祭吉日，推擇草記，傳曰：‘依啓，庚辛餓死民人等處厲祭，亦爲遣近侍設行，可也’事，傳教矣。取考文書，則上年因旱災，東西南三郊，遣近臣致祭矣。今亦依此例，東西南三郊，淨潔處設壇所，來初九日，遣近臣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갑자년¹⁶⁸⁴ 7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고성원^{高成元}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7월 8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2일 관악산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
는 같은 날 또한 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
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
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
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
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세 곳에 대신을 파견함.

6차 기우제 마련 단자에 대해 전교하기를,

“비가 내릴락말락하면서 아직도 단비가 내리지 않

甲子七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高成元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甲子七月初八日

● 六次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不
卜日，來十二日，冠岳山，遣重
臣，朴淵·禾積淵·渡迷津·辰
岩焚柴，同日亦爲設行爲白乎
矣，朴淵·禾積淵·渡迷津·冠
岳，典祀官·兼大祝·祭物，自
京下送，執事官及犧牲，則令
本道差定進排事，各該司及京
圻監司處，知委，何如？” 啓依
所啓施行爲良如教。

● 三處大臣

一. 六次祈雨磨鍊單子，傳曰：
“其雨其雨，尙靳霈澤，節序漸

는다. 절기가 점차 늦어 농사가 애타고 다급하니 종
료·사직·북교에 다시 대신大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에 설행하라.”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7월 13일

● 기우제 차례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가랑비가 곧 그치고 비 내릴 조짐이 없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어찌할 줄 모르겠다. 해당 조로 하여금 석
척동자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 및 남문^{南門}을 닫고 북문^{北門}
을 여는 등의 일을 속히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례를 살펴보니 석척동자
기우제는 반드시 기우제를 설행하는 날 시작하여 3
일 뒤에 중지하고, 간혹 민간의 병류를 함께 설행하
거나, 동자기우제는 함께 거행하지 않고 병류만 설행
하였습니다.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여는 때에는 시
장을 옴기고 토룡제^{土龍祭}를 거행하니, 설행하는 일이
원래 차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대로 석척동자
기우제를 먼저 설행하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시장을 옴기고 토룡제를 지내는 등의 일은 추후에
거행해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晚, 民事渴急, 宗廟·社稷·北
郊, 更遣大臣, 不卜日, 來初十
日設行.”

甲子七月十三日

● 祈雨次第

一. 曹啓曰：“傳曰：‘霖霖旋
止, 雨意漠然, 言念民事, 罔知
攸措. 其令該曹, 蜥蜴童子祈
雨及閉南門·開北門等事, 斯
速考例舉行事, 分付’事, 命下
矣. 考見前例, 蜥蜴童子祈雨,
則必於祈雨祭設行之日爲始,
三日而止, 而或並設閭闔屏
柳, 或只設屏柳, 而不爲並舉
童子之祈. 至於閉南門·開北
門之時, 亦有遷市與土龍祭之
舉, 其所設行, 自有次第. 今亦
依前例, 蜥蜴童子祈雨, 爲先
設行, 而南北門開閉·遷市·土
龍祭等事, 似當追後舉行, 何
以爲之? 敢稟.” 傳曰：“依爲
之.”

● 동자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예조의 계사에,

‘석척동자기우제와 병류 등의 일을 먼저 설행하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어 시장을 옹기고 토룡제를 지내는 등의 일은 추후에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만드시 기우제를 지내는 날 먼저 설행하는 것이 이미 전례이니, 오관산 등의 장소에 지내는 기우제는 이번 15일에 설행해야 하고, 모화관 연못가의 석척동자기우제와 민간의 병류는 모두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7월 18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가뭄이 극도에 이른 뒤 이번 16일 다행히 단비가 내렸으나 두루 적시지 못한 듯합니다. 지금도 비가 내릴 조짐이 있으나 기다리기 어려우니, 8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에 다시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 다시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1일 설행하되, 경회루 연못가의 석척동

● 童子祈雨

一. 曹啓曰：“曹啓辭：‘蜥蜴童子祈雨·屏柳等事，爲先設行，而南北門開閉·遷市·土龍祭等事，追後舉行’事，傳曰：‘依爲之’事，命下矣。必於祈雨祭日，爲始設行，既是前例，而五冠山等處祈雨祭，當行於今十五日，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閭閻屏柳，並自同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甲子七月十八日

● 八次

一. 曹單子：“嘆乾孔極之餘，今十六日，幸得甘澍，而似未周洽，卽今亦有雨意，而有難等待，八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更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更遣近侍，不卜日，來二十一日設行爲白乎矣，慶會

자기우제 역시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7월 2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7월 23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이번 7월 23일 대신^{大臣}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을
때 기우제를 지금 우선 정지하라고 답전에서 결정

樓池邊蜥蜴童子祈雨，亦於同
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何
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甲子七月二十二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允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六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甲子七月二十三日

● 祈雨停止

今七月二十三日，大臣·備局
堂上引見時，祈雨祭，今姑停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7월 2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1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7월 2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9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止事, 楊前定奪.

甲子七月二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中標直
趙允同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一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甲子七月二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九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允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자년¹⁶⁸⁴ 8월 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충립^{成忠立}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수표 석교^{石橋} 위
로 물이 넘쳤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홍주생^{洪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청제

전교하기를,

“비가 전혀 내리지 않다가 또 비가 지나치게 내려 밤
부터 새벽까지 기세가 동이를 뒤집을 듯하여 평지가
시내로 변하고 길이 통하지 않는다. 가뭄에서 살아

甲子八月初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忠立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水標石橋上，加漲’
是如爲白臥乎事。”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洪周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五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祈晴

一. 傳曰：“極無之餘，又值極
傷，終夕達曉，勢若飜盆，平
陸成川，道路不通，餘存蘇枯
之穀，必多沈歿腐傷之患，言

남아 소생하는 곡식이 필시 많이 잠겨 썩을 우려가
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걱정이다.
기청 사문영제^{祈晴四門禁祭}를 즉시 설행하라고 해당 조
에 분부하라.”
하였다.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청 사문영제를 설행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택
일하지 말고 이번 8월 3일을 시작으로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5월 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이선^{成二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6월 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승순^{金承順}의 수본에,

念民事, 誠極悶慮. 祈晴四門
禁祭, 趁卽設行事, 分付該曹.”

● 祈晴

一. 曹啓曰: “祈晴四門禁祭
事, 傳教矣. 不卜日, 今八月初
三日, 爲始設行, 三日而止事,
知委舉行, 何如?” 傳曰: “允.”

乙丑五月初八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二善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乙丑六月初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承順手本內: ‘今日下雨, 水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6월 1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이중길^{李重吉}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6월 29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봄부터 여름까지 날씨가 순조로워 모든 곡식이 무
성하여 풍년이 들 가망이 있었다. 불행히 한창 여름
철에 바람이 건조하고 해가 찢찢하여 가뭄이 몹시
심하였다. 신령한 하늘을 우리러보니 혜성이 나타났
다. 이번 달이 이미 다 지났는데 아직도 비가 내리
지 않고, 어제의 가랑비 역시 아침을 넘기지 못하였
으니, 이것이 참으로 김만 뒤의 가뭄으로 농사에서

標看審，則八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乙丑六月十二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李重吉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乙丑六月二十九日

● 初次

一. 曹啓曰：“備忘記：‘自春徂
夏，雨暘時若，百穀蕃茂，庶有
登熟之望矣。不幸正當南訛之
節，風淒日杲，早暵太甚，瞻¹⁸
仰靈天，有嘽其星。今月已盡，
膏澤尙靳，昨日霖霖，亦不崇
朝，此正鋤後之旱，農家最忌，

¹⁸ 瞻：저본에는 ‘瞻’.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 이하 ‘瞻’은 모두 ‘瞻’으로 수정

가장 꺼리는 것이다. 농사가 애타고 다급하기가 봄
여름의 가뭄보다 심하다. 이를 생각하면 어찌할 줄
모르겠다. 정성껏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
으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즉시 거행
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풍운뇌
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
일하지 말고 오는 7월 3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7월 3일

● 2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7월 3일 대신大臣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
하였을 때 가뭄의 재해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종
묘·사직·북교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대신을 보
내 2차 기우제를 설행하고, 축문祝文에 자신을 닮하
는 뜻으로 착실히 말을 만들라고 탐전 하교하셨습
니다.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而民事之渴急，殆有甚於春夏
之旱乾。言念及此，罔知攸措，
虔誠祈禱，不容少緩。其令禮
官，不卜日，趁即舉行’事，命下
矣。初次祈雨祭，風雲雷雨·山
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
江等處，不卜日，來七月初三日
設行事，知委，何如？”傳曰：
“允。”

乙丑七月初三日

● 再次大臣

一. 曹啓曰：“今七月初三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旱災至此，宗廟·社稷·北郊等
處，不卜日，遣大臣，再次祈雨
祭設行，而祝文中，以罪己責
躬之意，着實措辭事，榻前下
教矣。不卜日，來初六日設行
事，知委，何如？”傳曰：“允。”

을축년¹⁶⁸⁵ 7월 6일

● 친제

비망기에,
“2차 기우제 이후 나쁜 바람과 무더운 가뭄이 갈수록 혹심하여 하루 이틀이 지나도 비가 내릴 조짐이 없다. 신령한 하늘을 바라보니 어찌 백성을 편안히 하겠는가. 걱정하는 마음이 타는 듯하니,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 생각건대 성의가 알아 하늘의 마음을 돌리기 부족하나, 농사가 망극하여 이미 십분 위험한 처지에 도달하였으니, 자신을 책망하여 친히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예관 禮官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즉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기우제 처소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친행하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부터 기우 친제의 처소는 종묘·사직·남교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하교에 따라 설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사 지낼 곳은 어느 곳으로 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교에서 친히 기도할 것이니 택일하지 말고 9일에 거행하라.”
하였다.

乙丑七月初六日

● 親祭

一. 備忘記：“再次祈禱之後，惡風旱炎，愈往愈酷，一日二日，雨意漠然，瞻仰靈天，曷惠其寧？憂心焚悵，寧欲溘然無知也。自惟誠意淺薄，不足以感格天心，而民事之罔極，已到十分地頭，責躬親禱之舉，不容少緩。其令禮官，不卜日，趁卽舉行。”

● 處所

一. 曹啓曰：“祈雨祭親行事，命下矣。自前祈雨親祭處所，宗廟·社稷·南郊三處中一，從下教設行矣。今此行祭，以何處爲之乎？敢稟。”傳曰：“當親禱于南郊，不卜日，以初九日舉行。”

● 복색과 음악 사용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의 초기^{草記}에 대해 전교하기를,

‘남교에서 친히 기도할 것이니 택일하지 말고 9일에 거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을묘년¹⁶⁷⁵ 4월 사직 친제 때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전하의 복색^{服色}은 경인년¹⁶⁵⁰ 친제 때의 전례대로 흑단령포^{黑團領袍}·옥대^{玉帶}·흑화자^{黑靴子}로 예를 행하고, 배향^{陪香}할 때도 같은 복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관원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제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음악을 사용하는 일은 본조의 계사로 인하여 대신^{大臣}에게 수의^{收議}하여 역시 경인년에 이미 시행한 전례대로 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친제의 처소는 사직과 차이가 있으나 음악을 사용하는 것과 복색은 차이가 없어야 하니, 이대로 마련하여 들이겠습니다.”

하였다.【악방의 청대로 인하여 정지하였다.】

● 제단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임진년¹⁶⁵² 남교에 친제할 때 단상^{壇上}을 수보하고 수리하는 일로 따로 호조·공조의 낭청을 보내고 본조 낭청과 함께 검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고, 또한 선공감으로 하여금 따로 감역관^{監役官}을 정하여 급히 수리

● 服色用樂

一. 曹啓曰：“以本曹草記，傳曰：‘當親禱于南郊，不卜日，以初九日舉行’事，命下矣。取考乙卯四月社稷親祭時謄錄，則殿下服色，依庚寅年親祭時例，以黑團領袍·玉帶·黑靴子行禮，陪香時亦用如服，而百官則黑團領陪祭。用樂一節，因本曹啓辭，議大臣亦依庚寅已行之例，以用樂定奪矣。今此親祭處所，與社稷有異，用樂及服色，宜無異同，依此磨鍊以入之意，敢啓。”【因藥房請對停】

● 壇修理

一. 曹啓曰：“取考本曹謄錄，則壬辰年南郊親祭時，壇上修補修理事，別遣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眼同看檢矣。今亦依此舉行，而亦令繕工監，別定監役官，急速修理事，分

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사사로이 연습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임진년¹⁶⁵² 남교에서 친히
기우제를 지낼 때 성상께서는 2경 초각^{初刻}에 어가
를 출발하여 도성을 나와 단소^{壇所}로 나아가서 그대
로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였습니다. 출궁하는 시각
은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였습니다. 제관과 집사는
8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내는 곳에 나아가 중사 및
근시^{近侍}와 함께 전례대로 함께 사적으로 연습하여
위의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7월 9일 남교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전하께서는
오늘부터 별전^{別殿}에서 이틀 동안 산재^{散齋}하고 향소^{享所}
에서 하루 동안 치재^{致齋}하되, 산재할 때는 조문
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
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
에는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 아뢰도록 예문대로 거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付, 何如?”

● 私習

一. 曹啓曰: “取考膳錄, 則壬
辰年南郊祈雨親祭時, 自上於
二更初, 動駕出城詣壇所, 仍
爲行祭還宮矣. 出宮時刻, 今
亦依此舉行, 而祭官·執事, 初
八日質明, 先詣祭所, 與中使
及近侍, 依例並爲私習, 俾無
失儀事, 知委, 何如?”

● 齋戒

一. 曹單子: “今七月初九日,
南郊祈雨親祭教是時, 殿下自
今日散齋二日於別殿, 致齋一
日於享所, 凡散齋, 不吊喪問
疾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
書, 致齋, 唯啓享祀事, 依禮
文¹⁹舉行, 何如?” 啓依所啓施

¹⁹ 文: 저본에는 없음. 문맥에 근거하
여 보충

●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7월 9일 남교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_{近侍} 관원으로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_{本司}에서 이틀 동안 묵으며 산재하고 향소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모든 관원과 여러 위_衛의 소속으로서 유문_{堽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제관의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_{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로 나아갔다가 대가가 도착하면 공경히 맞이하라고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9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은 8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나아가 흑단령 차림으로 공경히 맞이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친제를 정지하고 산천 등에 중신과 근시를 보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行爲良如教.

● 齋戒

一. 曹單子：“今七月初九日，南郊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堽門者，各於本司清齋一宿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祭官祇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_有如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_有昆，今初九日，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初八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親祭停山川等重臣近侍

一. 曹啓曰：“今七月初六日，藥房都提調以下請對入侍時，

“이번 7월 6일 약방 도제조 이하가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기우 친제를 거행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산천 등 두 곳에 중신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9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축년 1685 7월 9일

● 사직 기우 친제

비망기에,

“보잘것없는 내가 덕이 없어 하늘의 노여움을 만나 이렇게 옛날에 없던 재앙을 초래하였다. 한창 추수하는 계절에 심한 가뭄과 나쁜 바람이 한 달을 넘기고도 열흘을 채웠다. 정성껏 기도한 것이 이미 세 차례가 넘었는데 비가 내릴락말락하고 해가 짹짹하니,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내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불쌍한 우리 백성이 거의 다 죽어 구덩이를 메울 것이다. 이를 말하자니 걱정하는 마음이 타는 듯하다. 차라리 내 몸을 불태워 하늘의 견책에 답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나의 성의가 얇아 하늘의 마음을 돌리기 부족하나, 농사가 망극하기가 이미 십분 위험한 지경에 도달하였으니, 속히 회생을 대신하여 친히 기도하여 백성의 간절한 바람을 위로하고자 한다. 대신이 힘써 청하였으므로 우선 설행하게 하였으나, 지금은 병이

祈雨親祭, 勿爲舉行, 而山川等兩處, 遣重臣, 三角山·木覓山, 漢江沈虎頭, 遣近侍, 不卜日, 來初九日設行事, 知委, 何如?” 傳曰: “允.”

乙丑七月初九日

● 社稷親祭

一. 備忘記: “藐予丕德, 逢天憚怒, 致此前古所未有之災沴, 正當萬寶收成之節, 亢旱惡風, 彌月浹旬, 虔誠祈禱, 已過三次, 而其雨其雨, 出日杲杲, 一之兩日, 終不得霑澤, 則哀我赤子, 舉將填壑, 興言及此, 憂心如灼, 寧欲自焚, 以答天譴, 而不可得也. 顧予誠意淺薄, 不足以感回天心, 民事罔極, 已到十分地頭, 亟欲代犧親禱, 以慰喁喁之民望, 而因大臣之力請, 姑令攝行矣. 今則病愈, 而災急矣. 竭誠哀籲, 不容少緩. 其令禮官, 不卜日, 以十一日舉行, 而處所定於社

나왔고 재해가 다급하니, 정성을 다하여 슬피 호소하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11일에 거행하며, 처소는 사직으로 정하라.” 하였다.

● 복색과 음악 사용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 기우 친제를 택일하지 말고 11일에 거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을묘년¹⁶⁷⁵ 4월 사직 친제 때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전하의 복색服色은 경인년¹⁶⁵⁰ 친제 때의 전례대로 흑단령포黑團領袍·옥대玉帶·흑화자黑靴子로 예를 행하고, 배향陪香할 때도 같은 복색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관원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제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음악을 사용하는 일은 본조의 계사로 인하여 역시 경인년에 이미 시행한 전례대로 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재계와 공경히 맞이하는 일을 사직으로 연습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전하께서는 으레 이틀 동안 산재散齋하고 하루 동안 치재致齋하나, 이번 사직 친제는 날짜가 이미 임박하였으니 성상께서는 오늘부터

稷.”

● 服色用樂

一. 曹啓曰：“社稷祈雨親祭，不卜日，以十一日舉行事，命下矣。取考乙卯四月社稷親祭時膳錄，則殿下服色，依庚寅年親祭時例，以黑團領袍·玉帶·黑靴子行禮，陪香時亦用如服，而百官則黑團領陪祭。用樂一節，因本曹啓辭，亦依庚寅年已行之例，以用樂定奪矣。今亦依此磨鍊以入之意，敢啓。” 傳曰：“知道。”

● 齋戒祗迎私習

一. 曹啓曰：“凡大祭親行時，殿下例爲散齋二日，致齋一日，而今此社稷親祭，日子已迫，自上自今日，散齋於別殿，致齋一日於享所。諸享官及近侍

별전別殿에서 산재하고 향소에서 하루 동안 치재해야 합니다. 향관들과 근시近侍 관원으로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 자 역시 오늘 본사에서 산재하고 내일 향소에서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모든 관원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壚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하고, 향관들은 내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나아가 대가가 도착하면 흑단령 차림으로 공경히 맞이하며, 대가가 재소에 나아간 뒤 중사, 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사적으로 연습하여 위의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축년¹1685 7월 12일

● 4차 남교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고 용산강에 중신을 보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아, 상복을 벗고 임시로 길복吉服을 입은 채 희생을 대신하여 기도한 것은 실로 백성을 위해 부득이한 일이었다. 그러나 성의가 알아 하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여 점차 서늘한 가을이 되는데도 심한 가뭄이 갈수록 혹심하다. 모든 곡식이 타서 문드러지고 들판이 깨끗하니, 불쌍한 우리 백성은 씨도 남지 않을 것이다. 밤낮으로 다급하여 마치 내 몸이 아픈 듯하여 어떻게 구제할지 모르겠다. 친히 기도

之官應從升者，亦自今日散齋於本司，明日致齋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壚門者，各於本司清齋一宿，而諸享官，明日質明，先詣享所，大駕將至，以黑團領祇迎，大駕詣齋所後，與中使·近侍，依例私習，俾無失儀事，知委，何如？”傳曰：“允。”

乙丑七月十二日

● 四次南郊大臣，龍山重臣

一. 曹啓曰：“備忘記：‘噫，釋衰着權，代犧祈禱，實出於爲民不得已之舉，而誠意淺薄，未回天心，秋涼漸生，亢陽愈酷，百穀焦爛，田野濯濯，哀我黎民，靡有子遺，夙夜遑遑，若恫在己，罔知所以攸濟也。不可以親禱之纔行，而有所等待。其令該曹，南郊，遣大臣，龍山江·楮子島，遣重臣，不卜日，連次設行。祭文亦令大提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다릴 수 없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남교에 대신^{大臣}을 보내고 용산강·저자도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연속하여 설행하게 하라. 제문 역시 대제학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되, 제문에 나를 탓하는 뜻으로 따로 말을 지어 넣으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4차 기우제는 성상의 하교대로 택일하지 말고 오는 15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제삿날이 겹쳐 물러 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남교 등 세 곳의 기우제를 15일 설행하겠다고 방금 입계^{入啓}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15일은 여제^{厲祭}를 지내는 당일이라 성황^{城隍}의 위판^{位版}을 14일 북교^{北郊}로 모시고 가서 15일 제사를 마친 뒤 비로소 도로 봉안한다고 합니다. 여제와 기우제는 형세상 하루에 행하기 어려우니, 만약 14일로 당긴다면 용산강·저자도 화룡^{畫龍} 등의 일은 다급한 우환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부득이 16일로 물러 행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동자, 맹인, 전장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

예조가 아뢰기를,

學製進，而祭文中罪已責躬之意，別爲措辭添入事，命下矣。四次祈雨祭，依聖教，不卜日，來十五日設行之意，知委，何如?” 傳曰：“允。”

● 祭日相值退行

一. 曹啓曰：“南郊等三處祈雨祭，以十五日設行之意，才已入啓矣。卽聞十五日，乃厲祭正日，城隍位版，以十四日，陪往北郊，十五日罷祭後，始爲還安云。厲祭及祈雨祭，勢難行於一日之內，若進於十四日，則龍山江·楮子島畫龍等事，難免有窘迫之患，不得已以十六日退行之意，敢啓。” 傳曰：“知道。”

● 童子盲人戰亡祭

一. 曹啓曰：“今七月十二日，下

“이번 7월 12일 하직하는 수령을 인견하였을 때, 경회루 연못가의 석척동자기우제, 모화관의 동자기우제와 맹인기우제·병류屏柳를 설행하는 일, 민충단과 가까운 곳의 전장에서 죽은 사람에게 먼저 관원을 보내 제사 지내는 일, 경술년¹⁶⁷⁰과 신해년¹⁶⁷¹에 굶어 죽은 사람이 묻힌 곳에 제사를 지내는 일,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시장을 오픈하는 등의 일 역시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모두 해당 조에 분부하라고 탑전에서 하교하셨습니다.

경회루·모화관 두 곳의 동자석척기우제는 예전부터 차례로 설행하였고, 하루 사이에 함께 거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대로 모화관 연못가의 동자기우제·맹인기우제와 민간의 병류 등의 일은 우선 오는 16일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겠습니다. 민충단, 험천險川, 쌍령雙嶺 세 곳에 제사를 지낼 길일을 일관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달 19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례대로 근신을 보내 설행하되, 제물과 집사관은 전례를 살피고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게 하라고 본도에 분부하겠습니다. 경술년과 신해년에 굶어 죽은 사람이 묻힌 곳에 제사를 지내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시장을 오픈하는 등의 일은 추후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경술년과 신해년에 굶어 죽은 사람이 묻힌 곳에 제사를 지내는 일은 오는 19일 일체

直守令引見時，慶會樓池邊蜥蜴·慕華館童子及盲人祈雨·屏柳設行等事，愍忠壇及近地戰亡處，爲先遣官致祭事，庚辛餓死人等處致祭事，閉南門開北門·遷市等事，亦爲依例舉行事，並即分付該曹事，榻前下教矣。慶會樓·慕華館兩處童子蜥蜴祈雨，自前次第設行，而未嘗並行於一日之內。今亦依前例，慕華館池邊童子·盲人祈雨及閭閻屏柳等事，爲先來十六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各該司。愍忠壇及險川·雙嶺三處，致祭吉日，令日官推擇，則今月十九日爲吉云，依前例，遣近臣設行，而祭物及執事官，考例差定進排事，分付本道，庚辛餓死人等處致祭及開閉門·遷市等事，追後舉行，何如？”傳曰：“依啓。庚辛餓死人等致祭，則來十九日一體設行，可也。”

설행하라.”

하였다.

● 행회

행이(行移)의 결어(結語)에,

“계하받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험천(險川)·쌍령(雙嶺) 등의 장소에서 죽은 장사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따로 제단 하나를 설치하되 상중하 3단계로 나누어 설치하고, 제물과 집사 등은 한결같이 작년의 전례대로 각별히 정갈히 마련하고 가려 차임하여 기다렸다가 근신이 향축을 받고 내려가면 즉시 설행하라고 속히 분부하여 거행하십시오.”

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7월 13일

● 굶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

예조가 아뢰기를,

“민중단과 험천(險川)·쌍령(雙嶺) 세 곳에 제사를 지낼 신하를 보내 이달 19일 설행하라는 초기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경술년¹⁶⁷⁰과 신해년¹⁶⁷¹에 굶어 죽은 사람이 묻힌 곳의 제사는 오는 19일 일체 설행하라.’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례대로 동교, 서교, 남교의 정결한 곳에 단소를 설치하고, 제물은 여제에 비해 넉넉한 쪽으로 마련하여 근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 행회

一. 行移結語：“啓下內辭緣相考，險川·雙嶺等處，戰亡將士致祭時，別設一壇，分爲上中下三級分設事及祭物執事等，一依上年例，各別精備擇差，以待爲白有如可，近臣受香祝下去，卽爲設行之意，急速分付，舉行次。”

乙丑七月十三日

● 餓死人祭

一. 曹啓曰：“愍忠壇及險川·雙嶺三處，致祭遣臣，今月十九日設行事草記，傳曰：‘依啓，庚辛餓死人等致祭，則來十九日，一體設行，可也’事，命下矣。依前例，東西南三郊，淨潔處設壇所，祭物則比厲祭從優磨鍊，遣近臣設行之意，分付各該司，何如?” 傳曰：“允。”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7월 15일

● 동자 맹인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친히 기도한 뒤 단비가 쏟아졌으니, 이는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격시킨 결과입니다.
비록 멀고 가까운 곳이 두루 적셨는지 여부는 모르
지만 시험 삼아 송도^{松都}의 장계를 보니 또한 쟁기날
만큼 적셨고, 메마른 곡식도 지금 갑자기 소생하였
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탄식하니, 남교 등 세 곳의
기우제를 그대로 설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자
와 맹인의 기우제와 병류^{屏柳} 등의 일은 심분 위험한
처지에서 부득이 하는 일이니, 이것은 지금 우선 정
지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감히 이렇게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大臣}의 뜻도 이와 같은가?”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동자와 맹인의 기우제와 병류 등의 일을 우선 정지
하도록 아뢰었더니,
‘대신^{大臣}의 뜻도 이와 같은가?’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신들의 뜻은 모두 이와 같으나,

乙丑七月十五日

● 童子盲人停

一. 政院啓曰：“²⁰桑²⁰林親禱之
餘，甘霖霈然，此固至誠感格
之致。雖未知遠近之周洽與
否，而試以松都狀啓觀之，亦
得一犁之雨，各穀之焦枯者，
卽今頓覺昭蘇，而猶有不足之
歎，則南郊等三處祈雨祭，雖
不可不仍爲設行，至於童子·
盲人祈雨及屏柳等事，乃是十
分地頭不得已之舉，此則今姑
停止，似爲無妨，敢此仰²¹稟。”
傳曰：“大臣之意，亦如此乎?”

一. 政院啓曰：“以童子·盲人

²⁰ 桑: 저본에는 ‘幸’.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7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²¹ 仰: 저본에는 ‘敢’.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7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아침에 약방이 문안하였을 때 판부사 김수흥(金壽興),
이조 판서 김만중(金萬重)도 언급하였는데, 역시 정지해
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祈雨及屏柳等, 姑停, 啓稟, 有
‘大臣之意, 亦如此乎’之教矣.
臣等之意²², 既皆如此, 而朝
者藥房問安之時, 判府事金·
禮曹判書金語及, 亦以爲宜停
云, 故有所稟達矣, 敢啓.” 傳
曰: “依爲之.”

을축년¹⁶⁸⁵ 7월 1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乙丑七月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允同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趙貴一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是如
爲臥乎事.”

²² 意: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7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을축년¹⁶⁸⁵ 7월 1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후진^{趙後進}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흘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굶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민충단·쌍령·협천 및 동교·서교·남교의 경술년¹⁶⁷⁰
 과 신해년¹⁶⁷¹에 굶어 죽은 사람이 묻힌 곳의 기우제
 는 이번 19일 설행해야 하는데, 지금 비 내리는 형세
 가 이와 같으니 정지해야 할 듯합니다. 감히 여쭙니
 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7월 18일

●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함.

예조가 아뢰기를,
 “그간 비가 충분히 내렸고, 가을에 들어간 지도 이
 미 오래이니,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고 복을 치는
 등의 일을 오늘부터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乙丑七月十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後進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餓死祭

一. 政院啓曰：“愍忠壇·雙嶺
 ·險川及東西南庚辛餓死人等
 處祈雨祭，今十九日，當爲設
 行，而即今雨勢如此，似當停
 止，敢稟。”傳曰：“依爲之。”

乙丑七月十八日

● 復常膳

一. 曹啓曰：“前後雨澤，旣得
 周洽，秋節之入，亦且已久，
 復常膳·擊鼓等事，自今日依
 例舉行之意，分付各該司，何
 如？”傳曰：“允。”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최익태崔益泰의 첩정
牒呈에,

‘이달 16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
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4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의 수본에,
‘오늘 오후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7월 2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崔益泰牒呈內: ‘今月十六日下雨後,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四尺五寸, 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趙貴一手本內: ‘今日午後下雨, 水標看審, 則三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乙丑七月二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趙貴一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五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흘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7월 2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8월 10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사선成士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允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乙丑七月二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趙允同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六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乙丑八月初十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士善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가을장마가 이어져 이미 열흘이 지났는데 잠시 개
었다가 다시 비가 내리니 열매를 맺은 곡식이 손상
될 우려가 없지 않다. 기청 사문영제^{祈晴四門祭}를 해
당 조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13일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12일에 하라고 전교하였다.

을축년¹⁶⁸⁵ 8월 1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최익태^{崔益泰}의 첩정^牒
문에,

‘근래 비가 내린 뒤 강물이 넘치지 않다가 지난밤부
터 강물이 크게 불어 인가가 잠기기까지 하여 측량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청제에 정성을 다하다.

전교하기를,

● 祈晴

一. 曹啓曰：“傳曰：‘秋霖支
離，已浹一旬，乍晴旋雨，尙未
快霽，結實禾穀，不無傷損之
慮，祈晴四門祭，令該曹，趁
卽舉行’事，命下矣。四門祭，
不卜日，來十三日爲始，三日而
止事，知委，何如？”傳曰：“以
十二日爲之。”

乙丑八月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崔
益泰牒呈內：‘近日下雨後，江
水不至漲溢是如可，自去夜江
水大漲，至於人家沈歿，不得
尺量’是如爲白臥乎事。”

● 祈晴致誠

一. 傳曰：“祈雨祈晴，皆出於

“기우제와 기청제는 모두 농사를 유념하는 데서 나왔으니, 정성껏 기도하기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제관을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5월 1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5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朱生}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軫念農事，則致誠祈禱，宜無異同，以此意各別嚴飭于²³祭官。”

丙寅五月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丙寅五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趙朱生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八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²³ 于：저본에는 ‘事’.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8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병인년¹⁶⁸⁶ 5월 2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김천량^{金千良}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5월 2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진문^{金振文}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6월 18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장마가 내린 뒤 가뭄의 재해가 제법 심하였
으나 지방에서 곡식을 손상시키는 비가 아직 깨끗
이 그치지 않았고, 민가가 잠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래 연달아 비가 내릴 조짐이 있었으므로 미처 기

丙寅五月二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金千良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丙寅五月二十八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振文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八尺五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丙寅六月十八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 “頃者霖雨之後,
旱災頗甚, 而外方傷穀之雨,
尚未快霽, 至於人戶漂沒處亦
有之, 而近日連有雨意, 故未
及啓請祈雨之舉矣. 卽今祈

우제를 지내는 일을 계청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경기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전답의 각 곡식이 점차 말라 가고 있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가을철이 비록 하루 남았으나 7월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 가까운 전례도 있으니, 여기에 구애받을 수 없습니다.

1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1일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甸, 久未得雨, 田畚各穀, 漸至焦枯, 前頭民事, 誠爲悶慮. 秋節雖隔一日, 七月禱雨, 亦有近例, 不可以此爲拘. 初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不卜日, 來二十一日設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병인년¹⁶⁸⁶ 6월 21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4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丙寅六月二十一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社稷·宗廟·北郊, 不卜日, 來二十四日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병인년¹⁶⁸⁶ 6월 24일

● 기우제에 중신을 보낸다.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丙寅六月二十四日

● 重臣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不卜日, 來二十七日設行事, 知委, 何

하니, 아뢰는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중신(重臣)과
근시(近侍)를 보내 설행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6월 27일

● 3차 기우제에 대신을 보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제 차례 기도한 뒤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가뭄이
갈수록 혹독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이다. 4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
대신(大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즉시 설행하라. 제문
역시 제학에게 지어 바치게 하고, 나를 닮는 뜻으
로 따로 말을 만들어 보태 넣으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사직·종
묘·북교에 대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30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삼가 정원에 내리신 하교를 보았는데 간절한
정성이 말 밖으로 넘치니, 보고 듣는 사람이 누군들
감동하여 울지 않겠습니까. 이미 음식 가짓수를 줄
이고 술을 금지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각 해당 관사
로 하여금 오늘부터 거행하게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遣重臣·近侍設行.

丙寅六月二十七日

● 三次大臣

一. 曹啓曰：“備忘記：‘三次
祈禱之後，淒風連吹，旱暵愈
酷，言念民事，誠極渴悶。四次
祈雨祭，社稷·宗廟·北郊，遣
大臣，不卜日，趁卽設行，祭文
亦令提學製進，而罪己責躬之
意，別爲措辭添入事，命下矣。
依聖教，社稷·宗廟·北郊，遣
大臣，不卜日，來三十日設行
事，知委，何如?’” 傳曰：“允.”

● 減膳

一. 曹啓曰：“卽伏見下政院之
教，惻怛之誠，溢於言表，凡
在瞻聆，孰不感泣? 既有減膳
·禁酒之命，令各該司，自今
日舉行，而自前減膳·禁酒之
時，則撤樂·勿擊鼓等事，應在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지한 때는 음악을 중지하고 북을 치지 않는 일도 응당 거행하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시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6월 30일

● 사직 친제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 기우 친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월 3일 설행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이날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라는 뜻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술과 담배를 금지함.

전교하기를,
“이번에 친제를 지낼 때 단유^{壇壝}를 출입해야 하는 자는 각별히 재계하고 목욕하여 정성껏 하라고 분부하였다.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등의 일도 착실히 거행하고, 만약 적간^{摘奸}할 때 적발되면 무겁게 과죄^{科罪}하겠다고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舉行之中，亦爲一體分付，何如？”傳曰：“允。”

丙寅六月三十日

● 社稷親祭

一．曹啓曰：“社稷祈雨親祭，不卜日，來七月初三日設行事，命下矣。依聖教，以此日舉行事，分付各該司之意，分付，何如？”傳曰：“允。”

● 酒南草禁

一．傳曰：“今此親祭時，應爲出入於壇壝者，各別齋沐虔誠事，分付。至於禁酒·南草等事，亦爲着實舉行，而如或現發於摘奸之時時，則從重科罪事，嚴申飭。”

一．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재계

예조의 단자에,

“오는 7월 3일 사직 기우 친제 때 전하께서는 오늘
부터 이틀 동안 별전^{別殿}에서 산재^{散齋}하고 하루 동안
향소^{享所}에서 치재^{致齋}하되,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
을 하거나 음악을 듣지 않고,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
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에는 오직 제
향에 관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오는 7월 3일 사직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近侍}
관원으로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 자는 오늘부터 모
두 본사에서 묵으며 이틀 동안 산재하고, 향소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모든 관원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堦門}을 지키는 자는 각
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齋戒

一. 曹單子：“來七月初三日，
社稷祈雨親祭教是時，殿下自
今日散齋二日於別殿，致齋一
日於享所，凡散齋，不吊喪問
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
書，致齋，唯啓享祀事，依禮文
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
爲良如教。

● 享官齋戒

一. 曹單子：“來七月初三日，
社稷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
及近侍之官應從升者，自今日
並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
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
屬守衛堦門者，各於本司清齋
一宿事，知委舉行，何如？”啓
依所啓施行爲良如教。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의식 연습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 기우 친제 때 대소 집사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2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나아갔다가 대가가 재소齎所로 나아간 뒤 중사中使·근시近侍와 함께 사적으로 연습하여 위의를 잃지 말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조복朝服 차림으로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에 나아갔다가 대가가 도착하면 공경히 맞이하라고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는 3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은 2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나아가서 절목대로 4품 이상은 조복 차림,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공경히 맞이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7월 1일

● 친제를 정지하고 대신에게 수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 習儀

一. 曹單子：“今此社稷祈雨親祭時，大小諸執事，除肆儀，初二日質明，先詣祭所爲白有如可，大駕詣齋所後，與中使·近侍，並爲私習，俾無失儀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祗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以朝服，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祗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來初三日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初二日質明，先詣享所，依節目，四品以上朝服，五品以下黑團領祗迎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丙寅七月初一日

● 親祭停大臣收議

一. 曹啓曰：“政院啓辭：‘爲先

“승정원의 계사에,

‘우선 비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아 기우제를 그대로 지내는 일은 지극히 미안하니, 변통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속히 결정하여 그때 가서 다급해지는 우환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택한다.’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大臣에게 수의하니, 영의정 김수항金壽恒과 영종추부사 김수흥金壽興은,

‘이번 친제는 비가 내리기를 빌기 위해서인데, 여輿를 타고 향소享所에 도착한 뒤에 이처럼 비가 쏟아지니, 그대로 기도하는 것은 성실한 도리가 아닙니다. 제사를 실행하려는 때에 도리어 날이 개더라도 이전의 축문祝文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답하고 사례한다는 뜻으로 축문을 고쳐 짓고, 비가 깨끗이 그치지 않으면 성상께서 비를 맞으며 예를 행할 것이니, 비단 모든 일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결국 예를 마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신에게 설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셨습니다. 행 관중추부사 정지화鄭知和, 행관중추부사 민정중閔鼎重, 행관중추부사 이상진李尙眞은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였고, 좌의정 남구만南九萬은 사신으로 나갔고, 봉조하 송시열宋時烈은 지방에 있어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雨勢如此，仍行祈雨祭事，極未安，不可無變通之道，令禮官，急速定奪，俾無臨時窘迫之患，何如？”傳曰：“允”事，傳教矣。議于大臣，則領議政金壽恒·領中樞府事金壽興以爲：“今此親祭，既爲祈雨，而乘輦來詣享所之後，雨勢之滂沱如此，仍行祈請，有非誠實之道，設令行祭之時，還爲開霽，不可仍用前祝，以報謝之意，改撰祝文。而雨勢若不快晴，則自上冒雨行禮，不但凡事之難便，終有不成禮之患，使大臣攝行，似爲便當，伏惟上裁。”行判中樞府事鄭·行判中樞府事閔·行判中樞府事李，病不收議，左議政南出使，奉朝賀宋在外，不得收議。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傳曰：“依議施行，祭文令提學，卽爲改撰。”

하니, 전교하기를,
 “수의대로 시행하고 제문은 제학으로 하여금 즉시
 고쳐 짓게 하라.”
 하였다.

● 평상시처럼 기우제를 설행함.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사직 기우제는 대신^{大臣}의 수의로 인하여 대신
 에게 설행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평상시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설행하는 전례대로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7월 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7월 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손정순^{孫貞順}의 수본에,

● 常時祈雨行

一. 曹啓曰：“今此社稷祈雨
 祭，因大臣收議，使大臣攝行
 事，命下矣。依常時遣大臣祈
 雨祭例設行之意，分付各該
 司，何如？”傳曰：“允。”

丙寅七月初七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趙貴一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丙寅七月初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孫貞順手本內：‘去夜下雨，水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2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장호걸張豪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7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7월 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이성준李成俊의 첩정牒
문예,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標看審, 則一尺二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張豪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七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丙寅七月初九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趙貴一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
李成俊牒呈內: ‘今番下雨, 本
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五
尺五寸, 加漲溢’是如爲白臥
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7월 10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정공열^{丁公說}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9촌 높이로 흘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7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조귀일^{趙貴一}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흘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손정석^{孫貞石}의 수본에,
‘오늘 오시^{午時} 무렵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렸습니다.’

하였습니다.”

丙寅七月初十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丁公說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九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丙寅七月十一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趙貴一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孫貞石手本內: ‘今日午時量,
下雨看審, 則三尺流下’是如爲
白臥乎事.”

하였다.

병인년¹⁶⁸⁶ 7월 19일

●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비망기로 인하여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였습니다. 이미 비가 내렸고 이번 20일은 8월 절기이니, 내일을 시작으로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등의 일을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5월 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석만^{劉碩萬}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丙寅七月十九日

● 復常膳

一. 曹啓曰：“頃因備忘記，減膳·撤樂矣。既已得雨，今二十日，乃是八月節，自明日爲始，復常膳·鼓樂等事，依例舉行之意，分付，何如？”傳曰：“允。”

丁卯五月初七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劉碩萬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八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5월 24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蔓}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5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새벽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丁卯五月二十四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梁尙蔓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十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丁卯五月二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 ‘今曉下雨, 水
標看審, 則五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蔓}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5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이성준^{李成俊}의 첩정牒
문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
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0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5월 2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蔓}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尙蔓手本內：‘今朝下雨，水
標看審，則八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丁卯五月二十七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李
成俊牒呈內：‘今番下雨後，本
津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十
尺五寸，加漲溢’是如爲白臥乎
事。”

丁卯五月二十九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尙蔓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八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6월 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6월 1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이성준^{李成俊}의 첩정^牒
문예,
‘이번 장마로 강물이 넘쳐 강변의 인가가 거의 잠겨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丁卯六月初六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丁卯六月十二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
李成俊牒呈內：‘今番霖雨，江
水漲溢，江邊人家，幾至漂沒，
不得尺量’是如爲白臥乎事。”

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6월 17일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장마가 한 달이 지나도록 잠깐 개었다가 다시 쏟아지며 여전히 날이 갠 조짐이 없다. 지나치게 비가 내리지 않거나 지나치게 비가 내리거나 농사에 해가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무신년¹⁶⁶⁸ 6월 역시 입추^{立秋} 이전에 기청제를 지낸 전례가 있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금년의 장마는 이미 두 달이 넘었으니, 팔도에서 곡식이 상하였다는 장계가 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입추 이전에 기청제를 지낸 전례도 있으니, 며칠 전에 계품하려고 하였으나 이틀 동안 날이 개어 비가 내릴 조짐이 멀어졌으므로 우선 기다렸습니다. 오늘 다시 비가 내리고 성상의 하교가 또 이와 같으니, 기청 사문영제^{祈晴四門禁祭}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0일을 시작으로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丁卯六月十七日

● 祈晴

一. 曹啓曰: “傳曰: ‘淫霖浹月, 乍晴旋注, 尙無開霽之意, 極無極傷, 其爲稼穡之傷損則一也. 而去戊申六月, 亦有立秋前祈晴之例, 其令該曹稟處’ 事, 命下矣. 今年潦雨, 已浹兩月, 八路傷穀之啓, 逐日而至, 立秋前祈晴, 亦有前例, 數日前欲爲啓稟, 而兩日開霽, 雨意似遠, 故姑爲遲待矣. 今日雨勢更作, 聖教又如此, 祈晴四門禁祭, 不卜日, 來二十日, 爲始設行, 三日而止事, 知委各該司, 何如?” 傳曰: “允.”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6월 1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鰲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6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鰲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丁卯六月十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鰲同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丁卯六月二十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鰲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八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올해 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린 재해는 과거에 없던 것이다. 동이를 엮은 듯하고 바다가 뒤집힌 듯하여 산을 삼키고 구룡을 넘어 민가가 잠기고 사람과 가축이 빠져 죽었으니 곳곳이 그리하여 놀랍고 참혹함을 견딜 수 없다. 농사 때문에 몹시 근심스럽기가 거의 가뭄보다 심하니, 어찌 번거롭게 한다는 것을 혐의로 여겨 천천히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해당 조로 하여금 기청 영제祈晴禁祭를 택일하지 말고 다시 설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여러 달 장마가 내려 비단 농사에 큰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실로 드문 재변입니다. 등록을 살펴보니 입추 전에 연달아 설행한 때가 있었고, 성상의 하교도 이와 같으니, 기청 사문 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때에는 따로 축문을 지은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예문관으로 하여금 따로 지어 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祈晴

一. 曹啓曰：“備忘記：‘今年極傷之災，振²⁴古所無，飢盆倒海，懷山襄陵，家戶之漂沒，人畜之溺死，在在皆然。已不勝其驚慘，而其爲農事之切悶，殆有甚於旱乾，豈不以煩瀆爲嫌，而有所遲待乎？其令該曹，祈晴禁祭，不卜日，更爲設行’事，命下矣。今此積月霖雨，非但大害於稼穡，實是罕有之災變，考見曆錄，則立秋前有連次設行之時，而聖教又如此，祈晴四門禁祭，不卜日，來二十六日，爲始設行，三日而止事，分付各該司，而曾前如此之時，則有別撰祝文之舉，今亦依此例，令藝文館別爲撰出，何如？”傳曰：“允。”

24 振：저본에는 ‘抵’.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6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정묘년¹⁶⁸⁷ 6월 25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6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醵同}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
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丁卯六月二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丁卯六月二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醵同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정묘년¹⁶⁸⁷ 6월 30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7월 1일

● 추향대제와 기청제가 겹쳐 날짜를 물리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신^{大臣}의 계사로 인하여 종묘·사직 기청제를 대신
을 보내 설행하라고 윤험을 내리셨습니다. 이번 기
청제는 하루가 급하니 택일하지 말고 거행해야 하는
데, 3일 추향대제 이전에는 형세상 겨를이 없고 예
의상 온당치 않습니다. 4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윤험한다고 전교하였다.

정묘년¹⁶⁸⁷ 7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상기^{李尙起}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丁卯六月三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丁卯七月初一日

● 秋享祈晴相值日退

一. 曹啓曰：“因大臣啓辭，宗
廟·社稷祈晴祭，遣大臣設行
事，允下矣。今此祈晴祭，一日
爲急，所當不卜日舉行，而初三
日秋享大祭之前，則勢既不遑，
禮亦未安，初四日設行之意，
分付，何如？”傳曰：“允。”

丁卯七月二十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尙起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七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3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자근선^{成者斤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戊辰三月十一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者斤善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무진년¹⁶⁸⁸ 4월 1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戊辰四月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무진년¹⁶⁸⁸ 4월 2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상열^{劉尙悅}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

戊辰四月二十二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劉尙悅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5월 24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금년 봄과 여름 사이에는 비가 고르게 적셨기에 제 때 파종하여 보리가 무성해져 풍년이 들 가망이 컸 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이후로 이렇게 가뭄이 들어 이삭이 괜 봄보리가 거의 다 누렇게 말랐습니다. 또 모내기할 때를 맞이하여 농사가 더욱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니,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5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爲白臥乎事.”

戊辰五月二十四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年春夏之交，雨澤周洽，播以時，牟麥茂盛，大有豐登之望矣。今月以來，旱乾至此，發穗春牟，幾盡枯黃，又當移秧之時，農事益復可慮，祈禱之舉，似不可已，初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二十七日設行之意，分付，何如？”傳曰：“允。”

戊辰五月二十七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成次善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6월 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선복^{林善福}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6월 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장필흥^{張必興}의 첩정牒
문예,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3척 5촌이 불어
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6월 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戊辰六月初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林善福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戊辰六月初八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張
必興牒呈內：‘今番下雨後，本
津常流水基良中尺量，則三
尺五寸，加漲溢’是如爲白臥乎
事。”

戊辰六月初九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선복林善福의 수본에,
 ‘오늘 오후에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6월 15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6월 20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흘렀습

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林善福手本內: ‘今日午後下雨, 水標看審, 則八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戊辰六月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成次善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戊辰六月二十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成次善手本內: ‘今日下雨, 標看審, 則六尺流下’是如爲白臥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6월 2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장필흥^{張必興}의 첩정牒
문^牒에,
‘이달 20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
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측량하니 7척이 불어
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6월 2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기^{李起}의 수본^{水本}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乎事.”

戊辰六月二十一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
張必興牒呈：‘今月二十日下雨
後，本津常流水基良中，以布
帛尺尺量，則七尺加漲溢’是如
爲白臥乎事。”

戊辰六月二十二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起手本內：‘今日下雨，水標
看審，則五尺流下’是如爲白臥
乎事。”

무진년¹⁶⁸⁸ 7월 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만세^{俞萬世}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오후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7월 14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만세^{俞萬世}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戊辰七月初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俞萬世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五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 ‘今日午後下
雨, 水標看審, 則六尺流下’是
如爲白臥乎事.”

戊辰七月十四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俞萬世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무진년¹⁶⁸⁸ 7월 2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진년¹⁶⁸⁸ 8월 1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사년¹⁶⁸⁹ 7월 16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금년에는 날씨가 순조로워 온갖 곡식이 무성하여
 거의 풍년이 들 가망이 있었습니다. 불행히 근래 나
 쁜 바람이 계속 불고 가뭄이 몹시 심하여 이삭이 패
 어 열매를 맺은 곡식이 날마다 손상되니, 농사를 생
 각하면 애타고 걱정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

戊辰七月二十八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戊辰八月十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尙萬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己巳七月十六日

● 初次

一. 曹啓曰：“今年雨暘時若，
 百穀茂盛，庶幾有豐登之望
 矣。不幸近日以來，惡風連吹，
 旱氣太甚，發蘇結實之穀，日
 就傷損，念及民事，不勝渴悶。
 卽今秋節雖屆，不可不及時祈

다. 지금 비록 가을이 시작되었으나 때맞추어 기우제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제관을 가려 정하여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여 급히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사년¹⁶⁸⁹ 7월 18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 이후 비가 내릴 조짐이 없어 농사가 애타고 걱정입니다.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1일 설행하겠습니다.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에 따로 중신^{重臣}을 보내 정성껏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사년¹⁶⁸⁹ 7월 21일

● 비망기

비망기에,

“한창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때에 바람과 가뭄의 재해가 거의 20일이 넘었고, 정성껏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 것도 이미 두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하늘을 보

雨, 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擇定祭官, 不卜日, 來十八日設行之意, 知委各該司, 急速舉行, 何如?” 傳曰: “允.”

己巳七月十八日

● 再次

一. 曹單子: “初次祈雨之後, 雨意漠然, 民事渴悶. 再次祈雨祭, 不卜日, 來二十一日設行, 而社稷·宗廟·北郊等處, 別遣重臣, 虔誠祈雨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己巳七月二十一日

● 備忘

一. 備忘記: “正當萬寶收成之節, 風旱之災, 殆浹二旬, 虔誠祈雨, 已至二次, 而視天夢夢, 雨意邈然, 鋤後之旱, 農家最

면 아득하여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다. 김맹 뒤의 가뭄은 농가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니,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백성이 장차 죽어 구덩이를 메울 것이다. 이를 생각하니 어찌할 줄 모르겠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3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 대신^{大臣}을 보내 즉시 설행하게 하라.” 하였다.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 대신^{大臣}을 보내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택일하지 말고 오는 24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사년¹⁶⁸⁹ 7월 24일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忌，失今不雨，民將填壑，言念及此，罔知攸措。其令禮官，三次祈雨祭，社稷·宗廟·北郊，遣大臣，趁卽設行。”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社稷·宗廟·北郊，遣大臣設行事，命下矣。不卜日，來二十四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己巳七月二十四日

一. 曹單子：“四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不卜日，來二十七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기사년¹⁶⁸⁹ 7월 2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中部水標直} 김건^{金健}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사년¹⁶⁸⁹ 7월 2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건^{金健}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己巳七月二十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健手本內：‘今日下雨，水標
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爲
白臥乎事。”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己巳七月二十九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健手本內：‘去夜下雨，水標
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臥
乎事。”

기사년¹⁶⁸⁹ 8월 10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상열^{劉尙悅}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비가 지나치게 내리지 않거나 지나치게 내리거나
곡식을 손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차가운 비
가 거의 반 달 동안 내려 잠깐 개었다가도 다시 쏟아
아지니 날이 갠 기약이 없습니다. 가뭄을 겪고 조금
소생하던 곡식이 또 장차 물에 잠겨 썩을 우환이 있
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
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영제^{四門營祭}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2일에 향
을 받고 13일에 시작해서 3일 뒤에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사년¹⁶⁸⁹ 8월 12일

● 영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己巳八月初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劉尙悅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五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祈晴

一. 曹啓曰：“極無極傷，損傷
禾穀則一也。近來冷雨，殆至
半月，乍晴旋注，開霽無期，旱
餘稍蘇之穀，又將有沈沒腐傷
之患，言念民事，誠可渴悶，祈
晴之舉，不容小緩。四門營祭，
不卜日，來十二日受香，十三日
爲始，三日而止事，知委各該
司，何如？”傳曰：“允。”

己巳八月十二日

● 營祭停

一. 曹啓曰：“祈晴祭，今日當

“기청제를 위해 오늘 향^향을 받아야 하는데, 비가 깨끗이 그쳐 지금은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형세를 보아 여쭙어 처리한 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승정원이 이미 아뢰어 거행하지 않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사문영제^{四門營祭}를 위해 오늘 향^향을 받아야 하는데, 어제부터 날이 개기 시작하여 밤사이 하늘이 맑고 시원해져 비가 내릴 기후가 없는 듯합니다. 지금 이 사문영제는 우선 며칠 동안 보았다가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사년¹⁶⁸⁹ 11월 16일

● 기설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눈이 쌓이면 풍년이 들 징조인데, 겨울이 이미 반이 지났으나 아직 눈이 내리지 않아 가을같이한 보리가 필시 많이 얼어 손상될 것이다. 내년의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기설제를 해당 조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거행하게 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기설제를 전례대로 종묘·사직·북교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9일

爲受香，而雨意雖快霽，卽今姑不下雨，更爲觀勢，稟處後舉行，何如?”【政院已啓勿爲舉行】

一. 政院啓曰：“四門營祭，今日當爲受香，而自昨日始霽，夜來天氣清涼，似無雨候。今此營祭，姑觀數日設行，何如?” 傳曰：“允。”

己巳十一月十六日

● 祈雪

一. 曹啓曰：“傳曰：‘積雪驗豐熟，而冬序已半，尙靳三白，秋畊麴麥，必多凍傷，嗣歲之憂，有不可勝言。祈雪祭，令該曹考例舉行’事，傳教矣。祈雪祭依前例，宗廟·社稷·北郊，遣重臣，不卜日，來十九日設行之意，分付，何如?” 傳曰：“允。”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기사년¹⁶⁸⁹ 11월 17일

● 기설제를 물러 설행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전교로 인하여 기설제를 이달 19일 설행하도록 해
당 조가 여쭙어 윤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오
늘 아침에 눈이 조금 내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
울철이 남은 날이 많으니, 우선 형세를 보아 물러 행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이렇게 우
러려 여쭙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4월 16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 나쁜 바람이 계속 불어 밀과 보리가 이미 말
라 다시 소생할 가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내와 못
의 물도 점차 말라서 때맞추어 파종하지 못한 곳이
많으니, 앞으로 농사가 참으로 지극히 걱정입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
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9일 정성껏 기

己巳十一月十七日

● 祈雪

政院啓曰：“因傳教，祈雪祭，
以今月十九日設行事，自該曹
稟處蒙允。而非但今朝已得小
雪，前頭冬節，尙多餘日，姑爲
觀勢退行，似合事宜，敢此仰
稟。”傳曰：“依爲之。”

庚午四月十六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近來惡風連吹，
兩麥已枯，非但無望更蘇，川
澤水根漸涸，多有未及時種之
處，前頭民事，誠極可慮，祈
雨之舉，不可少緩。初次祈雨
祭，風雲雷雨·山川·雪祀·三
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
日，來十九日，虔誠祈禱之意，

도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4월 19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어제 비록 비가 조금 내렸으나 마른 곡식을 되살리
기 부족하니, 2차 기우제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
다. 사직·종묘·북교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2일 설
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4월 22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
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설
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중신^{重臣}과 근시^{近侍}를 보내 정성껏 기도하라고
계하하였다.

知委，何如？”傳曰：“允。”

庚午四月十九日

● 再次

一．曹單子：“昨日雖得小雨，
不足以蘇枯，再次祈雨之舉，
不容少緩。社稷·宗廟·北郊，
不卜日，來二十二日設行事，知
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
良如教。

庚午四月二十二日

● 三次

一．曹單子：“三次祈雨，風雲
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
覓山，漢江沈虎頭，不卜日，
來二十五日設行事，知委，何
如？”啓遣重臣近侍，虔誠祈
禱爲良如教。

경오년¹⁶⁹⁰ 4월 25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이미 설행하였으나 비가 내릴 조짐이 없어 농사가 애타고 걱정입니다. 4차 기우제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9일에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4월 26일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지방 산천에 4차 기우제를 29일 설행하도록 방금 계하하였다. 그러나 가뭄의 재해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평상시의 규례만 굳게 지킬 수 없다. 종묘·사직·북교에 대신大臣을 보내 설행하고, 제문에 나를 타하는 뜻으로 따로 말을 만들어 지어 바치라고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양진 등 다섯 곳은 지금 우선 정지하고, 성상의 하교대로 종묘·사직·북교에

庚午四月二十五日

● 四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已爲設行, 而雨意漠然, 民事渴悶. 四次祈雨祭, 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 遣重臣, 不卜日, 來二十九日設行,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 各該司及京圻監司處,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庚午四月二十六日

● 四次

一. 曹啓曰: “傳曰: ‘外山川四次祈雨祭, 二十九日設行事, 纔已啓下. 而旱災至此, 不可謬守常規, 宗廟·社稷·北郊, 遣大臣設行, 祭文中罪己責躬之意, 別爲措辭撰進事, 分付’ 事, 命下矣. 楊津等五處, 則今姑停止, 依聖教, 宗廟·社稷·北郊, 遣大臣, 四次祈雨祭, 以前定二十九日, 虔誠設行之意,

대신을 보내 4차 기우제를 예전에 정한 29일에 정성껏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지하고 복을 치지 않는 따위의 일을 해당 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오늘부터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지하고 복을 치지 않는 따위의 일을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4월 2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이선^{成二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知委各該司，何如？”傳曰：“允。”

● 減膳

一. 曹啓曰：“備忘記：‘減膳·禁酒·勿擊鼓等事，令該曹舉行’事，命下。依聖教，自今日減膳·禁酒·勿擊鼓等事，分付各該司，何如？”傳曰：“允。”

庚午四月二十八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成二先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一尺三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경오년¹⁶⁹⁰ 4월 2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曼}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5월 1일

● 6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삼정승의 차자^{劄子}로 인하여 정성껏 기도하는 예
를 계속 행하여 감응하는 효과를 얻기를 바라는 일
을 해당 조로 하여금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게 하라
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5차 기우제를 양진·덕진·오
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일에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
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庚午四月二十九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尙曼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庚午五月初一日

● 六次

一. 曹啓曰：“因三公劄，仍行
虔禱之禮，冀收感應之效事，
令該曹稟處事，命下矣。五次祈
雨祭，楊津·德津·五冠山·紺
岳山·松岳山等處，遣重臣，不
卜日，來初六日設行，典祀官·
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
官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
之意，各該司及京圻監司處，
知委，何如？”傳曰：“允。”

경오년¹⁶⁹⁰ 5월 6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焚柴}는 같은 날 역시 전례대로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5월 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이선^{成二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5월 20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庚午五月初六日

● 七次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不卜日，來初十日，楮子島·龍山江·冠岳山，遣重臣，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同日亦爲依例設行爲白乎矣，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事，各該司及京圻監司處，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庚午五月初九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成二先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庚午五月二十日

● 八次

一. 曹單子：“祈雨祭，姑觀

“기우제를 우선 대엿새 보았다가 거행하라고 탐전에
서 결정하였습니다. 근래 지방의 보고를 보건대 비
가 내린 곳도 여전히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고, 지금
구름이 흩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날마다 불어 비가
내릴 조짐이 없어 농사가 걱정입니다. 연달아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7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에 다시 중신重臣
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 다시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3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5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만세俞萬世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5월 25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

五六日舉行事，定奪於榻前矣。
近以外方報聞觀之，得雨之
處，猶不至於浹洽，卽今朝雲
施散，淒風日吹，雨意漠然，民
事可慮，連次禱雨之舉，似不
可已。七次祈雨祭，風雲雷雨·
山川·雩祀，更遣重臣，三角山
·木覓山·漢江，更遣近侍，不
卜日，來二十三日設行之意，知
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
良如教。

庚午五月二十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俞萬世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庚午五月二十五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조정석^{趙廷碩}의 첩정牒
문^文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4척 5촌이 불어
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만세^{兪萬世}의 수본^{水本}에,
‘오늘 오후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5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만세^{兪萬世}의 수본^{水本}에,
‘오늘 진시^{辰時}, 오전 7~9시 무렵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
니 9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爲白臥乎事.”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趙廷碩牒報內：‘今番下雨後，本津常流水基良中尺量，則以布帛尺四尺五寸，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兪萬世手本內：‘今日午後下雨，水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庚午五月二十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兪萬世手本內：‘今日辰時量下雨，水標看審，則九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6월 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시웅^{金時雄}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6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유시^{酉時, 오후 5~7시} 무렵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
니 3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6월 17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庚午六月初一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時雄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庚午六月十一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 ‘今日酉時量下
雨, 水標看審, 則三尺流下’是
如爲白臥事.”

庚午六月十七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 “備忘記: ‘正當
南訛之節, 彌日恒暘, 虐炎如

‘한창 여름철을 맞이하여 연일 항상 날이 맑고 모진 화염이 타는 듯하니, 온갖 곡식이 타서 추수를 바랄 가망이 없다.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이다. 정성껏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0일 정성껏 기도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6월 20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서학령^{徐鶴齡}의 수본에,
‘오늘 인시^{寅時}, 오전 3~5시에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3일 설행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焚，焦我百穀，望斷西成。言念民事，誠極渴悶，虔誠祈禱之舉，不容少緩。其令禮官稟處’事，命下矣。依聖教，初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二十日，虔誠祈禱之意，知委，何如？”傳曰：“允。”

庚午六月二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徐鶴齡手本內：‘今日寅時下雨，水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再次祈雨祭，社稷·宗廟·北郊，遣重臣，不卜日，來二十三日設行之意，知委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경오년¹⁶⁹⁰ 6월 2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2차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의 단자에,
“사직·종묘·북교 등의 장소의 2차 기우제는 오늘 향
향을 받아야 하는데, 밤사이 단비가 쏟아졌고 아직
도 비가 내릴 조짐이 있으니, 지금 우선 정지하고 앞
으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6월 25일

예조의 단자에,

庚午六月二十二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再次停止

一. 曹單子：“社稷·宗廟·北郊
等處，再次祈雨祭，今日當爲
受香，而夜來甘霖霈然，尙且
有雨意，今姑停止，以觀前頭，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
教。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庚午六月二十五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成次善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경오년¹⁶⁹⁰ 7월 7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2차 기우제를 위해 향^香을 받는 날 비가 내
 렸기 때문에 우선 정지하고 앞으로 보자는 뜻을 아
 뢴어 윤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미 십수 일이 지났
 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없어 뜨거운 해가 타는 듯하
 고 곡식이 점차 말라 농사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
 다. 그러므로 어제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뜻을 아
 뢴고자 하였는데, 어제 아침 마침 소나기가 내렸으
 므로 우선 정지하였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햇볕이 더욱 치열하고 가뭄 기운이
 더욱 무성하여 예전과 차이가 없으니, 앞으로의 농
 사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먼지를 적실 정도의 비가
 내렸다고 해서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정지할 수 없
 습니다. 또 입추 이후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 전
 례가 많으니, 예전에 계청한 대로 2차 기우제를 사
 직·종묘·북교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庚午七月初七日

● 祈雨再次

一. 曹啓曰：“頃者再次祈雨祭
 受香之日，因下雨，姑爲停止，
 以觀前頭之意，稟啓蒙允矣。
 今已十數日，雨意漠然，烈日
 如焚，禾穀漸枯，民事極爲可
 慮，故昨日以祈雨祭設行之意，
 將欲啓稟矣。昨朝適下驟雨，
 故姑爲停止，今日則歔炎益
 熾，暎氣尤盛，與前無異，前
 頭農事，誠爲可慮，不可以涸
 塵之雨，仍停祈雨之舉，且立
 秋後祈雨，多有前例，依前啓
 請，再次祈雨祭，社稷·宗廟·
 北郊，遣重臣，不卜日，來初十
 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
 曰：“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7월 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기우제를 예조의 초기로 인하여 7일 설행하도록 이
미 관하^{判下}하였으니 오늘 향^香을 받아야 합니다. 그
러나 근래 가뭄이 몹시 심하다가 지난밤에 내린 비
가 쟁기날만큼 적셨으니, 그대로 설행하는 것은 몹
시 번거로운 듯합니다. 우선 앞으로 보았다가 다시
여쭙어 거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오
늘 향^香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
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번거롭다는 말이 옳은 듯하니, 계사대로 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庚午七月初九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祈雨停

一. 政院啓曰：“祈雨祭因禮曹
草記，初七日設行事，既已判
下矣。今日當爲受香，而近來
旱氣太甚，去夜之雨，亦洽一
犂，而仍爲設行，殊涉煩瀆，姑
觀前頭，更稟舉行，似合事宜。
今日受香，何以爲之？敢啓。”
傳曰：“煩瀆之說，似自得意，
依啓辭爲之。”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함李涵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7월 1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함李涵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8월 3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고차만高次萬의 수본에,

李涵手本內：‘今日下雨，水標
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臥
乎事。”

庚午七月十二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涵手本內：‘今日下雨，水標
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臥
乎事。”

庚午八月初三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高次萬手本內：‘去夜下雨，看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12월 3일

● 기설제

이번 12월 3일 대신^{大臣}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기설제를 사직·종묘·북교에 특별히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8일 설행하라고
탐전에서 결정하였다.

경오년¹⁶⁹⁰ 12월 11일

● 2차 기설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설제를 설행한 뒤 이미 여러 날이 지났으나 눈이
내릴 조짐이 더욱 막연합니다. 예전에 임술년¹⁶⁸²에
2차 기설제를 설행한 일이 있으니, 이번에도 임술년
의 전례대로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重臣}을 보내
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근시^{近侍}를 보내 택일하
지 말고 오는 15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庚午十二月初三日

● 祈雪祭

一. 今十二月初三日，大臣·備
局堂上引見入侍時，祈雪祭，
社稷·宗廟·北郊，別遣重臣，
不卜日，來初八日設行事，榻前
定行.

庚午十二月十一日

● 祈雪再次

一. 曹啓曰：“祈雪祭設行之
後，已過累日，雪意愈漠，曾在
壬戌年，有再次祈雪祭設行之
事. 今亦依壬戌年例，風雲雷
雨·山川·雩祀，遣重臣，三角
山·木覺山·漢江，遣近侍，不
卜日，來十五日設行之意，知
委，何如?” 傳曰：“允.”

신미년¹⁶⁹¹ 5월 28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5월 28일 우의정이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해당 조로 하여금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속히 설행하라고 탑전 하교하셨습니다. 근래 가뭄이 제법 혹심하여 한창 계품하려던 차에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역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2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⁶⁹¹ 6월 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1차 기우제를 2일에 설행하도록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향훈을 받아야 하는데 어젯밤부터 단비가 쏟아져 현재 날이 갠 조짐이 없으니, 지금 우선 정지 하고 앞으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辛未五月二十八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五月二十八日，右議政請對入侍時，令該曹，祈雨祭，不卜日，從速設行事，榻前下教矣。近來旱氣頗酷，方欲啓稟之際，聖教如此，初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雲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六月初二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曰：“允。”

辛未六月初一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成次善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政院啓曰：“初次祈雨祭，初二日設行事，允下矣。今日當爲受香，而自昨夜甘霖霈然，時無開霽之意，今姑停止，以觀前頭，何如？”傳曰：“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⁶⁹¹ 6월 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조정석^{趙廷碩}의 첩정^牒문^文에,

‘이달 1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4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미년¹⁶⁹¹ 6월 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조정석^{趙廷碩}의 첩정^牒문^文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8척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辛未六月初二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趙廷碩牒報內：‘今月初一日下雨後，本津常流水基良中尺量，則以布帛尺四尺五寸，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辛未六月初九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趙廷碩牒報內：‘今番下雨，本津常流水基良中尺量，則以布帛尺八尺，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신미년¹⁶⁹¹ 6월 13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만세^{俞萬世}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辛未六月十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俞萬世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신미년¹⁶⁹¹ 6월 1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시웅^{金時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7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辛未六月十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時雄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五尺七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신미년¹⁶⁹¹ 7월 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6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辛未七月初六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六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신미년¹⁶⁹¹ 7월 1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귀석^{李貴碩}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미년¹⁶⁹¹ 7월 2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미년¹⁶⁹¹ 윤7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성차선^{成次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辛未七月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貴碩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辛未七月二十九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辛未閏七月十一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成次善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신미년¹⁶⁹¹ 윤7월 14일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가을비가 이어져 경기의 이삭이 뽕 곡식이 손상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도 수해를 입은 곳이 있어 곡식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때는 으레 기청제를 설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조曹(예조)에서 한창 계품하고자 하였는데 대신大臣의 뜻도 이와 같으니, 전례대로 택일하지 말고 이달 17일을 시작으로 사문영제四門祭를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⁶⁹¹ 윤7월 1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말선金耑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辛未閏七月十四日

● 祈晴

一. 曹啓曰：“秋雨支離，圻田發穗禾穀，不無損傷之患，至於外方，亦有水災之處，以致禾穀之損傷云。自前如此之時，則例有祈晴祭設行之舉，故臣曹方欲啓稟，而大臣之意，亦如此，依前例，不卜日，今月十七日爲始，四門祭，三日而止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辛未閏七月十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金耑善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임신년¹⁶⁹² 4월 20일

● 승정원의 기우제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나라가 불행하여 기근이 겹칩니다. 작년 삼남^{三南}의 참혹한 고통은 옛날에도 없던 일이어서 백성의 재산이 이미 고갈되고 나라의 저축도 따라서 줄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백성은 오로지 올봄의 밀과 보리에 의지하고 있으나, 몇 달 이래로 가뭄의 재해가 갈수록 심해져 먹구름이 아침저녁으로 끼고 서늘한 바람이 늦게 일어나 해가 짹짹하여 비가 내릴 조짐이 없습니다. 연달아 각 도의 장계를 받으니 심한 가뭄의 재해는 대체로 모두 그러합니다.

간혹 비가 조금 내려도 호미날만큼이나 쟁기날만큼 적시고 말 뿐이며, 간혹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보리는 이미 추수할 기대를 잃었고, 벼와 기장 역시 파종할 시기를 놓쳤으니, 거리와 논밭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급해합니다. 만약 2, 3일 내로 끝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올가을 농사를 전혀 기대할 수 없어 죽어 뒹구는 우환이 형세상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조정에서 비록 구제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예전에 저축이 고갈되었으니 어떻게 앞으로 이어서 진휼하겠습니까. 이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떨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는 근검하고 검소한 덕이 여러 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백성을 우려하여 밤낮으로 계속하니, 어떤 정사의 흠과 무슨 일의 잘못이

壬申四月二十日

● 政院祈雨啓辭

一. 政院啓曰：“國家不幸，饑荒荐臻，上年三南殿屎之慘，振古所無，民產既竭，國儲隨罄，溝壑餘瘠，專靠今春兩麥，而數月以來，旱災日甚，陰霧朝昏，淒風晚起，出日杲杲，雨意漠然。連接各道狀啓，亢旱之災，大抵皆然，時或小雨，槩不過一鋤一犂而止，或有全不得雨之處，牟麥既失登場之望，禾黍亦愆播種之期，街巷阡陌之間，人皆遑遑。若於數三日內，終²⁵慳霑澤，來秋²⁶穡事，斷²⁷無可冀，顛連之患，勢所必至，朝家雖欲調濟，業已罄儲於既往，何以繼賑於方來？思之至此，不覺寒心。伏惟聖上，勤儉之德，高出百王，

25 終：저본에는 ‘經’.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4월 2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6 秋：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4월 2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7 斷：저본에는 ‘雖’.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4월 2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늘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늘이 이 지경으로 재해를 내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정전正殿을 피하며 희생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비록 형식에 가까운 듯하지만, 상림桑林에서 기도하자 천 리에 비가 쏟아졌으니, 감응하는 이치는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릅니다. 하늘이 높다 한들 감응하기가 어찌 어렵겠습니까. 오직 밝으신 성상께서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에서는 지금까지 전례를 인용하여 거행한 일이 없고, 성상께서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움직이는 일이 없으니, 재해를 만나 수신하고 반성하며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담당 관사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기우제를 설행하게 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방도를 다 한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은 성상과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 구구한 소회를 감히 이렇게 아뢰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망종芒種이 이미 다가왔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더욱 막연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이 다. 기도를 설행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계사를 보니 참으로 나의 뜻에 맞는다. 해당 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24일로 정하게 하라.”

하였다.

憂念元元，夜以繼日，未知奚政之疵，奚事之失，有所不契於天，而天之降災，乃至於此？減膳·避殿，薦牲·瘞璧，雖或近於文具，而桑林一禱，滂沱千里，感應之理，捷於影響，上天雖高，降格何難？惟在聖明誠與不誠，而該曹迄無援例舉行之事，聖上亦無憂懼恐動之舉，殊非遇災修省，恪謹天戒之意。宜令攸司，不卜日設行祈雨祭，以盡敬天怒勤民事之道，不勝幸甚。臣等忝在近密之地，區區所懷，敢此仰達。”傳曰：“芒種已迫，雨意逾漠，言念民事，誠極渴悶，方欲設行祈禱矣。今觀啓辭，正合予意，其令該曹，不卜日，定於二十四日，可也。”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로 인하여,
‘망종이 이미 다가왔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더욱 막연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이다. 지금 기도를 설행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계사를 보니 참으로 나의 뜻에 맞는다. 해당 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24일로 정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근래의 심한 가뭄은 북관과 경기가 더욱 심하니, 나머지 6도는 3월 이후 쟁기날만큼 비가 내리기도 하고 호미날만큼 비가 내리기도 하였으나 모두 한바탕 큰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나다. 망종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하니, 농사가 너무도 걱정입니다.

신의 조曹, 예조에서도 모르지 않으나 얼마 전 기우제를 설행하라는 뜻을 묘당에 물어 의논하였더니, 대신大臣의 뜻은,

‘지방에 비가 많이 내렸는지 적게 내렸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니, 우선 대엿새 보았다가 행하기를 청하더라도 무방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처 계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으니 가뭄을 근심하는 뜻이 가득합니다.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오는 24일 성상의 하교대로 정성껏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라고 분부하

● 初次

一. 曹啓曰：“因政院啓辭，‘芒種已迫，雨意逾漠，言念民事，誠極渴悶，方欲設行祈禱矣。今觀啓辭，正合予意，其令該曹，不卜日，定於二十四日可也’事，命下矣。近來亢旱，北關及圻田尤甚，其餘六道，三月以後，或得一犁之雨，或得一鋤之雨，而俱未有一場大霑，芒種只隔一日，淒風連吹，雨意漠然，民事之十分可慮。臣曹亦非不知，纔以祈雨祭設行之意，稟議於廟堂，則大臣之意，以爲外方之得雨多少，未及詳知，姑觀五六日，請行無妨云，故未及啓請矣。今承聖教，藹然有悶旱之意，初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來二十四日，依聖教，虔誠祈雨之意，分付，何如？”傳曰：“允。”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4월 2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촌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4월 23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1차 기우제를 위해 오늘 향^香을 받아야 하는데, 어
제 내린 비가 비록 충분히 적시지는 못하였으나 지
금 비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축문에 오로
지 ‘심한 가뭄’이라고 말하였으니 이를 그대로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앞으로 보았다가 다시 해당
조로 하여금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대신^{大臣}의 뜻도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
웁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壬申四月二十二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金甲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六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壬申四月二十三日

● 祈雨停

一. 政院啓曰: “初次祈雨祭,
今日當爲受香, 而昨日之雨,
雖未浹洽, 卽今雨意, 猶未開
霽. 且祝文中, 專以亢旱爲辭,
不可以此仍用, 姑觀前頭, 更
令該曹稟處, 何如? 大臣之意
亦如此, 故敢啓.” 傳曰: “依爲
之.”

임신년¹⁶⁹² 5월 6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달 한 달 동안 누차 비가 내렸으나 끝내 한바탕 시원하게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가뭄은 가까운 경기가 더욱 혹심하니,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속히 청하여 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묘당의 논의는 모두,

‘얼마 전에 중지하고 다시 청하는 것은 성실함이 부족하며, 연달아 비가 내릴 조짐이 있으니 행여 비가 내릴 가망이 없지 않다.’

라고 하며 하루 이틀 천천히 기다리다가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각 도의 장계를 연달아 받으니, 비록 간간히 비가 내린 곳은 있으나 모두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으며, 망종이 지나고 20일이 다가오는데 시일을 기다리다가 절기가 점차 늦어졌습니다. 근래 아침노을이 바로 개고 뜨거운 햇볕이 항상 내리쬘니, 앞으로 10일을 놓치면 농사는 필시 심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정성껏 기도하는 일을 결코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9일 설행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壬申五月初六日

● 初次

一. 曹啓曰：“前月一朔之內，累次得雨，而終未有一場快注，旱乾之慘，近圻尤酷，祈雨之舉，固當亟請設行，而廟堂之議，皆以爲纔寢旋請，似欠誠實，連有雨徵，或不無庶幾之望，故一日二日，遲待至此矣。連接各道狀啓，雖有間間得雨之處，而俱未浹洽，芒種之過，二旬將迫，等待時日，節序漸晚，近來朝霞旋霽，烈炎長曝，前頭差失一句，則民事必至十分之境，虔誠祈禱之舉，決不可少緩。初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初九日設行之意，知委舉行，何如？”傳曰：“允。”

임신년¹⁶⁹² 5월 9일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2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신^{大臣}을 보내 설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5월 12일

● 2차 기우제 후 남교 친제

전교하기를,

“2차 기우제 이후 하늘을 보니 아득하여 아직도 비가 쏟아지지 않는다. 농사를 생각하면 마치 내 몸이 아픈 듯하다. 내 성의가 알아 하늘의 마음을 감격시키지 부족하여 농사가 애타고 걱정스럽기가 이와 같으니, 몸소 남교에 가서 희생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14일로 정하여 행하게 하라.”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5월 14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蔓}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壬申五月初九日

一. 曹單子：“再次祈雨祭，社稷·宗廟·北郊，不卜日，來十二日設行之意，知委，何如？”啓遣大臣設行爲良如教。

壬申五月十二日

● 再次後南郊親祭

一. 傳曰：“再次祈雨之後，視天夢夢，尙靳沛澤，言念民事，若恫躬在，顧予誠意淺薄，不足以感格天心，而民事之渴悶至此，躬詣南郊，代犧祈禱之舉，不容少緩。其令禮官，不卜日，以十四日定行。”

壬申五月十四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梁尙蔓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5월 17일

● 3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을 얼마 전 탐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풍운뇌우·산천은 이미 친제를 지냈고, 나머지 우사에 중신^{重臣}을 보내며,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근시^{近侍}를 파견하여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1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5월 2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5월 22일

예조의 단자에,

壬申五月十七日

● 三次

一. 曹啓曰：“祈雨祭設行事，
纔已定奪於榻前矣。風雲雷雨
·山川，既經親祭，其餘雩祀，
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
沈虎頭，遣近侍，三次祈雨祭，
不卜日，來二十一日設行之意，
知委，何如？”傳曰：“允。”

壬申五月二十一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金甲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壬申五月二十二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5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강후정(姜厚精)의 첩정(牒呈)에,
 ‘어제저녁 때부터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준
 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측량하니 2척 6촌이 불어났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6월 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6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林信民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壬申五月二十六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²⁸
 姜厚精牒呈內：‘自昨日夕時，
 本津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
 尺量，則二尺六寸，加漲溢’是
 如爲白臥乎事。”

壬申六月初二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金甲生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六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²⁸ 丞：저본에는 ‘承’. 문맥에 근거하
 여 수정. 이하 ‘渡承’은 모두 ‘渡丞’으
 로 수정

임신년¹⁶⁹² 6월 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8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6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강후정^{姜厚精}의 첩정牒
문예,
‘오늘 아침 먹을 때부터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
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7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6월 13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윤동^{趙允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3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壬申六月初九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允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八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壬申六月十一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姜
厚精牒呈內：‘自今日朝食時，
本津常流水基良中尺量，則以
布帛尺七尺五寸，加漲溢’是如
爲白臥乎事。”

壬申六月十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允同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三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6월 1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6월 1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강후정^{姜厚精}의 첨정^{添正}
문에,
‘그저께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한강진)의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4척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6월 1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상기^{李尙起}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壬申六月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金甲生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十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壬申六月十八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
姜厚精牒呈內: ‘再昨下雨後,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十四尺, 加漲溢’是如爲白臥乎
事.”

壬申六月十九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尙起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流下’是如爲白

흘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6월 20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강후정^{姜厚精}의 첩정牒
문^牒에,
‘본진^{本津}(한강진)에 지난밤까지 큰물이 저서 강변 가장
낮은 곳의 인가 5호^戶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6월 25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의 수본^{水本}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2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7월 1일

예조의 단자에,

臥乎事.”

壬申六月二十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姜
厚精牒呈內: ‘本津, 自去夜,
大水漂流, 江邊最下處人家五
戶, 沈水是如爲白臥乎事.’”

壬申六月二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金甲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二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壬申七月初一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두만^{金斗萬}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2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7월 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두만^{金斗萬}의 수본에,
‘오늘 새벽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8촌 높이
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신년¹⁶⁹² 7월 1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남부 수표직 김갑생^{金甲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9척 1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金斗萬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七尺二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壬申七月初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斗萬手本內：‘今曉下雨，水
標看審，則七尺八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壬申七月十二日

一. 曹單子：“節呈南部水標直
金甲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九尺一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임신년¹⁶⁹² 8월 10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장석^{李長碩}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유년¹⁶⁹³ 8월 18일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가을비가 곡식에 해를 입히는 것이 실로 농가에서
꺼리는 것인데, 지금 가을이 이미 깊어 날씨가 비록
춥지는 않지만 누차 비가 내려 조금 그쳤다가 조금
내리고, 종종 쏟아지는 것이 마치 여름철의 장마 같
습니다. 익어 가는 곡식이 상할 우려가 필시 많을 것
입니다. 강물이 불어난 것도 5척 남짓이니, 이로 미
루어 보면 지방에 내리는 비는 서울보다 더할 것이
니, 농사가 몹시 걱정입니다. 예전에 가을비가 지루
하게 내리면 으레 영제^{靈濟}를 설행하는 일이 있었습
니다. 기청 사문영제^{祈晴四門靈濟}를 택일하지 말고 오
는 20일을 시작으로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壬申八月初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長碩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癸酉八月十八日

● 祈晴

一. 曹啓曰：“秋雨害穀，實是
農家之所忌，即今秋序已深，
日候雖不至凄冷，累次下雨，
乍止乍作，雨勢往往暴注，有
所夏節之淫雨者然，向熟禾
穀，堰傷之患必多，江水頗漲，
至於五尺有餘。以此推之，則
外方雨水，似有加於京中，民
事十分可慮。在前秋雨支離，
則例有祭設行之舉，祈晴四
門祭，不卜日，來二十日爲
始，三日而止事，知委，何如？”
傳曰：“允。”

갑술년¹⁶⁹⁴ 7월 7일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 비가 비록 계속해서 쏟아지지는 않으나 잠시
개었다가 잠시 쏟아지며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
습니다. 입추 이후로 이미 20일이 지났는데 비가 더
욱 심하게 내려 날이 깎 가뭄이 전혀 없으니, 곡식이
손상되어 농사가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전례대로 택일하지 말고
오는 9일을 시작으로 사문영제^{四門營祭}를 3일 뒤에 중
지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甲戌七月初七日

● 祈晴

一. 曹啓曰：“近日雨水，雖不
至於一意暴注，而乍霽乍注，
無日不雨。立秋之後，已愈二
旬，而雨意愈盛，杳無開霽之
望，禾穀損傷，民事可慮，祈
晴之舉，似不可已。依前例，不
卜日，來初九日爲始，四門營
祭，三日而止事，知委舉行，何
如？”傳曰：“允。”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유승(성균관대학교)
공동번역	김해인 · 이정우 · 김연수 / 부유섭 · 이승재 · 김중섭 · 강민형
출판교열	장유승
감수	김문식(단국대학교)
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디자인	임범상 · 이선정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65-01

ISBN 979-11-6988-363-4(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https://science.kma.go.kr/museum>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